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1153-000081-01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주요도서 해제 2

## Ⅰ 일러두기 Ⅰ

1. 해제 도서의 제목, 저작자, 발행사항, 총면수를 밝혀 두었다.
2.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등 원문자를 표기하였다. 단, 한글만으로도 의미전달이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한글로만 표기 하였다.
3. 도서명은 겹낫표(『 』), 논문, 법령 등은 홑낫표(「 」), 직접인용은 큰따옴표(“ ”), 간접인용은 작은 따옴표(‘ ’)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일반적인 것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랐다.
4. 본문의 체제는 ①서지사항, ②소장정보, ③관련연구동향, ④저자소개, ⑤내용요약, ⑥역사적 가치의 순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이러한 체제에 맞출 수 없는 경우 책의 특징을 살려 해제하였다.

## 간행사

국가기록원은 각종 공공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집·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일반국민, 정책 담당자·학술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지식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해제집 등 편찬 서비스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5,100여 권의 일제시기 출판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는 일제 식민정책을 비롯하여 문학, 예술, 지리, 공업, 기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제시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해제집은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50권의 책을 선별하여 간행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제시기 식민정책을 비롯하여 교육과 행정, 농상공업 등 경제 분야, 향토와 풍물, 인물과 체험담 등 5개의 주제와 관련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의 내용, 역사적 가치, 소장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제집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상과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해제집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제집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집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국가기록원장

# 목 차



» 일러두기

» 간행사



총론 ..... 1



## 1. 식민정책

-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19
- 일본식민사상사(日本植民思想史)..... 25
- 문화통제의 연구(文化統制の研究)..... 32
- 외지통치기구의 연구(外地統治機構の研究)..... 37
- 정한론실상(征韓論實相)..... 43
- 조선통치의 목표(朝鮮統治の目標)..... 48
- 시정에 관한 훈시 및 연술(施政に關する訓示並演述)..... 53
- 조선시정에 관한 유고훈시 및 연술집(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59
- 타이완식민정책 전(臺灣殖民政策 全)..... 66
- 만주독본(滿洲讀本)..... 73



## 2. 교육 · 행정

- 조선교육에 안주해서(朝鮮教育に安住して)..... 81
- 조선학교관리법(朝鮮學校管理法)..... 83
-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하여(國語及朝鮮語のため)..... 88
- 국민학교규정의 연구(國民學校規程の研究)..... 91
- 소학 일년의 교육실천(小學一年の教育實踐)..... 95
- 국민학교 각과 지도정설(초등과6년중)(國民學校各科指導精說 初等科六年中)..... 98
- 국민과 읽기 수업안(國民科讀方授業案)..... 102
- 학급경영(學級經營)..... 105
-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朝鮮 公文起案の實際) /  
공문기안의 기초지식(公文起案の基礎知識)..... 109



## 3. 농상공업

- 조선농업의 근대적 양상(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129
- 조선흥업주식회사 25년지(朝鮮興業株式會社二十五年誌)..... 134
- 조선금융기관법규제요(朝鮮金融機關法規提要)..... 140

- 조선금융조합의 현세(朝鮮金融組合の現勢)..... 145
- 조선금융조합사(朝鮮金融組合史)..... 149
-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0년사(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157
- 조선식산은행 20년지(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164
- 조선은행 25년사(朝鮮銀行二十五年史)..... 171
- 조선의 간이보험(朝鮮の簡易保險)..... 176
- 조선운송합동사(朝鮮運送合同史)..... 182
-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 188
- 대흥전기주식회사 연혁사(大興電氣株式會社沿革史)..... 195
- 조선통신사업감독론(朝鮮通信事業監督論)..... 199
-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 205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보고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京城協贊會報告)..... 210
-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 공진회실록(朝鮮總督府始政五年記念共進會實錄)..... 214



#### 4. 향토 · 풍물

- 여명의 조선(黎明之朝鮮)..... 223
- 북선개척사(北鮮開拓史)..... 227
- 군산부사(群山府史)..... 233
- 조선민요집(朝鮮民謠集)..... 239
- 부채 · 왼새끼 · 타구 · 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 244
- 조선의 차와 선(朝鮮의 茶와 禪)..... 251



#### 5. 인물 · 체험담

- 자작 사이토 마코토전(子爵 齋藤實傳)..... 261
- 가쓰라 타로오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 265
- 인물평론 진짜냐? 가짜냐?(人物評論眞物?贗物?)..... 271
- 거류민 옛이야기 제1편(居留民之昔物語 第一編)..... 278
- 오십년 여기저기(五十年とところどころ)..... 283
- 조선을 말한다(朝鮮を語る)..... 286
- 30년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 290
-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 294



## 총론

일제 강점기 식민정책 이해  
교육, 산업, 향토, 인물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이 해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기 주요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기 도서는 5,100여 권으로, 조선총독부 문서과, 경무국 도서과 등에서 보유했던 것들이다. 도서의 소장처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중심에 있던 기관들이다. 식민통치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도서에 담긴 내용들이 이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축적된 학문적 역량이 식민통치의 사상적·학문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소장 도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를 이해하고자 해제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소장 도서 중 77권을 대상으로 제1집을 발간하였다. 금년에도 교육 및 산업 등 식민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50권의 도서를 선별하여 해제집으로 발간하였다.

이번 해제의 의도는 일제가 추구한 정책 및 사상적인 면을 먼저 고찰한 후, 이에 따른 정책의 반영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 2. 주제별 이해

이번 해제집은 크게 식민정책, 교육·행정, 농상공업, 향토·풍물, 인물·체험담 등 5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통치가 정책적인 면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각 분야에서 진행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내용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식민정책

여기서는 식민통치에 반영된 정책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식민정책이 한국·대만·만주 등 식민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제가 구상하는 식민통치에서 동아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 지역에 대한 통치의 형태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정책적인 내용의 도서를 해제하였다. 일제가 추진하였던 식민정책에서 ‘동아’의 개념은 중요하다. 이는 사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행위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일제는 당시 ‘동아’의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영토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식민이란 의미가 사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문화와 식민통치의 관계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제가 추진한 식민정책의 이해에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된 도서로는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일본식민사상사(日本植民思想史)』, 『문화통제의 연구(文化統制の研究)』 등이 있다.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은 1942년에 발행한 흥아총람(興亞綜覽) 제2집이다. 이 도서는 만주제국협화회의 수도본부부장인 가네코 사다이치(金子定一)가 서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만주제국협화회는 만주지역의 친일단체이다. 이는 이 저서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책은 ‘동아공영권’의 지역적 개념을 확정하고 있다. 즉 당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그리고 남양군도와 남방지역까지 동아공영권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행정과 재정, 교육 등 다방면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징을 앞부분에 배치해 서술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본식민사상사(日本植民思想史)』는 일제 식민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에미시(蝦夷) 지역에 대한 식민방식의 논란이 대두되면서 전개된 식민론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초기 영토적인 개념에서 경제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

고, 다시 국방의 개념이 융합된 식민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제의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문화통제의 연구(文化統制の研究)』는 문화사를 전공한 저자가 문화와 국방을 연결하여 문화의 창조성을 살펴보고 있는 저서이다. 이 저서는 대동아의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전시체제 하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식민지마다 성격을 달리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통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즉 『외지통치기구의 연구(外地統治機構の研究)』, 『정한론실상(征韓論實相)』, 『조선통치의 목표(朝鮮統治の目標)』, 『시정에 관한 훈시 및 연술(施政に關する訓示並演述)』과 『조선시정에 관한 유고훈시 및 연술집(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演述)』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타이완과 만주의 예를 들어 일제의 식민정책을 서술하고 있다. 타이완과 관련하여서는 『타이완식민정책 전(臺灣植民政策 全)』을, 만주지역은 『만주독본(滿洲讀本)』을 각각 해제하였다. 이들 도서는 타이완과 만주에서 일제가 추구했던 식민통치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저서들이다.

『외지통치기구의 연구(外地統治機構の研究)』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국가총동원체제’로 전환한 시기를 배경으로 저술되었다. 이 시기 식민통치의 근간이 되어 온 외지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외지통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외지, 즉 식민지에서의 통치기구를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을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기구 및 법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기구 일반 및 헌법상의 문제도 다루고 있어, 대만·관동주·남양군도 등 기타의 식민지 통치와의 비교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한론실상(征韓論實相)』은 저자가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제기된 정한론의 경과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일본의 봉건체제가 붕괴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대립의 과정이 정한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내부적인 정

#### 4 \_ 일제시기 주요도서 해제 2

치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 정한론의 실상임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조선통치의 목표(朝鮮統治の目標)』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국에서의 정치·경제·사회상의 제문제 및 그에 대한 저자 자신의 의견, 식민지통치의 수뇌부 및 민간의 유력자에 대한 인물평, 수필, 기행문 및 잡문 등으로 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다.

『시정에 관한 훈시 및 연술(施政に關する訓示並演述)』과 『조선시정에 관한 유고훈시 및 연술집(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錄)』은 1922년 7월부터 1937년 3월까지 행한 조선총독과 정부총감 등의 유고, 훈시와 연술을 모아 각각의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중요 회의 등에서 행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기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침 및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타이완에 대한 식민통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타이완식민정책 전(臺灣植民政策 全)』이다. 이 책은 저자가 타이완총독부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것이다. 저자는 일제의 타이완 식민정책이 4대 총독인 코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와 민정장관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부임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토 신페이는 생물학적 식민지 경영론을 펴면서 타이완을 통치하고 있다. 타이완통치에 일본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타이완사람들의 풍습과 제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과 구관조사사업으로 구현되었다. 이와 더불어 타이완에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작업도 꾸준히 병행해 나갔던 것이다.

『만주독본(滿洲讀本)』은 1938년 3월 일본 외무성 정보부(外務省情報部)이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만주와 일본의 공통점을 찾고 있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만주경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

#### 2) 교육·행정

식민통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치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사상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일제도 이와 같은 인식에서 교육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통치기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흡수가 가장 민감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가 추구하였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행정상에서 공문서의 기안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행정적인 면에서의 식민통치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교관리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조선교육에 안주해서(朝鮮教育に安住して)』와 『조선학교관리법(朝鮮學校管理法)』이 그것이다.

『조선교육에 안주해서(朝鮮教育に安住して)』는 조선교육의 전반 상황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는데, 특히 조선교육의 유래와 ‘한일병합’ 이후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저자가 12년 동안 식민지 조선의 교육현장에서 훈도, 교장, 교유, 시학 등의 직임을 맡았던 경험에 토대하고 있다. 조선과 일본의 융화를 위해 조선의 사정을 일본에 알리고, 풍속과 습관, 역사는 물론 조선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터득함으로써 아동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선학교관리법(朝鮮學校管理法)』은 학교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다. 실업학교 등 각종 전문학교와 소학교 등의 관리에서 학교 위생상의 제문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사범학교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또한 이 책의 저자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는 당시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을 ‘충량한 신민’으로 양성해 같은 일본국민이라는 점을 철저히 자각하기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다. 일제가 ‘황민화 교육에서’ 초등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초등교육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다.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하여(國語及朝

## 6 \_ 일제시기 주요도서 해제 2

『鮮語のため』, 『국민학교규정의 연구(國民學校規程の研究)』, 『소학 일년의 교육실천(小學一年の教育實踐)』, 『국민학교 각과 지도정설 초등과 6년중(國民學校各科指導精說 初等科六年中)』, 『국민과 읽기 수업안(國民科讀方授業案)』, 『학급경영(學級經營)』 등의 저서가 있다.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하여(國語及朝鮮語のため)』는 ‘국어’(일본어)와 조선어의 습득을 통해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두 민족을 융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의 계통부터 서반어, 화란어 등까지 다루고 있다. 『국민학교규정의 연구(國民學校規程の研究)』는 일제 말기의 국민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을 보여주는 자료로, 학교경영뿐만 아니라 「조선교육령」에 근거한 과목별 교육지침과 주요 지도 내용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황국(皇國)의 도(道)’를 연마함으로써 일제에 동화되도록 하는 일제의 복종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소학 일년의 교육실천(小學一年の教育實踐)』은 새롭게 반포된 「조선교육령」(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다년간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간행된 교육실천 지침서이다. 『국민학교 각과 지도정설 초등과 6년중(國民學校各科指導精說 初等科六年中)』은 1941년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 공포 이후, 새로운 교육목표를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저술된 저서이다. 특히 일제의 교육정책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전시체제 하에서 어린 아동들에게 순국(殉國)과 의기(意氣)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수업을 강조하고, 일본 국민으로의 자질과 역사, 언어, 도덕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국민과 읽기 수업안(國民科讀方授業案)』은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의 교육과정 반포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과(國民科) 읽기 수업안이다. 여기서는 입학 직후 학생들의 조회의 모습 등을 통하여 일제가 추구하는 황국신민과 내선일체를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전반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학급경영(學級經營)』은 저자가 보통학교 3년과 소학교 3년의 교육체험에 토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초등학교와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현장의 실제적

인 활용을 전제로 한 실무지침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식민행정과 관련해서는 『조선공문기안의 실제(朝鮮公文起案の實際)』와 『공문기안의 기초지식(公文起案の基礎智識)』 2책이 있다. 이 책들은 실무자들을 위한 문서행정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언어표기문제, 공문의 형식과 내용, 기안에서부터 결재 및 시행에 이르는 절차와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및 집행 관련 문서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유용하다.

### 3) 농상공업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제는 일본에 의한 제도의 이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자본을 침투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예측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일제는 식민통치의 정지작업으로써 토지제도를 개편하여 자국의 제도에 접근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농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농업의 근대적 양상(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과 『조선흥업주식회사25년지(朝鮮興業株式會社二十五年誌)』 등이 그것이다.

『조선농업의 근대적 양상(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은 ‘한일합방’ 이후 조선농업의 현상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황해도에서 소작관으로 근무하던 중 농민과의 접촉, 즉 지주와 마름, 그리고 소작농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활사정과 심리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저자는 농촌지역에 근무하면서 농민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쌀의 이출량에 대해 분석해 놓고 있다. 한국 쌀의 이출량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쌀가격과는 역비례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본의 쌀값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 8 \_ 일제시기 주요도서 해제 2

『조선흥업주식회사25년지(朝鮮興業株式會社二十五年誌)』는 일제의 토지수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사실상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여 고을의 소작료를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농사개량을 구실로 수리조합을 조성하고 조선 농민에게 수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투자자본에 대한 고을의 이자를 착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나아가 토지를 담보로 한 대부금사업은 곧 고리대금업과 다름이 없다.

금융자본의 유입과정을 보여주는 저서로는 『조선금융기관법규제요(朝鮮金融機關法規提要)』, 『금융조합의 현세(朝鮮金融組合の現勢)』, 『조선식산은행20년지(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조선은행25년사(朝鮮銀行二十五年史)』, 『조선의 간이보험(朝鮮の簡易保險)』 등이 있다.

『조선금융기관법규제요(朝鮮金融機關法規提要)』는 ‘한일합방’ 직후의 금융기관에 관한 당시의 법규와 훈령, 통첩 및 처분에 등에 대해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일제의 자본이 조선에 유입될 수 있는 제반 환경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금융자본의 잠식과정을 제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금융조합의 현세(朝鮮金融組合の現勢)』는 일제강점기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부록〉에 실려 있는 각종 도표는 금융조합과 연합회의 조합원 수의 증가 등과 더불어 출자금, 적립금, 대출금, 예금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일제에 의한 금융산업의 식민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조합사(金融組合史)』는 금융조합이 소농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식민지 금융체제의 최말단에서 농업자금을 통제하고, 일제의 전쟁자금을 후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금융조합연합회10년사(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는 연합회가 농민금융기관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금융자본의 투자와 이로부터 창출된 이윤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등 식민지 금융체제가 완성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

『조선식산은행20년지(朝鮮殖産銀行二十年誌)』는 조선식산은행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이다. 조선식산은행은 농업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인의 직접적인 투자와 경영에 의존하여 설립되었다. 식산은행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더불어 농업·상업이 대부분이었던 조선경제계를 지배함으로써 식민수탈을 꾀한 금융기관이었다. 이 책은 조선식산은행 20년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비판적인 접근을 통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은행25년사(朝鮮銀行二十五年史)』는 조선은행과 관계된 당시 경제계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은행 업무의 실적을 기술하고 있어 금융분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중앙은행으로 기능한 조선은행은 만주지역까지 지점을 확대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는 조선과 일본의 금융유통을 도모하고 만주에서의 부원(富源)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간이보험(朝鮮の簡易保險)』은 조선총독부체신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이보험에 대한 안내서이다. 조선의 간이보험은 일제강점기 한국 민중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농촌경제의 또 다른 수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통·통신분야 및 공업에 대한 일제의 진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로는 『조선운송합동사(朝鮮運送合同史)』,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 『대흥전기주식회사연혁사(大興電氣株式會社沿革史)』, 『조선통신사업감독론(朝鮮通信事業監督論)』,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 등이 있다.

『조선운송합동사(朝鮮運送合同史)』는 일제강점기에 운송회사의 통합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철도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운송회사의 통합과정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운송(小運送)의 개선이나 산업의 합리화와는 거리가 있다. 통합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철도국은 일제의 산업목적에 따라 운송업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북선지방의 자원을 수탈하는 것과 연결된다. 운송업계의 통합은 일역일점(一驛一店)의 원칙으로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거대자본의 일본 운송업계에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운송합동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담고 있어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는 일제강점기 해운업뿐만 아니라 식민정책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보조금은 창업초기 총수익의 27.5%를 차지하고,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1915년에는 35%까지 증가한다. 이후에도 그 비율은 낮아지나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해운산업이 일본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흥전기주식회사연혁사(大興電氣株式會社沿革史)』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전기사업의 변화과정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대흥전기주식회사는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에 의한 전기사업의 전개과정을 잘 보여준다. 대흥전기는 매수·합병을 통하여 광주와 포항, 통영, 남원 등지로 진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식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사업행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조선통신사업감독론(朝鮮通信事業監督論)』은 저자가 실제의 근무경험을 통해 얻은 통신사업감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부 열거하여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다. 체신사(遞信史)나 식민통치의 과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은 조선의 공업 및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다양한 방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1937년 당시 공업의 입지와 전력생산 문제, 석탄 등의 연료공급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력생산은 1937년 당시 수력발전능력이 약 2백30만kw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영월화력발전소가 5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사와 맥주, 제분·제염·제련·제철·요업 등 당시 조선공업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농구치계 회사와 가네가후치 방적회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시정 5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일제는 이 기회를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한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일제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이는 천황이 공진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보고(始政五年紀念朝鮮物產共進會京城協贊會報告)』와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 공진회실록(朝鮮總督府始政五年紀念共進會實錄)』을 해제하였다.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보고(始政五年紀念朝鮮物產共進會京城協贊會報告)』는 191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경성협찬보고서이다. 경성협찬회의 업무는 공진회에 대한 홍보이다. 이를 위해 협찬회는 문서를 통한 홍보와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구분하여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경성협찬회 보고서는 일제가 추구한 공진회의 목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물산공진회의 성공을 위해 협찬회로 하여금 관람자를 유도하고 공진회장 외부의 관람을 알선하는 등 관람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동원을 위한 조치이다.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 공진회실록(朝鮮總督府始政五年紀念共進會實錄)』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알게 한다. 여기서는 공진회가 처음 추진되는 배경으로부터 사무총장·사무위원의 임명 등 조직구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전시제품이 조선시정 5년 동안 발전되거나 성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갖추어진 각 전시관의 물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일제가 추진한 조선물산공진회의 목적이 조선통치의 정당화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4) 향토·풍물

일제강점기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는 일제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새로운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군산은 일제시기 도시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일제는 북선에 대한 개척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에 대한 수탈강도도 짊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여명의 조선(黎明之朝鮮)』, 『북선개척사(北鮮開拓史)』, 『군산부사(群山府史)』 등을 해제하고 있다.

『여명의 조선(黎明之朝鮮)』은 3·1운동이후 내선융화를 목표로 가네야 히데오(金谷榮雄)가 1920년대 한국(朝鮮)의 과거(過去)와 현재(現在) 그리고 미래(未來)에 관하여 조명한 책이다. 3·1운동을 ‘일부 야심가들의 선동’에 의해 발발한 것으로 폄하하면서, ‘한일합방’에 따른 화학작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인의 인성과 습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인은 미개하며, 허영을 즐기고 나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습성으로 인하여 한국이 일본에 합병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3·1운동의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선개척사(北鮮開拓史)』는 일제가 함경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을 망라한 각 방면의 발달사를 정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후하고 외진 지역에서 거대한 상공업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다.

1930년대 중반 일제는 북선지역에 경금속공장, 화학공장, 군수품생산 공장 등을 신설·확장하였다. 더불어 북부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확충하고, 산림자원·지하자원·수력자원의 개발 등에도 주력하고 있었다. 1933년에 북선 철도(수성·회령선, 청진선, 회령탄광선, 도문선)를 정비·확충함은 물론 중앙선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경부·경의선, 경원·함경선 등의 북선화를 완료하고, 북선 철도와 북선 3항(나진·웅기·청진)을 연결하여 일본-한국-만주로 이어지는 운송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일본 서부지방의 중요 항인 마이즈루(舞鶴)·니이가타(新潟)와 조선의 나진·웅기·청진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군대 및 전략물자를 철도를 통해 중국 각 지방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북부 국경 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생하는 반일투쟁에 대한 탄압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일제는 북선 철도 및 북선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항일투쟁을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군수산업의 건설과 자원약탈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개발을 통한 수력발전소의 건립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산부사(群山府史)』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군산항을 미곡수탈을 위한 중심항구로 만들었음을 잘 알게 해준다. 전북지역은 전국 최대의 쌀생산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교역에 필요한 항구와 지리상의 이점 등을 갖추고 있었다. 군산항은 이러한 지리적 입지에 기인하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일제는 군산을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전북에서 생산된 쌀과 국내 각지에서 수탈한 물자를 일본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개항 이후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출신지역까지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군산거주 일본민회와 일본거류민단의 조직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어서 일제 강점하 새로운 도시의 발달 과정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풍물은 당시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민요와 부채·원새끼·타구·바가지 등은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준다. 여기서는 『조선민요집』, 『부채 원새끼 타구 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 『조선의 차와 선(朝鮮의茶と禪)』 등 저서에 대해 해제하였다.

『조선민요집(朝鮮民謠集)』은 김소운이 한국의 민요를 모아서 일본어로 번역해놓은 것이다. 이 책의 간행은 당시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방대한 민요의 수집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1920년대 민요수집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체제를 갖춘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김소운이 처음이다. 김소운은 당시 민요를 일본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김소운의 이러한 노력이 담겨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부채 원새끼 타구 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는 조선의 풍속을 각종 문헌과 당시 행해지던 민속을 참고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조선과 일본 혹은 중국의 풍습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근원을 지니거나 상호 전해진 것도 있다는 점을 고증하고 주장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조선의 차와 선(朝鮮의茶と禪)』은 차가 분포하는 지역, 선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내려온 차문화의 맥락 등을 답사를 통

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차의 종류와 채용법까지 소개함으로써 일제시기 차 문화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5) 인물 · 체험담

인물과 체험담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세력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친일세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떻게 조선을 지배해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사상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인물에 대해서는 『자작 사이토 마코토전(子爵 齋藤實傳)』, 『가쓰라 타로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 『인물평론 진짜냐? 가짜냐?(人物評論 眞物?贋物?)』 등을 해제하고 있다.

『자작 사이토 마코토전(子爵 齋藤實傳)』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료집’ 성격이 강하다. 이 책은 사이토와 관련된 주변의 인물과 특정한 사건·사안에 관계했던 인물들로부터 폭넓게 수집한 구술 및 회고기를 저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직접인용으로 수록된 일기 및 서한 자료는 상당한 자료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의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사이토문서’로 소장되어 있다.

『가쓰라 타로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는 우리에게 ‘가쓰라 - 대프트 밀약’으로 잘 알려진 가쓰라와 ‘평민재상’ 하라에 대해 평전 형식으로 작성한 책이다. 실제로 가쓰라와 하라는 일본 근현대사에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일본에서 3번에 걸쳐 수상을 역임한 가쓰라는 두 번 째 수상이 된 후,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고 의병운동을 탄압했던 인물이다. 한편 하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띄어 중용된다.

『인물평론 진짜냐? 가짜냐?(人物評論 眞物?贋物?)』는 일본어 월간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에 수년에 걸쳐 게재된 인물평론을 집성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43명으로, 그 중 조선인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인명록이 아

닌, 인물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그가 행하는 업무 내용, 사회적 평판 등 당시 이면에서 이야기되었던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책은 인물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관치주의·민간부문이 채 성장하지 못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재조일본인’의 시각에서 그들의 체험담과 관련한 저서에 대한 해제이다.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일제의 조선지배를 고착화하려는 바램이 담겨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거류민 옛이야기 제1편(居留民之昔物語 第一編)』, 『오십년 여기저기(五十年とろどころ)』, 『조선을 말한다(朝鮮を語る)』, 『30년 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 등을 해제하고 있다.

『거류민 옛이야기 제1편(居留民之昔物語 第一編)』은 경성에서 조직된 ‘조선이석회(朝鮮二昔會)’라는 재조일본인 단체가 발간한 책이다. 조선이석회의 주요 임원들은 단순한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경성은 물론 전 조선에서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재조일본인들이었다. 이들은 조선 침략의 최전방에서 활약·기여한 사람들로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에도 직접 군인으로 참전하거나 통역·군납업자로 관여·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거류민회, 경성부회, 경기도의회, 상업회의소, 위생조합, 학교조합, 업종별 조합, 조선총독부 산하 단체의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이 책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1880년대 이후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내 활동이나 재조일본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당시 재조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과 조선 사회를 탐색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오십년 여기저기(五十年とろどころ)』는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견문한 50여 년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당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제23편부터 제30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책은 1920년대 초반의 민족운동 및 지배정책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비록 사후의 회고이기는 하나, 3·1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 통치’ 하에서 만 5년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조선치안의 총책임자로서 관여한 각종 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을 말한다(朝鮮を語る)』는 조선의 땅과 사람들의 재인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조선사정천명회(朝鮮事情闡明會)의 내선일체 관련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0년 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은 1955년의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결과 조선의 산업이 발전되었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이 책의 부록에서는 조선통치의 각 분야, 특히 산업·경제 분야의 현장에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급의 현직관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는 『30년 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 등의 현상과 문제를 지적하며,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식민지 조선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이 5·6년 후의 조선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일제가 식민지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3. 해제집의 활용방안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기 문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일제시기 도서는 원래 조선총독부 본부의 문서과, 경무국 도서과 등에서 소장·관리되던 것들을 정부 수립 이후에 이관받은 것들이다. 여기에 여러 정부기관들의 소장도서 정비과정에서 포함되었다.

이번 해제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정책 뿐 아니라 산업·도시의 발달과정, 황민화교육의 실제적 모습,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과 당시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관련 연구에 조금이라도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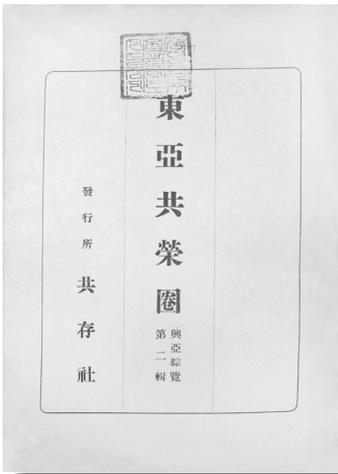
# 1. 식민정책

-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 일본식민사상사(日本植民思想史)
- 문화통제의 연구(文化統制の研究)
- 외지통치기구의 연구(外地統治機構の研究)
- 정한론실상(征韓論實相)
- 조선통치의 목표(朝鮮統治の目標)
- 시정에 관한 훈시 및 연설(施政に關する訓示並演述)
- 조선시정에 관한 유고훈시 및 연설집(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 타이완식민정책 전(臺灣殖民政策 全)
- 만주독본(滿洲讀本)



## 동아공영권 (東亞共榮圈)

- 저 작 자 : 아베 순이치로오(阿部駿一郎)
- 발행사항 : 공존사(共存社)(東京) · 공존사대륙연락부(共存社大陸連絡部)  
(京城), 1942년
- 총 면 수 : 789쪽



이 책은 공존사에서 1942년에 발행한 흥아총람(興亞綜覽) 제2집이다. 이 책의 발행자는 아베 순이치로오(阿部駿一郎)로, 출판은 만주제국협화회(滿洲帝國協和會)와 관련이 있다. 이는 만주제국협화회수도부분부장인 가네코 사다이치(金子定一)가 서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네코가 작성한 흥아총람(興亞綜覽) 제1집의 자서(自叙)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도 이 책이 만주제국협화회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책은 동아공영권을 대만과 사할린, 조선, 남양군도, 만주, 관동주, 몽고, 북중국, 중중국, 남중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태국, 네덜란드령 인도 등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는 토지와 기상 및 인구, 행정기구, 법제 · 재판 · 형무, 경찰 · 이변(理蕃) · 위생, 신사 · 종교, 학교교육, 사회교육 · 사회사업, 체신사업, 토목사업, 전매사업, 농산자원, 당업(糖業), 임산자원, 수산자원, 광산자원, 공산자원, 경제 · 사업계, 무역 · 금융, 재정 · 특별회계, 조사연구기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부록〉으로 제기관 · 은행회사록을 부기하여 식민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지역이 타이완이다. 이는 당시 일제가 타이완을 남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이완은 일제의 남진기지로서의 자연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남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경제력은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화에 있어서도 예상외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일제의 남방시장 진출에 유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일제가 당시 타이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던 것이 '황민타이완(皇民臺灣)의 건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찾아진다. 당시 타이완에는 5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내지인이 32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저자가 피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토지·기상·인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타이완을 구성하고 있는 도서, 즉 타이완 본섬의 타펑호도(他澎湖島), 신남군도(新南群島) 및 그 부속도서, 그리고 동서남북의 극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타이완의 기상관측 내용과 호구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타이완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인식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행정기관과 법제 및 재판과 형무, 그리고 경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타이완통치의 기초 즉, 타이완에 대한 '강권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신사·종교, 학교교육 부분이다. 일제가 타이완에서 행하고 있는 강권통치를 사상적·교육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재정과 무역 등 경제적인 내용이 비교적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과 관련한 설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당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장으로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당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일제가 타이완을 대동아 건설에 있어서 남방개척의 시금으로 인식하고 타이완의 쌀과 사탕, 광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할린의 사정에 대해서는 먼저 지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어 행정기구와 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은 타이완이나 조선에 비하면 비교적 열등하지만, 얼음으로 둘러싸인 황무지에서 보여준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그 의미는

달라진다. 이 책에서 재정문제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어서 법제·사법·형무와 경찰·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뒤를 이어 교통사정과 체신사업을 다루었다. 사할린은 정치적으로나 국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에 사할린의 교통과 체신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조선사정에서는 먼저 이왕직(李王職)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다. 그리고 재정이 하나의 독자적인 장을 구성하면서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신사·종교와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한 장이 사법이나 경찰에 우선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일제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일제는 일선 동조론을 펼치면서 사상과 문화를 식민통치에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사회교화사업이다. 일제가 실시한 사회교화사업에서 보편적 내용으로 주목되는 것은 정오를 기해 일제히 전몰용사의 영혼과 전장에 있는 병사들의 무운을 비는 묵도를 1분간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11월 10일을 중심으로 한 1주일간은 국민정신작흥(國民精神作興) 주간으로 정해놓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인고단련(忍苦鍛鍊), 경노애유일(敬老愛幼日) 등 7개 항목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거행되었다.

일제는 매일 1일의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을 애국일로 정하였다. 신사참배와 국기계양 등을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썼다. 이 외에 일제는 각 단체와 각 모임의 행사 때는 반드시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の誓詞)’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교화사업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다. 이는 일제가 추진한 사회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청년단이나 청년훈련소 등이 ‘국어’(일본어)를 보급하고, 조선총독부의 감독 하에서 경학을 강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풍교덕화는 곧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사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외에도 행정과 신사와 종교, 학교교육, 국민총력연맹, 철도사업, 체신사업, 전매사업, 금융, 농축자원, 수산자원, 광산자원, 공업부문, 임산자원, 조선 각도 및 부의 개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남양군도 사정을 보면 일제가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남양군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남양군도가 발견되는 과정부터 독일 영으로 되어 있던 시기의 남양군도, 그리고 일제와 교섭하면서 위임통치를 하게 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일제의 이 지역에 대한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서 통치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지지(地誌)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남양군도에 대해서는 행정편에 경찰과 위생, 사법과 행형, 그리고 교육과 신사 및 종교를 포함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경찰이 사법과 행형에 앞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일제의 이 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을 가늠케 한다. 이어서 교육, 신사, 종교 순으로 서술하고 있고, 무역보다 자원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일제의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한 관심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만주사정은 일제가 1932년에 세운 괴뢰국가 만주국에 대한 서술이다. 일제는 대동아공영의 기치아래 병참기지화 전략을 세우던 차에 소련남하의 방지를 위해 만주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만주국의 건립은 소련에 대항한 병참기지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만주가 무력에 의한 대일항전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던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즉 조선의 독립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만주를 장악하였던 점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몽강정부(蒙疆政府)는 몽강연합자치위원회의 약칭이다. 1939년 일제가 내몽고지역에 세운 괴뢰정권이다. 몽강사정은 토지와 주민에 대한 설명이 우선하고 있다.

이어 정치분야에 대한 설명과 군사 및 재정·세제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북지나와 중지나, 그리고 남지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일제는 일본과 일체시되고 내부화된 동북아시아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도 외부에 속하는 남방아시아 지역으로 전략적·인식적 관심을 확대시켜 ‘대동아’라는 새로운 아시아의 개념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전략적·인식적 관심의 확대와 함께 동아협동체로 다시 이념화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령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와 태국, 그리고 네덜란드령동인도(蘭領東印度)에 대해서도 역사와 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만주제국협화회와 관련이 있는데, 만주제국협화회는 만주사변 이후 결성된 만주국의 자치지도부를 연원으로 하고 있다. 만주제국협화회는 1932년 7월 25일에 만주국 국무원 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출범하였는데, 만주국 전역의 주민을 통솔하는 전인종적 기구였다. 만주제국협화회라는 명칭은 일본 본토의 협화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직은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실천할 전만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적, 교화적, 정치적 실천단체로서 관동군의 지도와 구성에 의해 설치되었다. 만주국협화회는 만주국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정치조직체이었다. 본부의 기구는 만주국 황제 푸이가 명예회장을 맡고 관동군사령관이 명예고문을, 그리고 만주국 총리가 회장을 맡는 관제조직이었다.

만주제국협화회는 만주를 영유함으로써 중국인을 해방시킨다는 명목 아래 설립되었으나, 각 나라의 친일인사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그 본색을 드러냈다. 형식적으로는 민중조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무조직으로서 민중을 감시하고 선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전쟁은 ‘동아’의 개념을 ‘대동아’로 확대시켰다. 이는 일제의 전략적 시야가 남태평양의 여러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동아’ 개

\* 교야스 노부쿠니 저, 이승연 역,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pp. 91~92. 이하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였다.

념의 확대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억압되었던 이들 지역을 일제의 전략적 위치로 시야를 확대시킨 결과인 것이다.

일제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1915년 중국에 요구한 21개 조항도 만주를 일제의 세력권 안에 두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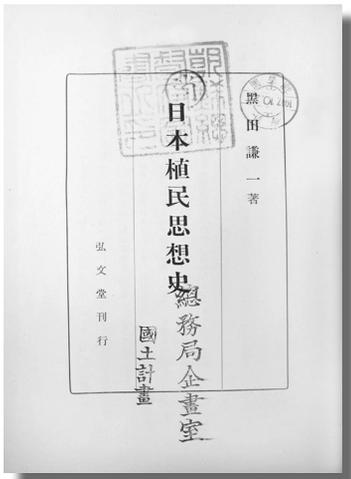
일제는 1940년 유럽중심의 세계사에 대항해 다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동아공영권과 연결된다. 일제는 이 과정에서 남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결합을 꾀함으로써 ‘일제 중심의 세계사’를 꿈꾸게 된다. 일제는 동아시아를 동아라는 지정학적 개념으로 형성시키고, 여기에 남방을 부가함으로써 대동아의 개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동아’라는 문화적 지역개념은 원래 일제가 근대 아시아의 맹주임을 자부하기 위해 사용한 학술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는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아는 대동아로 재구성하고, 또 남방이나 남양의 지역을 흡수하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이 책에서 남양군도를 ‘황토(皇土)’로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남양군도는 일제가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책은 일제의 ‘대동아’ 개념을 추론할 수 있게 하고, 동아공영권의 지역적 개념을 확정하고 있어서 위한 일제의 영토적 야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그리고 남양군도와 남방지역까지 동아공영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도된 식민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행정과 재정, 교육 등 다방면의 내용을 서술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 일본식민사상사 (日本植民思想史)

- 저 작 자 : 쿠로다 겐이치(黒田謙一)
- 발행사항 : 흥문당(弘文堂)(東京), 1942년
- 총 면 수 : 251쪽



이 책은 저자가 일제의 식민통치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은 좁은 의미의 식민정책학에 속하는 연구로 평가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식민정책학이 형성되기 이전의 해외식민론에 대한 사상적 흐름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이 책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총 2편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편 도쿠가와(徳川)식민사상

- 제1장 서론
- 제2장 경제적 개업론
- 제3장 경제적·국방적 개업론의 선구
- 제4장 경제적·국방적 개업론
- 제5장 소극적 개업론
- 제6장 경제적·국방적 개업론
- 제7장 국방적 개업론

### 제2편 메이지초기에 있어서의 식민사상

\* 수요역사연구회, 2007,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294쪽.

제1장 서론

제2장 자유주의식민사상

제3장 보호주의·국민주의 식민사상

제4장 식민론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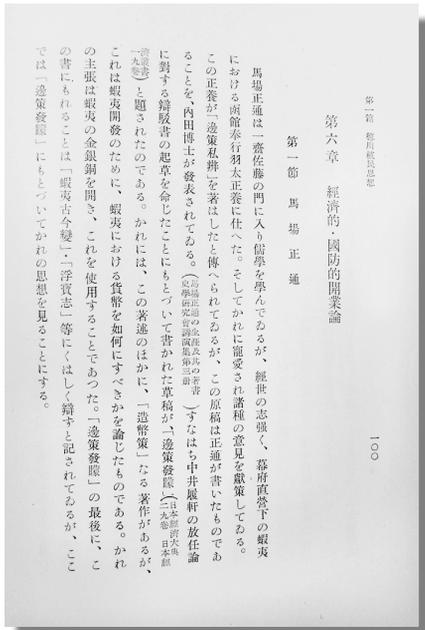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식민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 출발을 도쿠가와시대의 식민사상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의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서양인들의 식민활동에 관해 알아보면서 개국과 개업, 그리고 식민이라는 조어(造語)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제적 개업론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에미시(蝦夷 ; 홋카이도 지방에 살고있는 인종과 그 지역을 일컬음)의 개업사상의 전개를 사토 노무카게(佐藤信景)가 저술한 『토성변(土性辨)』이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토성변』에는 개국사상과 개국에 관한 경험이 서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이 천민의 개업론이다. 천민은 에미시의 농업개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에미시의 풍속을 고치고 인민을 이식하는 등의 개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논하고 있다. 그는 개업이 당시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해수필』에 나타난 개업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해수필』은 에미시의 역사와 지리, 풍속, 물산과 교역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에미시의 개업과 관련하여 논급하고 있다. 이는 개업론의 주요근거가 에미시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에 있음을 말해준다.

도쿠가와시대의 식민사상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경제적 개국·개업론은 국방적 개업·개국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처럼 에미시에 대한 국방관계 내용이 부가된 것은 당시 일본의 북쪽 해안지역으로 러시아 등에 의한 탐험적·침략적 행위가 있었고, 외국의 사절이 내방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가진 인물로 쿠도 헤스케(工藤平助)와 요시오코-사쿠(吉雄幸作)가 있다. 이들은 에미시의 개업과 관련하여

국방관련 내용을 부가시킨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하여 추가할 수 있는 인물로 하야시 시헤(林子平)이 있다. 하야시는 일본 특유의 군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상에 있어서의 국방체제를 논하고 있다. 그는 에미시에 대한 절박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바쿠후시대의 경제적 국방적 개업론은 난학(蘭學)이 융성하였던 것에서도 그 시대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난학은 바쿠후 시대에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서구의 사정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였던 학풍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혼다 도시아끼(本多利明)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혼다 도시아끼는 이 시기 대표적인 개업론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에미시에 직접 다녀간 경험이 있으며, 에미시와 관련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혼다 도시아끼의 개업론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산(國産)의 증식과 관련하여 전개된다. 에미시의 개업을 통해 에미시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넓혀진 토



지에서 곡식과 해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소극적 개업론이다. 소극적 개업론은 적극적인 개업론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관정(寬政)년간(1789~1800)에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 나카이 다케야마(中井竹山)의 실질적 개업론을 들 수 있다. 이는 방임론과 맥을 같이 하는데, 나카이 리켄(中井履軒)과 야마가타 반토(山片蟠桃), 그리고 『개폐별론(改弊別論)』의 저자 등이 이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전개되는 경제적·국방적 개업론은 서양사정에 대한 연구를 국방상에 적용한 예라 할 수 있다. 문화년간(1804~1817)에 영국의 군함이 나

가사키(長崎)에 입항하여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문정년간(1818~1829)에는 영국 선박들의 내항이 잦아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의 식민활동을 소개하고,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이다. 그 관심의 폭을 중국으로 확대하여, 영국에 관한 연구에 아편전쟁 관련한 문헌을 삽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메이지시대의 식민사상이다. 이 시기의 사상은 도쿠가와 바쿠후시대의 사상체계를 비판하면서 성립하였다. 외국선박의 내항과 안정적인 개항을 통하여 발흥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학에서 영학(英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서양의 지식을 일본에 소개하였다. 즉 이 시대는 이제까지 유학이나 난학, 그리고 국학에 머물러 있던 관심이 개항을 계기로 하여 영학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사상적 내용도 영학을 통하여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사상은 영학을 통해 서양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당시 사상가들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던 도쿠가와 바쿠후의 사회경제사상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에서 찾아진다. 도쿠가와시대의 농본주의와 간섭주의(干涉主義)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양의 사회사상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사상과 경제사상 등 서양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보급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메이지 초기 사상의 선각자들은 번역을 통하여 서양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유평등의 사상을 외치면서, 도쿠가와시대의 계급적 노예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전개하였다. 즉 문구(文久)년간(1861~1864)의 도쿠가와와 무사계급적·쇄국적 사상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소개는 특기할 만하다. 도쿠가와시대의 경제사상체계에 대해 비판하면서, 서양 경제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자신의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 사상의 빈곤을 서양

의 세계관을 체계화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간다 타카히라(神田孝平)는 서양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리카도의 지대론·자유경쟁·노동가치론·임금론·이윤론·조세론을 접하게 되는데, 그의 사상 기저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육성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주의를 전파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도쿠가와시대의 윤리적·정치적 성격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독립과학적인 경제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적 사상경향에 대하여 국수적이면서 보호주의적인 사상을 전개하는 사상가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근세 초기에는 중상주의 식민사상이 대두하고 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자유주의 식민사상이 건설되기에 이른다. 자유주의 식민사상과 관련하여 간다 타카히라가 주목된다. 간다는 수학, 천문, 법률, 경제와 관련한 저술과 번역을 주로 하고 있다. 그는 1867년에 번역한 이리스의 『경제소학』에 ‘척토식민(拓土植民)’이란 항목에서 자유주의 식민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자유주의 식민사상은 실질적인 식민지와 영토를 관련지어 놓고 있다. 그는 실질적인 식민지는 무역에 의해서 해당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해외에 땅을 개척하고 그 인민을 차제에 문명에 부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식민에 있어 무역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식민사상이 대두하게 된 시기는 일본이 항구를 개방하고 유신을 통한 정치적 변혁을 꾀하던 시기이다. 구제도를 일신하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식자들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는 사족(士族)의 문제가 그 중심이었는데, 사족의 실적은 당시 신정부의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 시기 정부정책의 근본기조는 관행과 보호간섭주의에서 민영주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상계는 자유주의의 경제사상과 민권사상의 육성 및 흥룡의 과정에 있었다. 1879년에 창간된 『동경경제잡지』는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의 보급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자유당의 결성

은 정치적인 기능을 하였다.

일본에서 자유주의 식민사상이 확립된 것은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에 이르러서다. 타구치는 메이지 초기부터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동경경제잡지』를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와 경제사상을 고취시켰다.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은 무역의 이론 및 경제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1878년의 『자유교역 일본경제론』에 잘 전개되고 있다. 그의 자유무역 문제는 『자유무역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북해도, 대만과 남양의 식민지를 거론할 때 항상 그 기저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식민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정치적 견지에서 식민을 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식민론은 일부 상업과 관련이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경국(經國)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식민지의 부존자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식민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보호주의 및 국민주의 식민사상이다. 이들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과 병행하여 제창되었다. 일본에서의 보호주의 식민사상은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학자의 저서인 『Social Science』가 마츠킨 여사에 의해 발췌된 것이 『규씨경제학(圭氏經濟學)』이란 제목으로 역출(譯出)되면서 자유주의와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 국민주의 식민사상론자로 오-시마 사다마스(大島貞益)가 있다. 그는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식민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농공상의 분업과 그의 균형적·조화적 결합이 국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사상계는 국민주의의 식민론과 국가정책상의 식민정책이 국민주의체제 하에서의 식민이론과는 같은 것으로 소개되는 동시에 자유주의 체제와는 다른 것으로 비교되었다.

한편 일본에서의 식민론은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식민론의 변천은 당시 국내에서 육성되어진 민족국가체제의 정비와 자본주의 경제의 준

비체제가 진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책은 일제의 식민론의 이론적 변천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정책의 추이도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 문화통제의 연구 (文化統制の研究)

- 저 작 자 : 오오쿠보 준이치로오(大久保純一郎)
- 발행사항 : 동양서관(東洋書館)(東京), 1943년
- 총 면 수 : 233쪽



이 책은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전시체제 하에서 문화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시체제에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국방에 집중되어 있듯이 문화계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계에 각 분야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오오쿠보 준이치로오(大久保純一郎)는 1931년 3월 동북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대학원을 거쳐, 전공인 문화사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1940년에는 고강고등상업학교 교수로 재임하였다.

저자는 전시체제 하에서는 문화가 통제되는데, 문화계는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문화통제의 목적은 문화의 창조’라는 역설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서술한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책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문화

- 제1장 문화개념의 분석과 종합
- 제2장 문화의 반성과 전통

#### 제2부 문화통제

- 제1장 문화통제에의 발자취
- 제2장 문화통제법규
- 제3장 문화각계의 통제사정
- 제4장 문화통제와 문화창조

#### 제3부 지도국가와 문화건설

- 제1장 국가와 문화
- 제2장 문화행정의 현재와 장래
- 제3장 문화정책의 근본문제
- 제4장 문화정책의 전망

저자는 문화통제가 문화계에 있어 ‘미증유의 사건’이라 밝히고 있다. 물질과 정신 모두가 시련을 겪게 되는 문화통제는 문화인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나 기타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계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나사변은 대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전쟁인 만큼, 문화계도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등 여타 분야와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국방국가’라는 단어가 군 및 정부당국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이의 근거를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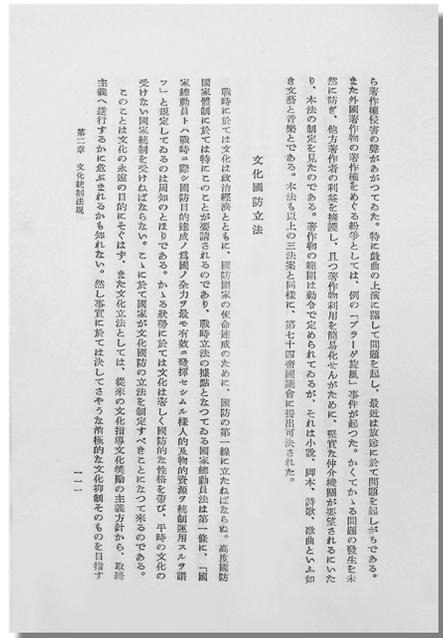
또한 교육과 과학, 그리고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훈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전사의 실용교육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독자적인 지도원리와 세계관의 확립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의 창조가 있다. 동아시아 독자의 길을 명백히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이 하나의 문화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역사를 상기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와 정치와의 관계이다. 종래 문화와 정치는 반발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의 정치성’, ‘정치의 문화성’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체제의 입장에서 문화 각 부문의 모든 단체가 이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단체간의 대립과 할거를 해소하고 횡으로 종으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할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의지에 따르는 ‘문화신체제’의 구상은 익찬회(翼贊會)의 문화부 활동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부의 일이란 문화인이 국가적 목적을 위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련 기구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조직운동의 일익이 될 문화기구 재편성은 정치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기구의 재편성이란 문화 각 부문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동작업이라는 명목아래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활동은 국민생활과 연관시켜야 한다. 문화는 국민전체의 일상생활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방국가체제 하에서의 생활문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 그것은 생산력 확충과 소비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는 ‘건전한 문화’가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즉 직간접적으로 현대문화의 문제점을 매몰시키고 ‘일본 고유의 우수한 문화’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축적하는 양식을 구하고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종교는 물론 신문잡지, 출판, 방송을 포함한다. 또 후생과 관련해서는 의료와 보건, 체육, 오락 등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후생이다. 문화운동에서 교육과 예술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후생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찬회의 문화운동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란 국체정신(國體情神)에 기초한 옹혼·고아·명량한 과학성을 가진 ‘신일본문화의 육성’에 있다. 즉 안으로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밖으로 대동아문화의 양양에 진력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시 일제의 문화통제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는 내부적으로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국체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밖으로 대동아건설을 위한 문화적인 토대를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동아건설의 기치는 193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된다. 이 때는 문화통제의 정도가 강화된 시기인 것이다. 즉 장래 국가의 세계발전 방향에 병행하여 국민의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하는 것인데, 세계관과 국가관 그리고 일본신민도(日本臣民道)를 확립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통제는 반민반관적인 성격을 가진 익찬회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예술과 종교, 사상학문의 분야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신문지법(新聞紙法)」이나 「치안유지법」, 「홍행취체규칙(興行取締規則)」 등은 문화에 대한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소극적 법령’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옛부터 위정자가 정당한 문화정신을 잘 육성·배양하면 국가의 통치기반은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었다. 나아가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나라시대(奈良時代 ; 710~784, 율령을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완성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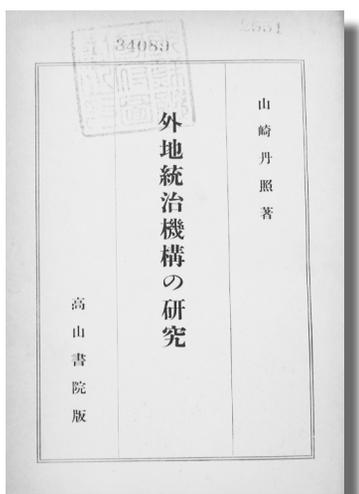
던 시기)의 문화가 완성되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전시체제 하에서의 문화에 대한 통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국방문화’라 하여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위정자들의 이러한 문화통제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던 시기는 중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던 시기이다. 저자는 이 시기에 문화를 통해 대동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통제된 문화로서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I 외지통치기구의 연구 (外地統治機構の研究) I

- 저 작 자 : 아마자키 탄쇼(山崎丹照)
- 발행사항 : 고산서원(高山書院)(東京), 1943년
- 총 면 수 : 412쪽



저자인 아마자키 탄쇼(山崎丹照, 1904~2004년)는 1928년 3월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하기 전 해에 고등시험 행정과 및 사법과를 합격했으나, 관계에 진출하지 않고 제일은행(第一銀行)에 입사하여 은행원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내무행정 및 경찰 관료로서 다년간 재임하다가 1939년 이후 기획원(企劃院) 조사관 겸 법제국(法制局) 참사관으로 전임했다. 전후에는 군마현(群馬縣) 부지사 등을 역임한 후 1952년 퇴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으로 일본 정치

사·법제사 연구를 계속하여, 『천황제의 연구(天皇制の研究)』(제국지방행정학회, 1959년), 『후백하천황(後白河天皇)』(제국지방행정학회, 1961년), 『천황제의 연구 신판(天皇制の研究 新版)』(ミュージアム圖書, 1997년) 등을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은 그가 법제국 참사관(법제국은 내각(內閣)에 속하는 외국(外局)으로서, 법률안의 기초, 법률명령의 제정·폐지·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각 성(各省)에서 각의(閣議)에 제출된 법률명령안의 심사, 조약안·사면·칭원·각령(閣令)의 심사 등 총리대신으로부터의 자문 등을 업무로 한다)으로 재직중인 1943년에 집필한 것으로, 일본 본국의 정치체도의 연혁을 해설한 『내각제도의 연구(內閣制度の研究)』(고산서원, 1942년)에 이어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서 지칭하는 ‘외지(外地)’란, ‘내지(內地)’ 이외의 일본영토(통치지역)를 지

칭하는 개념이다. 즉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그리고 북방의 치시마(千島)열도와 남방의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포함한 내지 이외의 지역으로 주로 식민지를 가리킨다. 식민지로는 조선, 대만, 카라후토(樺太, 사할린 남부, 1943년에 내지로 편입)가 있으며, 그 외에 조차지로서는 관동주(關東州), 국제연맹 위임통치 지역인 남양군도(南洋群島)를 포함한다. 다만, 일본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만철부속지(滿鐵附屬地)와 조계지는 외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식상 독립국인 만주국 역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외지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등)이 시행되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지역을 말한다. 이른바 ‘법역’으로서 각 지역의 행정장관이 제정한 법령, 즉 조선에서는 조선총독이 제정한 ‘제령’, 대만에서는 대만총독이 제정한 ‘율령’이 시행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속적인 어법으로서는 내지 이외에 일본인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범위, 이른바 점령지역 특히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 각지도 외지라고 부르지만 본서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수행을 위한 거국적인 총동원의 요청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의 근간이 되어 온 외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에서 집필되었다. 그래서 ‘내외지 행정일원화’와 같이 ‘내외지의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향후에 예상되는 외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는 외지통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지통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 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의 구성상, 현재의 통치기구 및 제도에 대한 해설보다, 외지 통치의 역사적 고찰의 부분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한 “외지통치기구에 관한 종래의 역사는 앞으로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될 대동아 지역의 통치기구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를 주는 바 클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식민지를 포함한 외지통치의 경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점령지의 통치에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외지에 관한 통치기구를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외지가 소멸되기 직전까지의 변천을 치밀하게 해설한 저작이다. 한국근대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기구 및 법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의 근간이 되었던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기구 일반 및 법제, 헌법상의 문제, 그리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등 기타의 식민지 통치와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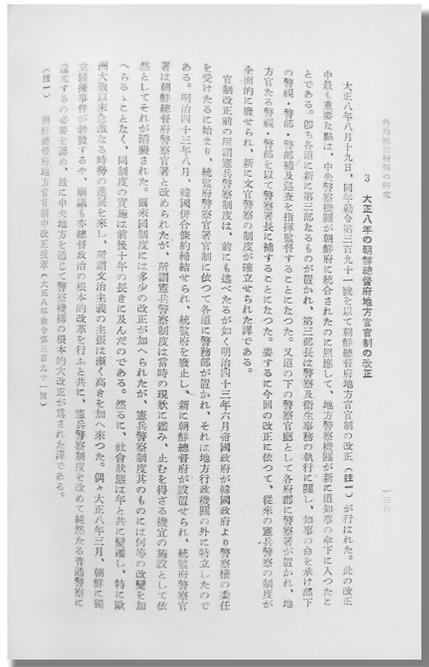
제1장에서는 외지의 의의, 외지에 대한 제국헌법의 효력을 서술하고 있다. 내지란 일본 본래의 영토, 외지란 이후에 부가적으로 획득된 영토인 조선, 대만, 카라후토 및 관동주, 남양군도를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제국헌법 시행(1890년) 이전의 영토를 내지, 그 이후의 신영토를 외지로 구분한다. 외지에 헌법이 시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당시에 의견이 갈라져 있었는데, 일찍이 1895년의 대만 영유를 계기로 헌법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어온 바 있었다. 즉 (1) 헌법에 관련되는 입법사항을 식민지의 행정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고 있었으며, (2) 일본제국의 내외지 전 지역에 헌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사사키 소이찌[佐々木惣一] 등의 학설), (3) 제국헌법 중의 규정 일부만이 외지에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미노베 타쓰키치[美濃部達吉]의 학설 등) 등으로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식민지 행정장관에 의한 위임입법권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이 영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동주(조차지), 남양군도(위임통치지역)에는 위임입법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칙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에, 이들 지역은 헌법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천황대권의 자유로운 발동에 의한 통치로서 해석하고 있었다.

제2장에서는 외지통치와 관련된 중앙기관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전기가 된 것은 1929년의 척무성 설치, 그리고 1942년에 외지 관장 업무를 내무성 및 대동아성에 이전하고 ‘내외지행정일원화’를 꾀한 것이었다. 외지통치의 사무를 통리하는 중앙기관 설치에 오랜 동안 중앙정부의 당국자 사이에서 현안이 되어

왔던 것으로서 척무성(최초 관제 원안에는 ‘척식성’)이 설치되었다. 다만, 척식성 관제 심의 과정에서 조선총독의 권한 및 지위문제가 대두되어 내각과 추밀원이 갈등을 빚었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상층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명망가 집단·정치운동단체 등에 의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1942년에는 내무성관제 및 대동아성 관제의 개정을 통해, 내무대신이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및 카라후토청에 관한 업무를 통리’하고, 대동아대신이 ‘관동국 및 남양청에 관한 사무를 통리’한다는 일대 쇄신이 이루어짐과 함께, 식민지 행정기구의 업무 내용 중 일부, 즉 통계(내각총리대신), 화폐·은행·관세(대장대신), 고등교육(문부대신), 미곡 및 주요 식량 농산물·어산물(농림대신), 광공업·무역·도량형 등(상공대신), 우편·전기통신·해운·항공(체신대신), 철도(철도대신)에 관한 업무의 감독권을 내각의 각 해당 대신에게 부여하기에 이른다(1942년 칙령제729호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의 감독권에 관한 건」). 이를 이르러 ‘내외지 행정일원화’라 이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가 있다.

제3장은 외지의 행정기구에 관한 해설로서, 각 총독부, 각 청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전기의 ‘내외지 행정일원화’와 관련하여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의 지위,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 대신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해설하면서, 조선 지방자치의 제한성과 관련한 언급이 눈에 띈다, “현행 조선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개언(概言)하면, 요컨대 내지의 지방자치에 비해 자치적 권능이 약하다는 것”이라 하면서, (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약체성, (2)이사기관(理事機關)을 행정관료가 겸임하



고 있다는 점(특히 부윤이 이사기관을 겸임하는 문제), (3)지방자치단체의 구성문제(간접선거 및 행정장관의 임명에 의한 의원이 다수에 이르는 문제), (4)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관의 감독이 엄중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제4장 ‘외지의 입법기구’에서는 각 법역(法域)에 따른 위임입법 및 내지 법제 적용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식민지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중, 천황의 칙령을 통해 외지에 시행하는 것(예를 들면 「치안유지법」 등), (2)외지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①법조문의 부칙으로 외지에 시행한다는 것을 명기한 것, ②「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조선은행법」과 같이 외지에 한정해서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법, ③내외지의 민사 및 형사 법제간의 충돌회피를 위해 만든 ‘공통법’과 같이, 내외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법률), (3)「은급법(恩給法)」과 같이 내지와 외지의 구별 없이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적용되는, 속인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 등이다.

한편 천황의 칙령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지에서는 통치기구의 장관에게 광범한 위임입법권이 부여되어, 조선은 제령, 대만은 울령, 기타 관동주 및 남양군도는 각각의 행정청이 발하는 명령이 법률을 대체하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외지의 사법기구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데, 다만 카라후토는 다른 외지와는 달리, 내지 재판소 즉 삿포로공소원(札幌控訴院)이 관할하고 있었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외지 사법제도의 특징은 내지의 ‘재판소구성법’이 실시되지 않고 각 외지가 별도 계통의 재판소를 조직하고 있었다는 점으로서, 행정장관이 사법관료를 관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법권 독립(특히 재판관의 신분보장)’의 원칙이 침해될 여지가 컸으며, 법리 해석에 따라서는 “외지의 재판소는 헌법 외의 재판소”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1930년대 전반기에는 내외지의 사법관계자(사법성, 사법관료, 변호사 등)를 중심으로 식민지 사법개혁을 둘러싼 운동이 전개되어,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척무성 및 식민지 총독부와 대립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의 패전에 의한 제국 해체 직전의 시점에서, 그때까지의 외지 통치 기구의 제도적 측면(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역사적 연혁 및 주요 변화과정, 법리 해석상의 차이와 정부측의 공식 입장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일본 및 식민지 연구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저서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후에 출간된 『외지법제지(外地法制誌)』(외무성 조약국 편찬),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대장성 관리국 편찬) 등, 일본정부가 전전(戰前)의 식민지 통치 전반에 걸쳐 개관한 보고서 역시 중요한 자료로서, 본서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승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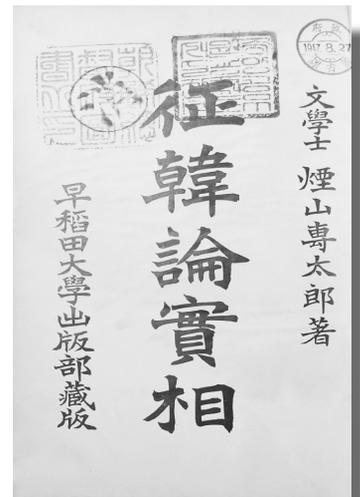
## 정한론실상 (征韓論實相)

- 저 작 자 :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 발행사항 : 와세다대학교출판부(早稻田大學出版部)(東京), 1907년
- 총 면 수 : 310쪽

이 책은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1877~1954)가 1868년 일본의 왕정복고 이후 제기된 정한론의 경과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책은 1873년 11월 홍콩의 『화자일보(華字日報)』에 일본의 정한론에 관한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이 책의 목차이다.

- 제1 소언
- 제2 유신초년의 국내의 내정
- 제3 유신초년의 외교
- 제4 시폐(時弊)와 반정(反情)
- 제5 현상타파의 운동(정부부내의 소동요)
- 제6 국가진장론자의 비약
- 제7 조약개정담판의 노력
- 제8 마리아-루즈호의 매노해방(賣奴解放)
- 제9 북경획정의 담판
- 제10 오사가와라제도(小笠原島)의 문제
- 제11 류큐(琉球) 문제
- 제12 타이완(臺灣) 문제
- 제13 바쿠후(幕政)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대한(對韓)관계
- 제14 정한론의 발흥
- 제15 후쿠시마(副島) 적정의 사명



제16 견한대사(遣韓大使)의 내정

제17 내각궤열(內閣潰裂)

제18 이후의 한국문제

제19 잡관(雜觀)

제20 내각궤열(內閣潰裂)의 여향(餘響)

이 책은 1868년 왕정복고 이후 40여년에 걸쳐 전개된 정한론의 실상을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의 내용을 총 20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우선 제1장에서 메이지정부의 3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국계획정문제와 조약개정문제의 해결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문제의 40년을 설명하면서 정한론을 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정한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에도막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서민상류층에 국학이 보급되면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근거로 조선이 원래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기 이른다. 또한 도쿠가와에 대한 반발로 토요토미를 동경하게 됨으로써 조선정벌을 찬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히데요시에 대한 찬미는 아시아 멸시관과 대륙옹비론의 토양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바쿠후말기(幕末期)에 일본은 화이의식을 가지고, 구미를 오랑캐라 하여 천시하고 스스로를 중화국으로 군림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념적인 정한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2장부터 4장까지는 유신초기의 국내사정과 외교, 그리고 시폐(時弊)와 반정(反情)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제5장에서는 현상타파의 운동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당시 여론의 수렴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시의 국제정세가 개국주의(開國主義)로 흘러감에 따라 전개되는 반정부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개방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궁내(宮內)에 대한 개혁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반정부

소요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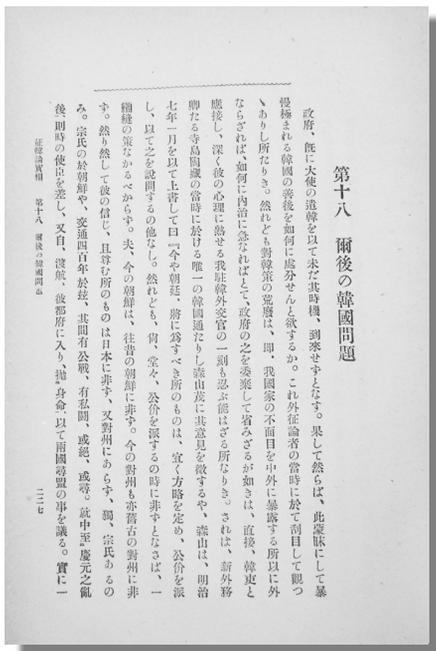
이 당시는 양이(攘夷)의 부정과 배외운동(排外運動)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외제 모집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정부 분위기 속에서 의원(議院)이 설립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 도덕성의 기준이 훼손되고 새로운 시대의 도덕성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교정책도 무방침에 무정략으로 일관되는 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무단통치의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폐10조가 건의되기에 이른다. 이어 제5장에서 현상 타파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6장부터 12장까지는 일본 내 식민지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설명해 놓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 내의 정세 속에서 국권확장론자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 당시 일본은 외교적으로 외국의 고문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즉 일본은 기존에 체결된 조약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때 일본은 미국과의 조약개정을 노력하였으나 실패로 돌아

가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북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 오사가와라제도(小笠原島), 류큐(琉球), 타이완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외교적인 지평을 늘려가고 있었다.

제13장부터 18장까지는 본격적인 정한론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8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일관계는 평화적·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의 집권은 한일관계에 변화를 야기하였다. 쇄국정책을 고집하던 대원군은 일본을 양이세력의 맥락으로 파악하면서 종래의 교린외교정책을 버리고 강력한 척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고종 5년(1868)



1월 15일에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3월 23일에 이를 조선에 통고하게 된다. 이 때 대마번 소씨(宗氏)에게 조선과의 외교사무를 관장할 것과 전통적 교린문서인 서계(書契 : 외교문서)를 조선에 전할 것을 하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원군 집정의 조선은 '아방황제(我邦皇帝)'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선국왕에 대한 일왕의 우위를 표시하는 등 서계(書契)의 격식이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계의 황(皇), 칙(勅) 등의 문자가 있는 것은 격식에 위반하고 도서(圖書 : 符印)도 조선정부가 인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다.

양국은 외교문서의 수리를 놓고 1년 동안 오갔는데, 이 때 일본은 대마번 소씨로부터 대조선 외교의 담당직임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1869년과 1870년에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측의 완강한 거부에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1870년 조선에 대한 외교의 실상을 조사한다면서 부산 왜관에 갔다가 조선사정을 내담하고 돌아온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는 귀국보고에서 정한론의 구체적인 건백서(建白書)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1872년에는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왔지만, 냉대하여 수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 정한론이 세차게 일고,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문제화하게 된다. 이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스스로 견한대사(遣韓大使)가 되어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쿠라 등 많은 각료들은 국력(國力)의 배양(培養), 내치(內治)의 선결을 들어 정한론에 반대하여 1개월여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태정대신(太政大臣 : 수상)의 대행이 된 이와쿠라는 그해 10월 24일 정한(征韓) 반대를 결정하고 이를 상주(上奏)해서 견한사절건(遣韓使節件)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로써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파의 다섯 참의는 각료직을 사퇴하여 일본정계는 둘로 갈라지고 정한론의 후유증은 끝이아 이른바 '서남(西南)의 역(役)'이라는 사족(士族)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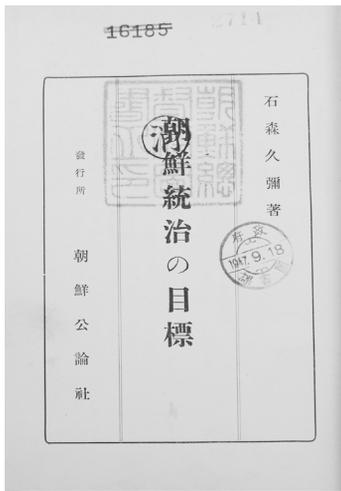
바쿠후 말기에 있었던 관념적인 정한론은 처음부터 현실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

러나 봉건적지배체제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정한론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즉 일본의 정한론은 국내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혼란과 서구의 침략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처한 국가문제를 밖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정한론은 일본 에도시대 바쿠후말기부터 메이지유신시대 초기에 대두한 것으로 무력을 통해 한국을 정벌하지는 침략적 이론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많은 진척이 이루어져 있다.

## 조선통치의 목표 (朝鮮統治の目標)

- 저 작 자 :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 발행사항 :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京城), 1932년
- 총 면 수 : 548쪽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1891~?)는 미야기현(宮城縣) 출신의 언론인으로서, 1913년 조선에 도항하여 조선공론사에 입사하였다. 경성일보 기자 출신의 마키야마 코조(牧山耕藏)가 창간한 월간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 및 경영권을 인수받아 경성에서 발행하던 일간신문 『조선신문(朝鮮新聞)』의 편집에 관여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부터는 『조선공론』의 편집장에 취임하고, 1925년 동사 사장 마키야마 코조(牧山耕藏)로부터 조선공론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시모리가 경영권을 양도받은 후로, 신문 잡지계 일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조선공론사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이시모리 스스로 '반도 잡지계의 패왕'을 자칭했다고 한다.

1933년 이후에는 조선공론사의 경영을 조선인 실업가 김사인(金思演)에게 양도하고 조선신문사의 부사장에 취임하였다. 동사 소유자인 마키야마가 신문·잡지사업 및 광산사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1917년 제13회 총선거에서 나가사키현(長崎縣)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중앙정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된 이후, 조선에서의 신문 및 잡지 사업은 이시모리가 실질적으로 총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신문』은 조선 내에서 발행되는 민간 일본어 신문으로서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면서, 총독부의 어용지 『경성일보(京城日報)』와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었다(1922년 현재 추정, 경성일보 27,000부, 조선신문 13,000부). 또한 『조선공론』은 1913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되었는데, 샤쿠오 조(釋尾春莚)가 주재한 『조선 및 만주(朝鮮及滿洲)』(발행기간: 1908년·1941년)와 더불어, 조선 내의 일본어 종합잡지로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본서의 저자인 이시모리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언론계의 유력자로서, 조선통치에 대한 민간의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한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자신이 관련한 『조선공론』 및 『조선신문』을 비롯하여, 『정계왕래(政界往來)』, 『외교시보(外交時報)』, 기타의 매체에 게재한 논설에 수정을 가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상의 제문제 및 그에 대한 저자 자신의 의견, 식민지통치의 수뇌부 및 민간의 유력자에 대한 인물평, 수필, 기행문 및 잡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스스로를 “조선 재주 20년간 망루에서 화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하면서, “보통의 화재 감시역은 연기가 보이고 불이 보인 다음에 경종(警鐘)을 울리지만, 저자는 불이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연기가 나지 않을 때부터 경종을 난타한다”면서 조선의 정치, 재정, 경제, 사회 및 사상문제 등에 대해 다루어 온 언론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피력했다.

한편, 이 책이 출간된 1932년 8월은 바로 전년 9월에 발발한 만주사변의 결과, 1932년 3월에 만주국이 건국되는 등 일본제국 전체가 만주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였다. 이시모리는 이 같은 경향에 대해, “근시(近時)에 내지(內地) 일반의 지향은 만주문제에 정신을 빼앗겨 ‘조선’을 망각(忘却)·한각(閑却)하고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주문제는 거국일치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안건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조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조선문제를 등한시하는 중앙정계의 풍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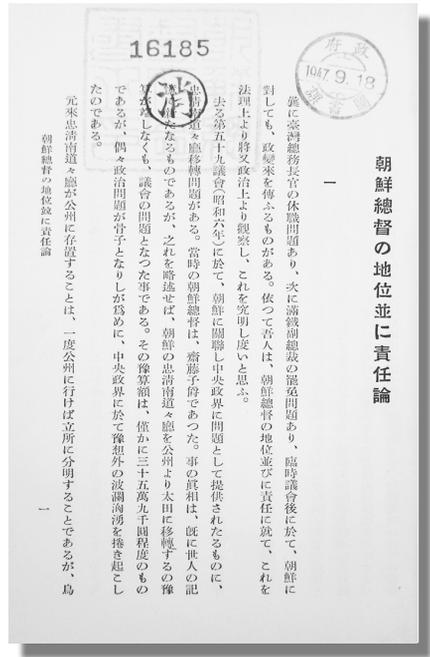
제1편 논책에서는 각종의 정치·시사문제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수록하고 있는

데, 저자가 다루고 있는 주요한 논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문제로서 ‘조선총독의 지위 및 책임문제’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조선총독에 대한 척무대신의 감독권 문제, 본국의 의회·정당에 의한 조선통치문제에의 간섭, 식민지 총독부 인사에 정당세력이 개입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일찍이 ‘척식성관계’ 추진 과정에서 척식대신의 식민지 장관에 대한 감독권의 문제가 조선총독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치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 하여, 조선측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등, 큰 정치문제로까지 비화한 바 있었다.

정당내각시기에 대만총독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식민지 통치정책에 관해서도 본국의 의회 및 정당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에 대해, 저자는 조선총독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 조선통치를 본국 정치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조선총독의 강력한 권한이 극도의 관치주의(官治主義)로 흘러 민중의 자치적 능력 배양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시기의 충청도청이전문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인사문제 등이 이와 관련된 사안들로서 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조선에의 참정권 부여(제국의회 중의원의원선거, 또는 자치의회 설치) 및 지방자치의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펼치고 있다. 신임 총독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의 착임에 즈음해서는, ‘형사보상법의 실시’, ‘소원령(訴願令) 실시’, ‘출판법 개정 요구’ 등, 조선인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혁의 요망 사항을 소개하면서, ‘입헌국민으로서의 자유권과 청구권’에 기반한 요구인 만큼 조속한 실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는 경제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조선경영의 합리화 대책으로서, 행정정리와 형식타과, 관계의 정실 타과 및 인재 등용의 합리화, 철도 체신 관계, 기타 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의 합리화, 철도 토목 항만, 토지 및 농사개량사업의 합리화, 교육행정의 근본적 개혁과 합리화, 조선인 생활향상의 합리화, 조선인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 세제의 합리화, 조선인 가정생활의 인습타과, 금융계통의 정리, 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른 생산장려 등을 주요한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지 자본의 조선투자 양태를 비판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일본의 만몽진출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 광주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학생의 '사상악화'의 현상과 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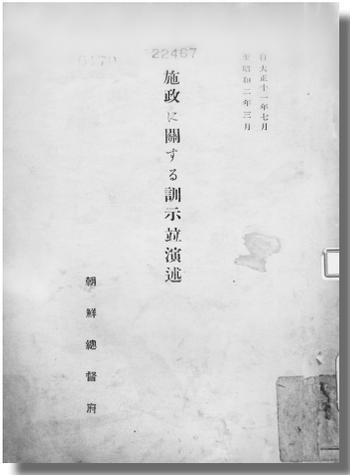
제2편 논설편(論屑片々)에서는 각종 시사문제에 대한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선통치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내부 및 본국 정계의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소문 등을 전달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의 인사문제를 놓고 척무대신과 조선총독이 갈등을 빚은 이야기, 사이토 총독이 재임하면서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송진우를 관저로 초청하여 주연(酒宴)을 가졌다는 이야기, 일본 중앙정계 및 의회에 대한 조선인 사회의 시각, 외지근무 관료에 대한 특별수당(加俸) 감액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선총독부의 현직관료들이 감봉반대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였다는 이야기, 전직 조선총독부 관료 등에 의해 조직된 중앙조선협회가 본국 정계에서 조선개발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벌이고 있는 지원활동 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편, 그에 관한 저자의 견해 및 감상을 피력하고 있다.

제3편 인물편(人物遍歷)에서는 조선통치의 수뇌부를 비롯하여 조선의 관계, 재계, 언론계 등의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인물평을 수록하고 있다. 제4편 수필, 제5편 기행 역시 『조선공론』 등에 연재한 문장을 수록하고 있는데, 정치·사회 이면의 가십성 정보,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저자의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선통치와 관련된 이시모리의 저작은 본서 이외에도, 『조선통치의 비판(朝鮮統治の批判)』(조선공론사, 1926년), 『조선통치근본대책(朝鮮統治根本對策)』(조선공론사, 1928년) 등이 있어, 이른바 ‘문화정치’시기의 정치·경제상의 제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전후의 회고로서,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에 「조선근대사의 이면(朝鮮近代史の裏面)」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육성녹음테이프가 보존되어 있는데, 수년전 음질 개선처리를 거쳐 CD로 제작, 방문자에게 청취를 허가하고 있다. (이승엽)

## 시정에 관한 훈시 및 연술 (施政に關する訓示並演述)

- 저 작 자 : 조선총독부
- 발행사항 : 미상
- 총 면 수 : 300쪽



1922년부터 1927년까지 6년 동안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등이 행한 각종 훈시와 연술(演述)을 모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책자이다. 책자의 발행연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책에는 훈시(訓示), 연설(演說), 고사(告辭), 담화(談話) 등 다양한 유형의 훈시(訓示)와 연술(演述)이 13개 분야로 나뉘어 담겨있다. 분야는 중추원(中樞院), 도지사(道知事), 도내 내무부장(內務部長), 도재무부장(道財務部長), 세관장(稅關長)의 회의와 전매(專賣), 교육(教育), 체신(遞信), 산업(産業), 위생(衛生), 사법(司法) 관계 회의, 강습회(講習會) 관계 훈시, 기

타로 식민지 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이 주요 회의에서 또는 사안 발생 시 행한 훈시와 연술을 통해 1920년대 및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추원(中樞院) 회의

1926년 1월 12일 개최된 제6회 중추원회의에서 행한 사이토 총독의 훈시이다.

민심의 안정, 농수산 수확의 증가, 경제 및 금융의 발전, 국세조사 실시, 국유철도의 직영, 국세조사의 실시 등의 성과로 언급하고, 1926년도 예산 긴축에 따른 당부와 산업 시설 개발, 토지개량 사업, 치수공사 시행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도지사(道知事) 회의

1923년부터 1926년까지 5차례 개최된 도지사회의에서 사이토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 요지이다. 1924년부터 1926년까지는 상반기(5월 또는 6월), 하반기(12월) 두 차례 회의의 훈시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1923년은 상반기 회의만 확인할 수 있다.

총독 훈시 내용은 조선통치 방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1923년에는 세계 각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민력(民力)의 휴양(休養)’과 ‘국부(國富)의 충실(充實)’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재정의 정리, 교육의 진흥과 산업발전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조선민에게는 소비의 절약과 생활의 안정, 사회의 건전한 발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1924년의 훈시는 조선의 교화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한 산업진흥 및 교통 개발과 교육사업을 강조하였다. 1925년 5월에도 전년과 비슷하나 제18회 제국회의의 해산에 따른 예산 지출 방침을 전달하고, 조선 경제의 충실과 제국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민중생활이 안정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시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1926년에도 전반적인 통치방침은 유지되었는데, 5월에는 교화사업, 산업, 교통, 위생사업의 수행에 대한 방침, 12월에는 순종(純宗)의 서거에 대한 유감과 민심수습, 치안유지 강화를 지시하였다.

도지사 회의에는 총독 훈시와 함께 조선총독부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총감의 훈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총독 훈시가 기본적인 방침의 지시라면, 정무총감의 훈시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재정의 긴축에 따른 예산 운

용 지침,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 지침, 산미개량증식계획(産米改良増殖計劃), 농회령(農會令), 산업조합령(産業組合令)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 내용 및 운용 방침 등 상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 (3) 도 내무부장(道內務部長) 회의

1923년부터 1926년까지 4차례 시행된 도 내무부장 회의 시에 진행된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이다. 내무부장 회의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관계관 회의이다. 따라서 훈시의 주요 내용은 정세 변화 및 대응방안, 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행정 방향 제시 등이다. 예를 들어 1923년 12월 5일 개최된 회의에서 총독은 산업 개발, 교육의 진흥, 지방 개발에 따라 민심을 얻고 있으나, 오래된 사회적 병폐가 교화되지 않고 불건전한 외래사상에 현혹되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정세를 분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개정해 민의를 수용하고, 지방 개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 평의회, 학교 평의회, 부면 협의회를 모두 개선해서 다시 임명한다고 밝히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 내무부장 회의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이 지방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이 매 회의 시 훈시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 (4) 도 재무부장(道財務部長) 회의

1923년부터 1926년까지 4차례에 걸쳐 도 재무부장 회동 시 시행된 총독의 훈시 내용이다. 1920년대 중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예산 긴축 운용이 전반적인 기조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도 재무부장 회의 시 조선총독 훈시의 핵심은 조선통치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었다. 예를 들면 1923년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조세제도의 정비, 재정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세, 시가세(市街稅), 주세 및 사탕 소비세 등의 징수를 통해 조선통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

록 지시하고 있다. 1924년 회의에서는 조선민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무기관을 만들고 재무행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5) 세관장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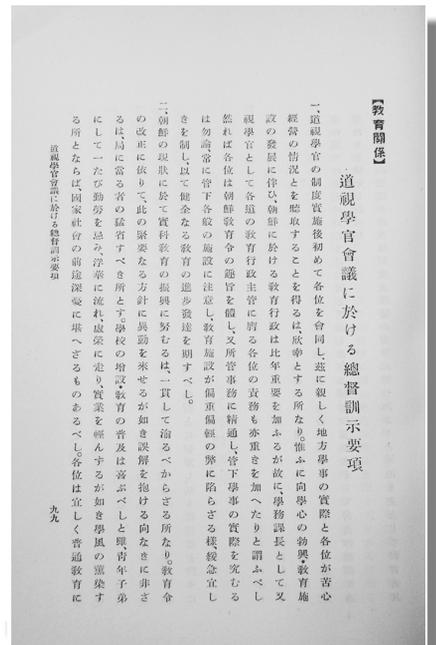
1923년부터 1926년까지 4차례 개최된 세관장 회의 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이다. 1923년 5월 28일 세관장 회의에서 조선총독은 조선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류와 직물을 제외한 이입세(移入稅)의 철폐에 따라 조선에서의 물가가 저렴해지고, 민중생활이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추후 세관의 증설과 철저한 관세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 (6) 전매(專賣) 관계

1923년부터 1926년까지 매년 개최된 세관장 회의에 대한 총독의 훈시이다.

### (7) 교육관계

1923년부터 1926년까지 도 시학관(道視學官), 관립중학교장회, 공립사범학교장 회동시에 행한 총독의 훈시이다. 교육관계 훈시는 일제 식민지 교육의 본질과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총독은 도 시학관(道視學官) 회의에서 조선 실과교육의 진흥, 산업의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한 학교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23년



전후한 동맹휴교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동맹 휴교는 평소 훈육의 결함이라고 진단하고, 평소 철저한 훈육과 사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을 조사하여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8) 체신관계

1925년 3월 7일과 1926년 5월 24일 개최된 관리사무분장(管理事務分掌) 우체국장(郵遞局長) 회동에 대한 총독훈시이다.

#### (9) 산업관계

1922년부터 1927년까지 각종 사안 발생 시 또는 회의 개최 시 행한 조선총독과 정부총감의 훈시이다. 「산업개발은 조선각하(朝鮮刻下)의 급무(急務)에 속한다」, 「조선산업의 개발에 대하여」 등의 총독과 정부총감의 담화, 도 축산기술관회동, 도 임업기술관회동, 도 농무과장 회동, 도 임무주임(林務主任)협의회, 도 수산주임관회의, 금융조합연합회이사장협의회동, 영림서장회의, 수산제품검사원 회동 등에 대한 훈시이다.

#### (10) 위생관계

위생관계는 1922년 11월 4일 개최된 관립의원장회의, 1926년 2월 16일 개최된 도립의원장 및 자혜의원장 사무협의회(事務打合會) 시 행한 총독훈시이다.

#### (11) 사법관계

1923년부터 1926년까지 개최된 사법관회의, 형무소장회의, 재판소 및 검사국감독관 회동 시 행한 총독의 훈시이다. 사법관 회의에서는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등의 철저한 시행,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 유입의 차단을 통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 (12) 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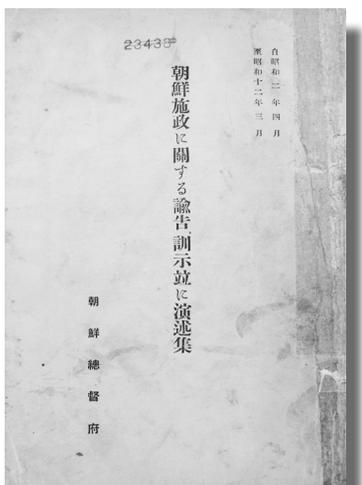
강습회와 관련해서는 1923년 8월 2일 개최된 제3회 지방개량강습회에 대한 총독훈시가 포함되어 있다.

### (13) 잡(雜)

기타는 연초 또는 연말을 맞아 발표하는 총독의 담화, 주요 사안 발생 시 행한 훈시, 행사와 관련된 고사(告辭), 축사(祝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연두(年頭)의 소감」, 「국민의 일대사명(一大使命)」, 「조선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담화」, 「삼십본산주지회동(三十本山住持會同)에 대한 훈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및 지방법원(地方法院) 신축낙성식(新築落成式)에 대한 고사(告辭)」, 「교통개발의 정비에 대한 담화」, 「조선부업품(朝鮮副業品) 공진회(共進會)에 대한 축사」, 「통계 전람회에 대한 고사(告辭)」, 「경상남도 도청 이전식(移轉式)에 대한 고사」 등 매우 다양하다.

## 조선시정에 관한 유고훈시 및 연술집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 저 작 자 : 조선총독부
- 발행사항 : 미상
- 총 면 수 : 931쪽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역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각종 유고(諭告), 훈시(訓示) 및 연술(演述)을 모은 책자로 조선총독부가 편찬하고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추원(中樞院)·도지사·내무·재무·식산·농림·법무·학무·경무·통신철도 등 각 부문에 걸친 관계회의와 관방관계, 내무·재무·식산·농림·법무·학무·외사·체신·전매·철도 등 각 분야에 관한 시정방침과 연설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역대 조선총독의 언행을 통해 조선통치에 대한 일제의 기본방침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1) 유고(諭告)

총 8편의 담화가 실려 있다. 그 중 4편은 야마니시 한조(山梨半造)(1927년 12월), 사이토 마코토(齊等實)(1929년 9월 26일), 우가키 카즈시게(宇垣日成)(1931년 7월 14일), 미나미 지로(南次郎)(1936년 8월 27일) 등이 조선총독에 취임하면서 소감과 시정방침을 밝히는 내용이다.

나머지 4편은 「문묘종향자(文廟從享者)에 대한 제사료(祭祀料) 하사(下賜)에 관한 유고(1928년 11월 10일)」, 「의례준칙에 관한 총독 유고(諭告)(1934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일에 대한 총독 유고(諭告)(1935년 10월 1일)」, 「교육칙어(教育勅語) 25주년 기념일에 대한 총독 유고(1936년 10월 24일)」 등이다.

## (2) 중추원회의

1927년 8월 25일 개최된 제7회 중추원 회의부터 1936년 10월 9일의 제17회 회의까지 총 10회의 회의에서 행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가 실려 있다.

중추원은 명목상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훈시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을 요청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방침을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중추원 의원들에게 선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개략적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7년 제7회 회의에서는 산미증식 및 철도망 완성계획, 세제 개정 등이 통치 편의상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1928년 제8회 회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이 조선민중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민협력(官民協力)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29년 제9회 회의에서는 농자금 대부, 직업소개소 제도, 보통학교 1면1교(一面一校)설치, 조선박람회 개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협조, 1930년 제10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립, 산업개발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제도 개정에 대한 설명, 농촌진흥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고 있다.

## (3) 도지사 회의

도지사회의는 1927년부터 1936년까지 개최되었다. 도지사 회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이 지방행정에 과급되도록 하기 위해 당해 연도 주요 정책 설명, 협조 사항 등을 조금 더 구체적인 훈시 내용에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928년 5월 22일 개최된 도지사회의에서 조선총독은 국경의 비적(匪賊) 출현, 불온사상(不穩思想)의 유포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조선의 안녕과 민중의 강복(康福)을 위한 치안 유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진흥 및 경제발전을 시정의

2대 목표로 정하고 산업개발과 민중생활의 안정을 긴급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미증식계획, 산군백만석계획(山藪百萬石計劃), 면작 제2기(棉作第二期) 계획 등의 차질 없는 완수를 지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실업교육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취학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4) 도 내무부장 회의, 참여관 회의

1933년 11월 15일의 도 참여관 회동, 1935년 1월의 도 참여관 협의회 시 총독의 훈시, 1928년, 1930년, 1932년에 개최된 도 내무부장 회의시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가 포함되어 있다. 1937년 1월 11일 개최된 회의는 도 내무부장과 산업부장 협의회로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가 나란히 실려 있다.

#### (5) 도 재무부장 회의

1927년부터 19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지방 내무부장 회의 시 행한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이다.

#### (6) 세무관계

1924년부터 1936년까지 매년 6월을 전후해서 13회 개최된 세무감독국장 회의 시 행한 총독 또는 정무총감의 훈시이다.

#### (7) 전매관계

1929년, 1931년, 1932년, 1935년 4차례 개최된 전매 지국장 회의 시 행한 훈시로서 1931년 회의는 정무총감, 나머지는 총독이 행하였다. 1935년 회의는 출장소장도 함께 포함한 회의였다.

### (8) 학무관계

1927년부터 1930년, 1932년부터 1936년까지 9차례 개최된 학무 관계자 회의에서 행한 총독 또는 정무총감의 훈시이다. 회의는 도 학무과장 회의, 시학관(視學官)회의, 또는 도 학무과장 및 시학관(視學官) 합동회의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외에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임시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 개최 시 총독이 행한 당부사항 요지, 공립농업학교장 회의, 도부(道府) 사회사업 담당자 협의회와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보급 확충계획 수립에 대한 정무총감 훈시, 도 사회사업 담임자 협의회에서 행한 총독의 훈시도 포함되어 있다.

학무관계 훈시도 조선총독부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1927년 도 학무과장 회의에서 정무총감은 당시의 세태가 복잡한 사조(思潮)로 인하여 일반 생활 문제, 경제문제 등에 있어서의 공존공영의 본의(本義)를 잘못되게 하고, 국민의 단결을 위태롭게 하는 등 국가 장래를 우려할 수 있는 불온한 사상의 확산을 교육계에서 앞장서서 방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1927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에 대한 대응책이다.

1928년 도 시학관회의에서는 의무교육의 철저한 시행, 청소년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황국신민화와 식민지 경제 경영을 위한 노동자 양성이 목적이었다.

### (9) 내무관계

1935년 개최된 토목과장 회의 시 정무총감 훈시, 1934년 임시치수조사위원회의 총독훈시와 정무총감 당부사항, 1936년 치수조사위원회에 대한 총독 연시(演示)와 정무총감의 당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0) 철도·체신관계

1929년부터 1936년까지 개최된 철도 체신관계 회의 및 사안에 대한 총독과 정

무총감의 훈시이다. 회의는 조선국유철도 직영 10주년 기념식, 조선간이생명보험 실시,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 자문위원회 회의, 관리사무분장 우편국장 및 해사(海事)출장소장 회의, 체신분장우편국장 회의, 조선전기사업조사회 회의 등 다양하다.

### (11) 사법관계

사법관계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 개최된 사법관계 회의에서 행해진 총독훈시이다. 회의는 1927년부터 1933년까지 개최된 사법관 회의, 1935년과 1936년 개최된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 회의, 1927년부터 1936년까지 개최된 형무소장 회의, 1937년 사상범 보호관찰소장 회의 등이다.

### (12) 산업관계

1927년부터 1936년까지 개최된 각종 산업관계자 회의에서 행해진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 또는 당부사항이다. 회의는 각도 수산업주임관 사무협의회, 각도 수산업주임과 본부 및 각도 수산업시험장 회의, 산업간담회, 각도 상품진열소장, 산업과장 사무 협의회, 조선산업경제 조사회, 영림서장 회의, 도 임무주임관 회동, 북선개척사업 실행 사무협의회동, 토지개양기술관 회동, 각도 맥작 주임과 협의회, 도 농업기술관 회동, 고지대 대책 협의회, 도 농사시험장 사업설계 협의회, 화전조사위원회, 미곡자치관리 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3) 농산어촌진흥운동(農山漁村振興運動)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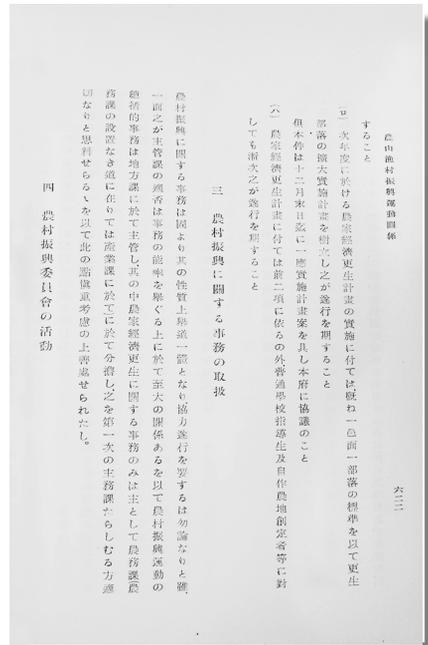
1932년부터 1937년까지 각종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회의 시 행한 조선총독의 연설, 지시, 훈시와 정무총감 연설 요지, 정무총감 통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에 관한 총독의 연설, 인생생활의 이상과 농산어촌이라는 주제로 행한 정무총감의 강연 요지, 각도 참여관 회동, 내무부장, 산업부장 협의회, 각도 농촌진흥지도주임자 협의회에서 행한 총독의 지시와 연설, ‘농산어촌진흥상 주의를

요한다’는 정무총감의 통첩, 농산어촌진흥 관계관 회의에서 행한 총독과 정무총감의 연설 요지, 농업보습학교 및 농민훈련소 교육 강습회에서 행한 총독 훈시가 실려 있다.

「농산어촌진흥계획(農山漁村振興計劃) 실시에 대한 정무총감의 통첩」은 1930년대 조선총독의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갱생방침으로 첫째 계획은 농가 각각의 경제갱생의 구체적 방침을 바탕으로 정신생활적 의의를 간명하게 밝힐 것, 둘째로 각 농가별로 노력하여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작업능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1사1업(一事一業)을 정할 것, 셋째 계획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적 영리 목적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갱생계획실시요강(農家更生計劃實施要綱)」에서는 도별로 빠른 시일내에 지도부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여 군도(郡島)에 지시할 것, 지도부락은 읍면 단위로 한 곳을 정하되 농가갱생계획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30~40호 내외의 집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방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황 조사사업과 농가갱생계획의 수립 원칙과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장과 산업부장 협의회에서도 조선총독은 농촌진흥을 위한 취지를 주지할 것, 농가경제갱생부락을 확충할 것,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 농촌진흥위원회 활동, 자력갱생회보(自力更生彙報)의 이용 등에 대해 훈시하고 있다.



## (14) 잡(雜)

연초·연말에 행한 조선총독의 담화, 총독 및 정부총감이 취임 시 조선총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시, 1931년 7월 10일자 우가키(宇垣) 총독의 도쿄에 대한 성명서, 1936년 8월 22일자 미나미(南) 총독의 도쿄에 대한 성명서, 국세조사준비 협의회에서 행한 정부총감 또는 총독의 훈시, 체신국 분관 간이보험청사 낙성식에 대한 총독의 고사, 내선연락전화 경성(京城)-오사카(大阪)간 개통식에서의 총독 축사, 경성 동경간 연락 전화 기념 통화식 오찬회에서의 정부총감 당부사향, 10키로 이중방송(二重放送) 개시식(開始式)에서의 총독 축사, 평양방송국 개국 축하 방송 총독 축사, 체신리원(遞信吏員) 양성소 교사 신축 낙성식에서의 총독 고사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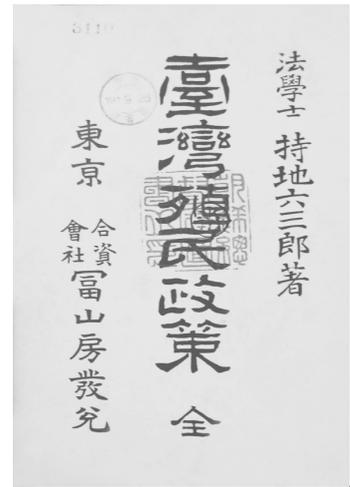
## 타이완식민정책 전 (臺灣殖民政策 全)

- 저 작 자 : 모찌지 로쿠사부로오(持地六三郎)
- 발행사항 : 부산방(富山房)(東京), 1912년
- 총 면 수 : 594쪽

이 책은 저자인 모찌지 로쿠사부로오(持地六三郎)가 대만총독부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략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설
- 제2장 대만의 지리
- 제3장 일본의 대만통치
- 제4장 대만의 국법상의 지위 및 그 통치조직
- 제5장 토비(土匪)의 진정(鎮靜)과 경찰제도의 발달
- 제6장 법정 및 구관조사와 사법제도
- 제7장 재정정책, 화폐 및 은행
- 제8장 경제정책, 관개사업
- 제9장 내외무역, 축항사업(築港事業)
- 제10장 교통
- 제11장 교육문제
- 제12장 위생
- 제13장 이번정책(理蕃政策)
- 제14장 사회상 경제상 제문제 일본농민 이식정책
- 제15장 결론



저자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10여 년간의 경험을 ‘식민지 복무’에 뜻을 둔 청년학생들에게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고, 식민행정의 실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기술은 타이완 총독이었던 코다마 겐타로오(兒玉源太郎)와 민정장관이었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창시건설한 시정의 정신 및 그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술 당시 타이완은 일본이 추진한 식민정책 중 유일하게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청국 통치하에서의 부패·문란하고 황폐한 상태를 변혁하여 평화와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를 가해 그 부원을 개발하고 산업을 크게 진작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이 책 앞부분에 “고(故) 코다마(兒玉) 대장에게 삼가 이 책을 바친다”는 문구를 썼던 것이다.

제2장은 타이완의 지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타이완의 명칭이 유래한 배경, 위치와 면적, 그리고 인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타이완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식민통치의 당위성도 함께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일본인과 중국인의 수, 가축의 수, 토착민의 수, 외국인의 수 등 인구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산악과 하천, 평야와 항만 등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연 및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망라하고 있다.

제3장은 일제의 타이완통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과거의 타이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선 정리하고 있다. 과거의 타이완은 중국의 폭도가 유민으로 흘러간 곳으로 설명하고, 일본의 모험가들도 이곳을 중계지로 하여 해외무역을 전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타이완영유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무관총독시대’라 불리는 시기의 제4대 타이완 총독이었던 코다마 총독(재임기간 : 1898.2.26 ~ 1906.4.10)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코다마 총독은 중앙의 통치조직을 개혁하여 문치행정을 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무의 간명화를 기하였으며, 지방제도 또한 간명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삼급제를 이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정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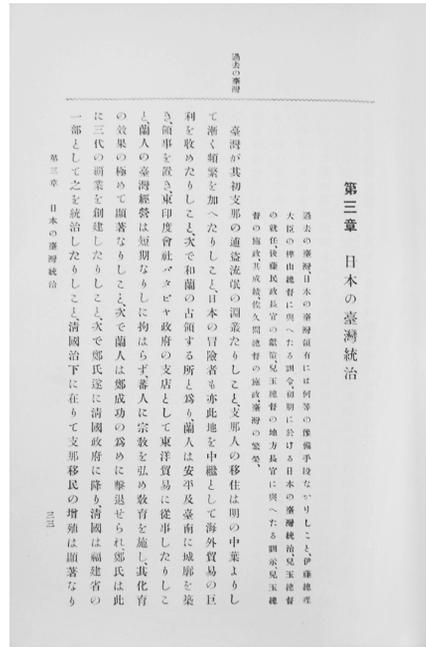
통일하고 집무를 민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사법분야는 법원조례를 개정하여 고등법원을 폐하고, 삼급심을 개정하여 이급심으로 하였으며, 판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구관조사사업을 통해 구관고속(舊慣故俗)에 기초한 법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재정분야에서는 지방세규칙을 세우고, 식염 및 장뇌전매(樟腦專賣)를 시작함으로써 자급자영의 재정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반의 산업을 장려보장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화폐 및 금융에 관해서는 타이완은행을 창립하여 중앙은행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혼란하고 복잡한 사정이 극에 달했던 타이완의 화폐를 개혁하여 처음에는 은본위제도를 채택하다가, 이후 금본위제도로 전환하게 된 내용이 담겨 있다.

제4장은 타이완의 국법상의 지위 및 그 통치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여기에서 제국헌법이 타이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국헌법의 대만 적용과 관련한 학자들의 논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타이완의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법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 실시된 법률의 종류 등도 살펴보고 있다.

보갑제도의 조직 및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보갑제의 목적은 지방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어 타이완총독의 직권, 총독부 관제의 연혁 및 조직, 지방관제의 연혁 및 조직 등 타이완통치조직의 특징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제5장은 토비의 진정(鎮靜)과 경찰제도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타이완의 경찰제도는 토비에 대한 진정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한다. 토비는 격렬한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주요 도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일제의 소탕작전은 수천 여명의 희생을 치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타이완총독부는 토비들을 토벌하고 투항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불리한 상황은 코다마총독이 부임하면서 변화를 보게 된다. ‘처벌과 귀순의 원칙’을 확실히 정해놓고 철저한 진압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1906년에 드디어 토비들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제도와 경찰제도의 개혁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특히 평지경찰과 번지경찰(蕃地警察)을 분리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타이완에서의 식민정책 성공의 이유가 상당부분 경찰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제6장은 법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별법 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주의의 확립, 타이완에 적용되어질 법률, 민사에 관한 특별법률, 이식(利殖) 제한의 규칙, 민사소송특별수속, 구관조사와 법전편찬, 토지등기규칙, 민사쟁송조정, 형사-비도(匪徒)형벌령, 아편령, 벌금 및 태형처분례, 범죄즉결령, 형사소송특별수속, 구관조사의 이유, 사인법(士人法)의 제정 등 사법과 관련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제7장은 재정정책으로 화폐와 은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코다마총독의 재정정책이다. 토지조사를 통한 지조의 개정으로부터 장뇌 및 아편 등에 대한 전매제도, 사탕소비세 등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타이완의 화폐제도와 그 연혁, 금화본위제의 채용, 대만은행, 일본권업은행의 자금방출과 기타의 은행 등 재정과 관련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제8장은 타이완의 경제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요산물로 차와 사탕, 장뇌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축산과 광물, 수산, 염업, 입업 등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어 타이완 경제정책의 기초 및 목적을 밝히고 타이완산업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 제9장은 타이완의 무역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타이완무역의 대

내외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축항사업의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항만사업의 장래까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식민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우선 통치 이전의 교통상황과 이 후의 교통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로와 철도의 건설, 운수영업의 상황, 철도여관, 장래의 철도시설문제 등 교통과 관련한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제11장은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특히 엘리트계층에 대한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타이완은 물론 일제의 엘리트 교육을 소개하면서 일본어의 보급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국어학교, 공학교, 의학교 등에 대해서도 개괄하고 있는 것이다.

제12장은 위생과 관련하여 타이완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타이완의 자연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열대지역에서의 위생시설의 필요성을 우선 감안하여 위생시설의 현황과 그 효과, 방역수단과 의사, 의원, 의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어 제13장의 이번정책(理蕃政策)에서 저자는 번족의 현황, 즉 각 종족의 풍습과 사회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일제의 이번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제14장은 일본농민의 이식정책을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엘리트 계층의 사회적 생활, 구관고습을 존경하는 정책의 추진과 풍속의 동화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농민이 대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다마총독의 대 엘리트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일본농민의 이민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술목적은 제15장 결론에서 도출되고 있다. 저자는 타이완의 주민들이 일제의 통치하에서 이전 시대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단언한다. 특히 구시대와 비교하여 '격세의 감'을 느낄 정도라고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

한 논리의 정당성을 타이완에 거주하였던 영국인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제의 타이완 지배통치의 정당성을 교통 및 위생 문제 등과 결부하여 주장하고 있다. 즉 불편했던 교통이 발전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교통의 불편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의 부재는 해로의 이용을 부추겼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은 각 지방의 산업을 고립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을 통해 각종 산업을 진작시키고 남북경제가 공통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무역이 증진되는 등 이전에 대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생시설의 개혁은 전염병 등을 구축하고 위생불량의 상태를 개선하였으며, 항구를 신축하여 시장을 만들고 시가지를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제의 치적을 소개함으로써 식민지 타이완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타이완에서의 위대한 치적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역사상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던 타이완에서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일제의 최대 해군기지였다. 그리고 쌀과 사탕수수 등 자원도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일제에 의한 ‘타이완의 근대화’는 군사기지화를 위한 명목에 불과했던 것이다.

일제가 타이완을 식민통치하게 된 것은 1895년의 시모노세끼조약(馬關條約 또는 下關條約)을 체결한 이후부터이다. 일제는 ‘최초의 식민지’인 타이완을 통치하는데 있어서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식민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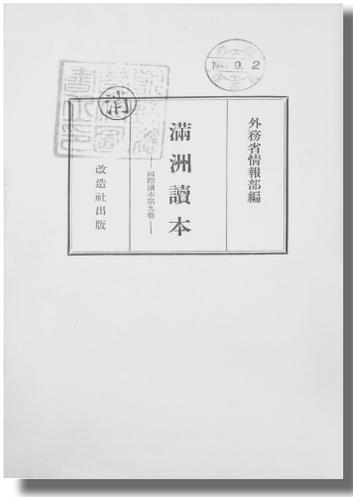
또한 일제에 있어 타이완은 남진정책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따라서 일제는 타이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치하느냐에 따라 향후 새로운 영토에 대한 경영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타이완이 본래 중국대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리정책을 통해 이들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타이완식민정책은 4대총독인 코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와 민정장관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부임하면서 본격화된다. 고토 신페이는 ‘생물학적 식민지 경영론’을 펴면서 이를 타이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타이완통치에 일본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타이완사람들의 풍습과 제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조사사업과 구관조사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와 더불어 타이완에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작업도 꾸준히 병행해 나갔던 것이다.

저자는 이 시기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가 타이완에 있어 근대화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타이완지역에 대한 식민통치는 자선사업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자본주의의 이식은 일제의 자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타이완식민통치의 현장에 있었던 저자가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 책은 식민통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만주독본 (滿洲讀本)

- 저 작 자 : 일본 외무성 정보부(外務省情報部)
- 발행사항 : 개조사(改造社)(東京), 1938년
- 형태사항 : 106쪽



『만주독본(滿洲讀本)』은 1938년 3월 일본 외무성 정보부(外務省情報部)에 의해 도쿄 개조사(改造社)에서 출판되었다. 총 106쪽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 정보부에서는 만주문제와 관련해 예전부터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1926년에 나온 『만주에서의 중국측의 조약유린(滿洲=於ケル支那側ノ條約蹂躪)』, 1930년 여각민(予覺民)이 쓴 『만주우환사(滿洲憂患史)』, 1931년에 발간된 『만주사변관계발표집(滿洲事變關係發表集)』,

1932년에 간행된 『만주건국 제법령(滿洲建國諸法令)』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주독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총설, 국제적 지위, 정치와 경제, 일본과의 관계, 국방, 풍속으로 꾸며져 있다. 다분히 문학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일본 외무성 정보부에서 만주를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만주에 대한 기초지식을 대상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만주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일제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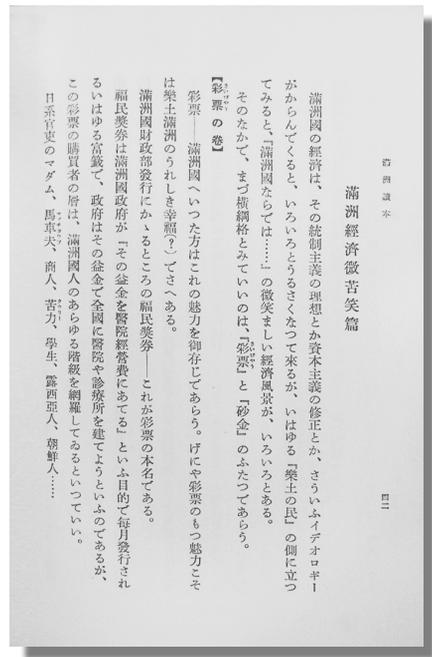
먼저 총설에서는 만주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자국영토적 개념을 부여하면서 만주국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만주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만주국은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촉발된 일련의 대중국 침략과정에서 파생된 괴뢰국가이다. 만주국은 1932년 정식으로 국가를 선포하고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의(溥儀)가 집정(執政)에 취임하고, 수도는 신경(新京), 연호를 대동(大同)이라 하면서 국제무대에 데뷔하였다.

일본은 같은 해 9월 「일만의정서(日滿議政書)」에 조인하고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어 독일·이탈리아·교황청·에스파냐·헝가리·폴란드 등의 일부 국가가 승인하였다. 만주국은 열하작전(熱河作戰)으로 승덕(承德)이 점령됨으로써 국토는 요녕성(遼寧)·길림성(吉林)·흑룡강성(黑龍江)·열하성의 4성(省), 인구는 3천만 명에 이르렀고, 1934년 3월 제정(帝政)이 수립되면서 연호를 강덕(康德)으로 고쳤다. 만주국은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를 표방하였으나, 실권은 관동군 사령관이 전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중국인의 국무총리 및 각부대신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또 경제면에서도 일본인의 만철(滿鐵)이 전 철도를 경영하고, 닛산(日産) 콘체른이 진출하여 개발사업을 독점하였다.

만주국은 소련의 동방진출을 견제하고 방어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만주국과 조선, 일본으로 이어지는 ‘방공국가군’의 설정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당시 일본이 독일과 「상호통상협정」을 맺어 우호를 다지고 소련을 견제하였던 사실에서도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장 정치·경제편에서는 ‘왕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하던 일제에게 만주국의 설립과 운영이 왕도를 실현하는 길임을 피력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일제는 이 과정에서 민족협화를 구현하려고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건실한 운영을 획책하였다. 만주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일종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채표권과 사금권을 통용하였는데, 이는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민족협화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선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의 전설을 차용하여 만주에 유포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나온다. 일제는 만주에서 이러한 문화적 수단을 통해 만주에서의 오족협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 우라시마 타로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해안마을에 우라시마 타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라시마는 매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도 세 마리 밖에 잡을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던 우라시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 아이들이 거북이를 붙잡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라시마는 잡은 고기를 애들에게 주는 대신에 거북이를 풀어주게 했습니다. 구조된 거북이는 바다를 헤엄쳐가면서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우라시마 타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커다란 거북이가 다가오더니 놀란 우라시마 타로를 향해 “요전에 우리 거북이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선물로 용궁으로 모시고 가려니 제 등에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라시마 타로를 등에 태운 거북이가 바다 밑바닥을 헤엄쳐 용궁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용궁공주가 나타나 자신이 애들에게 잡혔던 거북이라며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라시마 타로는 용궁에서 고향도 어머니도 잊은 채,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꿈같은 삼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용궁공주는 지금까지 간 적이 없는 방으로 우라시마 타로를 데리고 가서 육지세계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라시마 타로는 그 방의 창에 나타난 고향의 경치를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용궁공주는 슬펐지만, 돌아가려는 우라시마 타로에게 구슬상자를 주며 곤란할 때에 열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우라시마 타로가 그리운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달려갔지만 자신이 찾던 집은 흔적도 없었고 마을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원로의 ‘삼백년

전 바다에 간 채 돌아오지 않은 젊은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우라시마 타로는 용궁에서의 3년이 인간세상에서 3백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발견하고 돌아갈 곳을 몰라 곤란해진 우라시마 타로는 용궁공주에게 받은 구슬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슬상자에서 나온 연기에 휩싸인 우라시마는 일순간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어서 학으로 변해 하늘도 날아올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우라시마가 변한 학이 용궁의 거북이를 만나는 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학은 천년, 거북이는 만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만주-조선-일본 등에 퍼져 있는 '용궁설화' 등을 통해 일제는 문화적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일만(日滿)이 영원히 결합할 것을 축원하였던 것이다. 치외법권 철폐를 통해 내지와 동일한 법체계 안으로 유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서로 엄연한 외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민족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대륙침략의 첩병이 된 것은 대규모 만주이민의 획책이다. 먼저 1914년 만철(滿鐵) 철도 수비대의 퇴역 장병들로 구성된 철도자경촌(鐵道自警村), 1915년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가 관동주인 요녕성 금현(金縣)에 조성한 애천촌(愛川村)을 비롯해서, 1928년 만철이 이민의 골간을 훈련시키기 위해 공주령(公主嶺)과 웅악성(熊岳城)에 조직한 농사시험소(農事試驗所)와 이민 계획 및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 처리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같은 해 대련(大連)에 설립한 대련농사주식회사(大連農事株式會社) 등이 있다.

다음으로 만주국 수립 이후 일본은 관·공유지 및 국유황지·국유림뿐만 아니라 지적정리사업(地籍整理事業)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땅을 약탈해서 이민의 기반을 서서히 확보했는데, 이민 방식에는 무장이민(武裝移民)·집단이민(集團移民)·집합이민(集合移民), 그리고 분산이민(分散移民)·철도자경촌 이민·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滿蒙開拓靑少年義勇軍) 이민 등이 있다.

무장 이민과 관련하여 일본은 재향군인 위주로 이민을 모집해서 10개의 둔간대(屯墾隊)를 조직하기로 결정, 1932년 10월 제1회 시험이민(試驗移民) 4백여 명을

가목사(佳木斯)에 보냈다가 1933년 영풍진(永豐鎭)에서 군대식으로 편제된 미영촌(彌榮村)이라는 이민촌을 조직했다. 이들은 소총·기관총·박격포 등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장이민으로 불렸다.

무장이민은 1932~1936년 사이에 모두 5차(제2차 : 1933.7, 화천현(樺川縣)의 천진촌(千振村), 제3차 : 1934.10, 수릉현(綏稜縣)의 서수촌(瑞穗村), 제4차 : 1935.9, 밀산현(密山縣)의 성자하(城子河)·합달하(哈達河), 제5차 : 1936.7, 영안둔(永安屯)·조양둔(朝陽屯)·흑태(黑台) 등)에 걸쳐 2,900호, 7,260명의 이민이 이루어졌으며, 무장이민은 경비 업무, 관동군과의 토벌 작전 및 물자 약탈에도 참여했다.

시험적 성격을 띤 무장 이민 시기(1932~36)의 이민은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 이전의 민간 기구에 의한 이민 조직과 달리 일본 정부가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직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전의 자유 분산적인 이민 방식과 달리 집단적이고 군사화된 무장 이민이었다. 셋째는 이전의 이민이 만철 세력 범위 내의 남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만주 북부 지역에 치중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937년부터 시작된 집단 이민(일본 정부가 직접 2~3백 호로 1개의 개척단 혹은 개척촌을 조직한 것)은 대규모 이민의 주요 형식으로서 '분촌분향(分村分鄉)'(일본의 1개 촌 혹은 1개 향을 '모촌'으로 삼고 그 중에서 농민들을 선발해서 1개의 개척단을 조성한 뒤 만주로 이주하여 하나의 '분촌' 혹은 '자촌'을 결성하는 것)의 이민 방식을 취했다. 1937년의 6차 집단 이민 18개 개척단 가운데 11개 개척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집단 이민은 1937~1941년까지 2만 3천여 호, 7만 4,507명이었으며, 집합 이민(민간에서 조직한 것)은 1941년 말까지 5,043호, 1만 5,107명이었다고 한다. 청소년 의용대 이민의 사례로서는 1937년 흑룡강성嫩江縣(嫩江縣)에 조직된 청소년 농민 훈련소, 만주 각지에 개설된 청소년 의용대훈련소 등을 들고 있는데, 1945년까지 훈련생은 8만 6,530명에 달했다.

제5장 국방에서는 소련에 대한 경계심이 노골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국경을

넘보는 자', '만주국을 노리는 자'로 표현하면서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세 개의 축수'로 표현된 소련의 침입과 미국·영국의 관심으로부터 만주를 지켜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만주와 일본의 풍광·풍속을 대별하면서 만주의 풍속을 소개하고, 대중에게 인식시킴으로서 동질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낭낭제에 대한 내용은 이색적이다. 낭낭제에서 낭낭묘는 중국 도교에서 벽하원군(碧霞元君) 등의 여신을 모시는 묘인데, 벽하원군은 동악대제(東岳大帝 ; 泰山府君)의 딸로 알려졌고 여신들 가운데 첫손 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벽하원군묘(碧霞元君廟)'라는 이름도 있다. 여신들은 양연(良緣)이나 자식을 점지하고, 출산과 육아(育兒)를 도와 자손의 번영을 꾀한다고 한다. 또한 포창(痲瘡)이나 안질 등의 질병을 고치고 장수(長壽)·초재(招財) 등의 임무를 분장(分掌)한다고 하며, 수아(授兒)·자손(子孫)·두신(痘神)·안광(眼光) 등의 많은 낭낭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신앙되었으므로, 낭낭제(娘娘祭)가 있을 때에는 도시 전체가 떠들썩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만주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로테스크한 나팔과 몽고민족의 사교풍경, 만주 온천마을의 풍물과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 있다.(유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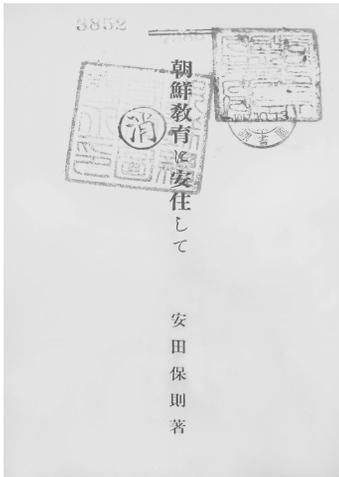
## 2. 교육 행정

- 조선교육에 안주해서(朝鮮教育に安住して)
- 조선학교관리법(朝鮮學校管理法)
-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하여(國語及朝鮮語のため)
- 국민학교규정의 연구(國民學校規程の研究)
- 소학 일년의 교육실천(小學一年の教育實踐)
- 국민학교 각과 지도정설(초등과6년중)(國民學校各科指導精說  
初等科六年中)
- 국민과 읽기 수업안(國民科讀方授業案)
- 학급경영(學級經營)
-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朝鮮 公文起案の實際) /  
공문기안의 기초지식(公文起案の基礎知識)



## 조선교육에 안주해서 (朝鮮教育に安住して)

- 저 작 자 :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
- 발행사항 : 오사카옥호서점(大阪屋號書店)(京城), 1927년
- 총 면 수 : 423쪽



이 책은 조선교육의 전반 상황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조선교육의 유래와 한일합방 이후 교육의 현황 등 전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는 12년 동안 조선 교육에 관여했던 인물로, 훈도, 교장, 교유, 시학 등의 직임을 맡았었다. 서문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이진호(李軫鎬)와 조선총독부 편수관겸 시학관이었던 기토 시게노리(木藤重德)가 썼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이진호는 관서지방에 사립 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문화(文化)와 교육(教育)과의 관계(關係)
- 제2장 인생관(人生觀)과 교육(教育)
- 제3장 일한병합(日韓併合)과 교육(教育)
- 제4장 조선교육(朝鮮教育)의 회고(回顧)와 그 목표(目標)
- 제5장 환경(環境)과 교육(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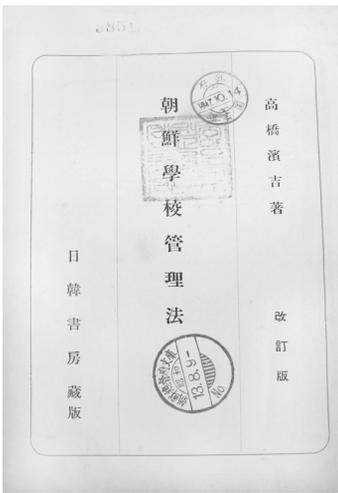
- 제6장 교육환경(教育環境)으로의 사회상(社會相)
- 제7장 조선숭배(祖先崇拜)와 교육(教育)
- 제8장 혼인(婚姻)의 교육적(教育的) 고찰(考察)
- 제9장 여자교육관(女子教育觀)
- 제10장 동맹휴교관(同盟休校觀)
- 제11장 사도관(師道觀)
- 제12장 훈련(訓練)에 관한 사항(事項)
- 제13장 교수(教授)와 학습(學習)에 관한 사항(事項)
- 제14장 잡(雜)

제1장과 제2장은 보편적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등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제3장부터는 ‘신교육’을 통해 조선을 개화시키고 ‘문화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조선의 교육은 유교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전근대적 유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1894년 이후의 교육을 ‘개혁후의 교육’으로 보면서,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제도였던 향교를 혁신하고 다양한 법령을 반포함으로써 교육의 토대라 형성시켰다고 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선의 사정을 널리 알려 일본과 조선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저술 배경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조선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사전에 터득하고 이해하는 일은 조선의 아동을 교육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풍속, 습관, 인정, 역사 등의 차이를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교육제도 고찰을 통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교육의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진심으로 ‘정신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선학교관리법 (朝鮮學校管理法)

- 저 작 자 :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
- 발행사항 : 일한서방(日韓書房)(京城), 1938년
- 총 면 수 : 227쪽



이 책은 사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저자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는 당시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사범학교 학생들이 익혀야 할 바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가 사범학교에서의 교육과 황국신민화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조선에서의 교육’이 무슨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고, ‘국민도덕을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교육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이 책 모두에 실고서 낭송상의 주의할 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의도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제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의 중점을 ‘동화주의’에 두고 있었다. 일제는 풍속미화, 일본어 사용,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교원양성, 여자교육과 실업교육에 주력하는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책이 서술되어 발간된 시기는 만주사변(1931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일제가 고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1933년 국제연맹이 만주철수를 권고하였으나, 일제는 국제연맹 탈퇴로 답하였다. 이후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책의 초판과 개

정판이 나온 때는 일제가 조선의 민족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철저히 교육하던 시기이다. 일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황민화에 두고, 조선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전쟁에 동원하는 전시체제의 상황에서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1925년 조선신궁을 준공하고, 1930년대 중반부터 1면 1신사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각 가정에도 신단을 만들어 매일 아침 경배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책은 1936년 초판에 이은 개정판으로 국가기록원과 연세대 도서관에, 초판본은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서론과 본론의 5편, 그리고 관계법규를 실고 있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학교관리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각종 학교시설과 제반의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신념과 학식, 체력, 열성, 교육상의 기술 및 복무의 충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1편은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1장은 국가와 교육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국민교육의 목적은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황국신민의 양성이 조선교육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교육기관의 계통이다. 당시의 교육계통을 목적에 따라 보통교육과 업무교육, 학리교육, 특수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통교육은 국민에 필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소학교, 중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업무교육은 특정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실업학교 및 남녀사범학교, 각종 전문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교육은 주로 학술상의 원리를 연구하는 곳으로 여기에는 대학 및 그 대학의 예과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맹학교, 농아학교, 백치학교, 감화학원 등이 있다.

제2편은 소학교 관리상의 제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소학교가 ‘충량한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존립한다는 전제 아래 설립과 폐지의 절차, 수업연

한·교과목·학기 등 교과 및 편제, 입학과 재학, 퇴학, 징계 등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아울러 학교의 경비 및 부담자에 대한 설명도 부가하고 있는데, 학교경비의 부담자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학교를 분리해 놓고 있다. 학교조합은 일본인의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비는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지방단체를 말한다.

제3편에서는 학교 위생상의 제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학교위생은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은 왕왕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발육과 건강을 저해한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위생의 목적인 것이다. 학교위생의 대상에는 설비위생, 교수위생, 운동위생, 영양보전, 신체검사, 신체허약자의 양호, 정신박약아의 양호, 질병의 예방치료, 위생교육, 학교위생의 당사자 등이 있다.

설비위생은 교지(校地)·교사(校舍)·교구(校具)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즉 교지의 선정과 교사의 건축 및 교구를 제작할 때 위생적인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수 및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는 교수위생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요소는 통학, 학습, 상벌, 영양불량이나 고도빈혈 등의 신체이상의 유무이다.

학교는 지와 덕의 육성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아동의 심신을 단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동위생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학동기(學童期)는 심신의 발육이 극히 왕성한 시기이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갖는 시기가 바로 이 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운동을 장려하여 심신의 단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학동기는 많은 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영양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동기의 건강상태는 발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 총량의 표준에 맞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체발달 상황이나 질병의 유무, 기타 신체와 관련한

제반의 사정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자는 이 외에도 신체허약자의 양호, 정신박약아의 양호, 질병의 예방치료, 위생교육, 학교위생의 당사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제4편은 한계와 복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계는 교육자로서 가져야 하는 임무와 관련이 있다. 저자는 교육자를 관리와 견주어 설명한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관리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관리의 의무는 국가에 대해 충실하고 국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말한다. 직무상의 의무는 직무수행의 의무, 복종의 의무, 충순(忠順)의 의무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신분상에 있어서는 비밀을 지킬 의무, 품위를 보전할 의무, 특별한 제한을 지킬 의무 등이 있다는 것이다.

관리의 책임에서는 관리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으며, 그것은 '문관징계령'에 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관리의 권리를 신분 및 직무에 관한 내용과 재산상의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재산상의 권리는 봉급을 받을 권리와 은급(恩給)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실비변상청구권도 아울러 언급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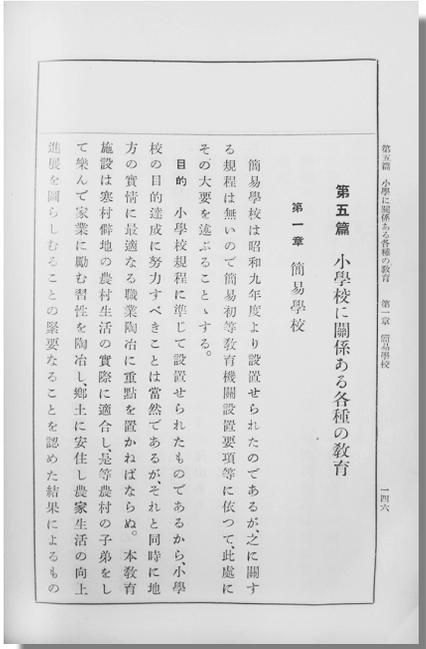
제2장은 소학교직원에 대해 설명한다. 직원의 종류로 학교장과 훈도가 있음을 살피고, 이어 진퇴와 대우 및 징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어 봉급과 제급여 및 은급에 대해 설명하고 교원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복무와 그 직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복무와 관련한 정신자세는 늘 한일합방의 조서를 성지(聖旨)로 받들고, 법률상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공간도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해당지역에만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학교의 사무관련 내용을 싣고 있어, 이 책이 학교교육과 관련한 실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제5편은 소학교에 관계된 각종의 교육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간이학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간이학교는 소학교 규정에 준하여 설치된 것이지만,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직업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설립주체와 그

설치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조직 및 편제, 교과목 및 매주 교육시수, 유지비 및 수업료 등에 대해 언급해 놓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서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서당을 설치할 때에는 명칭 및 위치, 아동의 정수, 교수사항 및 교수용 도서명, 교수방법, 개설자 및 교사의 성명과 약력, 개설년월일, 수업의 시기 등 7가지 사항을 가지고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서당에서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등을 교수할 경우에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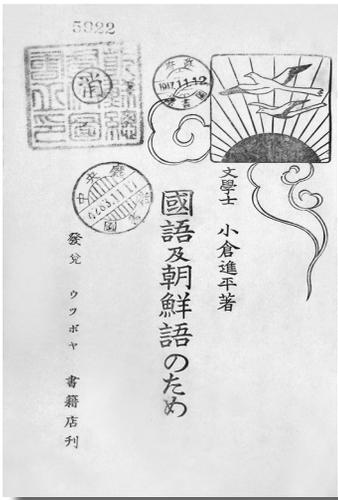
이 외에 유치원과 실업보습학교, 그리고 청년훈련소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학교의 지방교화 기능에 대해 제6장에 언급해 놓고 있다. 소학교는 지방의 교화라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아동의 교육을 통해 교화의 실적을 거둘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교육자가 지방사회의 교화선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소학교와 관련한 법규를 토대로 하여 소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운영과 관련한 실무안내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교육과 관련한 시대상황이 담겨 있어 식민지 말기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일제강점기 교육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I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하여 (國語及朝鮮語のため) I

- 저 작 자 :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
- 발행사항 : ウツボヤ 書籍, 1920년
- 총 면 수 : 302쪽



이 책은 학교에서의 국어(일본어)와 조선어 습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 오쿠라 신페이는 언어학자로 일제시기 조선어와 일본어 연구에 저명한 학자였다. 그는 경성제대와 도쿄제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대 조선어와 방언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향가 및 이두의 연구』, 『증정 조선어학사』, 『조선어방언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책도 조선어를 다방면에서 연구한 것으로, 조선어의 방언과 계통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의 계통적 분류
2. 언어의 형태적 분류
3. 국어 및 조선어의 계통
4. 우리 제국 내의 언어
5. 국어 조선어의 어휘비교 연구자료
6. 한(漢) 오(吳), 당음(唐音) 및 조선어의 자음
7. 국어자음과 조선어자음의 비교

8. 한자한문의 혼독
9. 국어 및 조선어에 관한 슈-바코 요미(重箱讀)과 유토-오 요미(湯桶讀)
10. 조선에서 학습된 외국어
11. 일본의 조선어학과 조선의 일본어학
12. 일본의 조선어학자와 조선의 일본어학자
13. 아메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조선어학
14. 쓰시마방언(對馬方言)과 조선어의 교섭
15. 대마 및 조선에 있어서의 감저(甘藷)의 전래와 그 명칭
16. 제주도의 방언과 전설
17. 문자의 종류와 계통
18. 만엽가명과 이두, 토
19. 히라가나(平假名) 및 가타가나(片假名)의 자원(字源)
20. 한자약체의 토와 히라가나
21. 신대문자(神代文字)와 언문
22. 화자(和字)와 선자(鮮字)
23. 50음도와 이로하 노래(五十音圖といふは歌)
24. 가나사용법(假名遣), 국자(國字), 국어문제 및 언문연구
25. 문어와 구어
26. 표준어와 방언
27. 국어와 연탁음
28. 국어에 포함된 포르투갈어
29. 국어에 포함된 서반어어
30. 국어에 포함된 화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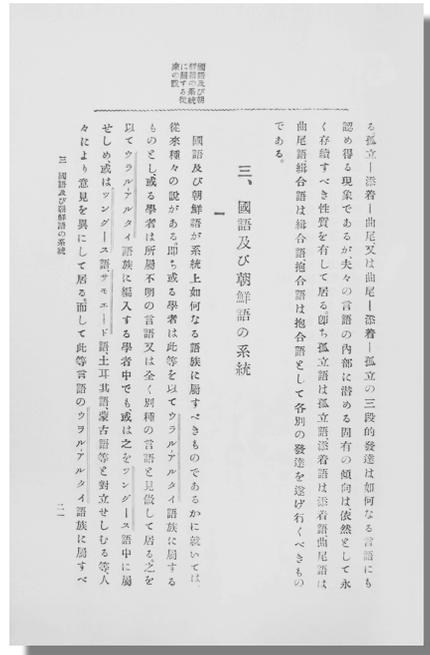
서언에 따르면, 국어와 조선어의 습득은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두 민족의 융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의 계통부터 서반어, 화란어 등까지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제3장은 국어 및 조선어의 계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어와 조선어가 어떠한 계통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종래에는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설과 퉁구스어족에 속한다는 설이 있었다. 저자는 조선어

와 일본어의 계통을 모음조화 현상, 자음 법칙, 두음규칙, 말음법칙, 문장의 구조법 등 5개항에 걸쳐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조선어와 일본어에는 다소의 상위점과 유사점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양자의 계통은 그 관계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어의 계통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한국어 연구는 물론 일제의 언어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국민학교규정의 연구(國民學校規程の研究)

- 저 작 자 : 오노 시마오(小野志眞男)
- 발행사항 : 전주사범학교 연구부(全州師範學校研究部), 1941년
- 총 면 수 : 510쪽



1941년 3월 1일 일본이 「국민학교령」을 반포하자, 조선총독부도 종전의 「소학교규정」을 폐지하고 「국민학교령」의 하위 법령으로 「국민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148호, 1941년 3월 31일 반포)을 제정하였다. 이 책은 전주사범학교 연구부의 연구기요 제3집으로 발행되었다. 「국민학교규정」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지침과 내용, 방법 등을 전주사범학교 연구부에서 정리한 것이다. 일제 말기의 국민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을 보여주는 자료로, 학교경영뿐만 아니라 「조선교

육령」에 근거한 과목별 교육지침과 주요 지도 내용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1941년에 반포된 「국민학교령」은 ‘황국의 도’를 연마함으로써, 일제의 교육정책이 동화에서 복종정책으로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학교규정」은 제도적 변화는 물론 일제의 교육정책 대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종래의 교육정책과 비교할 때, 먼저 각 교과들이 5개, 즉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조선어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까지 수의과목 혹은 가설과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제의 언어정책이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교육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전주사범학교장이었던 쓰시마 스케조(對馬助三)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반포된 교육법규에 근거한 충실한 해설과 이론화를 시도하였으며 친구교과서의 취

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한편 부속국민학교에서의 ‘실천기록’도 참작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규정운영상 당국이 의도하는 바를 가장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 구성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편 총설(總說)
- 제2편 국민과(國民科)
- 제3편 이수과(理數科)
- 제4편 체련과(體鍊科)
- 제5편 예능과(藝能科)
- 제6편 직업과(職業科)
- 〈부록(附錄)〉

제1편은 국민학교 교육의 대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 외에 국민학교 교육의 원칙, 내용, 방법, 방침의 도해 등을 담고 있다. 제2편부터는 각 과와 교과목의 내용을 정리하고, 국민학교 규정에 부합된 지도방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2편은 국민과(國民科)는 수신, 국어, 국사, 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편 이수과(理數科)는 산수와 이과, 제4편 체련과(體鍊科)는 체조와 무도, 제5편 예능과(藝能科)는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제6편 직업과(職業科)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교 과 목
국 민 과	수신, 국어, 국사, 지리
이 수 과	산수, 이과
체 련 과	체조, 무도
예 능 과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직 업 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부록(附錄)에는 1941년 당시 국민학교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 등이 정리되었다.

부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령」(칙령 제148호, 1941년 2월 28일)
- 「국민학교규정」(부령 제90호, 1941년 3월 31일)
- 「국민학교제도실시에 대한 조선총독훈령」(1941년 4월 1일)
- 「국민학교제도실시에 관한 각도지사학무국장통첩」
- 「교과서사용실시 일람」
- 「국민학교제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부성훈령 제9호

이 가운데, 「국민학교령」 제1조에, 국민학교의 목적을 ‘황국(皇國)의 도(道)에 따라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연성(鍊成)을 행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정과 교과서 등이 천황을 숭배하고 복종하는 충실한 국민으로서의 연성 진작이 대대적으로 강조, 강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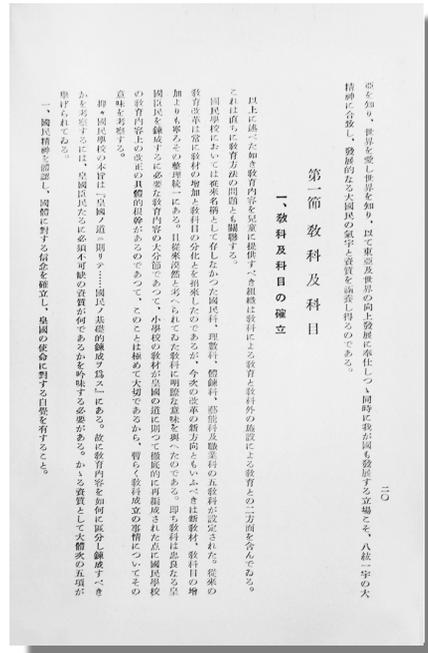
이 책의 제1편 총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국민학교의 유래와 특징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학교는 황국의 대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학교와 학교쇄신에서는 1938년 차별적 교육에서 평등교육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조선교육령」을 언급하면서, 국제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강령의 설정을 중시하면서, 국민학교의 기본정신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학교 교육의 특질에서는 대국민 연성의 기초 교육기관으로의 필요성과 담당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학교의 등장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위치가 분명해졌음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황운(皇運)에 부익(扶翼)하고 봉사하는 신도(臣道)와 충심귀일(忠心歸一)의 총친화(總親和)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학교령 제1조 ‘국민학교는 황국의 도(道)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적 연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황국의 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민학교 교육의 최고 원칙임을 표방하고 있다. 충심귀일은 국민학교에서 황국의 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연마·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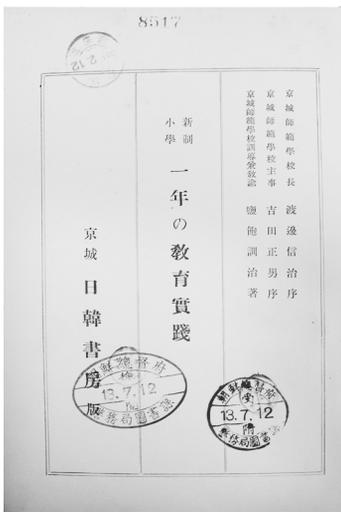
이후 내용은 대부분 각 과별 총설과 내용을 「조선교육령」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 총설의 경우, 목적, 분과, 각 과목 상호간의 관계, 각 과목의 독자성, 교수 방침 등 새로운 교육령에 근거하여, 교육의 대체에 근거한 국민과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에 황국의 도를 양양하기 위한 다양한 과목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도덕, 언어, 역사, 국토지세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로 수신(修身), 국어, 국사, 지리의 4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국민과는 일본 국민으로의 자질과 역사, 언어, 도덕함양에 주안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1941년 「국민학교령」에 근거한 일제의 교육방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국민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황국의 도에 충성할 수 있는 충량한 국민양성’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교수방식을 알려준다.



## 『소학 일년의 교육실천(小學一年の教育實踐)』

- 저 작 자 : 시와쿠 미찌요시(鹽飽訓治)
- 발행사항 : 일한서방(日韓書房)(京城), 1938년
- 총 면 수 : 316쪽



새롭게 반포된 「조선교육령」(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토대로 간행된 교육실천 지침서이다. 저자인 시와쿠 미찌요시는 경성사범대학 훈도겸 교유로 조선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일본인 교사였다. 서언에 의하면, 1938년 반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종전의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고, 교육의 정신도 ‘한일합방’ 정신인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취지를 살리고 황국신민교육의 실천이 대명제로 설정되었다. 경성사범학교 제2학교 주사였던 요시다 마사오(吉田正男)는 서문

에서 소학교 1년생의 교육이 반도의 교육계에서 가장 곤란한 과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반도 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도 ‘자서(自序)’에서 “일찍이 이번의 학제개혁만큼 획기적인 교육령은 없었다”고 하면서 “드디어 내선일체 그 첫발로서의 교명통일(校名統一), 즉 보통학교라는 명사가 소학교라는 명칭으로 지양 통일되어 실로 감개무량하다”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가까운 초등교육계의 경험을 토대로 2편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응시편(凝視篇)으로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면을

소개하였다. 1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서설
- 제2장 일년교육의 입장
- 제3장 일년아동의 성격개관
- 제4장 일년의 언어지도
- 제5장 일년 담임으로의 교사
- 제6장 일년교육실천의 근거

이 가운데 제1장 2절 ‘신제소학1년의 입장’에서 조선교육의 방침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즉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 그것으로 황국신민의 자격을 갖추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조선교육령」 개정은 조선총독부의 일대쾌거(一大快舉)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와 더불어 1937년 10월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황민화를 생활 전반에 실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황국신민서사가 각종 행사와 기념일 등에서 반복·강요되었으며, 학생용과 성인용 두 가지가 있었다. 학생용으로는,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한 강한 국민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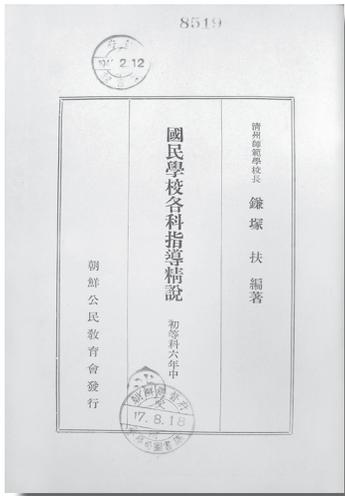
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지배에 순응하고,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는 국민의 서약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제1편이 주로 저자의 초등교육계 ‘1학년 담임’으로서 평소 느꼈던 점과 실천해왔던 점들을 정리한 것이라면, 제2편은 기록편(記錄篇)으로 아동의 입학 전 및 이후의 활동과 학교와 가정의 연락 등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기록편은



## 국민학교各科 지도정설(초등과6년중) (國民學校各科指導精說 初等科六年中)

- 저 작 자 : 가마즈카 타스카(鎌塚 扶)
- 발행사항 : 조선국민교육회(朝鮮公民教育會)(京城), 1941년
- 총 면 수 : 324쪽



이 책은 1941년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 공포 이후,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특히 국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청주사범학교에서 각 과별 교육내용과 지도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일제의 교육정책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민학교는 ‘황국(皇國)의 도(道)’를 실천하기 위한 도량으로, 시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1941년 당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시체제 하에서 교육계는 ‘순국(殉國)과 의기(意氣)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교육의 실천적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일제 말기 교육정책이 초등단계부터 황국신민의 육성과 전시체제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인물양성에 주안을 두고 있었던 사회적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천황을 위해, 희생정신과 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복종과 신민의 기본 자질연마를 중시한 일제(日帝)의 교육관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학교各科의 지도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국민학교령」을 반영하는 것에 있었다. 국민학교는 일제시기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교명이 변화된 것으로 1941년 초등교육기관으로 정착되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민학교 교사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에서 일제의 교육이념을 다양한 교과를 통해 주입시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육현장에서 일본과 천황을 위한 충성과 복종 정책이 곳곳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인재양성이 아니라 일제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수용하는데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 간행물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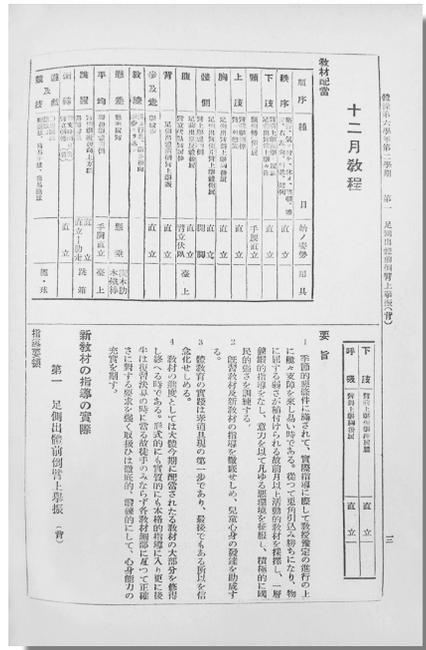
- 국민학교 교육의 3대중점에 대하여
- 국민과 : 수신·읽기·글짓기·말하기·국사·지리
- 이수과 : 산수·이과
- 체련과 : 체조·무도(검도·유도)
- 예능과 : 도화·공작

우선 국민학교 교육의 3대 중점이자 최고의 미덕으로는 황국성, 통일성, 연성의 도야 등으로 제시되었다. 황국성은 천황에 대한 숭배와 충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다. 교과외의 구성에서 보듯이, 조선과 관련한 언어, 지리, 역사 등은 아예 배제되고 있으며, 일본어 습득을 강조한 국민과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 외에 체련과 등에서도 강한 정신과 체력을 통해 전시 후방체제에 적합한 인물 양성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교육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각 과목별 과제 배당표와 지도안이 소개되고 있다. 지도안을 보면, 요지-교재관-시간배당-지도의 실제의 순으로 하여 각 과목별 수업의 목표와 지도요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학교 6학년 2학기의 수업시간을 보면, 전체 15주로 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 배당 시간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의 수신은 매주 2시간, 읽기는 매주 5시간, 글짓기는 매주 2시간, 말하기는 매주 1시간, 국사는 매주 2시간, 지리는 매주 2시간 등으로 국민과의 매주 수업은 모두 14시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종래 조선어 과목이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아예 폐지되어 모두 국어(일본어)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과 국어의 읽기과목을 들어보면, 일제의 황민화교육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6학년 1학기 ‘제재(題材) 배당표’ 상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제목은 나라(奈良)·가마쿠라(鎌倉) 등의 일본 명승지나 유적지 소개, 그리고 공중전(空中戰)·일본도(日本刀)·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 등의 ‘성전(聖戰)’을 수행하는 ‘황군(皇軍)’관련 수업이다. 이 가운데 공중전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과는 ... 우리 공군의 장렬한 맹전분투와 용맹과감, 귀신도 압도하는 공군전사의 진충보국의 적성(赤誠)을 통찰하게 해서 일사보국의 대열정과 죽어서야 멈추는 군인정신을 찬양(讚仰)하게 해서 충성일로, 진충보국의 일본정신을 철저히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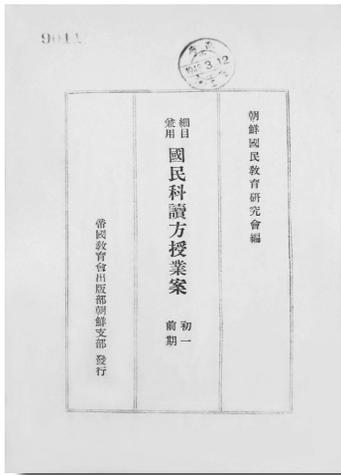
다음으로 이산과의 이과는 매주 2시간으로, 산수는 매주 5시간으로 모두 7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체련과의 체조는 매주 3시간, 무도의 검도와 유도는 시간 배정 없이 주간단위로 운영되었다. 예능과(藝能科)의 도화(圖畵)는 남녀가 각기 달랐는데, 남자는 매주 2시간, 여자는 매주 1시간이었다. 공작은 매주 2시간으로, 예능과는 모두 3~4시간으로 되어 있다. 전체 12과목의 세세한 교수지침을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로 직업과는 빠져 있다.

이처럼 1941년 국민학교령에 따라,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와 이산과 중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편제되었으며, 특히 ‘황국의 도’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하

기 위한 국민과가 절대적이었다. 국민학교에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자를 양성하는 사범학교 교장이 펴낸 이 '각과지도요령'은 일제 말기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지도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 Ⅰ 국민과 읽기 수업안(國民科讀方授業案) Ⅰ

- 저 작 자 : 조선국민교육연구회(朝鮮國民教育研究會)
- 발행사향 : 제국교육회출판부 조선지부(帝國教育會出版部 朝鮮支部), 1944년
- 총 면 수 : 212쪽



이 책은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 반포 이후, 국민과(國民科) 읽기수업의 교육현장에서 교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민학교 초1 전기과목의 수업방법과 시간배당, 유의사항 등을 세세히 밝히고 있으며, 전체 45과를 다루고 있다. 국민학교에 막 입학한 초등학생들의 규율과 훈련 내용을 교사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와 가르침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을 바라보는 식민지적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재배당표(教材配當表)'에는 매달 수업내용과 배당시간이 정리되어 있으며, 단원 내용을 정리한 복습도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표적 과목의 하나였던 읽기는 일본어 읽기와 학교생활 및 규칙 등을 담고 있는 교재였다. 특히 1941년 「국민학교령」 반포 이후,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이 더욱 강화된 현실을 담고 있으며, 총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 육성을 달성하려는 교육목표의 내용도 이 책 곳곳에서 다루어졌다. 이 책은 일제패망 직전 민족말살교육(民族抹殺教育)의 현실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장별 주요 내용 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으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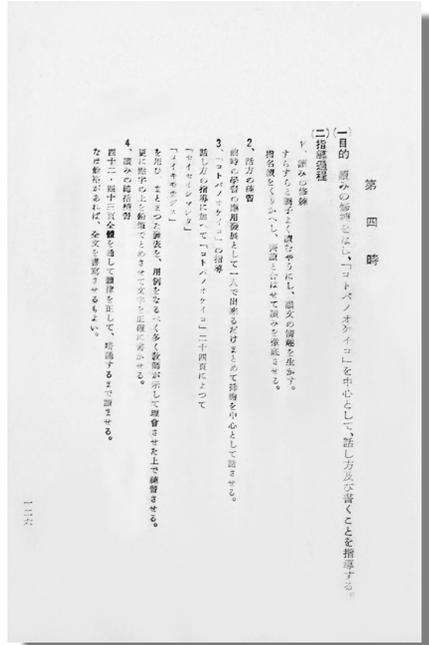
- 요지
- 교재연구
- 시간배당
- 준비
- 연략
- 지도의 방법(목적/지도과정)

각 과별로 교수요법과 목적 등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제1과외의 경우는 2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며, 입학 직후 학생들의 조회, 삼화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용 서술용어 습득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학교, 국기, 선생, 생도, 교실, 운동장 등의 명칭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친근감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용어 습득은 대부분 “이것은 ○○입니다(コレハ○○テス)” 등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교감을 높이는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지도의 방법으로는 목적과 지도과정이 각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제1장의 경우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제1과의 첫 시간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아침의 학교행사의 견학과 교정교사 안내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조회의 실황을 견학한 상태에서 현지에서 각각의 설명을 가장 기초적인 말로 설명하여 듣기 훈련을 한다.”

지도과정은 조회견학, 교사안내, 학교생활 안내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교사의 지도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입 아동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조회의 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면, 궁성요배(宮城遙拜)·묵도(默禱)·조례·황국신민의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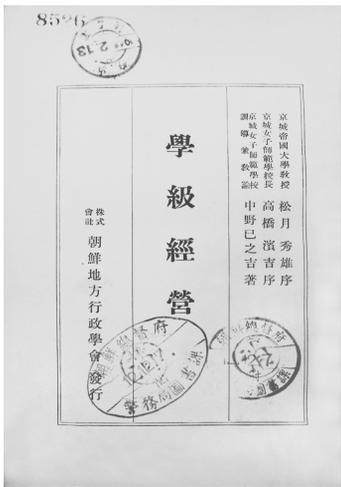
· 기미가요 제장 라디오체조 등이었다.

이후, 2과부터 45과까지도 교사들이 학생 수업에 필요한 내용과 단원의 지도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규율과 훈련을 교실공간에서 실천한다는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읽기과목은 국민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일제시기 제4차에 걸친 「조선 교육령」 반포로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 학급경영 (學級經營)

- 저 작 자 : 나카노 미노키치(中野巳之吉)
- 발행사항 : 조선지방행정학회(朝鮮地方行政學會)(京城), 1937년
- 총 면 수 : 424쪽



저자인 나카노 미노키치는 일본의 경도제대를 졸업하고 중등교육을 담당하다가,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제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이후 경성여자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책은 저자가 다년간의 교육체험(보통학교 3년과 소학교 3년)을 토대로 서술한 것으로, 초등학교와 학급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실무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략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학급경영의 기초
- 제2장 학급아동의 조사
- 제3장 학급정신의 수립
- 제4장 학급학습작업법
- 제5장 학급훈련법
- 제6장 학급양호법
- 제7장 학급관리
- 제8장 학급사무

부 : 심삼학급경영안(尋三學級經營案)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록으로 3학년 경영안을 두어 실제성을 높였다. 제1장은 학급경영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학급경영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1년간 학급을 운영하는 목표를 정할 때는 먼저 자신의 입장을 살펴서 신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학교로부터 부여된 명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변의 조건을 참작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급경영에 관한 교육법규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학칙을 정확히 알고, 교수상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교과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하계방학 등 기타의 법규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어 당시의 교육사상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교육사상의 흐름은 학급경영의 실천배경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당시의 교육사상에서 생활교육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생활교육은 생활본위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의 주지주의적·추상주의적 교육에서 탈피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어 저자는 당시의 교육사상을 향토교육이자 공동사회교육, 공민교육, 노작교육(勞作教育), 통제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 행(行)과 과학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은 일본정신의 교육과 국체명징(國體明徵)의 교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종교사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있다.

저자는 학급경영을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흐름도 알아야 한다고 서술한다. 또한 생활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동의 주거지인 향토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 학교경영방침과 학년의 사명, 교원 자신의 태도와 신념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제2장은 학급아동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학급경영에 직면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처한 현재의 환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학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담임교사의 성별과 연령, 경력, 자격, 학과의 좋고 나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생활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환경조사표' 양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론 부모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정환경조사표는 가족 수, 신앙생활, 노동의 방법과 노동시 복장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노동 작업의 경우 복장과 침구, 청소의 수단, 수익을 얻는 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적시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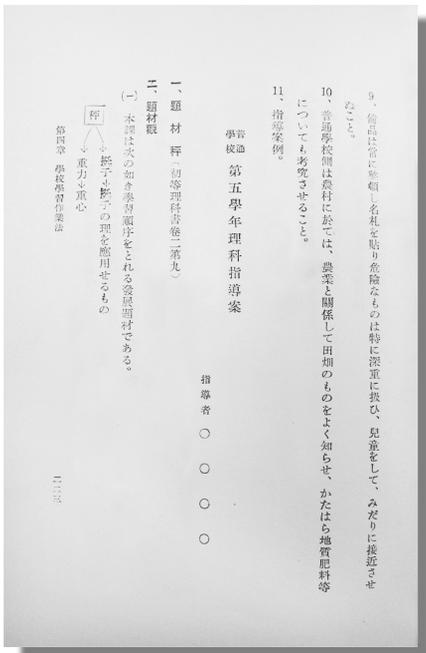
또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지능 및 성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데, 이는 신체 검사표와 학적부 상의 항목을 참고한다.

제3장은 학급정신의 수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학급정신을 수립하는 데는 급풍(級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급풍은 통상 급훈을 정함으로써 진작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은 학급학습작업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총론은 학습작업의 본질과 교재 및 교재연구, 학습작업의 원리, 학습실천상의 유의점, 그리고 학습작업과 교사를 주제로, 각론에서는 수신, 독서의 방법, 화술의 방법 등을 각각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 이 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각 교과목을 분리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이 학급경영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은 학급훈련법이다. 저자는 학급훈련에는 아동의 일반훈련과 그 학급과 관련한 급풍수립을 위한 훈련 등 2가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급풍수립을 위한 훈련은 그 학급에 맞고 학교의 기풍에 준거하여 전체적인 기풍을 지도한다. 즉 학급에 융합하는 학습훈련과 작업훈련, 유희훈련과 급우간 또는 교우관계에 관한 훈련을 들 수 있다. 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전교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학년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당한 덕목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1일 생활훈련 지도법도 실어놓고 있다. 이 외에도 훈육의 시설과 실시, 훈련의 요령 등 학급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제6장은 학급양호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학교학급의 양호위생에서는 교사와 교사, 교실, 운동장에서 양호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교실의 경우 채광에서부터 통풍, 출입구와 상판, 난방장치까지 세심하게 서술하고 있다.

학습 중 위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아동은 골격성장의 도중에 있는 만큼 정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설명하고, 구급치료법과 위생실의 항목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청결법」을 적시해둠으로써 학교에서 양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7장 학급관리에서는 환경정리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일반 환경으로부터 교내외의 환경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학급시설과 학급회와 학급의 어머니회, 저금일과 가정방문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 각종 행사내용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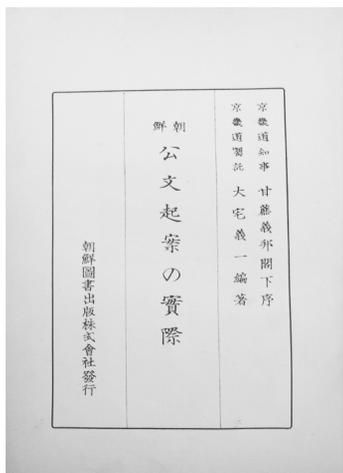
제8장은 학급사무 즉 교무 및 교과사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학년초·학기말·학년말의 학급사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월말·주말·매일의 사무가 무엇인지 언급해줌으로써 이 책을 통해 학급경영의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이 책 본문에서의 설명내용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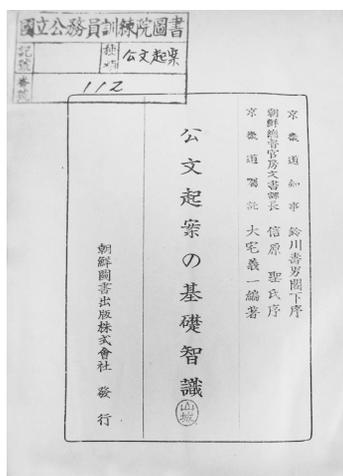
이 책은 ‘교육실천계(教育實踐界)’를 위해서 초등교육계에서의 필자 자신의 다년간 경험에 토대하여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한 일종의 교수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학교교육,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제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식민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가 원하는 식민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주입시키고 있는가를 잘 알게하는 참고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독할 만하다.

##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朝鮮 公文起案の實際) / 공문기안의 기초지식(公文起案の基礎知識)

- 저 작 자 : 오오야 기이치(大宅義一)
- 발행사향 : 조선도서출판(朝鮮圖書出版)(京城), 1938년 / 1941년
- 총 면 수 : 446쪽 / 588쪽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와 이의 수정·보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문기안의 기초지식』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의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들이다. 조선총독부와 각 관청에서의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기초지식, 각종 서식과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서의 생산(접수), 시행(발송), 보존(편찬) 단계의 규정과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사무관리실무』 등과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정책이 문서로 입안되고 시행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 2권의 책은 원래 조선총독부 관방 문서과에서 소장 관리하던 도서는 아니었으나 정부기관들의 도서자료 정비 과정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수

집되어 지금의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간행도서’로 분류,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책 앞부분에 ‘국립공무원교육원도서관장서’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이나 책 뒤표지 안쪽에 ‘국립공무원훈련원’ 글자가 인쇄된 대출카드 주머니, 책 중간에 ‘중공고도서실’ 원형 도장의 흔적 등을 통해 이 책들이 원래는 중앙공무원교육원(1961. 10.2 설치)의 전신인 국립공무원훈련원(1949.3.21 직제 제정)의 소장도서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61년 10월 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면서 그 기능 이전과 함께 관리 전환되었다가 이후 1970~80년대 각 정부부처들의 도서자료 정비 과정에서 오래된 책들을 ‘제적’ 처분할 때 정부기록보존소로 수집 또는 이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8년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이하 『실제』)는 각 2장으로 구성된 1부와 2부의 본문, 그리고 부록(관계예규)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오-야 기이치는 당시 경기도 관방문서계(官房文書係)에서 ‘촉탁’ 신분으로 다년간 문서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저자는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공문 생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문의 ‘용자용어(用字用語)’ 사용과 관련하여 표준으로 삼을 만한 그리고 행정관례에 의한 공문의 의의와 형식 등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적당한 교재가 필요했다고 ‘자서(自序)’에서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도 ‘서(序)’를 통해 이 책이 ‘공문과 준공문 작성에 대해 간절명쾌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부 용자용어편(用字用語篇)

##### 제1장 공문(公文)과 한자

###### 제1절 한자

###### 제2절 상용한자와 상용약자

###### 제3절 공문과 방문(邦文) 타이프라이터

###### 제4절 틀리기 쉬운 문자의 연구

제2장 공문용자례(公文用字例)의 연구

- 제1절 법령 용자(用字)의 불통일
- 제2절 구공문용자례(舊公文用字例)의 행방
- 제3절 최근공문용자례(아이우에오 순)
- 제4절 오쿠리가나 사용법(送假名遣法)
- 제5절 문부성식 국어 및 자음가나(子音假名) 사용법

제3장 공문용어의 특이성

- 제1절 공문과 조선언문(朝鮮諺文)
- 제2절 공문과 구어체
- 제3절 구두법(句讀法)
- 제4절 숫자 쓰는 법
- 제5절 공용전보 용어
- 제6절 외래어 쓰는 법
- 제7절 로마자 철자법
- 제8절 황실에 관한 존칭과 경어

제2부 공문 구성편

제1장 공문의 기안

- 제1절 기안의 준비
- 제2절 성안(成案)하는 법
- 제3절 성안(成案)을 취급하는 법

제2장 공문의 의의와 형식

- 제1절 법령문
- 제2절 일용공문(日用公文)
- 제3절 식사(式辭)·훈시(訓示)·성명(聲明)
- 제4절 표창(表彰)·징계·시말서류(始末書類)
- 제5절 사령(辭令)
- 제6절 광고·선전
- 제7절 직원 원계(願屈)
- 제8절 하표(賀表)·언상서(言上書)

〈부록〉 관계예규

목차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한자와 가나(한자의 일부를 빌려 그 음과 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표음문자)로 구성된 일본어의 특성에 따른 근대적 정비 현황과 함께 공문 작성시의 문체와 글자 등을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1부의 1~3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실제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안용지에 기입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결재단계와 절차, 용어 설명 등을 기안용지 양식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제2부의 1~2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자는 제1부의 ‘편술(編述)’을 위해서 다카다 고토사부로(高田琴三朗)의 『문자사용법』(『文字を使う法』)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의 『スタイル・ブック』(스타일 북) 등 관련 서적을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1부 용자용어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제1장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상용한자(常用漢字)와 상용약자(常用略字) 제정, 타이프라이터(타자기) 사용 등의 배경과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자와 가나로 구성된 일본어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즉 ‘국어표기’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만 공문서를 ‘올바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메이지유신 이후인 1875년에 어려운 한문조의 공문용자에서 벗어나 공문서를 가능한 한 쉬운 글자로 작성하자는 ‘공문용자의 평이화’ 방침이 결정되었다. 또한 1920년대 들어 호-지(報知)신문 및 아사히(朝日)신문 등 유력 신문사들에 의해 3천자 내외의 상용한자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이에 힘입어 1923년 문부성 임시국어조사회에서 상용한자 및 약자를 조사하고 선정하였으며, 1931년 이를 다시 수정해서 상용한자 1,962자, 상용약자 154자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또한 평소 틀리기 쉬운 글자, 예를 들어 필적이 애매해서 잘못 읽기 쉬운 글자, 자음이 비슷해서 잘못 쓰기 쉬운 글자, 형태가 비슷해서 잘못 기록하거나 잘못 읽기 쉬운 글자 등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여 실무적 활용을 돕고 있다. 이는 ‘올바른’ 공문 기안을 위해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문을 초서체나 애매한 필적이 아닌 해서체나 행서체로 명료하게 작성하고 초안을 다시 정서(淨書)할 때에도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공문용자례의 연구에서는 「법령형식의 개선에 관한 건」(내각훈령, 1926.6

월)과 「공문 및 전보의 문안에 관한 건」(정무총감통첩, 1938.2.22)이 각 관청 및 각도 지사 앞으로 발송된 이후의 상황, 즉 보통공문을 평이한 문체로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문용어 및 용자 사용이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황과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공문에 ‘자기류(自己流)’의 용자가 범람하여, 심지어는 한 문장 속에서도 같은 내용이 달리 표현되는 ‘혼돈상태’가 매우 심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장의 간이화’라는 것은 ‘현하의 급무(急務)’로 특히 정확하고 솔직하게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지를 표현해야 할 공문의 용자용어의 정리·통일이기에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파악하였다. 실제 한자와 가나로 구성된 일본어의 경우, 한자와 결합된 가나의 표기법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록 의미가 같다고는 해도 다른 한자들이 사용되는 상황은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사무능률면이나 공문체제상 일정한 정리 작업, 즉 일종의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다년 공무에 익숙한 자의 실무적 견지에서 연구 집성한 것’들을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당시로서는 최근의 총독부훈령(訓令)·부령(府令)·유고(諭告)·통첩(通牒) 등의 실제 사례를 뽑아놓은 ‘최근 공문용자례’를 아이우에오 순(우리말의 가나다라 순서와 같음)으로 정리하고 해설까지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이 사례들은 임의 방식이 아니라 문부성 국어조사위원회가 1907년 제정한 오쿠리가나(일본의 국어표기법에서 한자어의 읽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한자어에 꼬리를 붙여 나타내는 가나를 말한다.) 사용법과 내각법제국이 1932년 제정한 「공문용자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2장의 4절과 5절에 오쿠리가나 사용법과 문부성에서 제시한 ‘국어 및 자음 오쿠리가나 사용법’을 함께 실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일본어의 변화와 특질을 ‘조선에서의 공문 특례’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을 해석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사전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3장 공문용어의 특이성에서는 공문과 ‘조선언문(朝鮮諺文), 즉 한글과의 관련,

공문과 구어체 사용, 구두점 찍는 법, 숫자 표기법, 공용전보의 용어 문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알파벳) 표기법, 황실에 관한 존칭과 경어 사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공문과 조선언문에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언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일본어와 한글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과정에 따른 언어통제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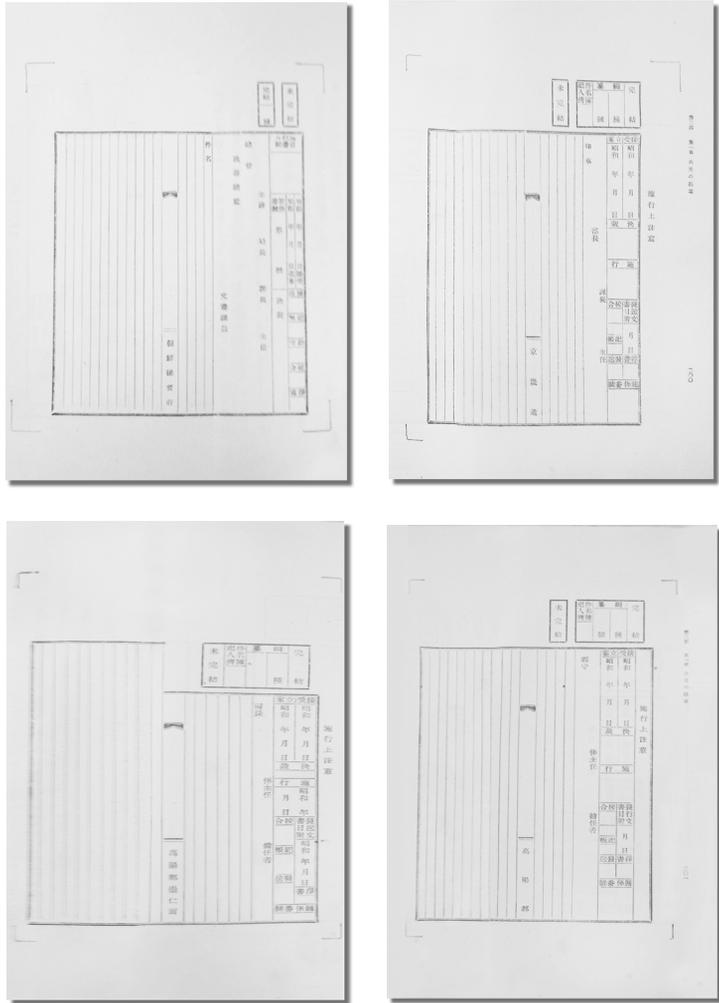
우선, 저자는 일본어와 한글의 유사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파악하였다. 그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원래 조선어는 다른 외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와 완전히 똑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의 한자한어(漢字漢語)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지인(內地人)으로서 조선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자라고 해도 조선문 중의 한자만을 읽음으로써 문장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조선어의 조사와 조동사, 아주 약간의 동사활용만을 알고 있는 자……소학교의 조선어독본 권 2를 수료한 정도라면 당시의 조선공문을 독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중략)……일본문 또한 조선과 똑같이 한자를 주로 하고 가나를 섞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어를 전혀 모르는 조선인 직원조차도 공문의 대의를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극히 초보 수준의 국어를 습득한 자, 예를 들어서 (수업연한 1년)의 일어 숙성과를 수료한 자는 거의 불편 없이 공문을 읽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어와 한글의 유사성은 ‘일한병합 후 20여 년도 지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내선일체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 이런 점에서 ‘한자의 은혜는 매우 위대’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같은 한자권 문화이면서 독자적인 한글과 ‘假名’(가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두 나라의 역사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언어의 상관관계, 즉 언어통제를 통한 식민통치의 강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된 1938년의 바로 한 해 전인 1937년 3월 공문을 ‘국문’(國文 : 일본어를 뜻함)으로만

작성하라는 정무총감 명의의 통첩이 발송되었다. 이는 조선의 모든 관공서에서 공문을 작성할 때 ‘국어,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식민지배를 위한 행정행위를 관철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의 보급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군(郡) 단위에서 면(面) 단위로 보내는 공문에는 보통 일본어 공문만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면에서 구장(區長) 또는 일반민중에 대해서는 일본어 공문을 ‘조선문’으로 번역하거나 일본어에 언문을 붙여서 시행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언문’(정확하게는 한글의 조사)을 병기한 미나미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의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1937.11.10)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공문의 철저한 ‘국문화촉진’을 위해서도 공문의 용자용어의 통일과 평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시계방향 순으로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양군,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의 기안용지 양식

제2부 공문구성편은 아리미츠 킨베-(有金金兵衛)의 『공문예규(公文例規 又公文例)』, 아오키 요코가와(青木橫川)의 『철도공용문범(鐵道公用文範)』, 에하라 겐쓰이(江原善樋)의 『공문용자례』등을 참조로 해서 작성된 것이다. 대부분 공문을 기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총괄적이고 개략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1장 공문의 기안에는 「조선총독부처무규정」의 내용 중 ‘문서취급’, 그 중에서 특히 기안할 때 유의해야 할 기초적인 사항과 결재 과정, 공문의 시행, 편찬 및 보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2장 공문의 의의와 형식에서는 명령, 훈령, 준법령문 등의 법령문과 지령, 통첩과 통지 등의 일용공문의 의의와 형식을 기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우선 공문을 기안하기 전 단계의 준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예규, 전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일,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일 등 공문을 통한 업무 수행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제1장은 기안문 작성 방법과 결재 처리 과정 등 문서를 생산하고 유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본부, 경기도,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고양군 송인면(崇仁面)에서 사용되던 기안용지 양식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상의 각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조선총독부에서의 공문을 기안하는 방식과 의미, 결재 및 시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해 준다.

조선총독부와 각 관청에서는 대개 일정한 양식에 인쇄한 기안용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회의용지라고도 부른다. 이는 공문이 기안 → 회의(回議) → 결재(원안)를 거쳐서 법률적 행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즉 조선총독부에서의 업무 실행을 위한 계획을 ‘의안(議案)’ 또는 ‘사안(事案)’이라고 하며, 이것이 문서상으로 표현된 것을 ‘기안’ 또는 ‘입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공문이 기안되면, 관계실무자 및 관련 국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회의(回議)’라고 하였다. 이 ‘회의’단계를 거쳐 최후로 결재가 완료되면 ‘성안(成案)’으로서의 문서가 시행되는데, 이를 ‘원의(原議)’ 또는 ‘원안’이라고 하고 편찬 및 보존대상 문서

로서 다루어진다. 오늘날의 시행문에 해당하는 발송문서는 성안원의(成案原議)에 의해 복서(複書, 또는 타이프라이트)한 것으로, 이를 '정서(淨書)'라고 불렀다. 원의는 보존하기 위해 남겨두고 복서한 것을 발송하는데, 원의와 다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서자(淨書者)와 실무자가 '독합(讀合)'하는 것을 '교합(校合)'이라고 하였다. 정서자 및 교합자는 원의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성안원의의 소정 난(欄)에 해당 사항을 기입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안·성안·원안(원의)이라는 용어는 공문의 생산, 유통, 보존 과정이라는 일정한 업무 단계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조선총독부 본부, 경기도,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고양군 승인면(崇仁面)의 기안용지 양식을 함께 참고하면 이러한 공문의 처리 절차가 보다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안문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의 〈부록〉에도 실려 있는 1921년 12월 27일자 정무총감 명의의 「성안급공람문서(成案及供覽文書)의 조제(調製) 및 취급방(取拔方)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문상의 글자체는 '방문(邦文-일본어를 의미함)'으로 하며, 해서나 행서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서나 결재권자가 사안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간명(簡明)·평이(平易)'하게 기술하며, 초서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례(定例)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종래의 '후문체'(候文體-일종의 문어체)를 피하고 '보통문체'로 하며, 필요없는 경어는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문서의 문체에 대한 지시는 전보 등에 쓰이는 경비절약과 함께 행정사무의 간소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2부 제2장 공문의 의의와 형식에서는 각종 법령문 및 일반공문의 개념과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문, 즉 공용문서라 함은 국가기관인 중앙관청, 지방관청 또는 공법인(公法人)이 공무집행상 사용하는 일체의 문장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문을 법령문과 일용공문 또는 요식문(要式文)과 불요식문(不要式文)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책에서는 조선총독부 내부에서 작성 사용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문을 열거하고, 그 형식과 실제 사

례를 들어서 실무상의 참고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간단한 의의와 형식을 함께 기술해서 일반공문을 작성하는 규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우선 법령문은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형식 용례는 되도록 각 관청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문의 형식 및 용례에 대해서는 공식례(公式例), 공문식(公文式) 등에 그 대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당연히 조선총독부에서 발해지는 각종 명령을 비롯하여 훈령, 고시 등도 내각 법제국에서 제정한 공문례나 공문식에 준해서 작성된다. 이 책 〈부록〉의 관계예규에 이러한 공문례와 공문식을 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법령문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의의, 형식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실무적 활용을 돕고자 하였다.

법령문은 일반적으로 명령, 훈령, 준법령문이 있으며, 조선총독부내의 법령문은 다시 제령(制令), 부령(府令), 도령(道令), 도령(島令)으로 나뉘어진다. 조선에서의 일체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조선총독에게 위임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조선총독이 발하는 일종의 명령을 제령이라고 구분하였다. 조선총독부령에는 집행명령, 행정명령, 경찰명령이 있다.

훈령은 우선 광의로 보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 또는 관리에 대해서 직무상의 감독권에 의해 발하는 일체의 명령으로, 훈령, 통첩, 의명통첩 또는 훈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칭이다. 협의로 보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 방식을 지휘하는 명령을 말한다.

준법령문에는 유고(諭告), 고시(告示), 달(達), 부조례(府條例), 읍면규칙(邑面規則) 등이 있다. 유고는 관청이 특정 사항 또는 시국에 관해서 관내 전반에 걸쳐서 유시(諭示)하는 방법이다. 고시가 단순히 일반에게 알리는 것만을 뜻하는 반면 유고는 호의적으로 일반 관민에 대해서 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란 대체로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해 특정 사항을 널리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달이란 태정관달(太政官達)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정관청이 특정 개인 또는 공사 단체에 대해서 법령 규정에 근거해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달이 훈령과 다른 점은 상대가 하급관청이 아니라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라는 것이다. 또 달이 지령(指令)과 다른 점은

신청 또는 원출(願出)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다는 것이다.

제2부 제2장에서는 위와 같이 법령문을 명령, 훈령, 준법령문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념, 의의와 형식,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일용공문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일용공문이란 관청에서 일상사무 처리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령(指令), 의명통첩(依命通牒), 통첩, 조회(照會), 회답, 보고, 복명서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령에는 크게 훈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품신이나 신청을 기다려서 하급관청에 내려지는 지령은 개개 사실에 대해 하급관청 또는 관리로부터의 원출(願出)에 따라서 상급관청이 구체적인 처리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훈령과 다르다. 의명통첩이란 관청이 기관장의 이름으로 하급관청 또는 공공단체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보조기관의 이름으로 통지하는 경우 그 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는 통첩을 말한다. 통첩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대해서 또는 상급관청의 보조기관에서 하급관청에 대해서 발하는 형식으로 통지처럼 동급관청 상호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고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특정 또는 우발 사항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복명서는 보고의 일종으로 통상 관리가 명령을 받아서 특정 지역에 출장나가서 조사 또는 시찰한 사항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밖에도 식사(武辭), 훈시(訓示), 성명(聲明), 표창이나 징계, 광고나 선전, 사령장 등에 대해서도 개념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모두 13건의 '관계예규'를 한데 모아서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록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식민행정사무, 특히 '문서행정사무'의 대체적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부록>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각 예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즉 「법령형식의 개선에 관한 건」(1926.6.1, 내각 훈령호외), 「법제국문례 및 용자례」(1932.3, 법제국제정), 「제령(制令)공포식」(1910.8, 통령 제50호), 「조선총독부령공문식」(1910.10.1, 조선총독부령 제1호), 「조선총독부도령공문식」(1910.10.1, 조선총독부령 제2호), 「조선총독부처무규정(抄)」(1933.8 개정), 「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1912.3, 총훈 제36호, 1935.8, 40호 개정), 「공문서 및 전보 문안에 관한 건」(1928.2, 관통첩 제7호), 「성안 및 공람문서의 조제 및 취급방에 관한 건」(1920.12.27), 「성안 및 공람문서의 조제에 관한 건」(1928.3.7, 문제11호), 「공문서의 완명(宛名)에 관한 건」(1937.8.9, 관통첩 제27호), 「사무의 간첩(簡捷) 경비의 절약에 관한 건」(1931.9.5, 관통첩 제34호), 「국어, 국문의 사용에 관한 건」(1937.3, 문제19호) 등이다.

이상 『실제』의 구성 및 내용 가운데 주요 요점만을 간추려서 소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조선총독부와 각 관청에서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과 규정, 그리고 각종 사례들을 제시하여 실제 문서행정상의 활용을 돕고자 작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주로 한자와 가나로 구성된 일본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할 표기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었다. 독자에 따라서는 자칫 메이지(明治)~쇼와(昭和) 초기 연간의 일본어 문법상의 문제로 단순 인식될 가능성이 많지만, 당시의 일본어 표기에 관한 일종의 ‘표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일제가 생산한 문서를 읽어나갈 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부에서는 실제 공문서 작성에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처무규정」에 따른 공문의 입안부터 보존 편책까지 문서가 생산되어 시행되고 보존되는 과정과 절차 등이 서술되었다. 또한 각종 법령문과 일반공문의 개념적 설명은 물론 해당 공문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제2부 제1장은 이 책의 핵심적 부분으로, 위에서 설명한 조선총독부에서의 공문 작성 방식과 그 절차, 시행과정 및 편찬보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공문이 기안되어 결재를 얻어서 시행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총독부공문서규정」이나 「조선총독부처무규정」에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각 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무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해당 용어들을 양식과 함께 실제의 공문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고 ‘일반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즉 회의나 합의, 면의상량,

정서교합 등에 대한 용어의 개념적 설명, 대결(代決)·후열(後閱)·일부(日附)·공람(供覽) 등과 같은 기안용지상의 용어 설명, 관인(官印)이나 일부인(日附印), 계인(契印)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용법, 문서번호나 보존종별 및 편찬구분번호를 붙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 문서들에 찍혀 있는 각종 도장이나 기호, 기안양식상의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일반 실무자 대상의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문서관리’ 실무 차원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처무규정」 외에도 각도(各道)에서 제정한 ‘처무규정’ 등이 실려 있는 『예규집』을 별도로 참고해야 한다. ‘보존종별과 편찬구분번호’의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에서는 성안은 시행이 완결되면 보존해야 할 연수(年數)에 따라서 갑(甲), 을(乙), 병(丙), 정(丁)으로 분류하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번호를 붙여서 정리 보존한다고만 되어 있고 더 이상의 서술이 없어 ‘종별에 따른 보존연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도 단위의 ‘처무규정’에는 ‘문서편찬구분’ 등이 <별책> 형식으로 따로 작성되어 있어서 보존연한이나 편찬구분 등에 대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본부는 물론 대부분의 도(道)에서는 보존연한을 갑(영구보존), 을(10년보존), 병(3년보존), 정(1년보존)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도(道)에서 발하는 훈령 등 예규성 문서, ‘인비(人秘)’ 관련 문서, 산하기관에서의 품의(稟議)·품신(稟申)·통계보고 가운데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문서, 회계세무 관련 중 ‘영구보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이 갑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혁이나 역사상 참고가 될 문서’, ‘도 단위 행정정책 및 집행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문서’, 서무과 보관의 관보류도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저자가 몸담고 있던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문서편찬구분」(1931.8, 도훈 13호)에는 각 과별로 보존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사관방과 농업진흥과의 편찬구분과 보존연한을 제시하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경기도 문서편찬구분 중 지사관방

보존 종별	번호	편찬서목	보존 종별	번호	편찬서목
갑종	1	비서예규	갑종	2	문서예규
	3	청중예규		4	소멸예규
	5	도령원의		6	도훈령원의
	7	도내훈원의		8	도고시원의
	9	도유고원의		10	고등관진퇴신분에 관한 서류
	11	판임관진퇴신분에 관한 서류		12	경찰판임관진퇴신분에 관한 서류
	13	지방비직원진퇴신분에 관한 서류		14	고원촉탁진퇴신분에 관한 서류
	15	서위서훈에 관한 서류		16	문관은급사망사금에 관한 서류
	17	교육직원은급사망사금에 관한 서류		18	대우직원, 지방비리원은급사망급 여금에 관한 서류
	19	징계 및 계고에 관한 서류		20	도서출납에 관한 서류
21	잡건서류				
을종	1	직원승등증봉에 관한 서류	을종	2	특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서류
	3	시험에 관한 서류		4	포상에 관한 서류
	5	문서에 관한 서류		6	통계보고에 관한 서류
	7	도예규편찬에 관한 서류		8	복명서류
	9	청중통달서류		10	잡건서류

〈표 2〉 경기도문서편찬구분 농업진흥과(1938.11, 도훈 제3호)

보존 종별	번호	편찬서목	보존 종별	번호	편찬서목
갑종	1	농촌진흥예규	갑종	2	식산계예규
	3	농회예규		4	소작예규
	5	지작농예규		6	청중예규
	7	소멸예규,		8	도내훈원의
	9	농산어촌진흥에 관한 서류		10	농회에 관한 서류
	11	식산에 관한 서류		12	훈련도장에 관한 서류
	13	지작농지설정유지에 관한 서류		14	군농사훈련소에 관한 서류
을종	1	농산어촌진흥에 관한 서류	을종	2	농회에 관한 서류
	3	식산계에 관한 서류,		4	회의에 관한 서류,
	5	훈련도장에 관한 서류		6	강습강화에 관한 서류
	7	농산어촌진흥의 선장에 관한 서류		8	예산경리에 관한 서류
	9	농촌진흥위원회에 관한 서류		10	통계보고에 관한 서
	11	지작농지설정유지에 관한 서류		12	소작에 관한 서류,
	13	소작위원회에 관한 서류		14	산업장려사금에 관한 서류,
	15	군농사훈련소에 관한 서류		16	복명서류
17	잡건서류				

※ 〈표1〉과 〈표2〉를 포함, 조선총독부의 문서편찬구분에 대해서는 이경용, 2004,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10을 참조.

경기도 지사관방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서가 갑종 아니면 을종으로 분류되었는데, 대부분 훈령·내훈 등의 원본과 예규성 문서, 인사관련 문서들이 갑종으로 분류되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주로 훈령원본이나 예규성 문서, ‘농산어촌진흥’과 같은 식민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서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사무와 관련된 공문서철이 영구보존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문서편찬구분’은 1931년 것과 1938년의 2종류가 확인되는데,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1938년의 ‘문서편찬구분’에 의하면, 지방과의 ‘국가총동원관계예규철’이나 ‘국가총동원에 관한 서류철’, ‘병사(兵事)에 관한 서류철’ 등, 사회과(社會課)의 ‘노무조정예규(勞務調整例規)’, ‘군사원호예규(軍事援護例規)’, ‘군사부조(軍事扶助)에 관한 서류’ 등과 같이 1930년대 후반 총동원체제 운영과 관련한 문서들이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문기안의 기초지식』(이하 『기초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초지식』(1941년 출간, 총 588면)은 『실제』를 수정·보완한 책이다. 즉 ‘성전하국민총력(聖戰下國民總力)’ 시국에서 공용사무가 더욱 확충되어 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대량으로 충원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들 ‘공문취급 초심자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조선총독부의 이해와도 잘 맞아서 『실제』의 출판 때와는 달리 ‘본부의 원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경기도지사 스즈키와 토시오(鈴木壽男) 총독부분부 관방문서과장 노부하라 다카시(信原聖)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지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부 용자와 용어(用字와 用語)

##### 제1장 공문(公文)의 변천

제1절 한자 수입(輸入)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 무렵까지

제2절 도쿠가와(德川)시대

제3절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 제4절 공문의 현상과 장래성
- 제2장 황실에 관한 경어
  - 제1절 총괄적 주의
  - 제2절 용어의 해설
  - 제3절 모범문례
- 제3장 한자의 상식
  - 제1절 한자 이야기
  - 제2절 상용한자와 상용약자
  - 제3절 공문과 일문 타이프라이터
  - 제4절 틀리기 쉬운 문자
- 제4장 공문용자례(公文用字例)의 연구
  - 제1절 법령 용자(用字)의 불통일
  - 제2절 구공문용자례(舊公文用字例)의 행방
  - 제3절 현행공문용자례(아이우에오 순)
  - 제4절 오쿠리거나 사용법(送假名遣法)
  - 제5절 문부성식(文部省式) 국어 및 자음가나(子音假名) 사용법
- 제5장 공문용어의 특이성
  - 제1절 조선 언문(諺文)
  - 제2절 공문과 구어체
  - 제3절 구두법(句讀法)
  - 제4절 숫자 쓰는 법
  - 제5절 공용전보
  - 제6절 외래어
  - 제7절 로마자의 철자법
  - 제8절 만주국의 공문
- 제2부 공문의 구성
  - 제1장 문장 작성법
    - 제1절 문장을 배우는 자의 요령
    - 제2절 빠지기 쉬운 통폐
    - 제3절 문장의 정용(整容)
  - 제2장 공문의 기안부터 시행까지

- 제1절 기안의 마음가짐
- 제2절 기안의 자구수정의 실제
- 제3절 기안하는 법
- 제4절 회의(回議)부터 시행까지
- 제3장 공문의 종류별 의의와 형식
  - 제1절 법령문
  - 제2절 일용공문(日用公文)
  - 제3절 공용 서간문(후문체)
- 제4장 특종 공문(준공문)의 해설
  - 제1절 의식문·훈시·성명
  - 제2절 표창·징계·시말서류
  - 제3절 재결서·결정서
  - 제4절 광고
  - 제5절 선전
  - 제6절 회의(會議)에 관한 문서
  - 제7절 직원 원계(願屆)

〈부록〉 관계예규

목차만으로도 형식과 내용면에서 『실제』보다 더 짜임새있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부와 제2부의 구성은 『실제』와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기초지식』의 특징만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기초지식』에서는 제1부 1장의 공문의 변천에서 그 서술 대상을 한자가 수입된 이후의 일본 역사 전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제2장에 황실에 관한 경어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국가총동원’ 시기 천황에 대한 존칭 경어 등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황실사전』과 『황실경어편람』 등을 참조하여 황실관계 용어와 그 해설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제5장 공문용어의 특이성에서는 『실제』에는 없던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첫째는 ‘언문철자법의 연혁’에 관한 서술이다. 제1절 조선 언문 부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어독본』을 편찬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언문철자법」 제정과 국정교과서 편찬 등의 연혁을 소략하나마 언급하였다. 둘째는 만주국의 공문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북경관

화(北京官話)와 일본어가 병용되고 있어서, 만인(滿人) 직원에 의해 만주문으로 입안된 경우 일문으로 된 번역문을 함께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만주국의 「공문정식령(公文程式令)」과 몇 가지 공문을 사례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도 구성과 내용상 변화가 몇 가지 보이는데, 우선 제1장의 문장 작성법은 『실제』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다. 공문을 기안하는 법 등을 설명하기 전에 문장 작성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일반 상식 차원의 ‘알아두기’를 서술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실제』에서는 공문의 종류에 들어가 있었던 특수한 형태의 다양한 ‘준공문’들을 『기초지식』에서는 제4장 특종 공문(준공문)의 해설 부분으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 부분에서는 「공식령」(1907.2.1, 칙령 제6호, 1921.4 개정)과 ‘표준한자표에 대하여’(문부성)가 추가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와 『공문기안의 기초지식』에 대해서 그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 2책은 모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각 관청에서의 문서행정사무 과정은 물론 그 결과물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시의 일본어의 변화와 특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과 관련해서 작성된 일본 본국은 물론 조선, 대만, 중국 등 식민(점령)지역의 각종 기록이 생산되고 보존되는 배경과 정황,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3. 농 상 공 업

- 조선농업의 근대적 양상(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 조선흥업주식회사 25년지(朝鮮興業株式會社二十五年誌)
- 조선금융기관법규제요(朝鮮金融機關法規提要)
- 조선금융조합의 현세(朝鮮金融組合の現勢)
- 조선금융조합사(朝鮮金融組合史)
-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0년사(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 조선식산은행 20년지(朝鮮植產銀行二十年志)
- 조선은행 25년사(朝鮮銀行二十五年史)
- 조선의 간이보험(朝鮮の簡易保險)
- 조선운송합동사(朝鮮運送合同史)
-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
- 대흥전기주식회사 연혁사(大興電氣株式會社沿革史)
- 조선통신사업감독론(朝鮮通信事業監督論)
-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보고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產共進會京城協贊會報告)
-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 공진회실록  
(朝鮮總督府始政五年記念共進會實錄)



## 조선농업의 근대적 양상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 저 작 자 :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
- 발행사항 : 니시가하라간행회(西ヶ原刊行會)(東京), 1937년
- 총 면 수 : 377쪽



이 책은 한일합방 이후 전개된 조선농업의 현상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저술된 것으로, 저자는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이다. 히사마 겐이치는 조선 있어서의 농업생산 관계를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 살펴보고 있다. 즉 일본에 의한 강권적인 자본주의화가 조선의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황해도에서의 소작관 근무시절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지주와 마름, 그리고 소작농과의 접촉 속에서 발견하였던 생활사정과 심리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이 책의 교열을 담당한 토오하타 세이치(東畑精一)는 저자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농민생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편 조선농업경제의 서론
- 제2편 조선소작령을 지핀 제운동의 전망
- 제3편 합덕농민의 폭동 연구
- 제4편 위탁경작제도의 연구
- 제5편 농경의 언어-마름

제6편 농민가족경제와 그 경제규모에 관한 연구

제7편 노동대제도와 고지대제도

제8편 조선쌀의 가격 및 이출량의 계절적 변화

제9편 조선에 있어서의 농지분배에 대하여

제10편 단순 곡물경작 경영조직의 경제적 점검

제1편은 조선농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조선농업의 근대적 발전이 일본 자본주의의 급격한 침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농업지식이 조선농업의 자본주의화를 보게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농업발전은 미곡생산의 증식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주로 남쪽에서 비약적인 진척이 있었다. 미곡관계는 일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자는 이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근대적 토지제도의 강권적인 확립으로 자연경제가 파괴되고, 농민들의 토지이탈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토지소유와 부채지주제가 철저히 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는 농민생활의 궁핍함을 부추겼다.

제2편에서 저자는 당시의 소작령이 당국의 이상한 결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소작령」에는 총독부의 양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3편에서 저자는 합덕지역의 소요가 당시 양반계급에 속한 소위 토호농민과 일반농민사이의 신분경제적 지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원인(遠因)은 극단적인 주구착취(誅求擄取)라 할 수 있으며, 근인(近因)으로는 합덕지 개간에 따른 수세부과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조선 봉건질서의 붕괴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제4편은 위탁경영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위탁경영제도를 ‘궁핍의 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인 면에서도 사회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위탁경영제도는 악계약(惡契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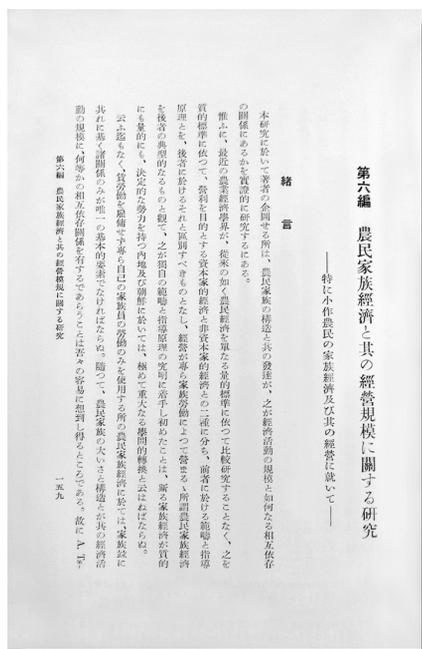
제5편은 마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마름을 분석하

고 있다. 그리고 경제사적인 관점에 볼 때, 마름이 언제 어떠한 계기로 농촌경제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마름의 시작을 조선중기로 보고 있다. 또한 마름이 중부이남에서 발달한 것에 주목하여 궁방진 및 권호(權豪)들의 토지 광점이 마름의 전개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제6편은 농민가족경제와 그 경영규모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509개의 농민가족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족경제의 생물적, 경제적 제요소를 알아보고, 통계적 고찰을 더하여 하나의 전형적인 가족경제를 추출하고 있다. 그가 밝히는 농민가족경제는 가족원 수 5.2명, 소비자 단위수 3.96, 노동자단위수 1.55, 경제면적 1.22정, 노동자단위당 경적면적 0.889정, 소비자단위당 경작면적 0.29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농민경제의 경영규모와 가족구조 관계를 개괄적인 일반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영규모가 큰 경제는 그 가족구성원의 스케일도 역시 크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양자의 경우 정비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가족경제와 노동자수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7편은 노동대제도와 고지대제도(勞働隊制度と雇只隊の制度)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먼저 노동대제도를 고찰하고 있다. 노동대제도는 1820년대에 발생하여 약 50년 동안 지속되다가, 1870년 이후에는 사멸되어 갔다. 고용대제도는 당시에조차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토지점병의 진전과 농민의 무산화(無産化)이다.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대단위 면적의 경작지는 가족만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노동력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고지대의 전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지대 제도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부터 인하여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제8편은 조선 쌀의 가격과 이출량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쌀 중 정·현미의 가격은 3월을 제외하고 1월대비 매달 상승하고 있다. 이어 6월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7월부터 하강하여 11월에 최저치를 나타낸다. 벼의 계절적 변동 또한 정·현미와 유사하다. 그리고 월별 가격변동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출량(移出量)의 계절적 변화는 특이한 곡선을 보여준다. 이출량은 1월부터 9월까지 다소의 변동이 있지만, 그 양은 수준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출량은 3월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7월에 최저점을 찍고, 9월까지 약간의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현저하게 그 양이 증가하는 등 큰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쌀의 이출량과 쌀 가격은 역비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조선 쌀의 가격이 고가일 때 이출량은 최저이고, 그와 반대로 쌀가격이 쌀 때는 매우 많은 양이 이출된다. 이는 일본 쌀값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9편은 조선에서의 농지의 분배를 로렌즈곡선을 응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로렌즈곡선을 통해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저자는 각 도를 농지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전북, 경기, 충남, 황해, 경남, 전남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농지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평균이상이라고 부연한다. 평균이하는 전남, 평남, 강원, 평북, 경북, 함남, 함북의 순위를 나타낸다.

제10편에서는 단순한 곡물경작 경영조합을 점검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에서 세워야 할 도작경영의 장래에 대해 여러 방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도작(稻作)의 단순경영지대에 대한 확정과 그 경영조직의 연구이다. 둘째는 도작의 단순경영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확보이다. 여기에는 가격의 안정과 판매조직의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수리정책을 확충하고 일반 토지에 대한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천수답에 대한 생산기술의 연구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셋째는 도작의 단순경영에 있어서의 조직의 복잡화이다. 부업을 보급하고, 그 생산물의 판매조직과 아울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답 이용의 개선 증진이 필요하다. 즉 보리농사를 촉진하고 채소재배 등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도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일제는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일제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농업의 수탈로 이어졌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조선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한 일제는 전형적인 부등가 교환방식을 통해 쌀, 콩, 소가죽 같은 원료를 조선으로부터 값싸게 수입하고, 석유와 광목 같은 공산품은 비싸게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당시의 농업경제의 사정은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저지는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 농업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수리조합사업은 일반농민들로 토지를 빼앗아 토지를 집적하는 대지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의 농촌사회를 대지주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재편 강화해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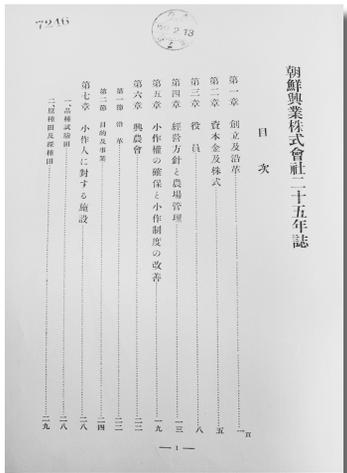
문제는 당시 쌀 생산으로 인하여 조선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았는가 하는 점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의 농업이 개발되어 쌀의 경우 52% 정도 증산되었다. 상당 정도의 개발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소유한 논 면적은 1910년 43,000정보에서 1935년 308,000정보로 늘어났다. 조선 전체의 논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서 16.9%로 늘어난 것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농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일제강점기 농촌경제의 사정을 추론해 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농촌경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허수열, 2005, 『개발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 조선흥업주식회사 25년지(朝鮮興業株式會社二十五年誌)

- 저 작 자 : 카누마 료조(鹿沼良三)
- 발행사항 : 조선흥업주식회사(朝鮮興業株式會社)(東京), 1929년
- 총 면 수 : 120쪽



이 책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조선흥업주식회사가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여 발행한 것이다. 조선흥업주식회사가 러일전쟁의 와중에 창립한 이래 거쳐 온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한국에 있어 수탈의 과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록에 실려 있는 각종 통계표는 일제시기 한국의 경제사정을 설명해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경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가기록

원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호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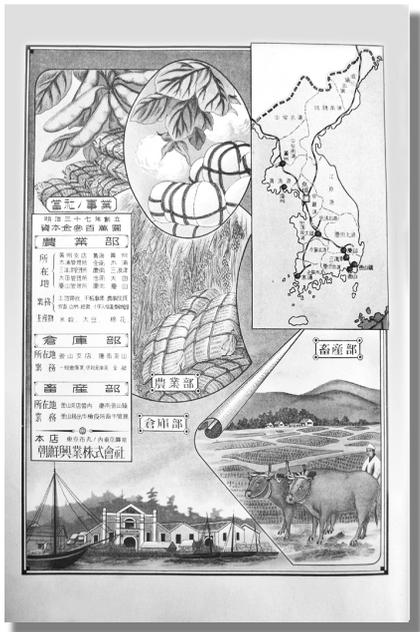
제1장 창립 및 연혁

제2장 자본금 및 주식

제3장 역원

\* 조선흥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윤수종, 1988,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경경영 분석」, 『사회와 역사』12, 한국사회사학회를 참조.

- 제4장 경영방침과 농장관리
- 제5장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제도의 개선
- 제6장 흥농회
- 제7장 소작인에 대한 시설
- 제8장 창고부와 그 성적
- 제9장 축산부의 과거와 현재
- 제10장 식림사업
- 제11장 회사의 과거와 현재
- 제12장 본지점관리소
- 제13장 정관



조선흥업주식회사는 토지저당금융사업과 소작제농장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점차 농산물매매와 토지의 위탁경영, 창고업, 운송업, 금융대부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정관에 나타난 설립목적은 ① 조선내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조차(租借)하여 그것을 소작시키는 것, ② 조선의 농사 개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는 것, ③ 조선 내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부금을 주는 것, ④ 앞의 세 가지 항목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사개량을 구실로 하여 수리조합을 조성하여 조선 농민에게 수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투자자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착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나아가 토지를 담보로 한 대부금사업은 곧 고리대금업과 다름이 아니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1904년 9월 6일 28인의 발기인으로 동경에 본점을 두고

창립되었다. 처음 자본금은 100만엔이었으나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1914년에는 300만엔으로 급증했다.

일본 독점자본의 대표적인 구현체인 시부사와(澁澤)재벌의 직계 자회사였던 조선흥업주식회사는 1905년 3월말까지 경성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에서의 토지 매수 계획을 세웠다. 이후 서선(西鮮) 지방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1905년 4월 황해도 황주에 황주농장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된다. 곁이포 출장소를 중심으로 설립된 황주농장은 대규모 집단지로서,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중추적인 농장이 되었다. 황주농장은 처음 황해도 황주군 곁이포에 경지 약 3,000정보를 매수하면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 한국인들의 반발이 강경하자 곁이포에 주둔한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토지를 매입했다.

우선 대동강의 지류인 황해도 황주군의 왕주천 주위를 중심으로 1905년 5월까지 2,366정보의 기경지를 매수하였는데, 대부분이 밭이었다. 그 후 1907년 말까지 황주 출장소에서 매수한 경지는 5,350정보에 달했다. 이 황주농장은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소유한 규모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래서 조선흥업주식회사의 보고로 여겨졌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1906년과 1907년에 남쪽지역의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경부선 주변의 평택, 대전과 전라남도 목포에 관리소를 설치하고 농장을 개설하였다. 대전관리소는 1907년 유등천변에 설치되었다. 전답을 매수하여 농사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설립당시의 목적이었다. 처음에는 뽕나무밭과 잠실(蠶室)을 두어 한국인의 잠업 전습(傳習)을 독려하였다. 1911년에는 평택관리소를 합병하여 운영하였다.

1909년 6월에는 한국창고주식회사를 병합하고 인천 및 평양 출장소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의 부산 본점을 지점으로 하였다. 부산은 대만,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결되는 교통요지로서 연락관문으로 역할 하였다. 조선흥업주식회사가 부산에서 최초로 창고업을 개시한 것이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검역소 및 부속건물 일체의 설비를 한국정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류중인 소를 양육·관리하고 선박에 싣는 업무를 허가받음으로서 이출소 관리업도 하게 되었다.

1910년에 들어서는 영업목적이 비슷한 한국척식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마산출장소 관내의 토지를 처분하고 또 평택출장소 및 파출소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새로 경산농장을 개설하는 한편으로 황주지점과 목포·삼랑진·대전·경산의 4개 관리소를 중심으로 농사경영에 집중하고, 부산지점에서는 창고업 및 이출소 사육·관리 및 선박 탑재 업무를 진행하였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회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13년 한일합방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명칭을 한국흥업주식회사에서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조선에서 최대 규모의 일본인 지주회사로 성장하게 된다.

조선흥업주식회사의 토지매입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수확고와 농산물 가격의 변화에 대한 위험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한 곳의 토지를 집중 매수하기 보다는 적당한 경지 면적을 가진 농장을 여러 곳에 분산 설치하였다. 즉 안전한 기반을 다지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장의 개설에 있어서는 각지의 작황을 평균함과 함께 농산물 가격의 평균에 의해 해마다의 수익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지의 농장을 개설한 것이다. 그리하여 매년 “일정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그 후 ‘수확이 불안정하고 관리가 불편한 토지를 처분하고 대신 수확이 안정되고 관리가 편리한 토지를 추가 매수하여 농장을 정리’하였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일본인 대지주 농장으로 평가되듯이, 많은 소작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1916년 5,025명의 소작인을 거느린 조선흥업주식회사는 1920년에 이르러서는 4,93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1921년 9,778명으로 증가하더니 1922년에는 13,420명으로 늘어나고, 1928년에는 16,0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8년도 소작인의 분포를 보면, 황주가 5,119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가 4,562명, 삼랑진이 2,393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대전이 1,904명이며 경산이 2,059명을 기록하고 있다.

소작료는 초기에 타조법을 사용하여 비옥한 논에는 수확의 4/10를 징수하였다. 그 외의 논에서는 1/3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점차 소작료가 상승하여 6월에 가깝게 되었다. 소작료 형태는 설립초기에는 논은 벼를 대상으로 하고, 밭은 콩으로 하는 물납 형태로 하였다.

이 책은 품종시험전과 원종전 및 채종전의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우량품종의 선택은 농사의 개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내용은 위탁채종전(委託採種田)의 도입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 품종을 한 곳에서 계속 재배할 경우 나타나는 품종의 퇴화를 막기 위해, 1921년부터 종자교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작료와 함께 다음 해 사용하는 것으로 1두락 당 2되씩의 종자를 예탁하게 하고, 그 다음 해의 묘판 만드는 시기에 직영 채종전의 개량 품종을 보급하였다. 나아가 채종전이 모자라자 직영 원종전(原種田)에서 재배한 순계 종자를 비료 및 재배수당을 지급하면서 독농가에게 재배·보급케 하는 위탁 채종전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선흥업은 사용할 비료의 종류와 용량을 지정하고, 그것을 소작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자급비료로서 퇴비뿐만 아니라 녹비도 재배·사용케 하였으며, 퇴비 저장소를 건립하고 퇴비 품평회도 개최하고 있다.

신품종의 파종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금비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조선흥업도 금비 사용증대를 적극 강요하게 된다. 그런데 소작농민으로서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회사는 ‘금비 반액 보조’제도와 ‘구입자금의 무이자 대부’, ‘비료공동구입’ 등의 방법을 써서 장려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소작인 1명 당 4명의 연대보증인을 두게 하는 이른바 5인조제도를 운영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상호 보증인이 됨으로써 연대책임을 지게 해 회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최하위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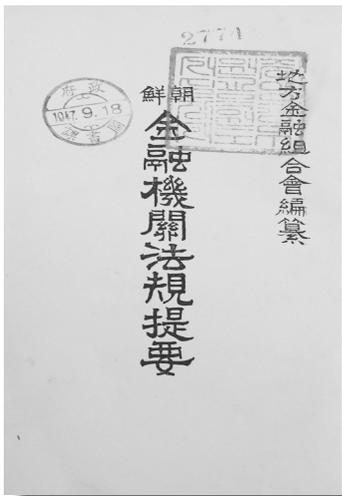
한편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이익률을 보면, 1904년 첫해만 적자를 보이고 있을 뿐 줄곧 흑자를 보고 있다. 이는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식민지 지배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하였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일제강점기 농촌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토지수탈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특히 일본 중앙재벌의 계열회사로 성장한 조선흥업주식회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대규모의 토지회사로서 독점자본의 식민지 수탈에 앞장 선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당시 한국경제의 변화과정도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토지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조선금융기관법규제요 (朝鮮金融機關法規提要)

- 저 작 자 : 토요후쿠 유타카(豊福豊)
- 발행사항 : 지방금융조합회(地方金融組合會)(京城), 1915년
- 총 면 수 : 621쪽



이 책은 한일합방 초기의 금융기관에 관한 당시의 법규와 훈령, 통첩 및 처분에 등에 대해 편집해 놓은 것이다.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한국의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위해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물론 감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일제의 의도가 담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 후반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한 「은행령」(1928)과 「금융조합령」(1929)의 개정이 있기 전의 규정안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일제는 한국에서 1906년 「은행조례」와 1912년 「은행령」 제정을 통해 일반은행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의 체제가 1928년에 크게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융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은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지방금융조합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회사령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싣고 있어 금융기관과 관련한 법령을 망라해 놓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은행

제1장 일반법규

제2장 조선은행

제3장 농공은행

제4장 한성은행 및 조선상업은행

제5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제2편 지방금융조합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설립

제3장 정관

제4장 등기

제5장 관리

제6장 직제 및 급여

제7장 복무징계 및 신원보증

제8장 가입 및 탈퇴

제9장 업무집행과 사무정리

제10장 수입지출증명

제11장 기타

<부록>

<관계법류>

제1편 은행에서는 우선 일반규정으로서 「은행령」과 「은행령시행규칙」, 「도부군 통계자료제출(道府郡統計材料提出)방식에 관한 건」 등 3건의 법규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2장 조선은행에서는 「조선은행법」, 「조선은행정관」, 한국은행조례에 정해진 것 외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의 명령, 조선은행권의 제조발행손권인환

및 초각 등의 수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조선은행은 1911년에 제정된 「조선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인데,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제일은행의 업무를 인계받아 한국은행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새로이 조선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조선은행에서는 한국은행권과 제일은행권을 함께 통용시켰고 중앙은행 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대출업무도 겸하고 있었다.

3장은 농공은행과 관련한 법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공은행령」, 「농공은행감독규정」, 「농공은행정관」, 「농공은행영업구역」, 「여유금액입은행에 관한 건」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외에도 「농공은행령 중 의의(疑義)에 관한 건」, 「주주자격증명에 관한 건」, 「업무집행상 총독부의 승인을요하는 건」, 「취체역회부의 사항(取締役會附議事項)에 관한 건」, 「손익예산표 제출에 관한 건」, 「지점업무 검사집행에 관한 건」, 「지점검사에 관한 건」, 「예입보조화취급에 관한 건」 등의 법규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제4장에는 한성은행 및 조선상업은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성은행증자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취체역회부의 사항에 관한 건」, 「업무 집행상에 관한 명령의 건」 등이 있다.

제5장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대해 적시해 놓고, 이어 동양척식주식회사정관, 이주규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편은 지방금융조합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에서는 「지방금융조합령」, 「지방금융조합령 시행기일의 건」, 「지방금융조합령 제9조에 의한 지정은행의 건」, 「지방금융조합령 중 의의(疑義)의 건」 등 4개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금융조합은 1907년에 설치된 화폐정리로 혼란을 겪게된 농촌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18년 지방금융이 금융조합으로 변경되면서 촌락금융조합과 도시금융조합 두 종류가 존재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설립에 대한 법규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방금융조합설립준

비에 관한 건」이 보이고 있으며, 「지방금융조합업무구역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기본금하부명령(地方金融組合基本金下附命令)」의 내용이 보인다.

제3장은 정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2개의 법규를 안내하고 있는데, 「지방금융조합정관안에 관한 건」과 「지방금융조합정관에 관한 건」이 그것이다.

제4장에는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5개의 법규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방금융조합 등기신청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 등기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 이사경질에 의한 변경등기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등기에 관한 건」 등이 그것이다.

제5장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신설 지방금융조합 평의원 선임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 명예직원 사무장리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 역원의 사임사유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령 중 역원의 선임 및 퇴임에 관한 의의 건」 등이 있다.

제6장에서는 직제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총 9개의 규정이 담겨 있다. 직제 및 직원급여규정의 준칙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여비규정 준칙, 임용 및 급여에 관한 내용, 견습직원의 배치와 관련한 내용, 수당지급과 관련한 내용, 명예직원위로금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 규정준칙 해석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7장은 복무징계 및 신원보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금융조합 이사 복무 및 징계규정에서 직원의 복무규정과 신원보증금 규정, 직원의 신원보증금 취급방법 등 총 8개의 규정이 보이고 있다.

제8장은 업무집행과 아울러 사무정리의 규정을 정리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총 29개의 규정이 보이고 있다. 「업무감독규정」을 비롯하여 「업무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한 인가사항」, 「인가사항에 관한 건」, 「업무운용에 관한 건」, 「무곡자금대부(質穀資金貸付)에 관한 건」, 「예금업무 취급에 관한 내용」, 「위탁판매취급에 관한 내용」, 「구화폐 인상에 관한 내용」, 「엽전운반비 증명방법의 건」, 「예입보조화 운반

증명 방법의 건, 「잉여자금 처분에 관한 내용」, 「장부 및 서류양식에 관한 내용」, 「경비예산서에 관한 내용」 등이 그것이다.

제10장은 수입지출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조합 수입지출 결산증명 방식에 관한 건」, 「금융조합 수입지출 증명에 관한 건」 등 3개의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11장은 기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금융조합에 관한 규정 중 의의에 관한 건」, 「지방금융조합에 있어서의 출자구수(出資口數) 감소에 관한 건」 등 6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외에 부록으로 관계법령을 실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령」, 「조선민사령」, 「공탁법」,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이식한령(朝鮮利殖限令)」 등 14개 규정이 있다.

1910년대 후반은 호황으로 회사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설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그 취급업무도 매우 다양화되었는데,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다르게 신탁이나 무진(無盡), 저축 등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했던 기관들이 부실화되면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1920년대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제에 의한 금융기관의 설립은 당시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로 편입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일제의 자본이 조선에 유입될 수 있는 안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한 금융자본의 잠식과정을 제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조선금융조합의 현세 (朝鮮金融組合の現勢)

- 저 작 자 : 오쿠치 히로시(小口弘)
- 발행사항 : 조선금융조합연합회(朝鮮金融組合聯合會)(京城), 1937년
- 형태사항 : 398쪽

이 책은 조선에서의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조합 연혁의 대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금융조합계통기관의 조직

제2장 금융조합의 현세

제1절 개설

제2절 금융조합의 업무

제3절 금융조합에 대한 지도시설

제4절 식산계 및 그 사업

제3장 연합회의 현세

제1절 개설

제2절 연합회의 업무

제4장 금융조합연혁의 개요

제1절 금융조합령의 제정 및 변천

제2절 중앙연합조직으로의 추이와 금융조합연합회령의 제정

제5장 결론

부록

1. 금융조합연표

2. 역대감독관청관계자 및 역대연합기관관계자

3. 금융조합일람표
4. 표창조합 및 표창인명록
5. 금융조합 및 동연합회누년업무통계표

우리나라에서 금융조합제도가 시작된 것은 1907년 5월 30일 「지방금융조합규칙」이 제정되고 공포되면서이다. 특히 조선금융조합은 조선총독부 체제 하의 30여 년 동안 사업수행 과정에서 총독부의 보호와 장려로 발전하게 된다.

창립 초기에는 조합의 수는 10곳, 조합원 수는 5천명이었으며, 대출금도 1만6천엔에 불과하였지만, 30년이 흐른 1937년 경에는 조합수가 709곳에 지소가 209곳에 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가 516만명, 대출금이 2억2천8백만엔, 예금이 1억6천2백만엔에 이를 만큼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금융조합은 조선에서 금융과 사업부분에 있어 새로운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로는 식산계가 그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위로는 중앙연합조직을 정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은 금융조합이 당시 사회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에서의 금융조합의 변화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금융산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의도 갖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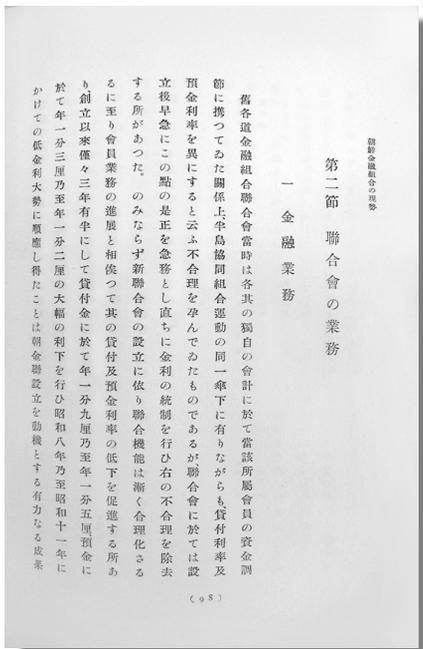
금융조합은 식산계와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 등 세 가지 체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식산계는 조합에, 조합은 연합회에 각각 가입하여 조합의 제반사항을 연합회를 중핵으로 운영하게 된다.

식산계는 1935년 8월 30일 제령 하여 제12호 「식산계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인보공조(隣保共助)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식산계는 계원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품의 판매와 필수품의 구매, 공동시설, 산업의 지도, 공제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공동구입 및 공동판매와 관련이 있다. 계

에는 주사와 부주사 및 감사 각 1인이 배치된다. 주사와 부주사는 계원들의 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는 계가 소속된 금융조합 또는 산업조합에서 충원한다. 주사의 임기는 5년이며, 부주사의 임기는 3년이다. 주사는 식산계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1907년 5월 30일에 발표된 「지방금융조합규칙」은 1914년 5월 22일에 제령 제22호 「금융조합령」으로 이어진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금융조합의 업무는 첫째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둘째 조합원을 위한 예금 또는 적금의 수입, 셋째 조합원 화물의 창고보관 또는 창하증권(倉荷證券)의 발행, 넷째 공공단체와 산업조합, 무진회사(無盡會社) 또는 무진관리회사(無盡管理會社)로부터의 예금 수입 등이다.



연합회는 1933년 8월 17일 제령 제7호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에 기초하여 동월 31일에 설립되었다. 회장은 1인이며, 이사는 13명 이상, 감사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 책에는 조선금융조합의 출자금을 비롯하여 적립금, 정부하부금 등이 도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의 중요성은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 부록은 먼저 조선에서의 금융조합의 연표를 정리하고 있다. 연표는 1904년 한국 정부재정고문부가 설치되는 시기부터 출발한다. 이는 일제의 한국에서의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정책이 이 해에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감독관청 관계자 및 역대 연합기관 관계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명단에는 조선총독부의 역대 간부를 비롯하여 지방의 간부까지 수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회와 관련된 단체의 간부들 명단도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융조합의 활동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금융조합일람표는 각 도에 소속된 지역의 조합을 촌락과 도시로 나누어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 조합수와 지소의 수는 물론 설립년월일, 조합장, 이사, 지소부 이사, 조합원수, 출자금, 적립금, 대출금, 예금 등의 통계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금융조합 및 동연합회 누년 업무통계표는 금융산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는 금융조합(총괄) 누년 업무통계를 비롯하여 촌락금융조합 누년 업무통계, 도시금융조합 누년 업무통계,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 누년 업무통계가 담겨져 있다.

이 자료에는 매년 변화하고 있는 회원수와 조합수, 그리고 출자불입제액, 정부대하금, 제적립금과 차입금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예금과 대부금, 손익계산 등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일제에 의한 금융산업의 식민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일제강점기 경제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조선금융조합사(朝鮮金融組合史)』

- 저 작 자 : 조선금융조합협회(朝鮮金融組合協會)
- 발행사항 : 조선금융조합협회(朝鮮金融組合協會)(京城), 1929년
- 총 면 수 : 837쪽

『조선금융조합사』는 1929년 조선금융조합협회에서 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본문 6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837쪽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편 총설

제2편 촌락금융조합의 각종 사업의 발달 및 변천

제3편 도시금융조합의 각종 사업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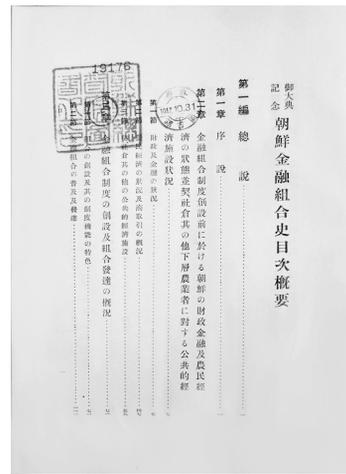
제4편 금융조합연합회의 각종 사업의 발달

제5편 금융조합령, 금융조합업무 감독규정 및

정관안(定款案)

제6편 금융조합 및 동(同) 연합회 관계의 법인단체

<부록>훈시 및 고사, 역대 금융조합 관계자 명단 등



이 책은 서두에 총독부 인사 및 협회 전임관, 금융조합 건물 등의 사진을 실고 있으며 서문은 당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쿠사마 히데오(草間秀雄)가 작성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1928년의 쇼와(昭和)천황 즉위식을 기념하여 발간되었으며, 약 20여 년간 조선금융조합의 변천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제1편은 총설로 여기서는 구한말 이래 금융조합의 창설과 변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조합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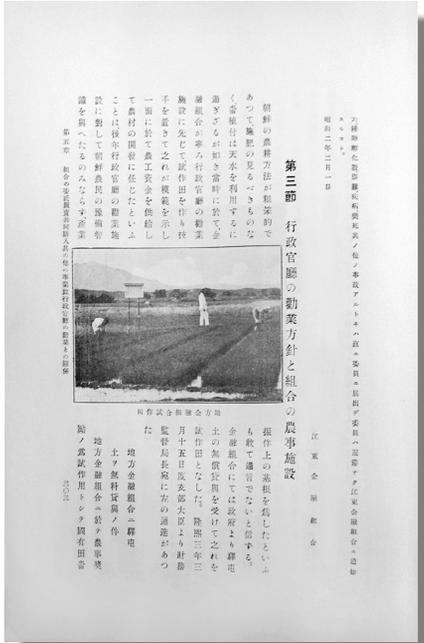
이전 조선의 재정·금융 환경과 조선금융조합의 설립 배경이다. 두 번째 부분은 금융조합의 설립 이래 1929년까지의 변천과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다시 창립기(1908~1914년), 약진기(1914~1918년), 현재기(1918~1929년 현재)로 구분하였다.

우선 조합설립 이전 대한제국기의 재정·금융의 상황을 ‘은행이라고 칭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없고 화폐의 가격이 품질에 의해서 달라지고, 화폐가 남발되는 등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던 것이 1904년 8월 일제의 재정고문부 설치, 1905년 제일은행의 중앙은행화, 한성공동주식회사의 설립, 식산은행의 전신인 수형조합(手形組合)의 조직 등의 과정을 거쳐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조선금융조합도 그 당시에 설립되었던 금융기관의 하나로, 재정고문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계획하에 소농에 자금을 융통하고 위탁판매, 공동구입의 실시와 산간벽지에 새로운 화폐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고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금융조합은 1907년 5월 지방금융조합규칙의 제정을 근거로 설치된 광주지방(전남) 금융조합이었다.

금융조합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창립기는 1907년부터 1915년 「지방금융조합령」 발표 직전의 시기이다. 이 때는 소액의 자금을 대부하는 외에 농사의 개량, 화폐의 정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금융조합의 기초를 다진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약진기는 1914년부터 1918년의 지방금융조합령 개정의 직전까지의 시기로, 예금의 확장으로 대부금의 한도가 늘어나고 일본인 소농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조합원에게 출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잉여금의 배당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높아진 시기였다. 현재기는 1918년부터 1929년 현재까지의 시기로 도시금융조합의 설립을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철폐하고 대부예금의 한도를 확장하는 등 운영전략을 개선하고, 각 도내의 금융조합에 자금을 융통함과 동시에 연합회를 창설해서 업무상의 지도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1919년의 3.1운동이나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자평하였다.

제2편에서는 촌락금융조합의 사업내용과 연혁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합 창립 당시 조합의 주요한 임무는 소농금융 즉, 자금의 대부업무 외에 농기구개선, 작물종자개량 등의 권업사업, 화폐 정리사업 등이었다. 더불어 당시에 소농민만을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조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11년 12월 금융조합 감독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조합의 감독권한이 총독부의 지방장관에게 예속되었다. 즉, 총독부의 농업정책에 순응하여 이를 최말단의 촌락까지 전파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댓가로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때 농공은행과 업무상의 제휴를 구체화 하였다고 한다. 1914년에는 「지방금융조합령」을 공포하여 조합원을 소농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농업종사자 일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본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18년 「금융조합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대부업무에 전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1929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제3편은 도시금융조합의 사업 내용과 그 연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금융조합은 1907년 창설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소농민의 구제와 일제의 조선 통치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융조합의 자금대부 업무도 큰 실효를 거두어 철도·전기 사업의 발흥 등 대규모의 공사 수요 창출과 상거래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강제병합 당시 조선의 연생산고가 약 4억엔 정도였지만 1920년대에는 약 10억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상공업의 발달은 동시에 소상공업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소상공업자를 위해 도시금융조합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총독부는 도시금융조합의 설립을 위해

1918년 「지방금융조합령」을 「금융조합령」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도시상공업자의 금융조합 가입을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2월에 경상남도 진주, 황해도 해주, 충청북도 청주에 도시조합이 설립되었고 1919년 2월에는 경성 종로 및 기타 각지에 순차로 도시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1927년도 현재 도시금융조합은 모두 60개로 증가하였으며 그 조합원은 1개조합 평균 421명으로 촌락조합의 평균 902명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다. 지역별 조합수와 직업별 조합원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지역별 조합수 및 직업별 조합원 수 현황표 (1927년 현재)

도 별	조 합 수	조합원수	농 업 자	상공업자	기 타
경 기	11	5,196	311	3,081	1,804
충 북	2	485	113	259	113
충 남	5	1,577	278	961	338
전 북	4	2,020	300	1,202	518
전 남	7	2,359	506	1,347	506
경 북	5	1,571	103	1,144	324
경 남	8	4,577	463	2,509	1,605
황 해	3	1,145	210	722	313
평 남	3	1,885	59	1,207	619
평 북	3	1,089	57	758	274
강 원	3	495	76	355	64
함 남	2	1,009	-	874	135
함 북	4	1,780	128	1,258	394
총 계	6	25,288	2,604	15,677	7,007

도시조합의 창설 이래 10년동안 대부, 예금은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여 1928년에는 출자금 총액이 3,196,470엔에 이르는 등 나날이 발전하였다. 또한 그 동안 발생한 제반의 문제들은 1922년 조직된 전선도시금융조합간화회(全鮮都市金融組合懇話會)를 통해서 함으로써 도시금융조합은 점점더 번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4편에서는 각도금융조합연합회의 각종 사업과 그 연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금융조합연합회가 창설된 것은 1918 「금융조합령」 개정의 결과인데,

연합회는 소속조합을 위해 자금의 조절을 도모함과 더불어 업무를 지도하여 전체적으로 조합의 수준을 평준화 시키는 기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연합회의 활동 초기는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계속 등귀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다가 1918년의 종전으로 이러한 호황이 막을 내리는 시기였으며, 1919년의 3.1운동과 대가뭄, 또 가뭄으로 인한 일본 곡가폭락의 여파로 농촌이 큰 수난을 겪게 된 시기였다. 이에 연합회는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4백만엔의 융자를 받아서 소속조합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1919년도에 재차입금은 약 1,047만엔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약 1,561만엔으로 약 50%가 늘었다. 또한 대부금도 약 1,279만엔에서 약 1,828만엔으로 약 43%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속조합 수는 연합회 창립 당시 278개였던 것이 1920년에는 400개로 늘어났다. 총 예금액도 200만엔이던 것이 1,000만엔으로 늘고 대부금 또한 690만엔에서 3,100만엔으로 증가하였다. 대부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조합의 증설 및 1개 조합원에 대한 자금유통제도액의 확대, 조합금융에 대한 서민의 이해 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연합회를 통해서 금융조합이 자금을 유통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식산은행과 연합회의 제휴가 원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전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다시 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1929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1927년 현재 연합회의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927년 현재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금융업무 실적표

(단위: 엔)

예금	대부금	출자금	손익계산		
			이익금	손실금	계
28,257,812	38,941,647	380,500	3,780,385	3,450,452	319,932

이 책의 제 5편은 「금융조합령」, 「금융조합업무감독 규정 및 정관」에 대해, 제 6편은 금융조합 및 동연합회와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조선금융조합협회, 조선산업조합 및 어업조합, 축산동업조합 및 축산동업조합연합회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중에서 조선금융조합협회는 본 책자를 발간한 기관으로 이에 의하면 협회는 조선의 금융조합운동의 중앙기관으로 조선경제협회를 모태로 한 기관이라고 한다. 과거 지방금융조합이사구락부와 지방금융조합회, 조선경제협회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1928년 재단법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설립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훈시 및 고사(告辭), 역대 금융조합 관계자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식민지시기 금융기관은 조선은행, 농공은행(조선식산은행), 보통은행(현재의 일반은행),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은행은 일본 제일은행의 후신으로 식민지 조선의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었다. 농공은행은 1906년 산업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보통은행은 현재의 일반은행과 같은 것으로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 초까지 20여 개가 설립되었다. 한편 동척은 일본인 이민기관으로 1908년에 설립되었으나 국내 최대의 지주회사로 변화하여 동척 산하의 소작농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였다. 지방금융조합은 토지의 자금화와 농촌의 화폐정리사업, 납세선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단위 이하의 농촌에 설립한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 1907년 처음 설립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식민지 금융기관들은 1910년대 말 일제의 경제호황을 타고 점차 확대·개편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금융조합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1929년 현재 전체금융기관 중 예금부분 2위, 대출부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 또한 금융조합의 중앙기관으로서 조선금융조합협회가 1928년 조직되어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 졌다. 이에 반해 조합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인 위탁판매와 공동구입은 192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 1928년 완전히 중단되었다.

1930년대 금융조합은 일제의 준전시 경제체제에 발맞추어 국민저축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촌자금을 흡수하였는데, 자금의 흡수는 식산계(일제가 영세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한 금융조합의 산하 기구)의 설치 등 농촌사회의 조직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총독부가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부채근절이나 토지구입 정책에 편승하여 금융조합은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였다. 그러

나 부채정리자금을 받는 조합원은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있는 부농 중심이었으며 자작농지 창설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소농 등이 대거 사설금융기관으로 몰려 1931년 현재 개인이나 무진회사 등의 대출금이 4억 3천여만엔으로 은행 및 금융조합의 1억 1백여만엔보다 훨씬 많았다. 즉 금융조합의 자금대부는 애초부터 소농민의 구제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

1937년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이후 식민지 금융부문은 전시체제에 맞춰 운용되었다. 「임시자금조정법」의 실시를 통해 조선은행은 일본은행 등으로부터 오는 차입금과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과 유가증권 매입 등을 운용했는데, 1940년대에는 대출을 크게 상회하여 유가증권(전시국채 등)을 매수했다. 식산은행은 예금과 식산채권 발행액을 기반으로 식민지 군수공업화에 앞장섰다. 특히 식산은행의 대출은 1939년 광공업자금의 비중이 농업자금을 크게 능가하기 시작했다.

보통은행은 점차 병합되어 갔는데, 전쟁이 장기화 되자 금융기관과 자금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단 두 개의 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상업금융을 담당하던 보통은행은 대출에서 1930년대 말 이후에 광공업자금이 2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유가증권 매입도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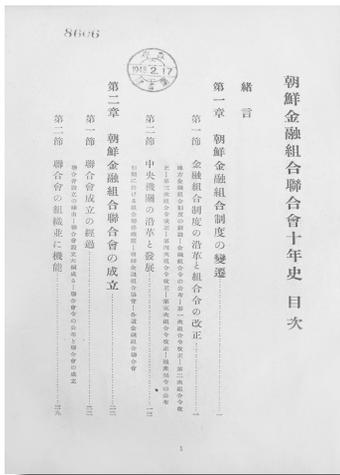
금융조합은 1933년에 각도 금융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동원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한편 금융조합은 일제 말기까지 거의 전 농가를 포섭하였다. 이러한 조직력의 확장과 함께 징용이나 징병 인력이 보내오는 송금까지도 강제적으로 조합에 예금토록 하는 등 수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대출 부문에서는 1930년부터 1938년까지 식산은행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다가 그 이후 일본 패전까지는 대체로 동척을 제외하고 4위 정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조합의 대출상의 위치변화는 극심한 전시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조정했던 총독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였다. 각 기관의 예금과 대출을 비교해 보면, 보통은행 중 본점은 행과 금융조합이 1940년부터 거액의 예금초과로 돌아선 반면, 타 은행은 대출초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금융조합과 본점은행이 식민지 민중들로부터 자금을 수

탈했다면, 나머지 기관들이 자금을 전쟁수행에 동원하는 구조를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해보면 금융조합은 소농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식민지 금융체제의 최말단에서 농업자금의 통제와 일제의 전쟁자금원 구실했으며, 이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가 우리나라 금융계를 식민지 금융체제로 재편,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0년사』 (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 저 작 자 : 조선금융조합연합회(朝鮮金融組合聯合會)
- 발행사항 : 조선금융조합연합회(朝鮮金融組合聯合會)(京城), 1944년
- 총 면 수 : 301쪽



『조선금융조합연합회10년사』는 1934년 동 연합회에서 발간한 책으로, 총 5장과 서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301쪽이다. 구체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언

- 제1장 조선금융조합제도의 변천
- 제2장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성립
- 제3장 연합회 사업의 진전
- 제4장 연합회의 현세
- 제5장 결언
- 부록

이 책은 서두에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본부 사진 및 각 지부, 주요 인사에 대한 사진을 실고 있으며, 서문의 간행취지는 연합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변천과정을 돌아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제 1장에서는 금융조합제도의 변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지방금융조합의 창설과 금융조합령 제·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금융조합의 중앙기관적 성격을 갖는 초기의 기관들과 금융조합협회에 관해서도 그 연혁을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금융조합제도는 구한국 말기 농업금융의 개선과 지방농업개혁의 조성을 목적으로 재정고문부에 의해 창설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총독부의 감독 하에 조선산업의 개발, 지방금융의 소통, 기타 국책 공헌 등의 역할을 하였

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조합령의 개정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시 기	특 징
제1기(1907~1918)	단위조합 확충 시대
제2기(1918~1933)	지방연합회 시대
제3기(1933~1944 현재)	농촌진흥운동 시대, 전시협력 시대

제1기는 1907년 조합 창설시기부터 1914년 「조합령」 제정 이후, 1918년 1차 조합령 개정까지의 시기로 단위조합을 확충하는 시기로 보았다. 이 기간 중 1911년에 일제는 금융조합 업무를 기존의 탁지부에서 조선총독부로 직속화 하였다. 즉, 금융조합을 매개로 당시 인구의 대부분인 농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조합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총독부에서 1만엔을 무이자로 대출하였으며, 1914년의 「금융조합령」을 통해 비조합원도 예금을 가능하게 하는 등 조선의 농촌금융을 잠식해 나갔다. 또한 이 시기에 농공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면서 농공은행의 보조기관 구실도 하였다.

제2기는 1차 금융조합령 개정부터 1933년 중앙연합회 창립이전까지의 시기이다. 1차 금융조합령의 개정으로 금융조합은 농민이외의 조합원을 허용하였으며, 도시 금융조합을 창설하였고, 각 도를 단위로 자금조절과 업무지도를 담당하는 각도금융조합연합회를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금융조합은 공동구매나 위탁판매와 같은 농촌구제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추게 되었다. 당시 각도금융조합연합회의 탄생은 자금부족 조합과 자금과잉 조합을 연결, 조절해주는 기능과 조합수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지도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각도 단위로 식산은행(농공은행의 후신)에 예금을 맡기고 부족분을 대출받으면서, 식산은행-각도 금융조합-단위조합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농촌금융체계를 형성하였다.

제3기는 농촌진흥운동시대, 전시협력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933년 금

금융조합연합회의 탄생부터 이 책이 간행된 시점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30년 고양된 민족운동 및 농민운동을 무력화시키고자 농민안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조합연합회가 농촌진흥운동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의 개전과 함께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에 적극협력하여 조선의 농촌자금을 전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겠다. 이 시기 농촌진흥운동의 추진과 전시체제의 자금원 노릇을 위해 일제는 1935년 「식산계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밝힌 식산계의 설립목적은 농촌지도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즉 농촌진흥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태평양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쟁자금의 조달을 위한 저축운동의 수단과 전시체제하에서 촌락단위의 소농민까지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준통치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식산계는 1944년까지 그 수가 4만7천여개에 달하여 거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금융조합의 중앙기관으로는 초기에 ‘금융조합이사회구락부’와 ‘지방금융조합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구락부’의 경우 금융조합 이사들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수준이었으나 ‘지방금융조합회’의 경우, 잡지 및 도서의 발간, 장부·용지류의 공동구매, 공동인쇄 등의 활동을 갖는 단체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경제협회’로 통합되었다가 1928년 다시 ‘조선금융조합협회’로 변하였다. ‘협회’는 금융조합의 중앙기관 설치 요구가 당시 관철되지 않자 금융조합 독자의 교육 선전과 연락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다. 그래서 ‘협회’는 업무감독기능이나 자금조절 기능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습, 강연회의 개최나 금융조합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금융조합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금융조합의 통합적 자금조절, 지도감독 기능은 계속해서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1933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탄생하였다.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탄생과 조직, 기능 등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연합회’의 탄생은 식산은행과의 관계를 전담할 기관의 부재와 당시 농촌진흥운동, 농가부채정리사업, 자작농창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 등으로 식산은행 외에 독자적인 자금확보가 필요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각도금융조합위원회의 자금조절 문제와 식산은행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회’는 「연합회령」과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그들이 내세운 설립 목적은 소속회원에 대한 자금공급, 업무상의 지도, 기타 공동의 이익 등이었다고 한다. 또한 자금의 구성은 회원의 출자금과 법정준비금 및 특별채입금, 정부대하금, 차입금 예금 외에 조선금융채권의 발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조선금융채권의 발행은 식산은행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 이외에 독자적인 자금원구실을 함으로 해서 ‘연합회’의 금융기관적 성격을 더욱 확고히 해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1930년대말부터 식산은행의 자금대출이 군수공업쪽으로 몰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연합회’의 조직 구성은 회장 1인과 이사13인, 사무감사 기관으로서 감사, 의사기관으로서 총회를 두었다. 또한 ‘연합회’는 조선총독부의 보호 및 지도, 감독하에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세법상의 비과세 단체로 인정되었으며, 소득세, 자본이자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금융상 장기저리이자에 채권의 발행 및 발행방법상의 편리가 인정되었고 일제의 대장성 예금부 자금을 저리로 융통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제의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감독하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적극적으로 일제의 제국주의 정책에 협력하는 기관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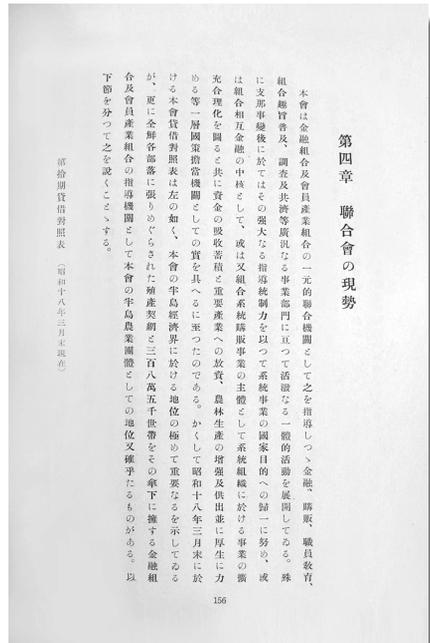
이 책의 3장과 4장에서는 ‘연합회’의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3장에서는 연합회 사업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1933년 창설당시부터의 여러 사업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우선 금융조합의 지도, 감독이 사업의 하나였는데, 이를 위해 ‘연합회’는 조합취지의 보급과 조합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 훈련, 식산계의 확충 강화를 위한 지도, 그리고 중앙기관으로서 경영의 합리화, 내외의 연락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금융사업부문은 기존의 ‘각도 금융조합연합회’ 및 식산은행 금융조합 중앙금고과의 업무를 계승해서 시작되었는데, 예금 및 대부, 조선금융채권

의 발행 등이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 교육사업, 재해 및 직원에 대한 공제(共濟)사업, 제1회 전선(全鮮)금융조합이사협의회 등 각종 대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업을 ‘연합회’의 창설이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연합회’의 현세(現勢), 즉 1943년의 연합회 창립 10주년 즈음의 상황을 사업부문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합회’는 금융조합 및 회원산업조합의 일원적 연합기관으로서 금융, 구매와 판매, 직원교육, 조합취지 보급, 조사 및 공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일제의 전시통제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조합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조선 경제계의 핵심기관으로서 조선의 각 부락에 조직된 식산계와 조선농민 3백8만5천 세대를 거느리고 있는 단위금융조합 및 회원산업조합의 지도기관으로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합회’는 이러한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전시체제 하에서 전쟁자금원으로 큰 구실을 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 식산은행 등 조선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대출초과를 보이게 된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공업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대출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인데, 이에 반해 금융조합은 거액의 예금초과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당시 ‘연합회’가 식산계 등을 통하여 강력한 저축운동을 추진, 조선 농업계의 자금을 회수하고, 이 자금을 식산은행 등이 전쟁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일제말기의 식민지 금융구조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의 결론에서는 ‘연합회’가 갖는 조선경제계에서의 위치 및 농촌진흥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총독부 정책의 충실한 수행에 대해 우선 높이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연합회’의 향후 과제는 크게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분류된다. 먼저 물질적 측면으로는 전시경제의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협력, 구체적으로는 국민저축조성운동과 농업증산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상공업의 재편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적 측면으로 농가(農家)의 거의 전체를 망라하고 또한 도시의 중산 서민계층을 포용하는 인적조직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여, 농촌민을 일제의 ‘황국(皇國)농민화’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 ‘연합회’와 금융조합은 일제의 시책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강조는 일제의 패망을 1, 2년 앞둔 상황, 즉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농민의 ‘황국신민화’를 통한 국가총동원체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부록에서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 「조선금융조합연합회정관」, 「조선금융조합 연표」,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역직원명록」, 「금융조합 및 동연합회누년업무통계표」등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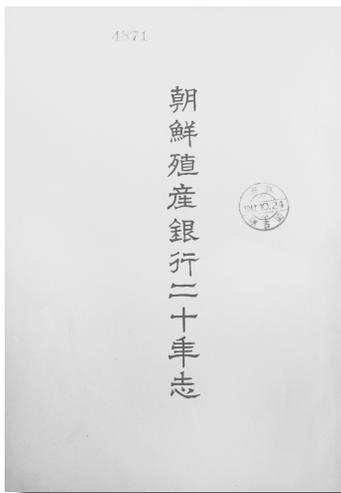
이상에서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0년사』를 살펴보았다. 조선금융조합은 1907년 소농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30년대 중반까지 회원은 대부분 자작농 이상의 부농층이었다. 그리하여 소농민은 금융조합의 자금을 대부분 받을 수도 없었고, 생활개선사업 등에서도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조합은 식민기 전 기간 동안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금융기관이었다. 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식산은행과 성격이 동일했지만 말단 금융기구로서 농민층을 대상으로 금융활동을 하여 광범한 농민층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식산은행 보다 강력한 농민통제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조합은 1933년의 ‘연합회’결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농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연합회’의 설립은 조선 농업계의 금융계통을 식산은행-‘연합회’-단위 금융조합-조합원으로 일원화하여 일본 금융자본의 투자와 이로부터 창출된 이윤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식민지 금융 체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침략전쟁이 국제화, 장기화되면서 전시총동원체제가 수립되자, 식산계를 조직하여 저축운동을 적극화 하는 등 농촌 영세자금을 예금으로 흡수, 전쟁자금원 구실을 하도록 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에 적극협력하는 준총독부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연합회’가 결성 1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경제의 발전과 일제의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연합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발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선식산은행 20년지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 저 작 자 : 혼다 히데오(本田秀夫)
- 발행사항 :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1938년
- 총 면 수 : 407쪽



이 책은 조선식산은행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것이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그와 동시에 한호(漢湖), 전주(全州), 광주(光州), 경상(慶尙), 평안(平安), 함경(咸鏡) 등 6개 농공은행(農工銀行)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그 배경은 자본을 증대하고 그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 조선식산은행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고, 도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 조선 전역에 분포한 금융조합과 서로 제휴하여 조선 산업계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의 감독하에서 있었으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의 통제권 밖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의 정부의 보호를 동반하게 된다. 두취(頭取 : 은행장) 및 이사의 임명은 물론이고 정관의 변경, 지점 및 대리점의 설치, 이익금의 배당은 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등 감독을 받지만 정부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등

\* 조선식산은행을 비롯 식민지 조선의 금융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임혜영, 1995, 「일제의 금융자본을 통한 조선산업구조의 개편, 1937-1945」, 『전북사학』 18, 전북사학회.  
 장세기, 1988, 「일제하의 한국금융기관사에 관한 현황연구」, 『연구논문집』 27, 성신여자대학교, 134쪽.  
 정병욱, 1992, 「1918~1937년 조선식산은행의 자본형성과 금융활동」, 『한국사연구』 79, 한국사연구회.

혜택도 누리게 된 것이다.\*

조선식산은행은 농업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인의 직접적인 투자와 경영에 의존하여 설립되었다. 즉 조선총독부 산하의 산업정책금융기관으로 출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 개발에 요구되는 장기자금을 주식과 아울러 납입자본 10배에 달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등 조선과 일본에 조달하였다. 이때 산업과 공공대부라 불리는 정책대출을 행하였다. 또한 1930년대 중반까지 산미증식계획과 농업개발을 지원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농업과 상업이 전부였던 조선경제계에서 식민수탈 금융기관이었다.

이 책은 조선식산은행 20년이 조선 산업계가 희유의 발전을 이룩한 시기의 동반자 하였고 자평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공주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청주대학교 도서관, 한국항공대학교 도서관, 한양대학교 도서관, 호남대학교 도서관, 홍익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언

제1장 연혁

제1절 당행 건립 전에 있어서의 조선의 재정경제

제2절 조선식산은행의 설립

제2장 당행 설립 후에 있어서의 조선경제의 발전

제1절 산업의 발달

제2절 금융의 발달

제3장 업무의 개요

제1절 총설

제2절 산업 및 공공금융

제3절 보통은행 업무

제4절 대리점 업무

제4장 조선식산채권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성질 및 종류

제3절 발행

제4절 발행조건과 그의 추이

제5절 원리의 지불

제5장 조직 및 관리

제1절 자본금 및 주식

제2절 본점 및 지점

제3절 중역

제4절 고문 및 상담역

제5절 직원 및 용원

제6절 사무분장

제6장 영업성적

제1절 자산부채

제2절 손익계산

제3절 이익금분배

〈부록〉

제1장 연혁에서는 조선식산은행 설립 이전의 조선경제계의 모습부터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경제의 모습을 붕당상쟁 및 서정문란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즉 산업진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내홍과 천재지변에 국력이 소모되었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화란(러일전쟁 및 청일전쟁)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 있다. 조선은 1894년 일본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개혁안에 기초하여 서정(庶政)

의 개혁을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점은 재정의 확립을 기하는 것에 있었다.

당시 일제는 화폐조례에 의거하여 백동화와 엽전을 회수하는 등 금본위제도를 확립코자 하였으며,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비에도 나섰다. 1905년에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와 수형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농공은행, 그리고 1907년에는 지방금융조합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책은 농공은행의 발달이 근대화의 과도기적인 양상임을 살피고 있다. 일제는 한일합방 초기부터 각각의 농공은행을 병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이를 준거로 하여 「조선식산은행령」이 제정된다. 「조선식산은행령」은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1918년 6월에 제령 제7호를 공포하면서 시행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알선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감독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식산은행은 조선 내 금융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28년 「은행령」 개정 후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합병하여 금융독점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조선식산은행은 자본금 1천만엔과 납입자본금 419만엔으로 설립됨과 동시에 농공은행의 권리의무 일체를 계승하게 된다. 이 때의 자본금은 농공은행의 자본금 260만엔에서 증대된 것이며, 채권 또한 농공채권이 납입자본금의 5배인 것에 비해 10배로 증가되었다. 이는 일본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그를 기초로 한 영업의 확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의 설립이 일본 금융자본의 유입과 조선자본의 수탈통로로 확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제2장에서는 조선식산은행 설립 이후 조선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일제는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화하려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식에 드는 비용을 조달·동원하여, 자본주의적 식민경영에 참여했던 것이 식민지 금융기구였다. 식민지금융기구란 식민지모국 금융자본의 유입 및 수탈통로를 말한다. 이 과정은 식민지 화폐제도의

형성 및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치를 통해 금융지배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이 과정이 완성된 것은 1918년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면서다.

조선식산은행의 설립배경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자본수출능력이 고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에서 자본주의화의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것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진전을 보게 된 원인을 무역에 두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조선식산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선의 산업은 약진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금융기관도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은행령」의 개정 이후 조선식산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합동과 합병 노력을 전개한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보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필연적으로 자본금의 증가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은행업무의 발전도 동반하게 되었다.

제3장은 조선식산은행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식산은행은 산업금융, 공공금융, 그리고 보통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외에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은행 경성대리점자격으로 조선은행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고금과 도금고 등 각 도와 부의 예산출납도 취급하였다.

또한 일본권업은행의 대리점으로서 동행 발행채권의 조선 내 매매를 담당하고, 조선저축은행이 설립되자 이곳의 대리점 기능도 하였다. 아울러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자금을 공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직간접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서민금융까지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선에서 모든 종류의 금융산업에 관여하고 있다.

제4장은 조선식산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의 경제가 단기간에 걸쳐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식산은행은 기체시장이 미발달된 조선에서 채권 모집이 잘 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의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채권발행고였다. 채권은 1922년의 총자본 중 50%를 넘어섰으며, 1924년 이후에는 납입자본의 15배까지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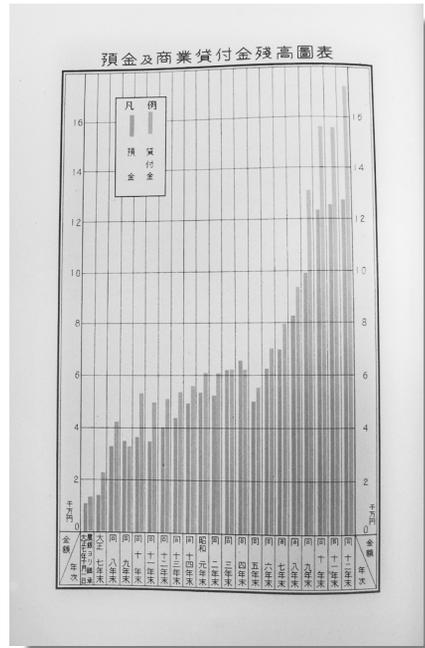
권발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1930년에는 74.7%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채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업금융기관으로 몰락한 농공은행과는 달리 산업금융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채권발행은 일본 금융 자본이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조선식산은행 역시 발행채권의 대부분을 일본금융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는 조선식산은행에서 발행된 채권이 대장성 예금부의 인수에 의하거나 나머지의 대부분도 거의 일본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에서 설명된다.

제5장은 조직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과정 및 주식수의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본점과 지점의 발전과정을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식산은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역들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고문과 상담역에 대해서도 일람표를 작성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식산은행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수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원의 변화과정은 어떠한지를 이 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 사무분장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제6장은 20년간의 영업실적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상황을 알 수 있으며, 손익계산과 이익금의 분배상황을 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 조선금융업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식민지 경제침탈에 있어 조선식산은행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식산은행 20년을 정리하면서 그 내막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은 1906년에 설치된 농공은행을 확장해 개편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호경기는 일제의 금융자본을 급성장시켰다. 이를 통해 일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강화하기 위해 농공은행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조선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만주 등지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조선의 산업금융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요구되었고, 그 역할을 조선식산은행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자본의 침투는 노동력의 착취, 민족자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조선은행 25년사(朝鮮銀行二十五年史)

- 저 작 자 : 시부야 레이지(澁谷禮治)
- 발행사항 : 호소카와활판소(細川活版所)(京城), 1937년
- 총 면 수 : 276쪽



이 책은 조선은행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은행과 관계된 당시 경제계의 추이와 조선은행 업무의 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은행은 1911년 2월에 「조선은행법」이 공포되어, 동년 8월에 중앙은행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명치 42년인 1909년 11월을 설립일로 보고 있다.

조선은행은 일본의 제일은행이 맡아 오던 발권 및 국고업무 등 모든 중앙은행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제일은행은 개항 직후인 1878년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원산과 인천, 서울 등지에 지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1905년 3월 24일 일본정부의 칙령 제73호가 발표되자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은행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써의 기능도 하게 된다. 즉 해외은행

\* 조선은행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강길환, 1995,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논문집』37, 경기대학교.

조명근, 2009, 「조선은행법에 내재된 식민지 중앙은행제도의 모순-감독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제34호.

장세기, 1988, 「일제하의 한국금융기관사에 관한 현황연구」, 『연구논문집』27, 성신여자대학교.

오두환, 1991,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 1998, 「만주에서의 조선은행의 역할」, 『경제사학』25.

의 설립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만몽지역에 지점의 설치로 이어진다. 이 책의 서문에 설명하고 있듯이 당시 일제의 국가적 사명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당시 경제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언

제2장 조선 및 만주의 경제발전

제1절 조선에 있어서의 경제계 발전

제2절 만주에 있어서의 경제계 발전

제3장 조선은행의 업무와 그 실적

제1절 총설

제2절 조선에 있어서의 업무의 추이

제3절 만주에 있어서의 업무의 진전

제4절 내지 및 해외에 있어서의 업무의 상태

제5절 영업실적

제4장 조선은행의 조직

제1절 자본금 및 주식

제2절 영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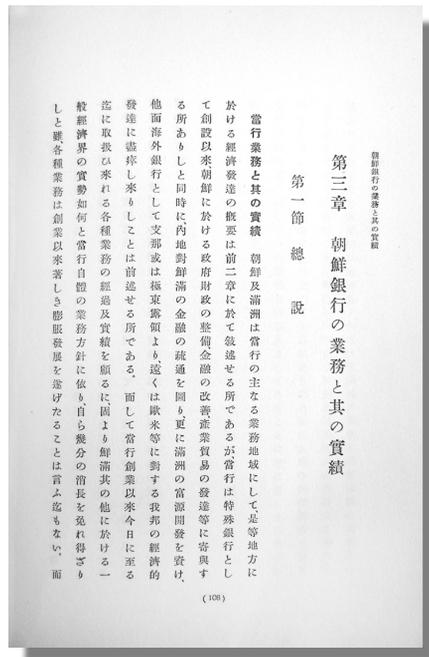
제3절 중역

제4절 직원

제5절 직제

제5장 결언

<부록>



조선은행 연표는 1909년 7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이 때 한국과 일본정부 사이에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11월 10일 등기를 마친 조선은행은 같은 달 24일 첫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창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은행은 처음 한국은행이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한일합방으로 통감부가 폐지되고 총독부가 설치되자, 조선총독부는 1909년에 제정된 「한국은행조례(韓國銀

行條例)」(법률 제22호, 1909. 7. 26.)를 대신할 「조선은행법」의 제정을 일본 대장성과 합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선으로의 명칭변경, 은행권 보증준비발행한도의 확장 등이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것은 감독권의 소재에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서의 중앙은행 업무는 1905년 이래 제일은행이 담당하였다. 제일은행은 경성에 한국총지점을 설치하고 각지에 지점과 출장소를 두었다. 제일은행은 은행권의 발행과 화폐정리사업 및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외에 일반은행의 업무도 병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창립되고, 1911년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조선은행이 창립되던 초창기에는 시설 면에서 모든 것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교통이 불편하고 산업이 아직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조선은행이 창립 25년을 맞는 1930년대 중반과는 격세의 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은행은 세계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발전해 왔다.

조선은행은 구한국은행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화폐정리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지방의 농공은행과 금융조합을 보조기관으로 하였다. 일제는 이를 통하여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화폐금융정책을 유린하게 하였다. 이는 식민지배에 앞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은행권 발행, 지금은(地金銀)의 매매, 국고사무취급은 물론 일반은행 업무도 영위케 하였던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은행권 발행준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일본은행권을 정화준비(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정화로 바꿀수 있도록 금·은화 등을 준비해 두는일)로 인정한 것에서도 찾아진다. 일반적인 금본위제도와 달리 사실상 금준비가 없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보증준비에 의한 발행고가 정화준비 발행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본은행권과 태환을 통해 금과 연결되어 있지만, 엔화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통화제도였던 것이다.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은행권은 발행한도가 증가하고 정화준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발행고

가 급증하면서 관리통화제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다.

조선은행은 식민지무역태세를 갖추기 위해 1910년에 개성과 경성, 함흥 등의 출장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부산과 나남, 신의주 등 3곳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12년에는 성진출장소를 폐쇄하고 회령출장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수출이 증가되면서 1910년에 대한수출의 거점인 일본의 오사카에, 1913년에는 도쿄에 각각 지점을 개설하였다.

조선은행은 창업된 이래로 한국에서 생산된 금의 매입에도 진력하게 된다. 서울 본점을 비롯하여 원산과 평양 등의 지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때의 수납액이 한때 일본 조폐국의 총수입액의 절반에 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에도 일본상품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만주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는 조선은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지역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조선은행이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조선과 국경을 접한 안동현에 출장소가 설치되면서다. 이 때 조선은행은 제일은행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계받았다. 이후 조선은행은 조선과 만주의 교통경제권을 긴밀히 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1913년에는 대련과 봉천, 그리고 장춘에 3개의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남북만주에 다수의 지점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1914년에 대두(大豆)의 집산지인 사평가(四平街)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1917년에는 국고사무 및 금권의 발행 사업도 요코하마정금은행(橫濱正金銀行)으로부터 인계받기에 이른다. 관동주와 남만주철도 부속지에서 법화로 조선은행권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은행은 조선 및 만주에서 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자리하고자 하였다. 이후 조선은행권은 만주까지 유통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조선은행은 만주에서의 금융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한다. 그리고 구화폐의 정리회수와 화폐의 통일화 사업을 진척시켜 나간다. 이는 일제가 만주에서 통용되던 은본위제도를 고쳐보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이 정착되면서 1935년 12월 관동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의

발행이 금지된다. 그리고 1937년 1월 만주흥업은행이 설립되면서 조선은행 만주점은 모두 흥업은행에 이양되고, 조선은행의 영업점은 관동주에 국한되었다.

조선은행은 1910년 이래 순차적으로 오사카, 도쿄, 고베 등 일본의 주요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고 조선과 일본의 무역 또는 조선과 만주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공급에 힘쓰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선과 만주의 경제적 발전을 꾀하였다는 것이 이 책의 평가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경제는 일본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움직였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부의 금융정책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다. 일제는 1918년에 각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식민지 산업금융기관으로서의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14년에는 「지방금융조합규칙」을 「지방금융조합령」으로 하였다.

조선은행은 조선과 만주를 기반으로 하여 영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은행은 조선 내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선과 일과의 금융유통을 도모하고, 다시 만주의 부원개발에 진력하는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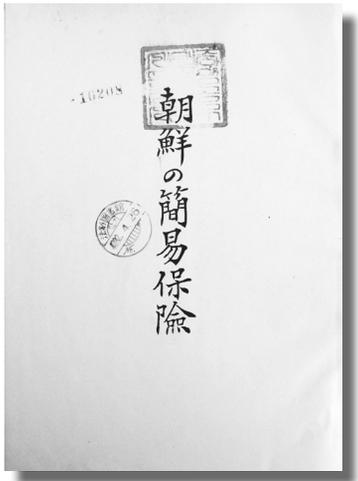
이는 조선은행이후 만주에 진출하여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강제통용력을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고금의 출납업무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히 일제가 조선은행을 통하여 만주에서 일본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조선은행의 25년사를 살펴보면서, 조선에서의 금융침탈의 과정을 합리화하고 조선에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서술적인 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면에 담겨 있는 금융분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조선은행이 만주로 진출하고 일본과 구미 등지에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바는 일본자본이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은행을 통하여 자본을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에서의 금융침탈이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의 간이보험(朝鮮の簡易保險)

- 저 작 자 :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 발행사항 : 조선인쇄주식회사(朝鮮印刷株式會社)(京城), 1937년
- 총 면 수 : 75쪽



이 책은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간이보험에 대한 안내서로 발행한 것이다. 내용은 제1 조선간이보험의 연혁, 제2 조선간이보험제도의 내용, 제3 조선간이보험의 효용 및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제1 조선간이보험금액표와 제2 조선간이보험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호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제1 조선간이보험의 연혁에서는 일제강점기 간이보험의 약사를 살펴보고 있다. 일제가 간이보험을 처음으로 계획된 것은 1912년이다. 데라우치(寺內) 총독시대의 체신국 장관인 이케다 슈사부로(池田十三郎)가 조선우편생명보험을 계획하면서다. 이 계획은 당시 일제가 간이보험 사업의 실시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저금관리소장 원등달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척시켜 1912년 10월에 「조선우편생명보험(朝鮮郵便生命保險經營)의 의(議)」를 제출하였다. 1914년 1월에는 「조선우편생명보험제령안(朝鮮郵便生命保險制令案)」 및 그 「동특별회계법안(同特別會計法案)」을 제출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1915년 9월에도 「조선간이생명보험」의 명칭 하에서 제안되었지만, 시기상조의 이유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조선의 간이보험계획은 오랫동안 중지되었다. 이후 1921년에 사이토 총독 시대의 체신국장 다케우치가 이전의 간이보험이 반대에 부딪혔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험금 최고 5만엔, 최저 2백엔의 소위 중간생명보험에 속하는 관영 보통생명보험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경에 「조선관영생명보험안(朝鮮官營生命保險案)」을 시작으로 일체의 법령안과 예산조서의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이를 법제국 및 척식국에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한상용이 경영하는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것을 관영으로 하는 의견을 만들었으나 본안도 성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27년 12월에 다나카(田中)내각 정례각의에서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에 관한 건(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に關する件)」을 내각에 품청(稟請)하여 우선적으로 조선에서 단독으로 간이보험사업을 경영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929년 2월 마침내 제56 의회에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안(朝鮮簡易生命保險特別會計法案)」,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사무에 관련한 우편물에 관한 법률안(朝鮮簡易生命保險ノ事務ニ關スル郵便物ニ關スル法律案)」 및 그 「예산안(豫算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귀중(貴衆) 양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에 이러한 법률 및 「조선간이생명보험령(朝鮮簡易生命保險令)」이 공포되고, 조선간이생명보험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동년 9월에는 「조선간이생명보험규칙(朝鮮簡易生命保險規則)」, 「동취급규정(同取扱規程)」 및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規程)」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32년부터 경성과 부산에 보건상담소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 보건상담소를 설치하였다.

제2 조선간이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가 간이보험을 실시한 목적은 표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계급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케 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혜택을 주고, 각각 상호간에 부조의 정신에 기초한 보험단체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생활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간이보험

제도는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의 신청과 기타 수속에 있어 누구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보험의 종류와 보험관계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소멸기간,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항, 보험료의 불입, 고질병 환자에 대한 보험료 불입의 특례, 효력상실 방지의 시설, 보통대부, 환부금, 보험료의 할려(割戻), 계약자 보호의 특전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보험의 종류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등 두 종류가 있다. 양로보험은 보험기간으로 구별하면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25년 만기, 30년 만기, 35년 만기, 40년 만기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보험료불입기간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및 종신불입의 4종류가 있고, 10년 만기 및 15년 만기 양로보험에는 전기간 불입, 20년 만기 및 25년 만기 양로보험에는 10년 및 전기간 불입 등 3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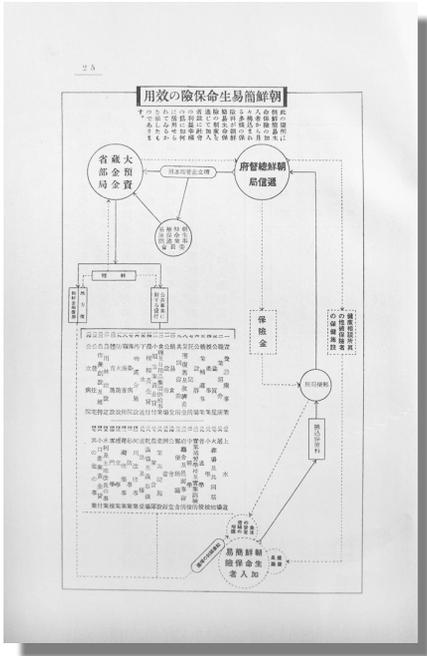
보험관계자를 보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금수취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금액은 1구좌당 20엔 이상 최고 450엔 이하로 하되, 1명의 피보험자가 2구좌 이상의 보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보험금액의 합계가 450엔 이내여야 한다.

보험의 소멸기간을 보면 계약이후 2년 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년 이내 사망의 경우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만 지불하고,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반만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단 재해나 전염병에 의한 경우에는 전액 지불하도록 하였다.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6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다. 첫째는 계약 후 2년 이내에 자살하는 경우, 둘째는 피보험자가 결투 또는 범죄, 사형집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셋째는 보험금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넷째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다섯째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계약자 또는 수취인이 그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여섯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를 위반해 정부가 계약을 해지한 때이다.

제3 조선간이보험의 효용은 가입자에 대한 효용, 보건시설의 실시, 적립금 운용의 효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당시 보건시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즉 생명보험의 본래 기능은 노쇠와 사망 등 소위 보건사고에 대하여 소정의 보험금을 보상하고, 사업경영의 여력을 활용하여 보험사고 발생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의 건강보호 증진에 노력하는데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이 건강상담소의 운영이다. 건강상담소는 피보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상설의료기관으로 피보험자 복지의 증추를 담당하였다. 이 시설은 1932년 10월 1일에 경성과 부산에 처음으로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였다.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상담은 물론 진찰을 위한 시험검사, 처방전의 교부, 기타 적당한 처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래 건강상담소의 목적은 예방의학의 응용에 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피보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질병자에 대해서는 영양상의 지도 권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 즉 시험검사 및 처방전의 교부 및 적당한 처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모든 건강상담소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이지만, 혈청검사는 오직 경성과 부산, 평양, 대구, 인천, 군산의 각 상담소에서만 운영되었다.

당시 경성과 부산, 평양, 대구, 인천, 원산, 목포, 군산 등지에는 린트겐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또 태양등(太陽燈)은 청진을 제외한 각 처에 설비되어 있었다.

이 외에 순회건강상담을 살펴볼 수 있다. 건강상담소의 이용이 지역적으로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분포된 피보험자를 위해 순회건강상담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보건위생과 관련한 인쇄물을 배포하고 국민보건체조를 널리 장려하였다. 그리고 보건체조의 노래 제정과 보건위생관련 영화의 상영도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보건위생과 관련한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간이보험의 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 중 각 년도의 잔액을 장래에 보험금이나 기타 지불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것이다.

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용되는데, 그 방향은 첫째 유리하면서 또한 확실한 경우이며, 둘째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면서 사회 공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셋째는 간이보험의 지방별 보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자대부, 공공대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조선간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을 두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연령에 따른 보험금의 내역을 보험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표로 작성해 놓고 있다. 두 번째는 조선간이보험통계표이다. 여기서는 각 도별 당시 계약건수의 분포도와 연도말 계약누년 비교표, 그리고 적립금방자상황도(積立金放資狀況圖)를 그래프를 작성해 놓고 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의 방식을 문화정책을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정책은 민족분열정책의 소산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비가 증가하고, 각 부분에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재원조달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서 간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일제가 실시한 조선의 간이보험은 조선에서 실시할 사회정책자금의 재정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우가키(宇垣)총독의 발언을 통해 조선의 간이보험이 식민정책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우가키총독은 “일반민중이 용이하게 생명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라도 생활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상호부조, 근검 저축의 미풍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보증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 조선통치의 요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존의 보증을 조선통치의 요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경찰이나 세금징수가 아닌 낮은 계층에 대한 가계보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는 표면적으로 조선의 간이보험이 중산층 이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으로 선전하였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통신과 우편국소의 이용, 인지세·우편료 면제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절약함으로써 가입자에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간이보험에 비하여 수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율이 높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만큼 부가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높은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이보험은 농어촌경제와 관련이 있다. 일제는 “간이보험은 농산어촌민이 경제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바, 농촌진흥회의 활동과 서로 호응하여 본 사업 정신을 일층 농산어촌에 보급시키는 것은 시기에 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에서 찾아진다. 이는 간이생명보험조합의 사무소를 농촌진흥조합 내에 둔 것에서 살펴진다.

그런데 일제의 의도는 조합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규칙변경도 역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합원의 탈퇴와 규칙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역원의 고문인 우편국장의 영향 아래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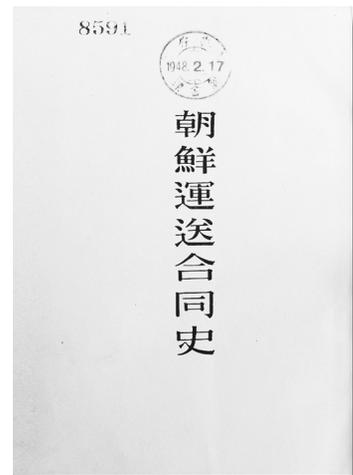
또한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 하에서는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생계를 담보로 한 강제모집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당시 농촌에서는 빚이 저축고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조선운송합동사(朝鮮運送合同史)

- 저 작 자 : 가또오 산지로(加藤三次郎)
- 발행사항 : 하시모토인쇄소(橋本印刷所)(京城), 1930년
- 총 면 수 : 284쪽

이 책은 발행자겸 저자인 가또오 산지로(加藤三次郎)가 1930년에 하시모토인쇄소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조선에서의 운송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목차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서(自序)

1. 운합의 목적과 계획동기(運合の目的と計劃動機)
2. 제1차운합계획시대(第一次運合計劃時代)
3. 전선하주의 반대(全鮮荷主の反對)
4. 중립업자의 반대운동이 일어나다(中立業者の反對運動起る)
5. 제2차계획이 성립되다(第二次計劃成る)
6. 하주와의 제휴성립(荷主と提携成立)
7. 제3차계획과 경연 양파의 대립(第三次計劃と硬軟兩派の對立)
8. 횡합동의 설립과 철도의 보조(橫合同の設立と鐵道の補助)
9. 제1회 위원총회 결렬(第一回委員總會決裂)
10. 환통 제1회 탈퇴(丸通第一回脫退)
11. 조선운송동맹회와 환통의 제휴(朝鮮運送同盟會と丸通の提携)
12. 철도국 조정에 응하다(鐵道局調停に乗出す)

13. 비합동파의 분열과 환통의 연합복귀(非合同派の分裂と丸通の運合復歸)
  14. 제4차 연합계획시대(第四次運合計劃時代)
  15. 철도국 연합관계 규칙개정(鐵道局運合關係規則改正)
  16. 연합계획의 존폐와 양사출자문제(運計の存廢と兩社出資問題)
  17. 양거두의 입성과 제2차결렬(兩巨頭の入城と第二次決裂)
  18. 환통의 출자결정과 철도국(丸通の出資決定と鐵道局)
  19. 제2차결렬과 합동·비합동 양파의 항쟁(第二次決裂と合非兩派の抗爭)
  20. 잠정적 연합회사의 설립과 목론건서(暫定的運合會社設立と目論見書)
- 대연합사건(對運合私見)

위의 목차는 당시 조선에서 운송업계의 통폐합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총독부와 일제, 그리고 조선의 소운송업체간의 알력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각각의 회사가 가진 영업적인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운송업을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이 대립되는 것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조선에서의 운송업 통합은 표면적으로 조선민중의 복리증진과 산업의 합리화, 철도운송정책의 조장, 소운송(小運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지(일본)의 철도성이 대정 15년(1926) 6월에 소운송의 개선을 천명하자, 조선총독부 철도국도 11월에 소운송 업계의 단일화 정책을 목표로 승인운송점 규정의 개정을 기획하였다.

승인운송점규칙개정초안(承認運送店規則改正草案)은 승인되지 아니한 점주가 1점포당 약 4천 톤을, 승인된 점주는 1점포당 약 1만 2천 톤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가 있다. 즉, 운송업계의 통합은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일역일점(一驛一店)의 원칙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송업계 통합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운송업계의 통합은 조선총독부에서 승인한 운송조합에 의해 진행되었다. 운송조합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코다마(兒玉), 카와이(河合), 다테이시(立石), 나카무라(中村), 카오무라(河村), 박문집(朴文執), 야마토(大和), 오오타(太田), 카와이다(川井

田), 추우조(中條) 등 10명을 업무개선실행위원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철도국은 이를 “업계의 개선은 합동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후 조합은 합동촉진유지회원을 모집하고, 전조선운송업자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동회사창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게 되는데, 이 때 일본인과 조선인은 각각 10명씩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운송업계의 통합과 관련하여 아마토 요시로(大和與次郎案), 조선인준비위원일동제출안 등 여러 가지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하주(荷主)의 반대로 쉽게 성사되지는 않았다.

운송업계의 통합은 소운송 업계에 있어 커다란 변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설립준비시기에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강의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사회민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하주측의 반발이 거셌다. 하주측은 경성에서 연합반대하주대회를 개최하고 맹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은 전국 각지의 하주를 규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하주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책협의회가 개최 된다.

이 과정에서 철도국 토다(戶田) 이사가 강연하게 되는데, 내지 즉 일본의 경우 철도국의 강요에 의해 운송조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조선에서의 기업의 합동(合同)은 관계업자의 자가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운송조합의 통합과정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풀이된다. 철도국의 격려로 준비위원들은 비밀리에 수회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역일점의 종단합동을 원칙으로 하는 규격안의 대강을 만들게 된다. 아울러 일본인 10명과 조선인 10명으로 구성된 창립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철도국은 운송업계의 통합을 위해 하주측의 양해 하에 경성상업회의소 주최 간담회, 갑자구락부, 철도연구회 등을 개최한다. 이 관계회합 석상에 토다 이사와 부유한 화물주임 등이 출석해 운송업계의 통합을 위한 누차의 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운송업계 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밀리에 운송업계 통합을 반대하는 준비행동도 개시된다.

철도국은 하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위원과 하주 측의 회담을 성사시키고, 하주와의 제휴를 끌어낸다. 그러나 운송업계 통합을 반대하는 개인업자들은 단체를 결

성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편 승인된 운송점 조합이사회는 철도국에 횡단합동(橫斷合同)설립을 위한 구체안을 제시하고 승인받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상금과 기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합동과와 비합동과간의 의견이 상위(相違)하여 분열된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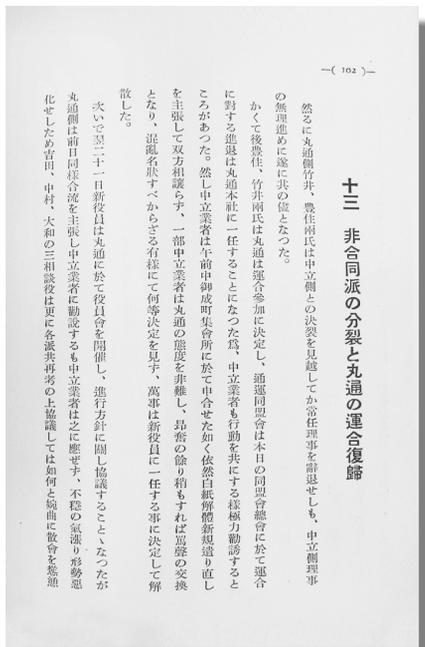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조선운송동맹회(朝鮮運送同盟會)와 환통(丸通)간에 제휴가 이루어진다. 조선운송동맹회는 조선국유철도승인운송점조합의 해체와 더불어 설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운송합동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정무총감의 등장이후 조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정무총감은 철도국으로 하여금 환통에 운송업계의 통합에 나서도록 권고하

도록 종용한다. 이에 따라 철도국과 환통, 그리고 환운(丸運) 등 3자가 회견을 갖기에 이른다. 2차례에 걸친 회담으로 7개조의 밀약이 성립되었다. 이후 환통이 일시 탈퇴하였다가 복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비합동과의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의 움직임은 가속도를 내게 된다. 이어 128명의 발기인에 대한 추천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제4차 규격안이 성립되고 제4차 운합계획시대가 열린다.

철도국은 철도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운합관계규칙을 개정한다. 이후 환운의 출자가 확정되고, 업적에 대한 사정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운수위원회의 개최가 이루어

어지고 업적조사에 따른 보상금문제가 전면에서 대두된다. 그리고 환통과 환운 양사의 개인업자 매수가 통합의 장애물로 부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운합계획의 존폐와 환통 환운 양사의 출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



로 인하여 제2차 연합계획이 결렬된다.

철도국은 환운의 출자를 쾌히 승낙하고 환운중심으로 연합계획을 진행시킨다. 그럼에도 조선운수업계는 국제운수, 환통과 중립업자등 삼파가 정립되면서 혼란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운송동맹회와 이에 반대하는 연합반대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져 대립의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철도국은 환운 중심의 제5차 연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잠정적인 연합회사를 보게된다. 이후 비합동삼파(非合同三派)와의 제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삼파연합회(三派聯合會)가 출범하게 된다.

이 책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 운송조합의 통합의 목적이었던 철도국의 운수정책을 조장한다는 표현이다. 조장이란 돕는다는 얘기인데, 당시 철도국의 운수정책은 자원의 강탈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20년대 철도12년 계획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계획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철도 12년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그리고 조선내 상공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추진되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철도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조선의 자원과 산업 등 경제일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행해졌으며 경제성에 기초한 선로가 선정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조선철도 12년계획은 철저한 경제수탈을 위한 철도계획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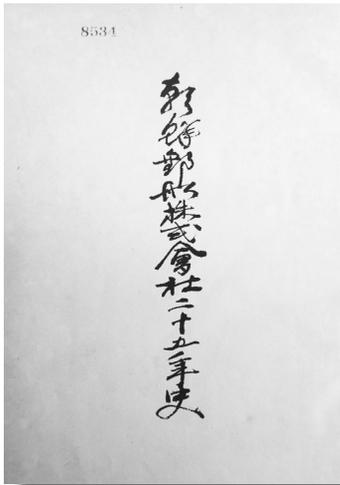
이는 12년 계획선의 성격이 주로 화물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주목된다. 이러한 화물운송은 북부조선의 자원수탈과 연결된다. 즉 화물과 이 지역의 풍부한 전력, 그리고 저렴한 공장용지 및 노동력이라는 조건들과 결합하여 식민지 공업화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도국이 화물운송을 보조하기 위해 운송업계의 통합을 조장하고 있음은 일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소운송의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 명목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대형 운송업을 주도하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유리한 운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양자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당시 운송정책의 변화를 둘러싼 움직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운송합동의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운송업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안내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책은 당시 운송합동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담고 있어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

- 저 작 자 :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 발행사항 :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京城), 1937년
- 총 면 수 : 389쪽



이 책은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특히 일본 해운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부록으로 각종 통계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통계표들은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

구원 도서관,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연혁

제1장 창립

제2장 창업시대

제2편 항로

제1장 연혁과 항로개황

제2장 연안항로

\* 조선우선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손태현의 『한국해운사』, 효성출판사.(1997)가 참고된다.

- 제3장 근해항로
  - 제3편 선박
    - 제1장 소유선박
    - 제2장 용선
  - 제4편 자본
    - 제1장 자본금
    - 제2장 주식
    - 제3장 사채
    - 제4장 적립금
    - 제5장 관계회사
  - 제5편 사무조직
    - 제1장 정관
    - 제2장 역원
    - 제3장 직제
    - 제4장 사무분장
    - 제5장 직원
  - 제6편 영업소
    - 제1장 본사
    - 제2장 지점, 출장소, 출장원사무소
    - 제3장 대리점 및 그 하객취급소
  - 제7편 사업 및 재산
    - 제1장 업적
    - 제2장 재산

한국은 1895년 정부 소유의 창룡(蒼龍), 현익(顯益) 및 해룡(海龍)의 3척을 일본 우선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보호 하에 북선(北鮮) 방면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해운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1912년 자본금 300만엔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통감부를 통하여 구한국정부의 항로보조를 받고 있던 일본 거류민의 연안항운업체인 부산기선주식회사와 합자회사인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 및 목포항운합명회사를

통합하여 이 회사를 창립하였다. 이 회사는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총독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으며, 한반도의 연안항로를 독점하였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창립 당시 33척의 선박을 구입해 운영하였다. 이후 4척을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37척을 갖게 된다. 소유 선박들은 목선이 30척, 철골목피선(鐵骨木皮船) 1척, 강선(鋼船) 6척으로 대부분 목선이었다.

이 회사는 창립 당시부터 선질개선(船質改善)에 착수하게 되는데, 6척의 강선(鋼船)을 새롭게 건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창업 당시 구입한 소형 목선 12척을 매각처분하고 있다. 이 후에도 소형목선에 대한 매각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롭게 건조된 선박의 구입도 이어진다. 1936년의 통계를 보면, 모두 20척의 강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3만5천톤을 상회하게 된다. 비록 창립 초기 35척이던 선박의 수가 20척으로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조선우선주식회사의 하객(荷客) 규모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초창기인 1912년의 통계를 보면, 하물(荷物)의 양이 150,000원(員)을 상회하고 선객(船客)이 100,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선객의 수는 1916년부터 1926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35년에는 2만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하물의 양은 계속 증가하여 1935년에 1백25만원(員)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운영이 하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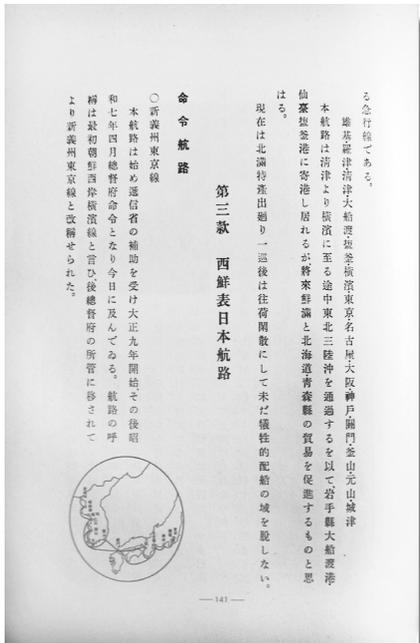
창업당시 조선우선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항로는 총 22개 항로였다. 이 중 조선 총독부 등이 지정한 명령항로가 10개 노선이었고, 자영노선이 12개 항로였다. 그러나 이 시기 항로는 전부 연안항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우선주식회사의 항로가 연안항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상되는 한국민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식민통치 초기에 치안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창립 10년째인 1925년 2월에 자회사인 조선기선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부산에 두게 된다. 남해안 일대의 항로를 이 회사에 이양하게 된다. 한편 이 해의 항로를 보면, 조선총독부 명령항로인 근해항로와 연안항로가 각각

8개 노선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청이나 지방 단체의 명령항로는 각각 2개 노선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자영노선은 근해항로와 연안항로가 각각 1개 노선씩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던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즉 창립초기 연안항로를 점차 근해항로로 전환함으로써 대일본 노선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기선주식회사는 부동기선주식회사(釜統汽船株式會社)와 통영해운주식회사(統營海運株式會社) 등의 경쟁자를 합동하여 자본금 100만엔으로 부산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현물불입제공선박 23척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조선우선주식회사는 총주수 2만 주 중 8,430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이 회사 관계자의 주수(株數)가 700株인 것까지 합하면 9,130주가 되기 때문에 제1위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 당시 제2위 주주는 통영해운회사로 4,94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3위가 1,657주를 소유하고 있어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지배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선우선주식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조선총독부 등에 의한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영항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립당시보다 많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등의 보조금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조선우선주식회사의 보조금은 창업초기에 총수익의 27.5%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15년에는 35%를 점하게 된다. 1912년의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총수입은

1,007,151엔인데 비하여 항해보조금은 277,710엔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1915년에는 총수익 1,377,726엔에 보조금 482,202엔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16년에 보조금의 비율은 27.7%로 낮아진다. 그것은 총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총수익이 1,932,164엔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바로 전해의 것보다 증가한 534,884엔이었으나 총수익금에 대한 비율은 27.7%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21년에 더욱 심화된다. 총수익이 4,152,362엔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도 920,196엔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비율은 22.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의 관계는 처분이익금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펴진다. 조선우선주식회사는 처분이익금보다 보조금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912년의 처분이익금은 62,633엔인데 비하여 보조금은 277,710엔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처분이익금이 333,510엔인데 비하여 보조금이 920,196엔으로 매우 높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이 회사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조선의 거류민과 일본 본토자본과의 관계이다. 창립당시 조선 거류민과 일본 본토자본은 백중세를 보여주고 있다. 총주수(總株數) 60,000주를 대상으로 한 500주 이상 대주주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47.2%대 45.8%의 관계는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던 것이 1912년에는 43.8%대 49.2%의 비율로 일본 본토자본가들의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21년에 일본 본토자본이 50%를 넘어섬으로써 자본의 침식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26년 일본본토자본이 56.7%를 차지하다가, 1931년에는 87.8%까지 잠식해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일본 본토의 자본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 1936년 말 조선우선주식의 대주주를 살펴보면, 조선식산은행이 80,000주를 소유해 제1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우선주식회사가 56,240주,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가 43,080주를 소유해 각각 2대 및 3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일본의 자본으

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소유자	주식수			주소
	구주(舊株)	신주(新株)	합계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80,000	80,000	경성(京城)
일본우선(日本郵船)	28,220	28,020	56,240	도쿄(東京)
대판상선(大阪商船)	21,790	21,290	43,080	오사카(大阪)
대지원이(大池源二)	2,000	2,000	4,000	부산(釜山)
조선미곡창고(朝鮮米穀倉庫)		2,000	2,000	경성(京城)
국제통운(國際通運)	1,000	1,000	2,000	도쿄(東京)
중촌기선(中村汽船)	800	800	16,000	고베(神戸)
조선운송(朝鮮運送)		1,000	1,000	경성(京城)
우근권좌위문(右近權左衛門)	500	500	1,000	오사카(大阪)
송원순태랑(松原順太郎)	650		650	오타루(小樽)
부산상선조(釜山商船祖)	280	280	560	부산(釜山)
원전입지우(原田立之祐)	500		500	사가(滋賀)
삼번치랑(森辨治郎)	250	250	500	경성(京城)

일제는 통감부시절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중 유력자를 독려하여 부산기선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구한말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일본인과 더불어 형식상 수명의 한국인 명의를 사용하였다. 일제는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설립 시에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즉 조선우선주식회사의 발기인 중 이왕가재산관리인을 비롯하여 구한말 고관의 명단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총독부에 의한 자본동원에 사용된 것에 불과할뿐 창립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보조금을 지급조건으로 해운을 통합하고, 조선우선주식회사로 하여금 연안항로를 독점토록 하였다. 그리고 강운(江運)은 한국거류 일본인에 의하여 독점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형 발동기선을 주로 한 소규모 자영항운이 발생하게 되었다. 소규모 자영항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우선주식회사가 대일·대중국진출에 따른 연안항로의 경영을 많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조선우선주

식회사는 총독부의 보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연안항로에 전념하던 것을 발전적으로 근해항로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우선주식회사에 대한 보조명령은 기선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창립시 인수한 근거리항로 중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라 경쟁에서 불리한 항로는 폐항하거나, 항해 횟수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형 발동기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해운사업과 관련한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일제가 바다를 통한 교통산업을 어떻게 일본 자본화하고 있는지의 과정을 살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제가 추구하였던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의 의도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해운업뿐만 아니라 식민정책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대흥전기주식회사 연혁사(大興電氣株式會社沿革史)

- 저 작 자 : 아베 카오루(阿部薰)
- 발행사항 : 민중시론사(民衆時論社)(京城), 1939년
- 총 면 수 : 225쪽



이 책은 대흥전기주식회사의 28년 경영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부록에 실려 있는 각종 통계표는 일제시기 전기산업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 호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앞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편 경영28년 총관
- 제2편 창업시대
- 제3편 흥륭발전시대
- 제4편 비약시대(一)
- 제5편 비약시대(二)
- 제6편 통제전의 자매회사
- 제7편 통제시대(一)

제8편 통제시대(二)

제9편 결론

제10편 오쿠라(小倉)사장의 술회

조직/영업/시설/부록

대흥전기주식회사는 1910년 8월에 자본금 10만엔으로 대구에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대구전기로 불렸다. 이 회사의 수뇌부는 취체(이사)이자 사장인 오쿠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전무취체인 요시타케 코시로(吉武甲子郎) 등이다. 그리고 취체역에는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 무치다 로쿠로(内田六郎), 오쿠라 요시노리(小倉良則), 정재학(鄭在學) 등이 임명되었고, 감사에는 오오사와 쿠마고로(大澤熊五郎), 정봉(鄭鵬) 등 2인이 맡았다.

대흥전기는 점차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1918년 8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전기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다시 1911년 여름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지점을 설치하고, 동년 7월에 광주전기회사를 5만엔에 인수하여 지점으로 하였다. 이어 그 자본금을 70만엔으로 증자하는 등 흥륭기를 맞게 된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에서의 전기사업은 경성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발흥하였다. 당시의 전기사업은 일본이나 기타 지방의 자본과 사업가의 유입으로 가능하였다.

대흥전기주식회사의 오쿠라사장은 전기회사를 설립한 다른 인물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전기회사와 관련이 있는 일본 재계의 거물들이 일한와사전기회사와 조선와사전기회사 등을 창립한 것과는 달리 오쿠라는 전기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대흥전기는 처음부터 금속선 전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당시는 일본도 아직 금속선 전구가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만큼 금속선 전구의 사용은 획기적인 경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경영적인 면에서도 지방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흥전기는 합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흥전기는 처음 경북의 일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전남·경남을 시작으로 충북과 전북지방으로 진출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구지역의 전기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으로 진출을 피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전기사업의 공영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흥전기의 지방 진출을 살펴보면, 광주전기(1920), 포항전기(1920), 통영전기(1926), 전남전기(1930), 남원전기(1932), 영법전기회사(1932)를 차례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본점은 대구에 두면서도 대구와 함흥, 광주, 통영 등 4개소에 지점을 두고, 그 밑에 21개소의 출장소를 두어 광범한 지역에서 영업하였다. 그리고 회령전기, 경주전기, 안동전기, 울산전기, 순천전기, 여수전기, 고성전기, 제주전기, 별교전기회사를 자매회사로 두고 있다.

대흥전기는 활발한 매수합병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식해 나갔다. 자본금이 10만엔이었던 설립당시에는 2만5천엔의 불입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자금이 일본의 유입에 의지하지 않고 대구지역의 자본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금 중 사장을 지낸 오쿠라의 자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주주인 오쿠라는 대흥전기가 남선통전기회사로 통합될 때까지 취체역 사장을 역임하였다.

자본금은 1918년 함흥전기회사를 매수하면서 14만5천엔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1919년에는 50만엔으로 증가하게 되고, 1924년에 70만엔, 1926년에 200만엔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흥전기는 다른 전기회사와는 달리 소자본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흡수와 합병을 통하여 회사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자본도 증식해 나감으로써 1930년 남선지역 배전사회의 통합에서 중심회사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전기의 수요는 창업당시 전등수가 1,500등에 불과하였으나, 1918년 대흥전기회



사로 개칭한 후 전등이 10,766등, 동력이 48.5마력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에는 전등이 30,788등, 전동력 113마력으로 늘어나더니 1925년에는 전등이 66,604등 전동력이 372마력으로 증가하였다. 이어 1930년에는 전등이 148,811등, 전동력이 1,928 마력으로 늘어났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전동력보다 전등 공급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차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 대흥전기는 영업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여 1913년부터 8분의 배당을 시작으로 1917년 이래 매기 1할 내지는 1할2분의 배당을 하였다.

한일합당 당시 설립된 전기회사는 일한와사전기회사(日韓瓦斯電氣會社), 인천전기회사(仁川電氣會社), 부산전등회사(釜山電燈會社) 등 3개사였다. 최초의 전기회사였던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는 이미 1908년에 일한와사전기회사에 매수된 상태였다. 한성전기회사는 고종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미국인 콜부란으로 하여금 건설과 운영을 맡도록 하였다. 당시 전기사업은 한미전기회사에 독점권이 있었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의 전기사업을 장악하는데 적극적이었다.

대흥전기주식회사의 발전과정은 한일합방이후 일본인에 의해 운영된 전기사업의 전개과정을 잘 보여준다. 일제는 전기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본거지를 둔 전기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는 일제가 자본력을 토대로 한국의 전기사업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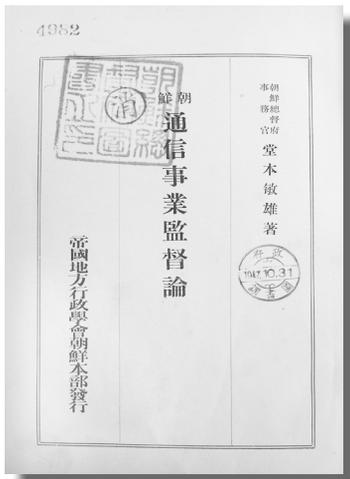
대흥전기는 독자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창립되고 있다. 일본 내 자본력에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일본인에 의해 창립되고 운영되고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즉, 일제에 의해 전기사업이 장악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대흥전기가 매수와 합병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전기사업 진출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일인사업가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경제분야 연구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 조선통신사업감독론(朝鮮通信事業監督論)

- 저 작 자 : 도모토 하야오(堂本敏雄)
- 발행사항 :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京城), 1938년
- 총 면 수 : 462쪽



이 책은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저자가 체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저자는 군산과 신의주의 우편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양체신분장국의 감독과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6년 말에는 조선총독부 체신국 전기과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조선체신협회 잡지에 관련 글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1935년 8월부터 1937년 6월까지 조선체신협회에서 발행하는 『조선체신』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을 재정리한 것이다. 「통신사업감독론—조선체신통신사업 감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연재 논문들에 대해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가 출판을 제의하였고, 저자가 이를 승낙하여 출판이 이루어졌다.

법학을 전공한 저자는 조선총독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체신사업 체험과 연구를 축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선 통신사업의 사업감독과 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이 저서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 책의 간행이 조선의 통신사업을 감독하는데 있어 유익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조선 총독부의 통신정책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책은 통신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감독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저자는 감독은 당시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극

히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저자는 일제말 조선총독부 정보과장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등을 통해 황국시민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조선인의 동화정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가 책의 결론에서 ‘체신봉공의 대정신 하에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양자의 완전한 결합융화’와 같은 슬로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앞장섰던 식민지관료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저서는 현재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통신사업감독의 의의
- 제2장 통신사업감독의 필연성과 중요성
- 제3장 통신사업감독론의 필요
- 제4장 통신사업감독의 목적과 임무
- 제5장 통신사업감독조직
- 제6장 통신사업감독의 대상
- 제7장 통신사업감독의 양태
- 제8장 통신사업감독의 방침
- 제9장 통신사업감독의 범위
- 제10장 통신사업감독의 수단
- 제11장 인사감독
- 제12장 회계감독
- 제13장 통신현업업무감독
- 제14장 통신감업무감독론
- 제15장 통신사업감독의 효과
- 제16장 결어

이 저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신사업과 감독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신사업감독의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저

자가 밝히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통신사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 3개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3개 사업은 공히 통신과 사업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소포우편과 우편저금, 위체저금사업(爲替貯金事業)을 포함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의 감독에는 보육행정(保育行政) 등의 행정작용 일부도 포함된다. 아울러 행정기구 내에서의 행정감독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행정감독을 주로 한다. 이것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통신사업감독의 개념이다.

제2장에서 저자는 통신사업감독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의 필연성과 중요성은 이 책이 실용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통신사업 감독은 행정작용의 자율적인 조건에 중요성을 둔다. 자율적인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남용과는 거리가 있고, 또한 방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제3장과 4장은 통신사업감독의 필요와 목적·임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통신사업 감독은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성과를 실현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시설에 대한 이용을 용이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신시설 이용상의 주지사항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통신사업 감독의 임무는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데 있다.

제5장은 통신사업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서는 내지, 즉 일본 통신사업감독의 조직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 조선의 통신사업 감독의 조직을 알아보고 있다. 통신사업감독계통구성의 요건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을 분리해야 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조선체신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업감독의 대상과 피감독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감독의 내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있다. 피감독기관과 관련해서는 우편국, 우편소, 전신국, 전화국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6장부터 8장까지는 통신사업감독의 대상과 양태, 방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통신사업감독은 그 수단과 목적, 그리고 대상에 의해 양태를 달리한다. 우선 감독의 수단으로 구별되는 것이 문서감독과 실지감독이다. 그리고 감독의 목적과 관련 있는 것이 예방적 감독과 광정적(匡正的) 감독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적극적 감독과 소극적 감독 등 감독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설명해 놓고 있다.

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감독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침이 필요한데, 저자는 지도주의와 종합주의, 철저히주의와 훈련주의, 통일주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9장과 10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통신사업감독의 범위와 수단이다. 여기서는 통신사업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감독기관의 감독권에 의한 제한, 감독 대상기관의 권한 내 제한, 감독정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업 감독의 수단으로 문서통첩과 문서경유, 보고, 실지조사, 시찰, 회의, 감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11장은 인사감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인사감독과 관련하여 저자는 회계감독과 업무관리와 더불어 3대 부분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적관리는 물적관리와 업무관리의 선결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체신봉공의식이 철저히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저자는 이 외에 종사원의 훈련, 보건위생, 상벌, 노무관리 등 실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제12장과 13장은 회계감독 및 통신현업 업무 감독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통신사업에 있어서의 물적조직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금전관리 등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현업업무관리는 현업업무관리에 대한 설명에 이어 우편현업업무조직 및 그 운영, 전신현업업무조직 및 그 운영, 전화현업업무조직 및 그 운영, 위체현업업무조직 및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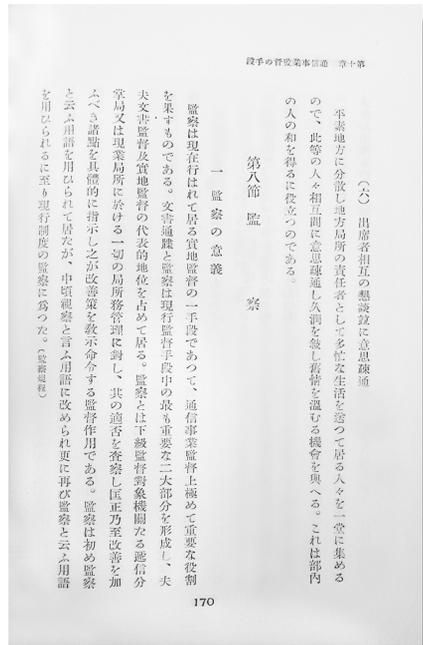
제14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통신감독업무 감독은 감독업무에 대한 감독이 갖는 의의에서 체신국의 방침 또는 지시의 적절하면서도 신속한 전달방안에 대한 내용

이다. 이어 여기서는 통신범죄 및 통신사고의 처리방안, 통신사업의 손해배상 등 통신감독 업무에 종사하면서 익혀야 할 실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15장은 통신사업감독의 효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통신사업감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감독계통의 순정과 단일성이다.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감독과 계획의 조화이다. 사업계획과 사업 감독이 보조를 맞추면서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감독과 인사의 긴밀한 연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감독의 권위를 세우는 것으로 감독효과의 향상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독종사원과 피감독 종사원의 업무에 대한 충실성이다. 이 외에 저자는 자율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것과 우편소에 대한 특별지도 등을 들고 있다.

제16장 결론부분에서 저자는 대체신주의의 기치아래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완전한 융화에 의해서만 통신사업감독의 진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종사원 전원이 협력하여 체신봉공(遞信奉公)의 정신으로 각 직분에 매진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 저서가 학술서로서의 가치보다는 실용서 내지는 통신사업에 대한 안내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체신사업 중 통신사업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근무 경험을 통해 얻은 통신사업감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열거하여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다. 감독의 의의와 필요성, 감독의 대상과 범위, 감독 방침과 수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은 실용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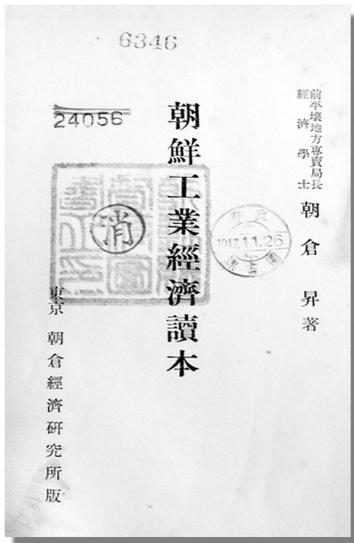


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고, 통신사업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피감독인이 참고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체신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 그것은 통신사업이 조선총독부 식민통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신사(遞信史)나 식민통치의 과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

- 저 작 자 : 아사쿠라 노보루(朝倉昇)
- 발행사항 : 아사쿠라경제연구소(朝倉經濟研究所)(東京), 1937년
- 총 면 수 : 351쪽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은 1937년 아사쿠라 노보루(朝倉昇)가 발간한 저서이다. 이 책은 총 19장, 351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 국내의 여강출판사가 영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공업발전의 기본적인 문제나 일본의 기업가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등 한국 공업의 개황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출신으로 경상북도·경기도의 보안과장, 총독부사무관, 경상남도 산업과장 그리고 평안북도 재무부장을 거쳐 평양지방전매관장을 마지막으로 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사쿠라 노부루는 퇴관 이후 귀국하여 경제 정책, 농업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은 조선의 공업 및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및 정보를 다양한 방면으로 정리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저서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937년 당시 조선 공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와 입지, 주변 환경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공업입지에 대한 현황으로써 전력생산 문제, 경성과 평양일대의 공업입지 문제, 석

탄 등의 연료공급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조선의 공업입지 잡론으로써 전력을 위한 물 관리 문제 인공석유개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업입지에 입각한 각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부분으로 조선의 신흥기업을 시작으로 제사·맥주·제분·제염·유지·제련·제철·요업·목제·비료생산 등 당시 조선공업을 지배하고 있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기업의 조선 진출을 바탕으로 조선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입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는 당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노구치(野口)계 회사와 가네가후치 방적회사 쓰다(津田) 사장의 강연을 수록하고 있다.

아사쿠라 노부루는 공업입지에 가장 중요한 면은 운수문제와 동력문제, 저렴한지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평양이나 경성 등의 대도시가 유리하지만, 높은 토지가로 인하여 공장의 입지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시 외곽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연결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관반민의 토지회사를 만들거나 토지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저자는 조선에서의 공업 활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의 공급이며, 전기 생산을 위한 저렴한 연료공급문제(수력 및 화력) 및 안정된 전력공급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1937년 당시 조선은 수력발전능력 약 2백30만kw를 가지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건설 중인 영월화력발전소가 향후 5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값싼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규모 자가 발전을 이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얻어진 전력이 전 조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 송전사업의 각 부문이 기업형태가 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력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자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자원에 대한 문제는 일만 경제 불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조선의 최대 장점인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조선의 집약노동(육체노동)은 일본에 비해 능률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이동이 많아서 숙련자

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방적공업의 경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숙련자를 얻는 것이 어려워서 기업과 노동자의 쌍방에게 손실을 주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이동의 원인은 조혼으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저자는 시골의 무교육자나 교육의 정도가 낮은 여자 기혼자를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양쪽 모두 이익임으로 이러한 방법이 적극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조선에서 공업 활동을 하는 것은 공장의 입지, 전력·자원 문제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조선의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저자는 1937년 당시 조선공업을 지배하고 있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제사공업·맥주·제분·제지·제염업·유지·제련·제철·요업·목재·비료생산 공업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조선 공업의 대부분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그 내용을 제염업과 유지공업, 그리고 비료공업 등 세 공업단체를 사례로 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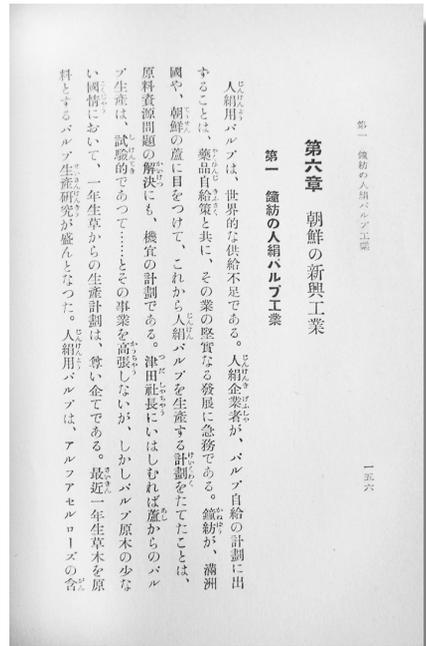
유지공업이란 기름, 경화유, 인조버터, 화장품 등에 사용할 스테아린 글리세린 벤트 등을 제조하는 가공업을 말한다. 원료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대별되며 조선에서는 일본해 방면에서 얻어지는 정어리 기름이 주가 되는데, 이 기름은 폭약의 원료이다. 당시 조선의 유지공업은 어업 등의 채유공업과 유지가공업이 발전하였는데, 유지가공업은 노구치의 조선질소회사가 대표적이다. 유지공업의 기본이 되는 조선의 정어리 어획량은 풍흉의 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풍어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자는 어유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유지공업은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1937년 당시 조선은 농업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금비(金肥)의 소비가 급증했으며, 질소를 필요로 하는 비료의 생산은 압록강을 막아 생산된 전력을 이용한 노구치계질소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비료값은 일본에 비해 매우 비쌌다. 또한 그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6

배로 늘어났는데,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비 대신 녹비(뚫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녹비는 콩과 식물이 공기 중 질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자는 콩과 식물이 우거진 조선에서 비싼 금비보다 이러한 녹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제염업은 식염을 생산하는 공업인데, 일본은 내지·외지를 포함하여 식염이 부족하였다. 공업염 및 소다공업의 원료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연간 2천5백만 톤의 수입이 필요했다. 소다공업은 염을 원료로 하여 그 성분이 되는 질소와 나트륨을 이용한 각종의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공업이다. 이는 인공섬유제조에 필수적이며 비상시에는 화약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아사쿠라 노부루는 전력 문제와 공업염의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선에서 소다공업이 번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만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제염시 발생하는 미네랄을 함유한 액체 혹은 분말인 ‘고즙’이 경금속공업에 고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염업의 장래가 밝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자는 1937년 당시 신흥기업들이었던 가네가후치 방적과 북선제지화학 회사를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인조견용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당시 인조견용 펄프는 세계적으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이윤을 내기에 매우 적합한 공업이었다. 따라서 두 기업들은 인조견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동강, 한강, 압록강 등의 주변지역에 공장을 세웠고, 만주국과 조선의 1년생 나무와 압록강 갈대, 소나무 낙엽 등을 원료로 펄프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질소회사 등 화학공업의 선두적 역할을 했으며, 조



선에 공업 기초를 확립한 노구치공업회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네가후치 방적 쓰다 사장이 조선(전남)에 공장을 세우게 된 계기, 처음 조선(부산)에 내렸을 때의 감상, 조선, 내지, 대만 등의 경제적 관련성 문제, 조선의 백색 의복과 색복에 관한 단상, 일만 경제 불력의 문제, 조선에 대한 차별철폐와 공생을 위한 협력, 가네가후치 방적의 조선 진출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평양 및 신의주 공장의 입지 등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조선공업경제독본(朝鮮工業經濟讀本)』은 일제 강점기 공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일본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업만을 서술해 놓은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당시 식민지 공업, 특히 조선의 공업 구조 이해에 좋은 자료이다.

(오대륙)

##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보고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京城協贊會報告)

- 저 작 자 : 경성협찬회잔무취급소(京城協贊會殘務取扱所)
- 발행사항 : 동경인쇄(東京印刷)(東京), 1916년
- 총 면 수 : 173쪽

이 보고서는 191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경성협찬회 보고서이다. 일제는 1910년대 새롭게 구축한 식민지 조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인을 포섭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를 열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조직과 연혁

1. 개요일반
1. 발기인
1. 경성협찬회규칙
1. 역원, 상담역, 사무촉탁 및 사무원

### 본회의 사업

1. 자금
1. 회의



\* 조선물산공진회와 관련한 연구성파로 다음이 참고된다.  
주윤성, 2003,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 『문화과학』33.  
최석영, 2001, 『한국근대의 박람회와 박물관』, 서경문화사.  
김태웅,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18.

- 1. 제규정 및 휘장
- 1. 관람권 및 입장권
- 1. 경성안내 및 회엽서
- 1. 설비
- 1. 접대
- 1. 여흥
- 잔무
- 수지결산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의 조선통치 5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 행사는 박람회 규모의 행사였으나, 지방의 물산경진대회를 뜻하는 공진회라 명명하였다. 이 행사는 당시 조선총독이던 데라우치(寺內)에 의해 1913년에 기획 발의되었다.

공진회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 동안 경복궁에서 열렸다. 공진회장의 면적은 총 72,000평 규모였다. 이 중 근정전과 교태전, 경회루 등 기존의 건물과 신설건물을 합쳐 총 5,226평 규모를 사용하였다.

공진회는 “피폐하고 내우외환에 시달리다 마침내 일본에 병합된 조선이 식민통치를 받아 유신의 기운을 맞아 1천만인의 잠을 하루아침에 깨운 증거”로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곧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눈부시게 변한 조선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조선의 무능함을 입증하고 일본의 유능함을 과시하여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를 구현한 일대 선전의 무대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경복궁의 상징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공진회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한 후, 1913년 9월에 경복궁에서 시설물 공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미술관을 비롯하여 제1호 진열관, 제2호 진열관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근정전, 경회루, 교태전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궁안의 전, 당, 누각 등 4천여 칸의 건물을 헐어서 민간에 방매하였다.

공진회 회장은 경복궁 안의 7만2천평의 부지에 마련되었다. 궁내에는 근정전,

교대전뿐만 아니라 경회루 등의 주요 건물들을 적당히 수리하여 회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재래건물들을 헐고 각종의 진열관으로 바꾼 결과 그 사용건물은 총계 5천 2백 26평에 이르렀다. 그 공간에는 제1호관, 제2호관, 심세관, 미술관, 기계관, 박애관, 농업분관, 수산관, 참고관 외에 별도로 참고미술관과 인쇄사진관, 철도국관, 영림창, 특설관, 관측관, 동척특설관, 우사, 계사, 양돈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진회는 협찬회의 도움을 통해 일을 진행하였다. 협찬회의 목적은 “관람자를 유도하고 공진회장 외부의 관람을 알선하는 일, 선박여관 및 기타에 관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 외국인관람자에 대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일, 내빈의 접대 및 그 설비를 도모하는 일, 각종 여흥시설의 설비 혹은 설비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대회와 개최를 권유하는 일, 명승고적 등의 소개하는 일, 기타 공진회의 성공적인 효과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공진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상인들의 협력단체로 공진회의 전시진행을 보조하던 경성협찬회에 의해 발행되었다. 원색화보로 발행된 이 포스터의 가운데에 기생이 있고, 그 뒤에 공진회장이 양분되어 그려져 있다. 위에는 근정전과 경회루의 모습이 붉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천황가의 상징인 국화와 함께 공진회를 위해 건설되는 근대적인 건물들이 서있다.

일제는 공진회를 위해 각종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부윤, 군수, 도장관 등은 출판, 관람, 단체시찰, 여행숙박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중동원을 위해 공진회의 사무총장이 각 도의 장관과 일본 부현회에도 의뢰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협찬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민간협찬회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산업발달에 저해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와 각 도에 총 28개의 협찬회를 조직하여 기금모금 뿐만 아니라 대중 동원에 진력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특히 협찬회를 ‘관람장려회(觀覽獎勵會)’라 부를 정도로 관람 유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관람장려회 사무소와 규약 등을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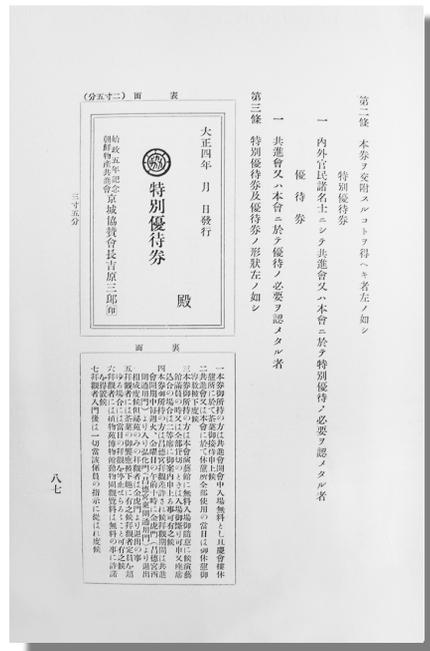
였다. 경성협찬회의 경우 발기인은 일본인 명사들과 함께 조선인으로 이완용, 고영희, 조중응, 김가진, 민영기 등이 포함되었다.

경성협찬회의 업무는 공진회에 대한 홍보이다. 이를 위해 협찬회는 문서를 통한 홍보와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구분하여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 신문 및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한 홍보방안, 비행기를 통한 홍보, 상점의 앞 쪽에 장식물을 설치해 홍보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위해 경성협찬회는 설비 투자도 함께 하고 있다. 접대관, 야외극장, 아이들의 나라, 매점 및 음식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협찬회가 관람객을 유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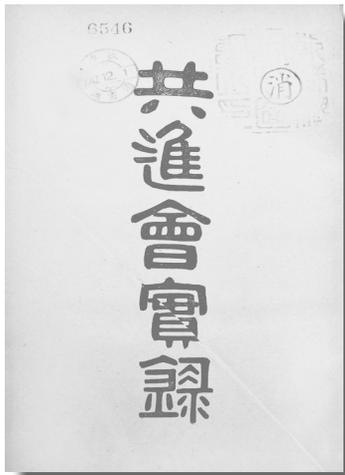
개회중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접대관을 들 수 있다. 접대관에서 접대하는 방안부터 찾아온 관람객을 접해낸 것까지 다양하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시정5년'을 기념해 실시한 조선물산공진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의 형식을 통해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조선물산공진회가 진행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참고할 만하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시정5년'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당시 시대상황도 함께 추론해 낼 수가 있다.



## 조선총독부 시정5년기념 공진회실록 (朝鮮總督府始政五年紀念共進會實錄)

- 저 작 자 : 선우일(鮮于日), 서병협(徐丙協)
- 발행사항 : 박문사(博文社)(京城), 1916년
- 총 면 수 : 8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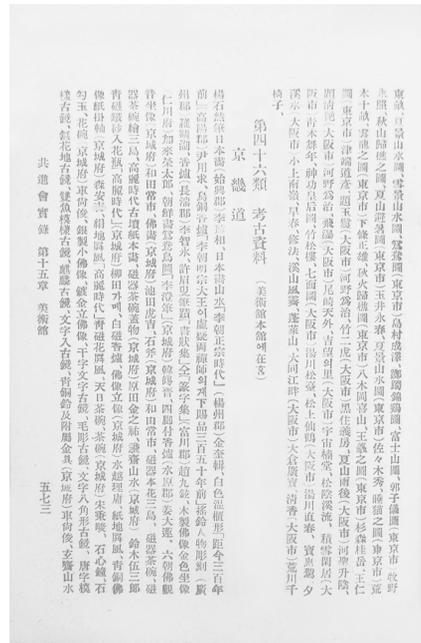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시정 5년을 기념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1915년에 그들의 조선 강점을 축하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는 일종의 박람회로서 제국주의의 선정장이 된다. 또한 식민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상품의 광고였다. 특히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숨겨져 있었다.

일제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공진회의 목적은 총독정치 5년간에 있었던 조선산업의 진보발달을 보여주고, 이로 말미암아 밖으로 조선의 산업을 소개함과 아울러 조선산업의 개량진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공진회개설의 취지
- 제2장 공진회의 연혁 및 조직
- 제3장 공진회 사무장정
- 제4장 공진회 직원

- 제5장 공진회 경비
- 제6장 공진회회장 및 건축공사
- 제7장 공진회 규칙
- 제8장 심사장 및 심사부장
- 제9장 심사관
- 제10장 진열관 및 출품
- 제11장 공진회의 개장식
- 제12장 공진회의 개최식
- 제13장 제1호관
  - 농업/척식/임업/광업/수산/공업
- 제14장 제2호관
  - 임시은사금사업/교육/토목 및 교통/경제/위생 및 자해구제/경무 및 사육
- 제15장 미술관
- 제16장 심사개평
  - 명예금패
- 제17장 심세관
  -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
- 제18장 철도국특설관
- 제19장 동양척식회사특설관
- 제20장 영림창
- 제21장 기계관
- 제22장 박애관
- 제23장 관측관
- 제24장 참고관
- 제25장 관외진열
- 제26장 축산관
- 제27장 담수양식어류방양지
- 제28장 고분모형관
- 제29장 교육실습관
- 제30장 강원도목탄관
- 제31장 공진회의 폐회식



〈부록〉

총독부는 일찍부터 이 대회를 준비하였다. 공진회의 계획은 1913년 3월 제31회 제국회의에서 1913년도 공진회 경비예산의 협찬을 통과시켰다는 데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 6월 29일 훈령에 의해 공진회 사무장정을 공포하고, 그 해 8월 3일에는 관통첩을 통하여 공진회 평의원에 관한 장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에 사무총장, 사무위원장, 사무위원을 두며, 출품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장, 심사부장과 심사원을 두고 공진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을 두었다.

사무총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았으며, 기타의 직원은 총독부 직원 중에서 총독이 임명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를 촉탁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이 통리한 평의회회의 의원은 총독부와 각 도에 두되 총독부의 평의원은 각 부 장관, 외사과장, 학무국장, 경무국장, 철도체신 양국장관, 임시토지조사국장, 이왕직차관으로 충당하는 외에 명망있는 실업가 중에서 선정하였다.

각 도의 평의원은 각도 장관으로 충당하는 이외에 명망있는 실업가 중에서 각도 일본인 5인과 조선인 5인을 각도장관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며 그 평의회는 각도 장관이 이를 통리하고 도내의 출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케 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전국의 행정조직을 망라하여 공진회의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공진회가 식민통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사무위원은 여러 차계 회동하여 공진회에 관한 제반의 규례, 진열관 기타 건물의 배치, 영선공방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총독부는 1915년 9월 1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공진회를 경성부 경복궁 내에서 개최한다고 고시하였다. 또한 공진회 규칙을 공포하여 출품의 종류, 범위, 방법, 심사, 포상 및 입장 관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내의 출품은 관청 출품을 제외하고 각도에서 이를 수집 반송(搬送)하여 부류마다 각 도별로 진열하는 한편 각 도청이 따로 과거 5년간의 산업진보를 보여주는 각종의 시설과 성과물을 보여주도록 하였

다. 이러한 목적의 출품을 계획하여 적은 면적에 명료한 방법으로 도마다 진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상품처럼 조선의 산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일상필수품에 국한하여 참고품으로 승인하고 이를 참고관과 기계관의 대부분에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1914년 9월 7일에 조선내 생산품의 전시 종목을 결정하고, 10월 29일 이를 고시하였다. 이듬해 1월 18일에는 공진회 전시물품의 통관규정을 고시하였다.

공진회의 소요경비는 대부분 국비에서 충당하였다. 즉 총독부예산 지출금액은 50만엔과 각 지방청의 지방비지출액 및 민간의 기부금에 의하여 성립한 각지 협찬회의 비용 20만엔을 합하면 그 총액이 70만엔에 이른다.

공진회 운영 국비는 사무비, 신영과 설비비, 진열품비, 보조비의 4과목으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그 중 최다 항목은 신영건설비 311,540엔이며 그 다음은 사무비 124,856엔, 보조비 33,200엔, 진열품비 30,400엔 등으로 보조비는 협찬회와 각도 출품비에 보급(補給)하였다.

예산을 확보한 조선총독부는 1913년 9월에 시설물 공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미술관을 비롯하여 제1호 진열관, 제2호 진열관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근정전, 경회루, 교대전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궁안의 전, 당, 누각 등 4천여 칸의 건물을 헐어서 민간에 방매하였다. 공진회 개최를 명분으로 궁궐면적 총 7,225칸 반에서 무려 절반이상을 철거하고 각종의 진열관을 새로 조영하여 설비하였던 것이다.

공진회 회장은 경복궁 안의 7만2천평의 부지에 마련되었다. 궁내에는 근정전, 교대전뿐만 아니라 경회루 등의 주요 건물들을 적당히 수리하여 회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재래건물들을 헐고 각종의 진열관으로 바꾼 결과 그 사용건물은 총계 5천 2백 26평에 이르렀다. 그 공간에는 제1호관, 제2호관, 심세관, 미술관, 기계관, 박애관, 농업분관, 수산관, 참고관 외에 별도로 참고미술관과 인쇄사진관, 철도국관, 영림창, 특설관, 관측관, 동척특설관, 우사, 계사, 양돈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심세관은 각 도의 각종 시설과 생활모습의 변화추이를 한 눈에 제시하고 있다. 기계관에서는 새로 개발된 기계장치들을 전시하고 관람객들 앞에서 시범운

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참고관에는 외국의 진귀한 출품작들만 진열하여 비참한 식민지 현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현실 공간'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공진회는 출품의 선정과 배열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비교와 대조를 위한 기법으로 모형과 회화 등이 동원되었다. 또한 다이쇼(大正)천황의 즉위의례와 관련하여 천황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호관은 박람회 일반분류에 의거해 구성되었으며, 「공진회규칙」 제4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치 42년(1909) 이전에 채취, 산출, 가공 또는 제조한 물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품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통치기간에 생산되지 않은 경우 통치의 성적을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리조합의 모형이 출품되고 있는데, 임익남부수리조합에서는 「임익남부수리조합사업설명서」를 출품하여 명예금패를 받았다. 총출품자는 17,739명이었는데, 이 중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각 13,717명과 3,917명이었다. 그리고 총출품수는 40,444점이었다. 이 중 25,373점이 심사대상이었으며 수상자는 6,965명에 이르렀다.

경무의 경우, 일반 박람회와는 구분된다. 각도의 소방조수표(消防組數表), 조선의 미신(迷信), 조선경찰의 연혁, 포도대장의 행렬모형과 함께 인구분포표와 그 활약상 등 경무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옥(司獄)은 각종 소송과 감옥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미술관을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 연와(煉瓦)로 지었고, 조선의 예술을 대표할 석불상과 석탑 등을 가져와 음악당 설치에 이용하였다. 경회루 부근에는 매점, 음식점, 여흥장으로 개방하고 경성협찬회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심세관과 특설관을 설치하고 있다. 심세관에는 한일합방이래 5년간의 13도 시설과 그 성적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애관에는 일본 적십자 본부와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서 출품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참고관은 철물과 편조물, 사(絲), 지(紙), 요업제품, 금속과 금속품, 목죽제품, 문방과 완구, 농잡구, 어업용구, 기계와 기구, 차량, 잡공품 등이 출품되어 전시되었다.

또한 일본제품과 그 밖의 외국제품 등이 전시되었다. 참고관의 경우 식민지 조

선과 거래가 활발한 도쿄와 오사카, 나가사키 등 24부현의 상품들을 대거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이 때 판매액은 12,139엔에 이르렀다.

이번 공진회에는 조선인의 대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심사결과 우등으로 인정된 출품에 대해서는 그 출품인에게 명예금패, 금패, 은패, 동패, 포상 등의 5종의 포상을 수여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진회가 처음 출발부터 상품전시 위주의 박람회기 아니라 식민통치의 미화에 목표를 두고 시정사업의 선전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데라우치총독 스스로가 “기왕 5년의 진보를 구체적으로 보게하는 것은 산업을 고무장려하는 최근의 첩경”이라고 한다거나 “부인과 소아도 한번 보고 능히 신정(新政)의 효과를 알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9월 11일에 개장한 공진회의 공식 개회식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코토히토 일행은 고베 항구에서 해군함정 도키와호를 타고 9월 28일 제물포를 거쳐 경인선 특별열차로 경성에 도착해 있었다. 코토히토는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엄중한 의장 하에 남대문을 거쳐 경복궁으로 들어섰다.

이 책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진행과정을 잘 살펴보고 있다. 공진회가 진행되는 각 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각 도의 협찬회상황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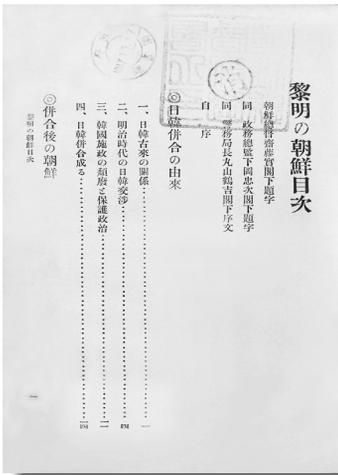
## 4. 향토 · 풍물

- 여명의 조선(黎明之朝鮮)
- 북선개척사(北鮮開拓史)
- 군산부사(群山府史)
- 조선민요집(朝鮮民謠集)
- 부채 · 왼새끼 · 타구 · 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
- 조선의 차와 선(朝鮮의茶と禪)



## 여명의 조선(黎明之朝鮮)

- 저 작 자 : 가네야 히데오(金谷榮雄)
- 발행사항 : 동아시아회(東亞義會)(京城), 1924년
- 총 면 수 : 436쪽



이 책은 3·1운동이후 내선융화를 목표로 가네야 히데오가 1920년대 한국(朝鮮)의 과거(過去)와 현재(現在) 그리고 미래(未來)에 관하여 조명한 책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한국병합(併合)'의 유래(由來)를 비롯하여 강점기의 한국, 한국통치의 이상(理想)과 내선동화(內鮮同化), 민족운동의 과거 및 현재, 한국산업개발의 전술(前述), 각도의 산업시설과 그 특색 등이다.

이 책은 현재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책은 판권과 책의 제목이 적혀 있는 내지부분이 상실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한병합의 유래
- 병합후의 조선
- 신시정(新施政)의 대강과 치적
- 조선통치의 이상과 내선동화
- 민족운동의 과거와 현재
- 국경경비의 현상

- 조선산업개발의 진도
  - 산업금융기관의 기능과 그 활동
  - 교통정책상에서 본 조선의 현상
  - 조선의 관영사업
  - 조선 각도의 산업시설과 그 특색
  - 참고자료
- 〈부록〉

이 책은 총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조선공직자 명단을 적시하고 있다. 제일 먼저 ‘한일합방’의 유래에 대해 저자는 한일관계의 밀접성을 강변하면서 고대 삼국이 왜의 신국으로 존재하였음을 부각시키려 한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병합 이후의 조선이란 주제이다.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는 제1대 조선총독에 부임하면서 선정주의(善政主義)를 표방하게 된다.

여기서의 선정주의는 조선시대의 비정(秕政)을 개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데라우치총독의 통치기간 중에 치안이 유지되고 생명재산이 보호되었으며, 재정이 조성되었고 산업이 육성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하고 있는 관제개혁과 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에서의 체제정비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조선통치가 내선일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서 찾아진다. 또한 저자는 당시 민족운동가를 좌경운동이나 사이비주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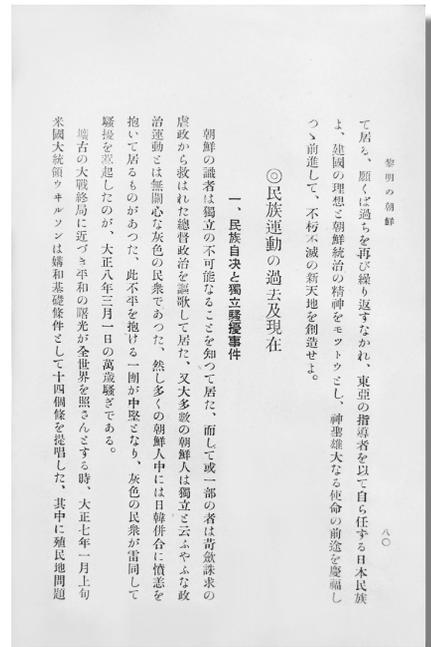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면을 외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 다른 한쪽에서는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일인들의 식민통치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은 그 본질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군사기지화되고 있었으며 경제의 예속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내세우는 산업의 육성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통신기구의 정비는 군사적 필요성과 한국내에서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선경영의

기초적 공작 건설의 중추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군사적인 지배목적 외에 북부지방의 물자를 일본과 서울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경원철도의 부설을 서둘러 진행하여 4년 만에 공사를 완공시켰다. 이처럼 철도건설에 집중한 이유는 ‘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저자는 참고자료에서 한국인의 인성과 습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국인의 ‘무종교’와 ‘미신’에 대해 우선 설명하면서 한국인의 ‘미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허영을 즐기고 나태하다는 점과 은혜를 모르고 시기하는 성품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잘못된 습성을 살펴봄으로 한국이 일본에 합방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붕당성’을 강조하여 조선의 ‘전근대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3·1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3·1운동을 통하여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차단시킬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이 방안으로 한국인의 ‘저열한 민족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저열한 한국인을 위해 일제가 행하는 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3·1운동을 ‘일부 야심가들의 선동’에 의해 발발한 것으로 폄하하면서, 한일합방에 따른 화학작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3·1운동에 의한 과장을 최소화하려는 저자의 의지를 통해서 3·1운동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일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3·1운동 이후 일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효과를 선전하고 이에 대한 ‘일인동포’



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 책이 출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저자가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의 경영이 일제의 국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선부원(朝鮮富源)을 개척하고, 조선인을 잘지도하여 내선융합의 기초를 세워서 내선인(內鮮人)의 합동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각도의 산업시설을, 즉 경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상공업은 물론 군산항의 장래, 그리고 팔복할 만한 충남의 수산과 농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또한 이 책은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식민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사이토 총독은 1919년 9월에 부임하면서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사이토가 부임하면서 실시한 훈시에 따르면,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조선인을 가르치고 이끌어 그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고,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상·사회상의 대우도 내지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지연장주의’는 데라우치총독의 조선통치방식, 즉 민족의 융합동화와 일시동인(一視同仁)을 표방하면서도 헌병경찰제를 근간으로 하여 민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차별하였던 것에 대한 민족적 저항을 묵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목적은 구관조사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고 보여진다. 이는 사이토가 토로하고 있듯이, 조선이 오랜 관습을 존중하는 곳이어서 하루 아침에 개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선인의 의식과 관습을 변화시키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제강점기 특히 3·1운동 전후 일제의 식민통치의 기초를 살펴보는 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북선개척사 (北鮮開拓史)

- 저 작 자 : 아베 카오루(阿部薰)
- 발행사향 : 민중시론사(民衆時論社)(京城), 1938년
- 총 면 수 : 570쪽



『북선개척사』는 민중시론사 사장인 아베 카오루(阿部薰)가 발간한 책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각 방면의 발달사에 대한 총 20편의 서술과 동만주건설사의 〈부록〉을 합하여 57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히 알다시피 ‘북선개척사업’은 1930년대 일제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지하자원과 전력을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식민지 정책을 말한다. 일제는 1920년대 말에 불어 닥친 세계 공황을 만주 침략으로 모면하려 했다. 이에 따라 ‘북선 개척을 통해 조선의 부원을

을 증진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 북부 일대에 침략 전쟁을 위한 중화학 군수공업을 건설하고, 교통망을 확장함으로써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에는 당시 식민지 조선 농촌 내의 인구 과잉에 따른 불만 폭발과 혁명 세력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조선의 저렴한 노동력을 군수 산업과 원료 자원의 수탈에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착취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체제의 확고한 재편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1930년대 초반·중반 이래 ‘농공병진정책(農工並進政策)’을 시도하였고 ‘북선개척사업’이 중요한 중심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1929년의 세계적 공황과 뒤이은 만성적인 농업 공황은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에

도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일제도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에 발맞추어 소위 '일만선(日滿鮮) 경제블럭'의 국가독점주의 체제 형성을 통한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자 대륙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에 1931년 「중요산업통제법」을 제정하여, 준통제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말미암아 자본 과잉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과잉된 자본은 활로를 찾기 위해 식민지로 적극 진출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조선은 「중요산업통제법」은 물론 「공장법」마저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활동이 자유로웠고, 낮은 땅값(低地價)과 임금(低賃金), 풍부한 수력 및 지하자원 등의 존재로 적합한 수출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더군다나 일제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킴으로써 준전시 체제로 돌입하자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서 군수 공업의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한편 공황의 여파로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증산 일변도의 농업 수탈 정책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였다. 공황으로 조선 농촌이 급격히 무너짐에 따라 격렬한 소작 쟁의·적색 농민조합 투쟁 등이 나타나 식민지 지배체제가 동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는 농촌사회의 몰락과 농민의 혁명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벌이고 적체된 농촌 노동력을 체제 내로 흡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궁민구제 토목사업 등 식민지 유효수요 창출정책을 실시하여 공업화의 기초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촌 과잉 인구를 동원 노동자로 흡수시켜 금융자본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뭉으로써 지배체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이 시기 토지 정책은 각종의 행정기구를 동원하여 일본 자본의 진출과 넓은 면적의 값싼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정책의 수행을 위해 공공연한 폭력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1930년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조선 공업은 완전히 일본자본에 장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의 중심부도 일본인 기술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인 자본은 주변부를 보충하는 영세 기업에 집중되었고, 조선인 노동자도 일본인 기술자를 보조하는 단순한 단순 육체 노동에 집중되었다. 결국 이 시기 조선총독부 공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요산업통제법 및 공장법과 같은 자본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시책을 적극 회피하고, 전력통제·보조금지급 및 저지가

정책 등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일제는 중·일 전쟁을 전후로 하여 중요산업통제법을 연장·실시하면서 군수공업에 박차를 가했다.

따라서 1930년대 중반 일제는 조선 북부 일대에 경금속공장, 화학공장, 군수품 생산과 관련된 공장 등을 급속히 신설, 확장하였다. 더불어 화학군수공업 건설에 필수적인 북부 지역의 교통망 정비·확충, 산림자원·지하자원·수력자원의 개발 등에도 주력했다. 일제는 1933년에 북선 철도(수성-회령선, 청진선, 회령탄광선, 도문선)를 정비·확충하고, 이후 중앙선을 신설하는 한편 경부-경의선, 경원-함경선 등의 북선화를 완료했다. 그리고 북선 철도와 북선 3항(나진·웅기·청진)을 연결하여, 일본-한국-만주로 이어지는 운송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일본 서부지방의 중요 항인 마이즈루(舞鶴)·니이가타(新潟)와 조선의 나진·웅기·청진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군대 및 전략물자를 철도를 통해 중국 각 지방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북선 철도 및 북선 도로를 조선 북부 국경 일대와 중국 동북 지방에서 발생하는 조선인의 반일 투쟁에 대한 탄압과 군수 산업의 건설 및 자원 약탈에 이용함으로써 조선을 대륙 침략의 터전이자 견고한 병참 기지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군수 산업의 확대에 따라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자, 수력 자원이 풍부한 서북선 지방 특히 부전강·장진강·허천강의 3대 수원을 기본으로 1933년 4월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갔다. 또한 군수 원료의 보충, 군사 시설의 건축, 나아가 국경 경비의 강화를 목적으로 조선 북부 일대의 산림 자원을 대규모로 수탈했다.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백무선·혜산선 등 산림 철도 및 도로를 부설하고, 현지에는 제재공장을 건설했다. 일제는 화전농민 500호를 1단위로 하는 산농지도구(山農指導區)를 설정하고 화전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산림 자원 수탈을 위한 강제 노동에 동원시켰다. 이로써 1931~43년에 3,000만ha에 달하는 산림이 남벌되었다. 또한 영림서(營林署)와 그 지서를 각지에 설치하여, 조선인 화전민을 단속하고, 벌채 구역 내 민중의 사상 동향 및 행동을 감시했다. 또한 화전민의 일부를 선농이민(鮮農移民)이라는 형식으로 중국 동북방

지역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산림 자원의 수탈로 화전민의 생활은 근저에서부터 파괴당했다.

한편 조선의 군수공업화와 관련하여 북선개척사업은 남면북양(南綿北羊)이라는 공업원료 증산책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당시 일본은 섬유공업의 원료로서 목화와 양모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목화와 양모를 증산함으로써 미국 단작화로 인한 농업 정책의 모순을 극복하고 동시에 섬유 공업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북선 개척을 통해 천연의 조건을 갖춘 개마고원지대를 대규모의 면양을 사육하는 목양지로 개발하고, 나아가 이 지대를 아마 재배 지역으로 조성했다. 또한 북부 지방의 토산품인 대마의 재배를 강요하고 수탈했다. 그리고 총독부는 남부 지역의 농촌 과잉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 선만척식주식회사에 함경남도·함경북도·평안북도 8군의 국유 임야를 대부하여 1938~45년에 1만 호의 농민을 이주시켜 이주자 1호당 경지 4정보, 채초방목지 1정보, 신탄림 2정보, 기타 1정보 등 합계 8정보를 할당하고 자작농화한다는 정책도 실시했다. 결국 1930년대 일제가 실시한 북선개척사업은 북부 지방의 지원을 수탈하고 동시에 만주 침략의 근거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선(北鮮)’하면 해방 이후 대체로 ‘북한(北韓)’ 지역으로 대체하여 부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선개척사』에서 보듯이 북선은 함경도 즉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로 국한하여 보고 있다. 이는 총론격인 1편의 북선발달총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시대 파도를 타고 진흥 도약하는 북선 지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함남과 함북의 옛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선’은 평안, 황해, 함경도를 아우르는 ‘북한’ 지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을 기점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관북’ 지방, 즉 함경도 일대이며, 평안도는 별도로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서선(西鮮)’이라고 칭하였다.

1932년에 이른바 북선개척사업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북선 지방의 경제적 가치는 종래 수산업 이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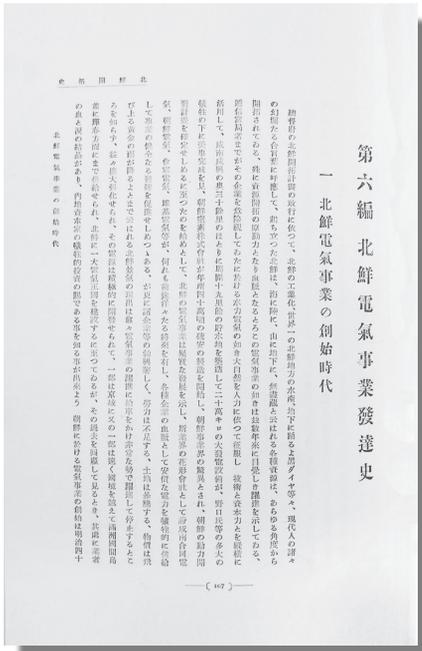
크게 변모하여 해안선은 급속히 근대 공업의 중심지로 변하여 갔으며, 그 사업을 내륙 산악지대에서 전개코자 노력 중이었다. 따라서 1938년 이 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북선 지방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단계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편부터는 이런 ‘북선’ 즉 함남과 함북 지방의 각 방면에서의 발달·변천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2장에서는 북선 지방에 대한 일제의 시정 변천에 관한 것으로, 역대 총독들의 북선 지방과 만주에 대한 개척과 통치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였다. 데라우치, 하세가와, 사이토, 야마니시, 우가키, 미나미 등 1938년 현재의 8대 총독별로 장을 설정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3편은 행정과 재정의 발달사로, 행정과 재정의 변천 과정과 1938년도의 예산 현황, 함남과 함북의 도정 방침 및 북선 양도(北鮮兩道)인 함남·북의 함흥부, 청진부, 원산부, 나진부 및 읍면 평균의 재정과 예산의 팽창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당시 함남과 함북 도정 이끌어가는 인물들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우선 함남도청은 지사인 사사가와 교자브로(笹川恭三郎), 내무부장 사사키 다카요시(佐佐木高治), 참여관 김태석(金泰錫), 등과 함께 이하 과장급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다음 함북도청에는 지사 코지마 다카노부(兒島高信), 내무부장 이성근(李聖根), 칙임참여관 장헌근(張憲根) 등과 이하 과장급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4편은 교통운수 분야의 발달사로서 교통, 철도, 도로망, 자동차 현황, 항공로, 하천항만, 해운 사업 현황,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이다. 이중 당시 북선의 도로망의 경우 함북 1등 도로 543km, 2등 도로 1,405km, 3등 도로 717km와 함남 1등 도로 446km, 2등 도로 1,150km, 3등 도로 1,438km 등 전체 5,000km가 넘는 각급 도로가 정비되었다고 나타난다.

이어 5편의 체신 사업, 6편의 전기 사업, 7편의 금융 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7편의 금융기관 발달사에는 북선 지방의 금융 기관, 즉 은행과 무진회사(서민금융기관, 오늘날의 상호신용금고와 비슷함)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8편에서는 금융 조합의 발달사인데, 이는 1907년에 일제가 농공은행이 담당하던 일련의 업무를 더욱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 기관으로, 1914년과 1918년의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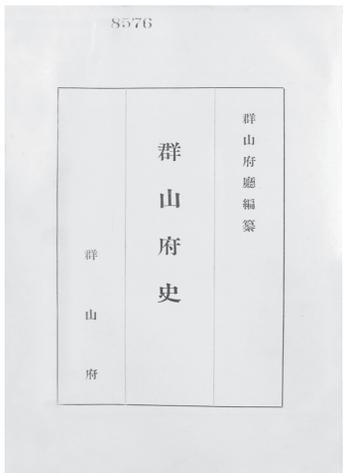
개정으로 촌락과 도시에 설치하고,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점차 체제를 정비하여, 초기와는 달리 구매·판매 사업을 제한하고 농업자금 이외의 대부 사업도 추진하는 등 금융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1933년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한 거대한 금융 기관으로 발전하여 1938년 말에는 조선식산은행에 버금가는 유력한 금융 기관이 되었다. 이 조합은 1930년대 공황 아래에서 추진되었던 농촌 진흥 운동에 발맞추어 위기를 타개하고자 1935년에 식산계를 조직, 영세농

까지 조합원으로 포섭하는 등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식민 정책을 수행해 낸 주요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금융 조합은 농촌의 주요 기관이던 조선농회와 더불어 8·15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으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북선개척사』는 이후로도 9장의 수산 사업, 10장의 생선(정어리) 기름 및 비료 제조, 11장 어업 조합, 12장 농업, 13장 수리 조합, 14장 임업, 15장 광업, 16장 공업, 17장 상업·무역, 18장 상공회의소, 19장 교육, 20장 경찰·사법, 21장 항만·도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하고 외진 지역에서 거대한 상공업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인들의 역할과 거기에 참여한 조선인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일제의 한국에 대한 수탈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군산부사 (群山府史)

- 저 작 자 : 군산부청(群山府廳)
- 발행사항 : 군산부(群山府), 1935년
- 총 면 수 : 318쪽



『군산부사(群山府史)』는 총 30장, 35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군산부사(群山府史)』는 군산이 개항된 시기에서부터 이 책이 기술된 시기까지 군산의 역사, 사회, 경제, 기반 시설, 정치 등 이 지역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도지(道誌), 군지(郡誌) 등의 성격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산부사(群山府史)』는 개항시기부터 1935년까지의 군산의 정치, 사

회, 경제 등 거의 대부분이 기술된 자료이다.

군산(群山)은 전라북도의 서북부, 동경 126°42'45", 북위 25°59'10"에 위치해 있다. 또한 군산은 한말에 조선의 6대 강(江) 중 하나였던 금강(錦江)의 하류, 김제·옥구로 대변되는 호남평야의 배후 지역이기도 했다. 군산은 1889년에 일본에 의해 개항되었으며, 1910년 10월 1일 종래의 옥구부 일원을 관할로 한 군산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군산은 부(府)로 지정되었다.

전북지역은 예로부터 전주(全州)·김제(金堤)·옥구(沃溝)를 잇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교역에 필요한 항구, 지리상의 이점 등이 갖추어진 지역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과 국내 각지에서 수탈한 각

종 물자들을 한곳에 모아 자국내로 유출하기 위해 1899년 5월 군산항(群山港)을 개항시켰다. 개항의 또 다른 원인은 당시 군산이 조선의 물산들이 모여 큰 시장을 이루었던 강경(江景)·공주(公州)·전주의 접점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일제는 그들의 상권을 국내에 용이하게 확대하려는 의도와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 군산항을 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1900년 8월 군산과 오사카(大阪)를 잇는 직항로를 개설하여 군산과 일제 본토와의 직교역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제는 수탈의 용이성과 가속화를 위해 1910년 10월에서 1914년 1월까지 대전→가수원→두계→논산→강경→이리→김제→광주→송정리→영산포→목포를 연결하는 약 261.3km의 철도를 건설하였고, 이리(裡里)와 군산을 잇는 24.8km의 철로(鐵路)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의 미곡과 수탈 물품들을 군산항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전주, 이리, 군산을 잇는 국내 최초의 포장도로 ‘전군가도(全群假道)’를 개설하였다. 1908년 당시 군산항의 수출품 중 80%가 쌀이었고, 99%가 대일 수출품이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수출 경향이 이 지역에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군산은 일제수탈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산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1900년도 초반 이후 많은 일본인과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인수가 늘어난 이유는 개항 이후 촉발된 노동력의 수요 때문이었다. 일본인 역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수가 늘어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산의 조계(租界)에서 거주하였다. 『군산부사(群山府史)』에 의하면 개항 직후 군산으로 이주한 일본인은 77명이었고, 한국인은 511명이었으며, 기타 외국인은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항 1년이 지난 1900년에는 일본인 422명, 한국인 780명, 기타 외국인 24명으로 거의 6배에 가까운 일본인이 이주하였다. 이후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점되자 이주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1919년 일본인 거주자 수가 한국인 거주자 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인 1934년 군산의 민족별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일본인

9,408명, 한국인 27,144명으로 일본인의 수도 늘었지만, 한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변 지역 중에서도 군산 지역이 물류, 상업, 공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여 인력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등 일련의 경제침탈, 관(官)과 결탁한 일본인지주·한국인지주의 수탈과 핍박은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이탈하게 만들었다. 토지에서 이탈한 많은 농민들은 군산과 같은 인력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군산 지역에 한국인의 수가 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으로 이주한 일본인 9,408명 중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이 1,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나가사키현(長崎縣) 868명, 에히메현(愛媛縣) 60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직업 분포는 공무(公務) 및 자유업 1,107명, 상업 및 교통업 831명, 공업 289명 순으로 공무 및 자유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군산 지역에 일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군산 거주 일본인들은 군산일본민회(群山日本民會)를 조직하고 일본인 민회규칙(日本人 民會規則)을 제정, 13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군산일본민회는 1906년 목포 일본영사관 군산분관이 폐지되고 군산에 이사청이 개설되고, 「민단법」이 시행되자 회칭을 군산거류민단(群山居留民團)으로 바꾸었다. 거류민단은 일종의 자치 기구였다. 민단은 법인체로써 일제의 보호 아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군산은 1914년 부(府)로 승격되었고, 같은 해에 일인 교육사업을 위한 ‘군산학교조합’이 발족되었다.

‘군산학교조합’처럼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산에 일본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1899년 영사관분관주임(領事館分館主任)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의 부인이 세운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群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가 최초였다. 1912년 11월에는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群山公立商業補習學校)가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 부설되었다. 이 보습학교는 1918년 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群山公立簡易商業專修學校)로 개칭되었고, 그 학교 조직이 개편되었다. 그 후 1923년 「교육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업보습학교(商業補習學校)로 개칭되었다. 학생 수는 약 100명이었고 교직원이 1명, 외지의 소학교 직원이 겸무하는 형태였다.

군산공립보통학교(群山公立普通學校)는 1911년에 세워졌으나 이 학교 출신인 김수남, 이남을 등이 1919년 3월 23일 방화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자 군산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보통학교 학생들도 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월 14일 이 학교 출신인 김학술과 70여 명의 학생들이 동맹하여 퇴학원을 제출하는 운동을 벌였고, 이후 김수남과 이남을이 중심이 되어 23일 일본의 교육기관이었던 이 학교를 방화한 것이다. 보통학교는 이후 다시 학습아동의 증가로 인해 증축되었으며, 1929년 제1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18개의 학급 수가 있었고, 학생 1,207명, 직원 20여 명의 규모였다. 군산공립중학교(群山公立中學校)는 1923년에 군산부학교조합(群山府學校組合)에서 건립한 것으로 1928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5년제 학교로 10개의 학급이 있었으며, 생도수 470여 명, 직원 20여 명으로 조직되었다. 이 밖에도 군산공립고등여학교(群山公立高等女學校), 군산공립청년훈련소(群山公立靑年訓練所), 군산사립가정학교(群山私立家政學校), 군산공립양영학교(群山公立養英學校), 군산사립유치원(群山私立幼稚園), 사립영신유치원(私立永信幼稚園), 군산교육회(群山教育會) 등이 설립되어 일본인 자녀 및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이 외에도 군산거주 일본인들은 1915년 5월 전라북도 내 최초로 수도사업(水道事業)을 시행했다. 급수의 대상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1921년 군산자혜의원(群山慈惠醫員)이 본관, 전염병실(傳染病室), 간호부 기숙사, 소독실, 해부실 등 5개동, 숙소 3개동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본인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전개하였다. 1929년 자혜의원은 '조선도립병원관 제공포'에 따라 전라북도립병원(全羅北道立病院)으로 개칭되었다. 최초 내과와 소아과 두개 과로 시작했던 것이 내과·외과·안과·산부인과·소아과·이비인후과·치과·피부과의 8개과로 분화되었고, 1934년 당시 의사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사 25명 등이 도립병원에 근무하였다. 이 밖에도 군산에는 대

략 20여개의 사립병원들이 생겨났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조선은행지점, 조선식산은행지점, 조선상업은행지점, 군산금융조합, 옥구금융조합, 군산동부금융조합 등의 금융기관들이 생겨났다.

언론기관으로는 1904년 군산 최초로 군산일보(群山日報)가 주간(週間)으로 발행되었고, 1907년 한남일보를 흡수하여 일간신문(日刊新聞)이 되었다. 이후 1919년 『실업의 조선(實業の朝鮮)』이라는 월간(月刊) 잡지도 창간되는 등 군산에는 약 18개의 신문 지국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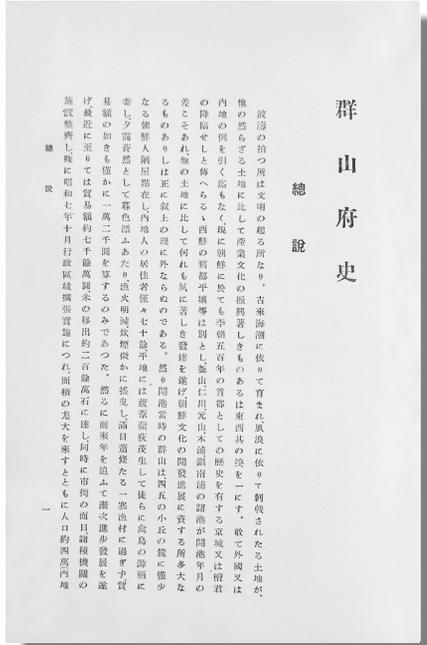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의 소속으로 1899년 일본인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산경찰서가 설치되었다. 1906년 군산분관이 없어지고 이사청이 들어서자 군산경찰서는 이사청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한국으로부터 경찰권을 강탈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기타 외국인들에 대한 치안유지와 탄압 역할을 자행했다. 1934년 현재 서장, 경무계주임, 위생계주임, 고등계주임, 사법계주임, 보안계주임 등에 각각 1명씩 배치되었으며, 5개과로 분리되었다.

조그마한 촌이었던 군산이 이렇듯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고, 근대적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인 요건이 가장 컸다. 호남평야를 끼고 있다는 점과 항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군산항만은 개항초기 입지조건이 좋거나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제는 군산을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항만을 꾸준히 수축해 나갔다. 이후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이 발표되고 이를 위해 1926년 거금을 7개년 계획으로 항만 수축을 진행했다. 당시 1926년 군산항 수축공사 기공식에 참여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조선총독은 당시 부두의 쌀을 보고 ‘아! 쌀의 군산’이라고 탄성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일제의 이러한 계획은 1933년 3월 항만 수축공사의 완료를 보게 되었고, 3천톤급 6척이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항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항만 수축으로 인하여 쌀에 대한 수탈과 수출은 1925년 일본에 수출되었던 쌀의 양이 998,769石에서 1934년에는 2,285,114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유출된 쌀은 오사카(大阪), 고베(新戶), 도쿄(東京) 순으로 유입되었다.

군산항 총 무역액 역시 1925년에는 총 56,080,111円 중에 수출이 37,738,706円을 차지한데 반해 1934년에는 수출 총액 74,393,371円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950,904円 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군산부사(群山府史)』는 1899년 군산의 개항 이후부터 개항 35주년이 되는 1934년까지의 군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자료집이다. 조그마한 촌에서 거대한 항구도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개항 이후 일본인의 수와 이후 증가하는 일본인의 인구와 그들의 출신지역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군산에 이주해 자치기구 성격의 일본민회와 일본거류민단의 조직과정과 활동이 관련 자료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특히 군산에 설치되었던 의료기관, 경찰서 등 제반 시설 등이 그 연혁과 규모가 함께 나와 있어 지방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군산항에서 수출입(輸出入)되는 규모와 액수, 수출입 물품 목록 등이 1899년에서 1934년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 일제의 한국에 대한 수탈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오대륙)

## 조선민요집(朝鮮民謠集)

- 저 작 자 : 김소운(金素雲)
- 발행사항 : 태문관(泰文館)(東京), 1929년
- 총 면 수 : 300쪽



이 책은 한국의 민요를 김소운(金素雲)이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당대의 민요를 한 곳에 집대성해놓은 것이다. 김소운은 『목근통신』으로 유명한 수필가로 육당 최남선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일본말 표현은 일본인들도 알미워할 정도로 잘하였다고 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가 일본말을 알미울 정도로 잘한다고 탄복한 데에도 그의 유려한 일본어 실력을 유추할 수 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소운은 1908년 부산에서 출생하였다. 두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다섯 살 때부터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13세에 영국 담배 한통을 선원에게 주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도쿄에 있는 개성중학교에 입학하였다.

20세부터 일본시단에서 활동한 김소운은 한국의 시와 민요를 일본에 소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26년부터 도쿄 부근의 교포 노동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구전문요를 채집해 시잡지 『지상낙원』에 「조선의 농민가요」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조선민요를 일본에 소개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조선민요를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김소운은 이 해에 귀국하여 「매일신보」 학예부 기자로 입사해 독자의 투고를 얻어 2년 동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구전동요와 민요 3천 수를 수집하였다. 다시 도쿄로 건너가 1933년 일본어가 아닌 순 한글판 『조선구전민요집』을 도쿄 제일서방에서 출판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서 조선글로 된 민요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1933년 봄 도쿄의 이와나미서점에서 『조선동요선』과 『조선민요선』을 문고판으로 출판하였다.

현재 이 책은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민요편
- 동요편
- 부요편(婦謠篇)
- 조선민요에 대하여
- 관구색인(冠句索引)

위의 목차에서 민요는 다시 3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민요 148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발행되어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일종의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많은 민요집을 발간하였는데, 김소운의 업적은 민요의 연구사적인 면에서 ‘자료의 학문적 가치를 부여한 계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문적 입장에서의 민요에 관심은 193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다. 1920년대 이른바 민요시파와 시인의 민요시 창작과 맞물려 민요수집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기는 하였지만, 체계를 갖춘 자료집은 김소운이 처음인 것이다. 특히 일본에 한국민요를 소개한 공로자로서 김소운의 업적은 가장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소운은 민요수집을 위해 도쿄의 한국인 거주 노동자 마을을 찾아다니며 민요와 동요 등을 채집하였다. 야외조사를 통해 민요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리한 연구의 방법은 당시 일본 민속연구 방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소운의 민요조사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민속학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초로 근대 민요자료집을 간행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민요조사 자료집은 부분적으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대한 작품량과 오늘날의 작품집에 비해 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김소운의 민요조사는 그 자료조사 방법에 있어 특정지역의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논의에서 오는 제한성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김소운은 1927년 1월에 시잡지 『지상낙원』에 「조선농민가요」를 쓴 것이 호평을 받아, 이후 6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도쿄의 혼쵸(本所), 후카가와(深川) 등 한국인 거주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민요조사에 착수해, 민요와 동요를 채집하게 된다.

김소운이 살았던 오오이마치(大井町) 부근에 시인 카가와라 사쿠타로(荻原朔太郎)와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집이 있었는데, 김소운은 카가와라 사쿠타로(荻原朔太郎)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조선민요집』의 초고(草稿)를 들고 기타하라의 집을 방문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타하라가 『조선민요집』 출판 주선에 애썼고, 그의 초청으로 1928년 9월, 도쿄 간다(神田)의 명월관에서, ‘김소운 소개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시인 카가와라 사쿠타로(荻原朔太郎)와 음악가인 야마다 코사쿠(山田耕作), 극작가 나가타 히데오(長田秀雄) 등 각계 인물들이 중심이었다. 이 시기부터 김소운은 일본 시단에 기성작가로 활약할 수 있었다.

『조선민요집』은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1929년 7월에야 당시 화가로서 이름이 높았던 키시다 류세이(岸田劉生)의 장정으로 태문관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조선민요집』의 간행은 당시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노풍(鄭蘆風)은 『동아일보』 학예란에 연 4일 동안, 카사기미 시즈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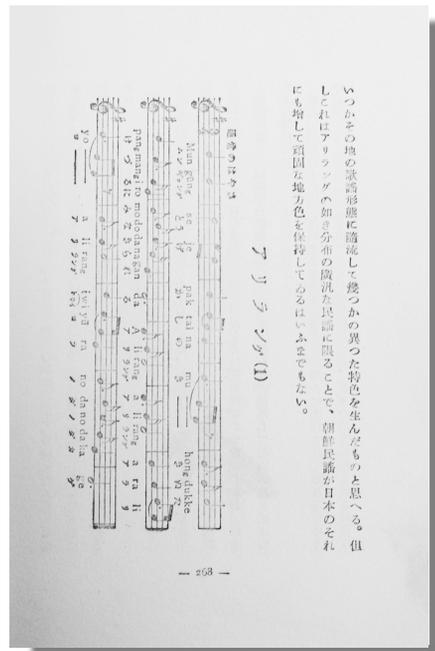
부(笠神志都廷) 등도 『경성일보』에 서평을 4일이나 썼다. 4페이지에 이르는 기타 하라 하쿠슈의 서(序)에는 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수준과 평가, 김소운에 거는 기대가 언급되어 있다.

김소운이 일본어로 번역해 펴낸 『조선민요집』은 단순히 수준 이상의 작업에 그치지 않고 일본 현역시인들에게 분발과 각성을 촉구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장래 일본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까지도 설정해 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시인들은 서양의 시풍을 따르기에 급급하여, 자칫하면 일본 본래의 전통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살피 역자가 시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숙지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조선의 민요는 어두운 가락으로 불려졌다. 이는 이전의 우리 민요가 명랑하고 해학적이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민요는 민속음악의 일부이다. 이런 면에서 민속음악은 구전(口傳)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전통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 전통을 형성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를 과거와 결부시키는 연속성, 개인 혹은 집단의 창조적 충동이 변이된 과정, 현재 전해지는 모습을 결정하는 공동체에 의한 결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김소운은 조선의 민요를 일본에 알리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어가 아닌 한글판을



통해 일본에 출판한 사실은, 김소운의 민요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소운의 의지는 동요와 부요(婦謠)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민요(朝鮮民謠)에 대하여」에서는 주로 아리랑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아리랑은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토착 기층어로서 처음에는 ‘입타령이 붙은 새로운 노래’의 지칭어로 사용되다가 점차 오늘날과 같은 특정 노래 ‘아리랑’의 장르적 범칭이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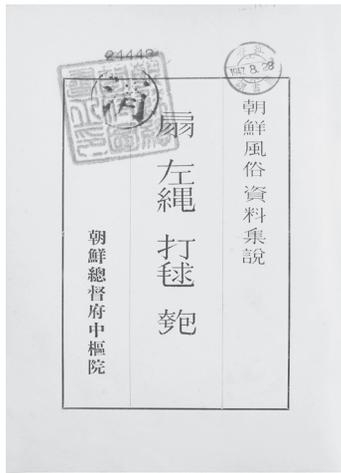
아리랑은 1860년대 봉건사회의 붕괴에 따라 크게 성장한 민중의식과 당대 성행한 잡가류의 타령조 가락에 힘입어 등장한 신민요이다. 경복궁 중창기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에 의해 보다 발전한 새로운 양식의 후렴구인 입타령과 교섭, 변형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리랑으로 전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노래로 평가된다. 이 당시는 아리랑이 태동형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독자적인 성격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각 지역에서 불려지던 토속적인 농업노동요에 입타령(아리랑 후렴)이 붙어 새로운 노래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리랑이 성장되어진 것은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다. 이 시기는 토속아리랑이 약화되고 변모하여 통속화하는 시기로, 유성기관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및 신민요와 노래문화의 융성 속에서 대중가요로 자리잡아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리랑은 식민지 민중의 현실적 삶을 노래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창작되고 변조되던 노래인 것이다.

이 책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아리랑은 ‘문경새재소리’ 사설에다 ‘아리랑’ 후렴이 붙은 노랫말로 되어 있고, ‘정선아라리’나 ‘진도아리랑타령’, ‘밀양아리랑’ 등도 토착의 농업노동요와 같은 노랫말을 공유하고 있어 아리랑이 기능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부채·원새끼·타구·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

- 저 작 자 : 조선총독부 중추원(朝鮮總督府 中樞院)
- 발행사항 : 조선인쇄주식회사(朝鮮印刷株式會社)(京城), 1937년
- 총 면 수 : 496쪽



『부채 원새끼 타구 바가지(扇 左繩 打毬 匏)』는 1937년 3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조선풍속 자료의 하나로 간행한 책이다. 본서의 집필은 중추원 촉탁인 이마무라 토모(今村 軔, 1870~1943)가 맡았는데, 이마무라가 쓴 부채·원새끼·타구·바가지에 대한 각각의 글들을 총 496쪽 분량의 한 책으로 묶어 펴냈다. 국내에는 국가기록원 외에도, 국회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70년생인 저자 이마무라는 22세인 1891년 오사카부(大阪府) 순사로 경찰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타이완총독부를 거쳐 1908년 선배인 마츠이 시게루(松井茂, 1866~1945) 경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조선에 왔으며, 충청북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이후의 주요경력을 보면, 1909년 강원도 경찰부

\* 본서는 이마무라가 전적으로 새롭게 작성한 글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그의 연구로는 「朝鮮と扇」(上), 『朝鮮』 第191號, 京城: 朝鮮總督府, 1931.4. ; 「朝鮮と扇」(下), 『朝鮮』 第192號, 京城: 朝鮮總督府, 1931.5. ; 「朝鮮의 扇風俗」, 『朝鮮』 第268號, 京城: 朝鮮總督府, 1937.9. ; 「朝鮮의 松飾とそれに似た朝鮮의 風習-內鮮共通民俗史稿の一部」, 『朝鮮』 第174號, 京城: 朝鮮總督府, 1929.11. ; 「朝鮮의 劍繩夢と日本のシメナワに就て(1)」, 『民俗學』 2-1, 東京: 民俗學會, 1931.1. ; 「朝鮮의 劍繩夢と日本のシメナワに就て(2)」, 『民俗學』 3, 東京: 民俗學會, 1931.3. ; 「日鮮胞に於ける松飾とシメナワに就いて」, 『朝鮮及滿洲』 第302號, 京城: 朝鮮雜誌社, 1933.1. ; 「(日鮮支那)古代打毬考(上)」, 『朝鮮』 第196號, 京城: 朝鮮總督府, 1931.9. ; 「(日鮮支那)古代打毬考(完)」, 『朝鮮』 第198號, 京城: 朝鮮總督府, 1931.11 등이 있다.

장, 1914년 평양경찰서장, 1915년 제주도사 및 제주경찰서장, 1919년 원산부윤을 맡았고, 다시 이왕직 서무과장으로 옮긴 후 1925년 퇴관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이마무라는 박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왕직 서무과장 시절 조선의 고문헌들을 섭렵하였기 때문에, 이후 조선사편수회·중추원·체신부·전매국·철도국·개성부 등의 촉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각종 문헌자료의 정리 작업이나 연구 활동을 활발히 개진함으로써 많은 저작물을 남겼는데, 특히 중추원에서는 1932년 4월 구관(舊慣) 제도의 조사 사무를 위한 촉탁으로 위촉된 이후 본서를 포함해 6권의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경찰이었던 이마무라가 조선의 풍속 연구를 시작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1940년경에 이르러서 이마무라는 조선 내에서 ‘권위 있는 조선통’ 그리고 ‘조선 연구의 대가’로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다. 그는 특히 조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재조일본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1940년 9월 서물동호회가 『서물동호회회보(書物同好會會報)』 제9호를, 이어 10월에 조선민속학회가 『조선민속(朝鮮民俗)』 제3호를 각각 그의 고회 축하기념호로 발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과 부채」는 주로 조선과 부채의 역사적 사실 및 그것을 사용하는 풍습에 관한 고증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선(扇)’, ‘삼(箒)’ 그리고 ‘삼(鬢)’과 같은 한자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은 중국의 부채를 다루었다. 중국 부채의 기원과 종류를 언급하되, 부채를 먼저 용도에 따라 햇빛을 가리는 부채와 서늘함을 얻기 위한 부채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1) 깃으로 만든 것, (2) 식물재료로 만든 것, (3) 견(絹) 및 종이를 사용한 것, (4) 기계적인 것, (5) 압승(壓勝)적인 것, (6) 군의 지휘에 이용되는 것, (7) 부채에 서화를 그린 것, (8) 부채에 향료를 넣은 것, (9) 부채(扇)의 종이바탕에 기름을 쓴 것, (10) 형상 불명의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주로 일본의 부채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의 선(扇)은 무로마치시대부터 도쿠가와 시대 사이에 용도가 많이 분기되었고, 그에 따라 종류도

증가하고 선에 관한 풍속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창제된 선을 다루고, 비록 '선'자를 사용하나 부채가 아닌 물건,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와 원나라로 전해진 일본 선, 선의 민간보급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오십음도(五十音圖) 순으로 설명한 일본 선의 이름(扇名)과 다선(茶扇)의 모양에 대한 고찰을 부기하였다. 그 밖에 부록으로, 선(扇)에 관한 노래와 하이쿠(俳句), 명나라 때의 시부(詩賦), 선에 관한 일화 등이 실려 있다.

제8장과 제9장은 조선의 선(扇)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선에 대해 설명하고, 조선 선이 중국과 일본에 전래된 것, 일본 선이 조선에 들어온 것, 그리고 단오선을 주고받거나 진상하는 조선의 풍속을 역사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어서 조선의 선 풍속을 문화적 차원에서 선의 형상, 부녀와 선, 기녀와 선, 무선(巫扇), 신랑과 선, 소선(素扇) 또는 복선(服扇), 겨울에도 부채를 휴대하는 풍속, 부채 제조업자의 쇠퇴, 부채의 일화 등의 항목으로 나눠 서술하였다. 또한 조선에 존재하는 선과 유사한 선명(扇名)이 있는 기물을 다루었는데, 현재 조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선(紗扇)·포선(布扇, 일명 喪扇, 服扇)·피선(皮扇, 일명 毛扇 또는 暖扇, 貂扇)을 들고, 용도는 다르지만 얼굴을 가린다는 본래의 주목적이나 형식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글인 「조선의 금줄(禁忌繩)에 관한 연구」는 조선의 민간에서 행해지는, 왼쪽으로 끈 짚새끼줄을 압승(壓勝)적으로 사용하는 풍습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조선의 왼새끼줄과 일본의 시메나와(注連繩)를 상호 비교하고, 양자와 관련하여 소나무를 세우는 풍속의 유사점과 다른 점도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인줄, 금기줄, 금기, 금줄, 좌색, 문색, 금승, 태색 등 조선에서 금줄을 부르는 다양한 종류를 밝히고, 일본의 시메나와의 명칭을 부기하였다. 제2장은 조선에서 금줄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 금줄의 대소장단과 형태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보통의 새끼줄을 오른쪽으로 꼬는 것과는 달리 금줄의 경우 조선이나 일본이나 모두 왼쪽으로 꼬는 이유를 기술하였다.

제3장은 금줄(禁忌繩)을 걸치는 경우와 금줄에 부가하는 물건 및 이와 관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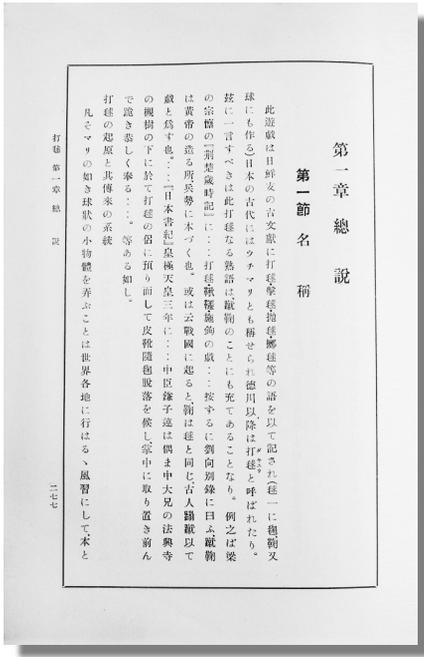
풍습을 소개하였다. 먼저 출산 시 거는 금줄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에서 금줄을 걸치는 경우 중 가장 많고, 가장 널리 행해지는 풍습은 출산 때이다. 출산 시 금줄을 걸치는 풍습의 지리적 분포, 금줄을 걸쳐 두는 기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 금줄을 걸치는 주관과 효과, 금줄을 걸친 뒤의 처치와 관련된 미신, 금줄에 덧붙여진 여러 가지 물품, 끝으로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걸치는 금줄의 경우까지 다루었다. 두 번째로, 마을제사 또는 지방의 제사와 기도 시 거는 금줄에 대하여 쓰고, 세 번째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제사·기도·축원·압승(壓勝) 등에 금줄을 사용하는 경우를 기술하였다. 그러한 예로써 문과 마당, 가축의 출산, 장독대, 업신의 자리, 큰나무를 벌채할 때, 혼례 때, 천연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물 관계, 수목, 키 작은 나무가 모여 자라는 곳, 해로운 새의 방지, 장승(일명 천하장군), 묘지의 석인(石人), 거석 등을 들었다. 위에서 출산 이외에, 가정 혹은 마을 단위에서 이용하는 원새끼에 삽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종이, 식물의 가지, 숯, 고추, 짚신, 동물의 뼈, 북어, 포(布), 백포(白布)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금줄을 칠 때 황토를 같이 뿌리는 풍속이나, 초상이 났을 때 원새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7장에서 다루었고, 일본에서 시메나와 이외의 경우에 원새끼를 사용하는 풍습은 제8장에서 그림과 함께 서술하였다. 제9장에서는 인습적으로 금줄에 부가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베 조각·종이조각·소나무 가지·대나무 가지·붉은 고추·숯·말린 미역·벼이삭·복숭아나무 가지·동물의 뼈를 금줄을 거는 경우 등을 설명하고, 일본의 시메나와에 부가한 물건들에 대한 고찰을 참고하도록 덧붙였다.

제10장에서는 몽고, 중국 본토, 류큐(琉球), 남양제도 등의 지역에 존재하는 금줄 비슷한 것을 거는 풍속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상으로 본편을 마무리하고, 부편에는 금기(禁忌)·압승(壓勝) 등에 생 솔잎을 사용하는 조선의 풍습과 일본의 정월 소나무 장식의 기인(起因)과 그 벽사색을 다루면서 금줄에 대한 글을 마쳤다.

세 번째 글인 「타구사(打毬史)」는 이마무라가 고려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행해졌던 타구라는 기예를 해설하고, 아울러 이와 동일한 기예가 중국과 일본에서

도 행해졌음에 주목하여 그 연혁과 상호의 계통을 밝히기 위해 사적(史的)으로 고찰한 내용이다. 타구는 격구(擊毬), 포구(抛毬), 척구(擲毬)라는 명칭으로도 쓰였는데, 지금의 골프나 폴로와 비슷하게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로, 말을 타고 하는 방식과 걸어서 하는 방식이 있었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타구의 명칭과 방법에 대해 약술하였고, 제2장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타구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타구에 대한 내용으로, 그 기원과 방법 그리고 당·요·발해·금·오대 각국·송·남송 및 원나라의 타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은 일본의 타구에 대한 내용으로, 시대별로 고대·도쿠카와 시대·메이지유신 후·근대 재흥된 타구의 특징과 방법을 각각 소개하였다.

제5장은 말을 타고 행하는 타구가 아니라, 도보(徒步)의 타구를 소개하였다. 도보의 타구는 기마의 타구를 쉽고 간단하게 만든 것으로, 중국·일본·조선에서 각각

따로 기마의 타구보다 나중에 창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도보의 타구를 행하는 방법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끝으로 조선·중국·일본의 타구 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선의 마상재를 부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바가지 고」는 이마무라가 당시 조선에서 각종의 용도에 이용되는 바가지를 민속학적인 관찰과 고증을 거쳐 고찰한 글이다. 이마무라는 물이나 음식을 담아먹는 용기, 곡물 또는 종자를 저장하는 그릇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용되는 바가지가 조선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품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당시 일본이나 만주 등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거나 일하기 위해 가는

조선 사람들이 바가지 두, 세 개를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아도, 생활상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의 식물학적 특성과 모양, 원산지와 전래 등을 아울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에서의 바가지의 명칭을 식물의 명칭, 식물과 열매를 함께 지칭하는 명칭, 열매를 지칭하는 토속칭, 열매를 말려 반으로 나눠 만든 물건의 명칭, 씨앗의 명칭 등으로 나누어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바가지의 명칭도 간단히 덧붙였다. 제3장과 제4장은 박을 재배하고, 바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박을 재배하는 방법은 농부가 아닌 보통 사람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기에서는 문헌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바가지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데, 제5장은 수중 부범용(浮泛用)으로 사용되는 바가지에 대해서, 제6장은 혼례시 술잔으로 바가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바가지가 예기(禮器)로 사용하는 경우를 기술하였다. 제7장은 조선에서 바가지를 악기로 사용하는 사례를 들었는데, 바가지를 두드리는 경우, 생황(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로 나눠 서술하고, 중국의 제번(諸蕃)·인도·남양·남미 등에서 바가지를 악기로 사용한 경우를 부기하였다.

제8장은 조선에서 바가지를 물·술·간장 등의 액체를 따를 때, 액체 곡물 등을 뒤 대신 썰 때, 음식물을 담을 때, 작은 잔으로 사용할 때, 어린 아이의 변기, 농작물의 종자 저장용 등 조선에서 일용기구 및 잡기(雜器)로 사용하는 경우를 기술하였다. 제9장은 바가지를 농구(農具)로 사용하는 경우로, 인삼밭에 관수용의 자루 달린 바가지(柄杓)와 비료 뿌릴 때 사용하는 바가지를 예로 들었다. 제10장에서는 위에서 다루지 않은 바가지의 용도를 염료용, 간판용, 가면용, 삼베길쌈(麻績)에 사용하는 경우, 기타 근대의 바가지 제품 등으로 나눠 소개하였다. 이하 제11장부터는 바가지를 식용하거나 민간약용으로 사용하거나, 바가지를 인형(印形)이나 금압 기도 미신 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쓰고, 바가지에 관한 동화적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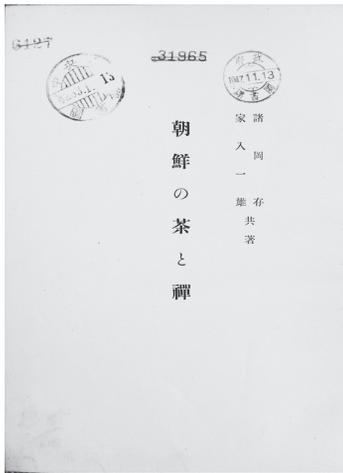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개의 글은 부채, 원새끼, 타구, 바가지와 관련된 조선의 풍

속을 각종 문헌과 당시 행해지던 민속을 참고하면서 서술하되, 조선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본과 중국의 관련 사항을 부기하거나 비교하였다. 이마무라가 이러한 서술 방식은 조선과 일본 혹은 중국의 풍습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근원을 지나거나 상호 전해진 것도 있다는 점을 고증하고 주장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선과 일본의 상호교류와 문화적 동질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주의하면서 검토해야할 자료이다. 그러나 이마무라와 동시대를 살던 조선인들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의 부채, 금줄, 타구, 바가지 등을 문헌만이 아니라 현재적 모습까지 같이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혜숙)

## 조선의 차와 선(朝鮮の茶と禪)

- 저 작 자 : 모로오카 타모쓰(諸岡存)· 이에이리 카즈오(家入一雄)
- 발행사항 : 日本の茶道社(東京), 1940년
- 총 면 수 : 179쪽



이 책은 1940년 모로오카 다모쓰(1879~1946)와 이에이리 카즈오(1900~1982)가 공저로 발간한 것이다. 모로오카 다모쓰는 제1부인 조선차의 역사와 분포를 저술하고 있으며, 이에이리 카즈오가 제2부 현지답사편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경원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목원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출판사 보림사가 1991년에 번역본으로 발간하였다.

모로오카 타모쓰는 사가현(佐賀縣)출신의 사족으로 나가사끼(長崎)에서 벼슬을 지낸 모로오카 준노스께(諸岡準之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나가사끼항의 오우라거리지에 있는 심상소학교를 1890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다니던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가사끼의 히가시아마에 있던 화란계 미국인이 경영하던 미션스쿨인 스틸 칼리지에서 스타우트 박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지도 아래 5년 동안 영어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권은 조선차의 역사와 그 분포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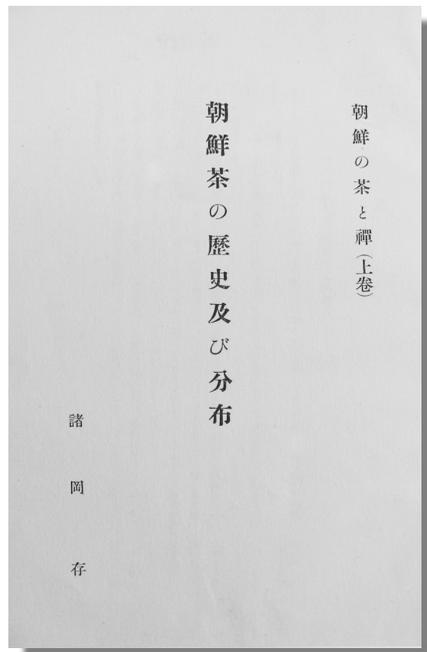
목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제1장 역사와 제2장 분포로 나누어진다. 역사는 제1절 근대 조선차의 개발자 오자끼옹, 제2절 조선의 다음(茶飲) 풍습이 쇠잔해진 원인, 제3절 신라시대 이전의 불교와 차, 제4절 신라후기 당대의 단차연구, 제5절 고려시대의 차, 제6절 조선시대의 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포는 제1절 조선차의 분포, 제2절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조선토산」의 차목록, 제3절 조선의 현재 차생산 수량조사표, 제4절은 사찰과 차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현지답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등산 기슭 증심사(證心寺) 부근에 경영되고 있는 무등차밭의 상황이다. 그리고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의 돈차, 전라남도 해안지방의 청태전 탐색기, 전남 해안지방의 차조사, 전남 해안지방 차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다산선생의 삶터 등 도판 8개가 실려 있다.

모로오가는 이 책에서 상권에 해당하는 조선차의 역사와 분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장 근대 조선차의 개발자 오자끼옹은 일본인으로 처음 조선차를 개발해 낸 오자끼(尾崎一三)가 전남 광산군 효지면에 운영하고 있는 무등원이라는 차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오자끼는 야생차가 무성한 산지를 15년 계약으로 빌려 차밭을 경작하고 있다.

제2장 조선의 다음(茶飲) 풍습이 쇠잔해진 원인에서는 선종과 주자학, 음료수와의 관계, 담배와 술 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차는 불교, 특히 선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물이 매우 깨끗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도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신라조 전기의 불교와 차는 조선의 대용차, 경포대, 한송정-차샘, 돌부뚜막, 돌절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조선의 대용차로 석남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른바 대용차는 다른차(僞茶)라 하여 차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방, 또는 아직 참차(眞茶)를 마시는 법이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장백산에 가까운 북쪽에서는 대용차인 석남차를 예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포대와 관련하여 한송정을 주목하는데, 신라의 네 화랑이 청년의 무리를 거느리고 성지를 순례하며 각종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순행자마다 한 그루씩의 소나무를 심은 곳이거나, 또는 소나무 그루터기 속에서 차를 다려서 이를 천신에게 바치는 제식(祭式)을 치를 때 썼던 돌부뚜막과 돌우물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송정-차샘, 돌부뚜막, 돌절구에서는 소나무가 울창한 한송정 정자 가에 차샘(茶泉), 돌부뚜막(石竈), 돌절구(石臼)가 있는데, 이 곳은 순량의 신선무리가 노닐던 곳이라 한다. 안유의 제한송정(題寒松亭)에는 차 달이던 우물이 남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경덕왕 24년에 충담스님이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제4장 신라 후기의 단차의 연구는 나카오 만조우 박사의 연구, 조선 자생차의 연구, 호남 선원의 터뒹이, 당나라 차의 도래, 납차의 변천 등이 실려 있다.

나카오 만조우 박사의 연구는 조선차가 그 제조법에서 육우의 다경(茶經)에 보이는 차와 서로 비슷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먼저 구울 뿐이지 결코 이것을 말차(末茶)로 하지 않고, 그대로 약탕관에 넣어 오래 달여서 마시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번차 마시는 법과 같다고 한다.

조선 자생차의 조사에서는 저자가 이에이리 가즈오를 만나 비로소 조선 차의 자생차를 관찰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불회사에서 차를 만드는 법, 마시는 법, 기타 실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상하게 배울 수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선원의 터뒹이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해남 대둔사의 창건기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옛 백제땅인 해남에 신라 법흥왕 원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점이다. 첫째는 대둔사의 창건시기가 천감 13년(514)으로 백제 무령왕 14년인데 이 시기 신라의 법흥왕이 창건하였다는 것이 잘못이며, 둘째는 백제땅에 신라에서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점이며, 셋째는 신라에서 불법이 퍼진 것이 이 시기인데, 이 때 이웃나라에 절을 창건하였다는 점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남지역에 사찰이 들어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나라 차의 도래는 신라가 당과 교류할 때 많은 스님이 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몽정차와 단차 등이 스님들에게 기증품으로 주어졌음을 기록을 통해 살피고 있다. 이는 문종 2년에 당에 들어갔다가 3년 뒤에 신라로 돌아와서 훗날 보림사에 들어간 체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당시는 당에서 가장 많은 차가 유행된 때라는 것이다.

납차의 변천에는 화엄사의 납차에 대한 설명이 있다. 납차는 7월 중에 큰 잎을 따서 찢 것을 찢어서 콧차(串茶)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납차가 조선에 들어온 것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알려졌다. 그리고 조선초기 지리산에서 송나라의 건주사차(建州寺茶)의 방법에 따라서 납차를 말차(末茶)로 해서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고려조의 차는 고려차와 송차의 역사-용봉단차, 용단승설, 고려불교의 타락, 다식관의 연구 등을 서술하고 있다. 고려차와 송차의 역사는 고려와 송에서의 차가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있다. 고려에서는 연등회, 팔관회 등 불교의식에 차가 사용되었다. 성종은 재취 8년에 최승로의 장례에 장의용으로 뇌원차(腦原茶)와 대차(大茶)를 하사하고 있다. 당시 고려는 토산차보다는 중국의 납차와 단차인 용봉차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고려불교의 타락에서는 무인정권기 고려의 차풍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의 풍습은 남송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름난 차로 촉의 몽정차라든가, 건계명(建溪茗)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땃들로 말차를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다식관(茶植板)의 연구에서는 다식이란 용어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식

은 주자의 『가례(家禮)』에 있는 점다법(點茶則)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찻가루를 찻주발에 넣고, 끓은 물을 따라서 찻술(茶筴)로 섞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선에서는 이전부터 단차를 맷돌질로 가루내어 찻술로 섞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부터 변하여 다식이란 이름만 남고 용단차를 만들어 나무틀은 단지 과자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제6장 조선의 차는 작설차(散茶), 초의선사·다산 정약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설차는 산차(散茶), 즉 입차의 상등품인데 남비에 덥어서 만드는데, 조선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차는 남송 이후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초의선사는 대홍사의 『다신전』을 통해 차와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일본의 라이상요우나 다노무라 지꾸텡과 같은 문인다법(文人茶法)을 좋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2장 제1절 조선의 차 분포에서는 조선의 차가 전라도에 11군(郡), 경상도에 8군(郡)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제2절에서는 『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조선차의 목록을 구체적인 위치와 연혁까지 살펴보고 있다. 제3절 현재 조선차의 생산량 조사표는 차의 생산지별 기원 및 생산수량과 판매처를 표로 작성해 놓고 있다.

제4절 사찰과 차의 분포는 통도사 등 사찰과 차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의 차의 분포와 관련이 있는 사찰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리산과 무등산, 그리고 월출산, 금성산, 조계산, 만덕산 등에 있는 사찰과 차의 관련성을 승려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제2부는 이에이리 카즈오(家入一雄)의 저술이다. 이에이리 카즈오는 1900년 1월 큐슈의 구마모도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1년에 구마모도현립 아소농업학교 임과를 졸업하였으며,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수원권업모범장 연구생으로 수료하고, 1925년에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조선에 있는 20년간의 공직생활 중 절반인 10년을 전남 도청에 근무하였다. 1932년 5월 전라남도 산업부 산림과의 기수(技手)로 전보된 이래, 1938년 7월

에는 전라남도 상공장려관에 겸무발령을 받았다.

그 후 1942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의 발령으로 황해도 목재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전근되었으나, 이듬해 7월에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선산림회의 사무를 맡아 보게 되었다. 이어 조선임업협회의 업무과장과 조선총독부 발령 특수임산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중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11월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이리 카즈오가 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2년 전남 도청에 전근되기 이전이라고 한다. 이 후 저자는 전남의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재배를 하면서 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농산어촌의 진흥상 물자생산의 확충 강화에 따라 차의 재배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던 중 모로오까 다모쓰의 후원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

이에이리 카즈오는 1940년 전남에서 기념사업으로 1천 정보의 차 재배 증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쓰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전남의 차가 1천3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당차시대(唐茶時代)의 덩어리차(團茶), 돈차(錢茶)의 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의미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제2부는 현지답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답사는 전라남도의 차산지 중 일부 제한된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는 이 지역에 대해 3년(1937~1939) 동안 조사한 보고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등차밭의 상황,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의 돈차, 전라남도 해안지방의 청태전 탐색기, 전남 해안지방에서의 차의 조사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중 전남 해안지방에서의 차의 조사는 제3회 조사와 제4회 조사가 각각 담겨져 있다.

무등차밭의 상황은 논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 이어 차밭설치의 동기, 차밭의 경영, 차 만들기의 개요, 차의 판매처 기타, 그리고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무등차밭은 무등산 기슭에 있는 중심사 부근에서 경영되던 차밭을 말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일본에 있는 차밭과는 달리 천연 숲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전남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야생차를 부업으로 개량하는 법을 연구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의 무등차밭에 관한 조사보고는 이 차밭의 전성기를 알기에 좋은 자료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무등차밭의 생산품에는 ‘무등의 마을(無等の里)’이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각지에 수출하여 꽤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이다.

이 차밭은 당시 77세이던 오자씨가 1909년경 증심사 주변에서 당시 소유주였던 최면장으로부터 15년간 빌리기로 하고 개원하여 시작하였다. 차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천과 군산, 경성 방면의 단골 60군데 정도에 팔려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 광주에서 소비되고 있다.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의 돈차와 관련한 조사보고는 모로오까와 이에이리카즈오가 동행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당시 『일본의 다도(日本之茶道)』와 『경성일보』, 『광주일보』에 실려있다. 여기에는 불회사 돈차의 연혁을 밝히고, 그 제조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안지방의 청태전 탐색기는 그때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보림사 부근의 차를 조사하면서 얻은 성과는 돈차의 별명으로 청태전(靑苔錢), 강차(綱茶), 꽃차(串茶)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태전을 만들때 오갈피를 섞는 잡화법도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단산리와 죽천리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첫째로 청태전을 만들면서 생강과 유자 등을 섞어서 만드는 잡화법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해남 대둔사에 대해서도 적고 있는데,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를 정약용이 지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영암부근의 차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전부터 월출산 부근은 수질이 좋아 차로 유명하였다는 것과 도갑사에서 청태전을 보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해안지방의 차를 조사한 제3회 조사에서 저자는 강진읍 목리의 청태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대의 집에서 백운옥관차를 얻고 있다. 그리고 만덕산과 백련사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집이 만덕사 주지가 사는 집의 보리밭 밑에 있었다는 대목은 향후 고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백운옥관차에 대해서는 월남리 이한영에게서 조사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맥차(麥茶, 麥顆茶), 작설(雀舌), 모차(矛茶), 기차(旗茶)와 같은 차의 분류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백운옥관차의 만들기, 달이기, 마시기, 꾸리기, 포장지에 대한 조사기록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릉월산차라는 나무도장의 소장처 정보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한편 『다신전』의 원문과 역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4회 조사는 허준의 『동의보감』에 실린 ‘작설차’를 일본어로 번역해 실고 있다. 그리고 화엄사에서 작설차, 세차, 중차, 왜차, 납차 등을 마시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에서 수집하였다는 다식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식관은 청태전을 만드는 도구로, 수집한 것 중에는 떡살겸용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화엄사에 소장된 찻그릇인 말차(末茶)의 찻잔 받침과 찻사발, 향합과 찻주발, 고려백자 찻주발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주인과 손님 사이의 찻잔을 주고 받는 체용법(體用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 『고려도경』 등 조선 차와 관련한 참고서를 적고 있으며, 쿠리다 텐세이(栗田天靑)이 적은 후서(後序)를 두고 있다.

이 책은 일제시기 조선의 차와 관련한 해설서이다. 일본인의 관점에서 조선의 차에 대한 관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불교와 차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선의 차가 불교와 관련 속에서 수입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확실성을 갖게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차는 불교와의 관련성에서만 그 연원을 찾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는 맥을 살펴야 한다. 이는 이 책이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다.



## 5. 인물 · 체험담

- 자작 사이토 마코토전(子爵 齋藤實傳)
- 가쓰라 타로오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
- 인물평론 진짜냐?가짜냐?(人物評論 眞物?贗物?)
- 거류민 옛이야기 제1편(居留民之昔物語 第一編)
- 오십년 여기저기(五十年ところどころ)
- 조선을 말한다(朝鮮を語る)
- 30년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
-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



## 자작 사이토 마코토전(子爵 齋藤實傳)

- 저 작 자 : 사이토 히쇼
- 발행사항 : 재단법인사이토자작기념회(財團法人齋藤子爵記念會), 1941년
- 총 면 수 : 1180쪽



이 책은 해군대신, 조선총독, 총리대신, 내대신 등을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사망 7주기를 맞아 사이토자작기념회가 1941년 간행한 전기이다. 동 기념사업회는 1936년의 2·26 사건(일본육군의 황도와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사이토가 사망한 후, 77일을 기리는 초대회석상에서 코다마 히데오(兒島秀雄, 1929~1931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역임)가 기념사업을 수행할 회의 설립을 발의함에 따라, 다음 해인 1937년 봄에 설립되었다. 기념회의 실행위원 중 하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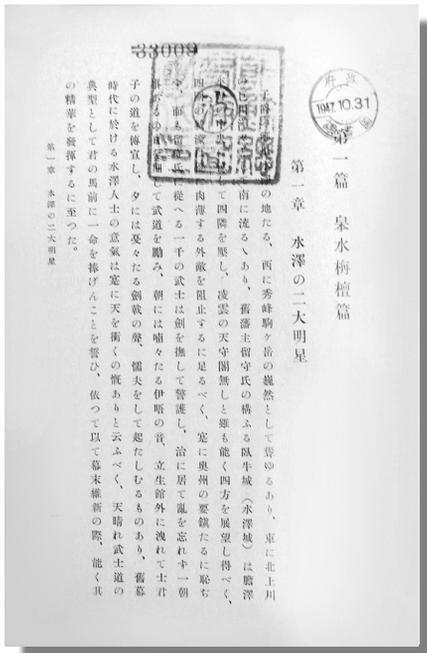
시게조오(林繁藏), 호리키리 겐지로(堀切善次郎), 나카지마 스키토모(中島資朋), 야마나시 카츠노신(山梨勝之進),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등 14인이 편집부위원으로 선정되어 편집 작업을 맡았으며, 사이토의 고향 후배로 동경고등사범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사이토 히쇼(齋藤斐章)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여기에 사이토 마사지(齋藤正路, 경제학사), 하라 케이고(原敬吾, 문학사)가 보조로 참여하여, 약 4년간의 작업 끝에 전 4책으로 발간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저서는 현재 176쪽까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결락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 책은 집필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이용되었다고 한다. 집필자 사이토 히쇼에 의하면, 사이토 자작가 소장의 관계서류를 비롯해, 각 방면의 관계자로부터 사이토 자작에 관한 담화를 청취하는 한편 회상기를 기고받았다. 또한 사

이토의 출생지인 미즈사와(水澤) 및 총독으로 근무했던 조선에까지 찾아가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집필된 초고에 대해 각 시기별로 관련된 편집위원에게 검토를 받는 등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1940년 가을에 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식민지 조선과 관련해서는 제2권에 수록된 제8편~제10편의 「조선통치편」 상·중·하, 제3권에 수록된 「대정변리편」에 수상 재임시절 조선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등장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권의 제19편 '기고와 담화'에도 조선총독부 및 조선 민간 관계자의 기록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본서가 가지는 특징 및 자료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서는 일본 근대의 거물급 정치인의 전기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4책, 본문 총 3,354쪽에 달한다. 이것은 전전 역대 수상급 인물의 전기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메이지유신의 원훈(元勳)으로서 일본 근대정치사상 최고의 거물급 인사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전기인

「공작 야마가타 아리토모(公爵山縣有朋傳)」 전3책(야마가타 아리토모기념사업회, 1933년 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전기인 「이토히로부미전(伊藤博文傳)」 전3책(春畝公追頌會, 1940년 10월)에 필적한다.

둘째로, 본서는 방대한 분량의 1차자료를 수집, 이에 근거하여 집필되었다. 각종 신문, 잡지, 단행본 및 정부출판물, 관련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은 물론 사이토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관련의 서한, 문서 등을 망라하여 집필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사이트 문서'로서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집필 과정에서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대한 문서자료에 더하여, 사이트와 관련을 맺었던 주변 인물들, 그리고 특정한 사건·사안에 관계했던 인물들로부터 폭넓게 구술 및 회고기를 수집하여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사이트의 생애와 업적을 현창하기 위한 전기인만큼, 회고기 중에는 일방적으로 그의 사람됨을 칭송하는 데 그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거나 당사자의 기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이 많아,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27년 현재 조선총독부 문서과장으로 재직했던 나카무라 토라노스케(中村寅之助)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등장한다.

“소화 2년 2월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중략] 응접실에서 총독과 둘이 되어서야 용건을 꺼냈다. 그 용건이란, 조선인의 참정(參政)에 관한 문제에 관해 안을 작성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총독 자신의 의견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중략] 이 용건은 중대한 것이며 기밀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에 열흘 정도가 지나가 버렸다. [중략] 약간의 추가와 수정을 요구함과 함께, 사적인 복안으로 총리대신에게 이야기를 하려 하니, 이걸 기초로 해서 의견서를 서둘러 작성해 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회고는 1927년에 작성된 「조선 재주자의 국정 및 지방행정참여에 관한 의견」이 서술된 배경과 경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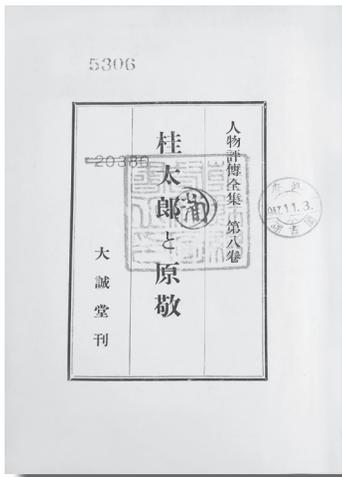
넷째, 이 책의 서술상의 특징 중 하나인데,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전기'라기보다는 '자료집'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즉 집필자는 주관에 의한 서술을 최소화하고, 일기와 편지, 회고 등의 1차자료를 대량으로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편찬의 기초로 삼고 있다. 앞서의 예와 같이, 이 책에 수록된 주변 인물들의 회상 등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토가(家) 및 주변 인물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자료, 문서 및 서한 등도 다수 영인되어 게재되어 있다.

다소 부수적인 면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회 헌정자료실 소장 ‘사이토 문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기와 서한 등은 문어체의 초서로 씌어있는 데다가 집필자에 따른 필체의 상이함 등의 문제로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책에 직접인용으로 수록된 일기 및 서한 자료는 상당한 자료가치를 가지는 것이 많으므로, 원문서를 직접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차자료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승엽)

## I 가쓰라 타로오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 I

- 저 작 자 : 모토야마 게이센(本山桂川)
- 발행사항 : 대성당(大誠堂)(東京), 1935년
- 총 면 수 : 329쪽



모토야마 게이센(本山桂川)이 작성한 이 책은 총 10장, 26항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330여 쪽이다.

저자인 모토야마는 1888년 9월 나가사키(長崎)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7년에 시립 나가사키 상업학교(長崎商業學校)를 졸업하고, 1908년 와세다대학교(早稲田大学) 상업과에 입학하였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상업과에서 정치경제과로 전과했다. 와세다대학교를 1912년에 졸업한 그는 그해 9월 오사카시(大阪市) 상공과에 입사해 직

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913년에는 연탄회사로 이직했으며, 이후 1915년에는 나가사키 상공업회의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토야마는 1917년에 「나가사키 방언의 연구(長崎方言の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학자로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민속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그가 작성한 『일본민속도지(日本民俗圖誌)』, 『일본민속지도계(日本民俗誌大系)』, 『예능민속도지(藝能民俗圖誌)』1~12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금속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금석문화(金石文化)」를 간행하기도 했다. 역사분야에서도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조명한 『인물평전전집(人物評傳全集)』의 편찬과 저술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모토야마는 1974년 8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민속분야와 역사분야,

금석문, 지방사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무츠 무네미츠와 고무라 슈타로(陸奥宗光と小村壽太郎)』(人物評傳全集, 1935), 『근세지나흥망일백년(近世支那興亡一百年)』(1938), 『아시아의 투쟁(亞細亞の鬪爭)』(1942), 『일본민속도지(日本民俗圖誌)』(1942), 『일본민속지대계(日本民俗誌大系) 1-12』 등이 대표적인 모토야마의 저작이었다.

『가쓰라 타로와 하라 다카시(桂太郎と原敬)』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타이완 총독으로도 재임했던 가쓰라 타로와 평민재상으로 잘 알려진 하라 다카시에 대한 평전이다. 이 저서는 『인물평전전집(人物評傳全集)』시리즈 중 8번째 책이다.

실제로 가쓰라와 하라는 일본 근현대사에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가쓰라와 하라는 일제의 수상을 역임한 인물들로 당시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된 우리나라와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역사에서 2인자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 모토야마는 이 두 인물을 2인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가쓰라와 하라 같은 인물이 1935년 당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전기적 글을 기술하였다.

가쓰라(1848~1913)는 1848년에 초우슈번(長州藩)에서 태어났다. 15세에 무인이 된 가쓰라는 죠슈 모리번의 서양 총 부대에서 서양식 총진을 배웠다. 이후 보신전쟁(戊辰戰爭)이 발생하자 존황파로서 초우슈번군 제 4대대 사령관으로 참전했다. 보신전쟁(戊辰戰爭)은 1868년에서 186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일어난 내전이였다. 이 전쟁은 천황으로 대변되는 신정부와 에도 막후간에 벌어진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신정부가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보신전쟁(戊辰戰爭)이 끝나고 잠시 군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가쓰라는 1870년 독일로 가서 군사학을 연구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당시 일본의 육군을 독일식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육군을 군사 행정 위주의 군정(軍政)과 작전 지휘 위주의 군령(軍令)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에 이러한 건의가 육군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1878년 말 군정은 육군성이, 군령은 참모본부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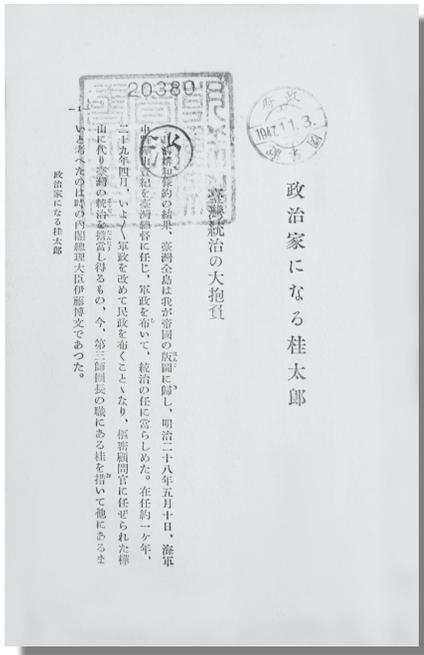
담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참모본부는 행정부에 속한 육군성의 관할에서 벗어나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바뀌게 되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는 1886년 육군 차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891년에는 육군 제3사단장으로 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청일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가쓰라는 자작 칭호를 부여받았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하게 되자 2번째 총독으로 가게 되었다. 타이완총독을 사임한 이후 가쓰라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 오오스미 시게노부(大隅重信) 내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에서 육군 대신을 역임하였다.

이후 가쓰라는 1901년 일본 제11대 수상이 되었다. 가쓰라는 일본 역사상 3번의 수상을 역임했는데, 첫 번째가 1901~1906년까지이고 이를 제1차 가쓰라 내각 또는 이류 내각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제13대 수상으로 1908년에서 1911년까지이고, 이를 제2차 가쓰라 내각이라고 칭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12년에서 1913년까지의 기간으로 제3차 가쓰라 내각이라고 불려진다. 가쓰라는 제4차 이토 내각이 총사직하게 되면서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수상으로 임명되는 것을 일본의 정당들은 심하게 반대하여 가쓰라 내각을 이류 내각이라고 칭하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는 취임하자마자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다. 1902년 일본이 영국과 함께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동진을 방어한다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일전쟁 중 가쓰라 타로는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입헌 정우회와 제휴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입헌 정우회와의 제휴라는 것은 차기 정권을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쓰라는 승전국의 위치로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었다는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입헌 정우회와의 약속에 따라 다음 정권을 사이온지에게 넘기고 내각 총사직을 하였다.

이처럼 1차 가쓰라 내각이 막을 내렸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한다는 '가쓰라·태프트협정(桂·Taft

協定)’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쓰라 내각은 대한제국을 압박하여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제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였다. 이에 고종황제는 이 조약이 일제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으로 이마저 실패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하게 되었다.

1908년 가쓰라는 2번째로 일제의 수상이 되었다. 그는 입헌 정우회와 1차 가쓰라 내각 시절과 같이 차기 정권을 사이온지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하고 입헌 정우회의 지지를 얻었다. 수상이 된 가쓰라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당시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의병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결국 가쓰라는 1910년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경술국치(庚戌國恥) 만행을 자행했다.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를 조선총독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가쓰라는 1912년 수상으로



로서 3차 가쓰라내각을 구성했으나 의회 탄압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 거세졌고 폭동 전 단계까지 갈 정도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수상 자리에서 사임하였다.

평민재상이라고 불리는 하라(1856~1921)는 1856년에 이와테현(岩手県)에서 태어났다. 1865년 9세가 되던 해에 오야마다에게 약 6여 년간 한학을 배웠으며, 이후 1872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상경하여 ‘공관의숙’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프랑스 신부

에브랄에게 프랑스어를 익혔고 사법성 법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외무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친척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였다. 하라는 결혼 뒤 정우회에 들어갔고, 곧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눈에 띄어 중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쳐 1906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사이온지 내각의 내무대신이 되었다. 1915년 정우회 총재에 당선된 그는 결국 1918년 제19대 총리대신이 되었다. 그러나 1921년 오오츠카역에서 암살당했다.

이처럼 가쓰라의 생애는 67년이었고 하라의 일생은 66년이였다. 저자는 가쓰라는 그의 신분을 최고까지 올렸고, 또한 공을 세웠으며,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죽었다. 하라는 이와 반대로 일생을 작위 없이 보내고 평민재상이라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대업을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인 모토야마가 두 인물을 서술해 놓은 것은 바로 옛 시대의 향수 때문이다. 모토야마는 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강한 자아, 강한 추진력, 강경한 태도에 뻔뻔함까지 강한 외골수와 같은 성격은 두 사람 모두 서로 닮았다. 그러한 강함 속에서도 가쓰라에게는 어딘가 소심한, 무인으로서의 솔직함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조금도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라는 철두철미하게 추진력 하나로 일을 밀어붙였다. 밀어붙이고 밀어붙여 그의 돌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확신하였고, 그 자기중심적 확신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자기 편에 서는 사람보다는 적이 많았다. 적이라고는 해도 그에게 있어서는 상대하기 부족한 이들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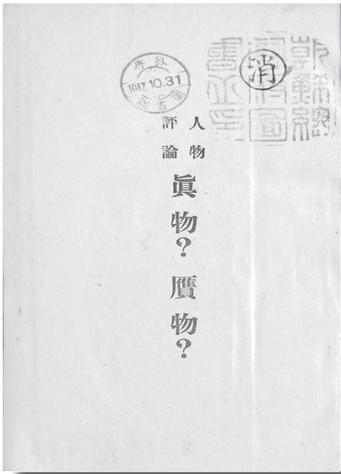
저자의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는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경제공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은 일제의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나 경제공황을 타계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저자는 이를 염려했던 것이다. 모토야마는 가쓰라와 하라처럼 추진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 당시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쓰라 타로와 하라 다카시』는 20세기 초 일제의 정치과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표현해 놓았다. 또한 일본에서 비교적 소외당해왔던 역사적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일생을 전기형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인물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인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 및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오대록)

## 인물평론 진짜냐? 가짜냐? (人物評論眞物?贗物?)

- 저 작 자 : 아리마 준키씨(有馬純吉)
- 발행사항 :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東京), 1917년
- 형태사항 : 278쪽



이 책은 일본어 월간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에 수년에 걸쳐 게재된 인물평론을 집성한 것이다. 저자인 아리마 준키씨(有馬純吉, 易水라는 號를 사용하기도 했다, 1879~?)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신으로 1902년 동경 법정대학을 졸업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만주에 건너가 무역업에 종사했으나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언론계로 전신하여 『안동신보(安東新報)』의 기자가 되었다. 1912년 만주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조선으로 와 신의주의 『압강일보(鴨江日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1913년 경성으로 이전하여 조선공론사에 입사, 인물평론 집필을 담당하면서 일본진보통신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후 『조선공론』 주필 및 『조선신문(朝鮮新聞)』 주필 등에 취임하였다가 퇴직하였다. 1921년 7월 야쿠오 순쵸(釋尾春莠, 월간잡지 『朝鮮及滿洲』 사장)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경성일일신문(京城日日新聞)』을 매수하여 사장 겸 주필에 취임했다.(이후 1931년, 『경성일일신문』은 다시금 경영권이 이전되어 『조선일일(朝鮮日日)』로 개제되었다.) 그런데 아리마는 최초에 『인천신문(仁川新聞)』이란 제호의 신문사를 창간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가 『경성일일신문』을 매수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 군소신문의 난립을 막는 한편으로 격렬하게 총독부 공격을 일삼고 있던 야쿠오의 『경성일일신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이토 총독 및 경찰의 고위관료였던 치바 사토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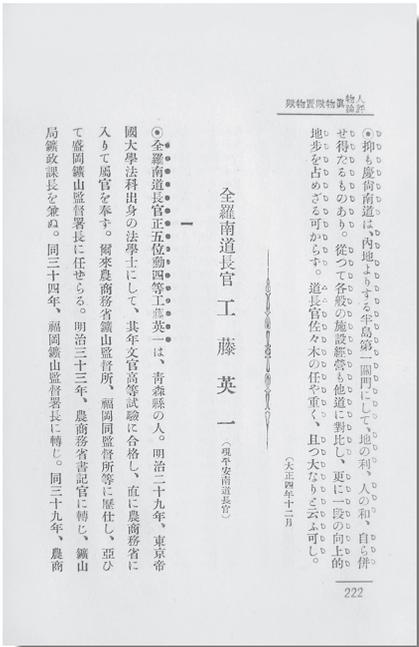
(千葉了) 등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사이토문서’ 참조)

저자는 “인물에는 표면(表面)이 있으면 이면(裏面)이 있고, 정면(正面)이 있으면 측면(側面)이 있다. 따라서 표리(表裏) 어느 쪽도 그 일면을 보고 즉각 그 사람됨의 전폭(全幅)을 알기는 어려운 법”이라 하면서, 당대의 유력 인물(半島官民의 中樞人物)들에 대해 “혹은 그 인물의 겉과 속을 함께 연구하고, 혹은 그 인물을 종합으로 해부하여, 엄정하고 곡해되지 않은 평감(評鑑)을 가한 것이 이 저작”이라고 하여 편찬 간행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43명으로 조선인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 인물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조선총독부 본부(本府)의 장관 및 각도 장관급이며, 재계의 인물도 국책회사인 동양척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선은행, 조선우선주식회사 등의 고위직으로서, 순수한 민간의 실업가(관료 퇴직자를 포함)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인물선정상의 특징은, 총독부 관료기구에 의한 극도의 ‘관치주의(官治主義)’ 및 민간부문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191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수록인물(괄호 안은 집필 당시의 직위이며, 본서 편찬 당시에는 해당 직책에서 경질되거나 또는 사망한 자도 있다)은 다음과 같다.

우사미 카쓰오(宇佐美勝夫;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 모찌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조선총독부 체신국장관), 수주끼 아즈시(鈴木穆;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미노베 준키치(美濃部俊吉; 조선은행 총재), 쿠니사와 신페이(國澤新兵衛;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사장), 쿠보요조(久保要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장), 마쓰카와 토시타네(松川敏胤; 조선주차군 사령관·육군중장), 하라다 킨노스케(原田金之祐; 朝鮮郵船株式會社 사장·경성상업회회소 회두), 키무라유지(木村雄次; 조선은행 이사), 아오키카이조(青木戒三; 조선총독부 농무과장), 오즈카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조선총독부 참사



관), 오기타에치조(荻田悦造; 조선총독부 총무국장), 히토미지로(人見次郎; 조선총독부 농무과장), 이쿠타 세자부로(生田清三郎; 조선총독부 수산과장), 코쿠부 산가이(國分三亥;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조선주차군 사령관·육군중장), 오오야 곤페이(大屋權平; 조선총독부 철도국장관), 이케다 주사부로(池田十三郎; 조선총독부 채신국장관), 카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 수산업자), 나카무라 세시치로(中村精七郎; 해운업자), 구와바라 하치시(桑原八司; 함경북도장관), 이규완(李圭完; 강원도장관),

칸바야 시케지로(上林敬次郎; 충청남도장관), 후지가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평안북도장관), 신응희(申應熙; 함경북도장관), 미야기 마타시치(宮木又七; 전라남도장관), 유혁로(柳赫魯; 충청북도장관), 가와카미(川上常郎; 평안북도장관), 히가끼 나오키(檜垣直右; 경기도장관), 오바라 신조(小原新三; 충청남도장관), 사사키 후지타로(佐々木藤太郎; 경상남도장관), 고토 히데이치(工藤英一; 전라남도장관), 이진호(李軫鎬; 경상북도장관), 조의문(趙義聞; 황해도장관), 스즈키 타카시(鈴木隆; 충청북도장관), 마쓰나가 부키치(松永武吉; 평안남도장관), 하야시 이치조(林市藏; 동양척식회사 이사), 이노우에 코사이(井上孝哉; 동양척식회사 이사), 미즈코시(水越理庸; 조선은행 이사), 미시마 타로(三島太郎; 조선은행 이사),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조선총독부 이재과장), 오카 마사이(岡正矣; 경성전기주식회사 전무취체역), 이두황(李斗璜; 전라북도장관)

이 책이 가지는 특징 및 자료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은 인물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기에 다수 발행되었던 ‘신사록(紳士錄)’이나 ‘흥신록(興信錄)’ 등의 인명사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신사록’이나 ‘흥신록’ 등이 당대 인물의 출생지,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해당 인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외형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해당 인물의 인생편력, 현직에 이르기까지의 활동과 업적, 업무 능력, 업무 스타일, 인물 됬됨이에 대한 세간 및 저자의 평가를 비롯하여 표면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파벌관계와 인맥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첫번째의 특징과 관련하여, 1910년대 중반 경의 조선 통치를 주도했던 관료 및 민간의 명망가가 누구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세간의 평판, 나아가 그들이 취했던 정책에 대한 여론 등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언론이 극도로 통제당했던 1910년대 ‘무단통치’시기의 특성상, 그리고 조선통치와 관련된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이 1920~1930년대의 시기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부족한 자료 상황에 비추어 보아, 총독부의 통치정책을 둘러싼 이면의 사정, 그리고 재조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는 형편에서, 이 책의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 및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이 책에서 주목되는 내용 몇 가지를 예시해 보자.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 우사미 카쓰오(宇佐美勝夫, 1869~1942)에 대한 기술에서는, 그의 인맥 및 파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는 당시 정무총감에 재직 중인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가 일찍이 본국 정부의 내무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로 재임한 이래 인연을 맺어 ‘야마가타의 심복이자 회중(懷中)의 칼’로 성장했다고 한다. 우사미가 조선에 전임하게 된 배경에는 옛 상사였던 야마가타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전임 총독 데라우찌가 사위인 코다마 히데오

(兒玉秀雄)를 총무국장으로 삼아 두사람이 총독부 정무의 실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당시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찌(長谷川好道)가 세부적인 행정실무에 무능한 인물이므로 야마가타-우사미 두사람이 사실상 총독부의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 나아가 코다마의 전횡에 대해 관료사회의 비판이 가해졌던 것처럼 우사미 역시 그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사미는 심사숙고한 후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강한 행동력을 가진 성격의 인물로서, 일찍이 테라우찌 총독을 강요하여 서류에 결재를 받아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반면, 다년간의 내무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독부 내의 타부국에 대한 월권행동 및 간섭, 소관 지방관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감독을 행하기도 하여, 관료사회 내에서의 불평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권력(또는 식민지 통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정책사 연구방면에서도 식민지 관료기구 내의 특정관료 및 파벌과 대립관계 등에 주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경향에서 볼 때, 본서가 담고 있는 인물정보의 내용은 식민지 지배체제 및 지배기구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겸 고등법원 검사장) 코쿠부 산가이(國分三亥)에 대한 인물평에서는, 그의 경력 및 인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식민지사법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즉 조선의 사법제도는 일본 내지와 같은 헌법상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로서, 일본 내지의 사법관은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뜻에 반하여 전관(轉官), 전처(轉處), 면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데 비해, 조선에서는 재판소령에 의해 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독의 재량에 의해 전처,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어 사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행정관과 사법관이 충돌했을 때 총독이 행정관에게 뇌동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으로 사법관에게 일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사법권 독립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에 결국 엄정 공명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음에 이른다”고 하여, 식민지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식민지 사법권 독립(확립) 문제는, 이후 193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일본제국 전체의 내외지가 연계한 사법개혁운동으로 전개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개선을 보지 못한 채 종식되고 말았다.

민간의 대자본가에 대한 인물평의 예로서는 부산의 수산업자 카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메이지유신의 공헌자 중 한명인 카쓰 카이슈(勝海舟)의 제자로 그의 소개를 통해 총독부 총무장관 쓰루하라 사다키찌(鶴原定吉)의 후원을 얻어 수산업에 뛰어 들었다. 이후 쓰루하라의 소개로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도 접촉하고, 또한 그의 원조로 의화궁(義和宮; 李堉) 소유어장의 사용권을 임차하는 등 권력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른바 ‘부산의 삼대 인물’로서 카시이와 함께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를 꼽는다. 저자는 다른 두 사람이 이익추구를 위해 공중의 희생을 돌아보지 않는 반면, 부산 지역의 공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카시이야말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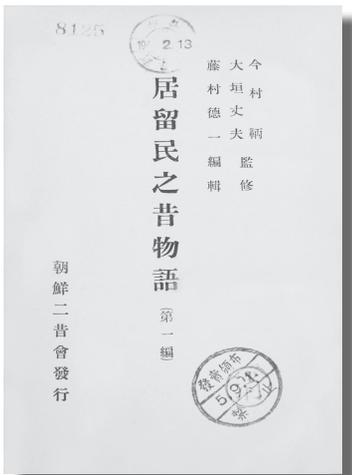
한편, 조선인 도장관(道長官) 이규완(李圭完), 신응희(申應熙) 등 5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한국 시대부터 ‘친일당’으로서 일본을 지지하고 한국 병합에 이르기까지의 공적이 적지 않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부(조선총독부 중앙)를 능멸하고 일본인 부하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태도로 임함으로써 일본인 관료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부(新附)의 동포로서 내지인으로부터 지탄 경멸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삼가할” 것과 함께, “스스로가 신부(新附)의 백성임을 성찰하여 겸허함을 가지고 부하를 신뢰하고, 독단과 전횡을 삼갈 것” 이라고 충고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1910년대~1920년대 초, 당시 일본인 하급 관료 사이

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의식으로서, 무능한 조선인 고급관료가 높은 직책에 앉아 일본인 부하 관료를 관직의 권위로서 억압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상당의 경륜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민 사이에 신망이 높고, 하급관료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조선인 도지사로서는 이진호(李軫鎬)를 들고 있다.

이상은 게재 인물에 대한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본서가 단순한 인명록이 아닌 인물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그가 행하는 업무 내용, 사회적 평판 등 당시 이면에서 이야기되었던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이승엽)

## 거류민 옛이야기 제1편 (居留民之昔物語 第一編)

- 저 작 자 : 후지무라 토쿠이치(藤村徳一)
- 발행사항 : 조선이석회(朝鮮二昔會)(東京), 1927년
- 총 면 수 : 338쪽



이 책은 조선이석회(朝鮮二昔會)라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단체가 1927년 1월에 발간한 책으로, 국내에는 국가기록원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서문〉, 오가키 타케오(大垣丈夫)와 이마무라 토모(今村 鞆)이 쓴 〈본서출판의 유래〉, 편자인 후지무라 토쿠이치(藤村徳一)의 〈서언〉에 이어 사진 설명과 사진이 실려 있고 그 뒤로 본문과 부록이 이어진다.

20년 이상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을 회원의 자격요건으로 한 재조일본인 사교단체 이석회는 1925년 2월 11일 경성의 화월루에서 발회식을 가진다. 부록의 회원명부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현 주소·원적·직업·조선에 온 시기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회원의 다수가 사업가 혹은 상업 종사자이고 언론인·관리·경찰 등도 섞여있다.

이 책의 출간이 제안된 것은 1926년 2월의 제2회 모임에서 이석회 회원들이 조선에서 겪은 오래되고 생생한 실제의 경험들을 수집·편찬하여 시간이 지나 산일(散逸)되기 전에 귀중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대략 10개월 동안 편집자인 후지무라는 이석회 회원들의 담화를 듣고 기록하기 위해서, 한 집을 많게는 100회 이상 적게는 3, 4회 정도 방문했

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서는 일부 수기나 부록 일부를 제외하고는 편집자 후지무라가 일일이 인터뷰한 자료를 정리·기록한 글이 대부분이다. 책의 편집 방침은 개인적 이야기보다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담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담화자 자신이 조선에 온 순서가 아니라 편집의 편의상 후지무라가 담화한 날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서명에 ‘제1편’이라고 되어있고, 서언에서도 이후 후편도 간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이후 이석회가 같은 제목의 책이나 그 밖의 간행물을 출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책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1880년대 이후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내 활동이나 재조일본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재조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과 조선 사회를 탐색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책에 실린 내용의 담화자들이 경성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각계의 원로 또는 개척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단순한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경성은 물론 전 조선에서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재조일본인들이었는지 알 수 있다. 회원 가운데 1880년대부터 조선에 와 활발한 상업 활동을 영위한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의 조선 침략의 최전방에서 활약·기여한 사람들로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에도 직접 군인으로 참전하거나 통역·군납업자로 관여·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거류민회, 경성부회, 경기도의회, 상업회의소, 위생조합, 학교조합, 업종별 조합, 조선총독부 산하 단체의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이석회 이사장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 1863~?)와 평의원인 야마구치 타헤에(山口太兵衛; 1865~?)는 경성의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와 더불어 ‘세 원로(三元老)’라고 불리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들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정상(政商)으로서 당시의 관계와 재계에 영향력이 컸다. 이외에도 경성 내 유력한 인물을 살펴보면, 상업계에서는 카네코 레이조(兼古禮藏;

1872~?, 이사, 양조업) · 후지타 요네사부로(藤田米三郎; 1879~?) · 텐지츠 쓰네사부로(天日常次郎; 1875~?) · 토지마 유지로(戶島祐次郎; 1883~?, 평의원) 등을 꼽을 수 있고, 광업계의 고바야시 토우에몬(小林藤右衛門; 1869~1934, 이사), 언론 분야의 원로로 오무라 하쿠조(大村百藏; 1872~?, 평의원, 경성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 · 후지무라 츠스케(藤村忠助; 1875~?, 평의원, 경성일보사 지배인) · 기타카와 키치사부로(北川吉三郎; 본문집필자, 경성일보, 대륙통신), 변호사계의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1864~?, 평의원)와 오가와 쇼헤(小川勝平; 1876~?, 평의원) · 아사쿠라 토모테츠(朝倉外茂鐵; 1863~?, 평의원) 등이 눈에 띈다.

또한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서문 집필자), 이마무라 토모(今村鞆; 이석회 평의원), 키쿠치 켄조(菊地謙讓; 본문 집필자), 오오가키 타케오(大垣丈夫; 이석회 이사)는 당시 조선 내에서 그 어느 일본인보다 조선인과 조선풍속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마무라 토모는 1914년 『조선풍속집』(京城: 斯道館)을 발간하였는데, 재조일본인들의 조선풍속 입문서이자 필독서로서 정평이 나서 1910년대 이미 3판을 거듭하였다. 그는 1943년 조선에서 사망할 때까지 조선의 풍속 관련 연구와 저술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특히 중추원 촉탁으로서 다수의 논문과 단행본을 펴냈다. 또한 이들은 사이토 총독이 설치한 조선정보위원회 민간인 위원이 되어 조선 사정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 책의 본문을 대략 살펴보면, 「원산진의 개항과 우리 외무성의 방침」은 1883년 당시 원산에서 약종상으로 활동했던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의 회고담이다. 그는 원산항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1902년 경성 상인동지회 화폐교환소를 창설하고 이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조선의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야마구치 타헤에(山口太兵衛)는 「거류 공인 직후의 일들」에서 주로 상업과 운송, 통화와 금융기관, 통신기관의 설치, 무역, 한성주보 등에 관한 기억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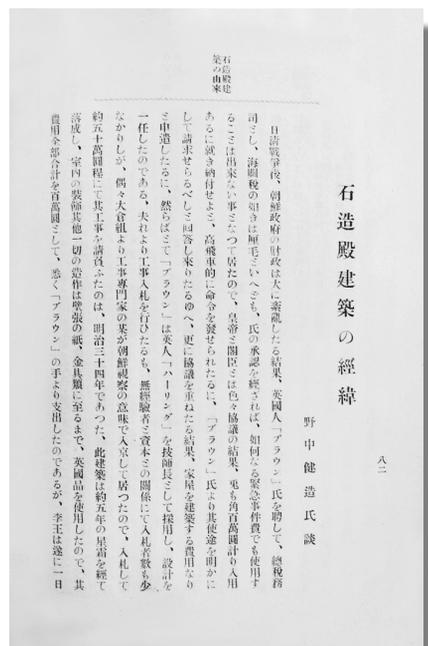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과(이후 측지과) 소속이었던 미쿠리야 켄지로(御廚健次郎)는 「조선에 온 것에 대해서」에서 자신의 토지측량 경험을 담았고, 경성에서 다다미와

돗자리 제조업의 효시인 응취호차랑(鷹取虎次郎)은 「다다미 가게의 원조, 돗자리의 교환」에서 자신의 다다미 제조판매업과 청일전쟁 참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덕수궁 석조전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노나가 켄조(野中健造)는 「석조전 건축의 경위」를 회고하였고, 1905년 이후 천리교 포교사업에 전념하여 천리교 경성지교회(京城支教會) 회장을 맡았던 오쿠마 마쓰지로(大熊松次郎)의 경우에는 「천리교의 개척」에서 자신의 포교 경험을 남겼다.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은 「회고 한 묶음」에서 전당포의 개업과 이자 제한령, 한양공원의 유래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한양공원 설립자이며 경성 전당포조합 조합장을 7년 동안 역임했던 사람이다. 이처럼 자신의 사업과 관련지어 용산에서 양조업을 크게 하는 카네고 레이조가 「경성·용산간 주조업의 연혁」에서 주조업의 창업과 경영 등에 대하여, 고바야시 토우에몬(小林藤右衛門)이 「조선에 온 동기와 조선에 왔을 당시의 경성의 사업계」에서 자신의 용달 사업 경험을 회고하기도 한다.

회원 중 변호사들은 주로 조선의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술하였다. 아시쿠라 토모테츠는 「불가해한 일들」에서 조선의 사법제도의 문란을 다루었고, 오가와 쇼헤는 「조선에 온 유래」에서 지방 군수의 재판, 감옥의 불비, 태형의 집행 등을 담았고, 「조선의 개발에 관해서」의 다카하시 쇼노스케는 재판관과 피고의 고문을 이야기하였다. 이 밖에 승려인 키요타니 에겐(清谷惠眼)도 감옥을 시찰한 경험을 「20여년 전의 한국감옥과 자웅 두 자루인 참수용 청룡도」라는 글에 남겼다.

또한 모리 로쿠지(森 六治)는 「조선에서



의 검토에 관해서」를 통해 격검의 보급과 검토 도장의 신축 등을 말하였고, 치과 의사인 이이즈카 토오루(飯塚徹)는 「조선에 온 후 세 번 놀람」에서 조선에 왔을 당시의 위생상태라든가 사용수의 불결 등을 회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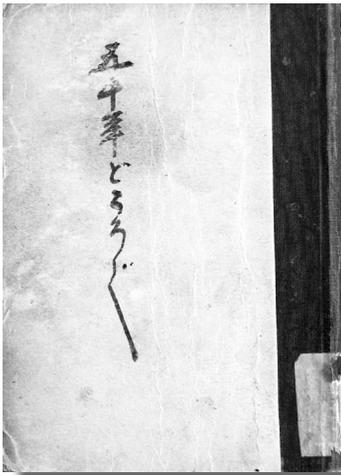
한편, 여타의 일본인들이 경성이나 주로 인천, 원산 등의 항구도시에서만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이마무라의 경우 통감부 시절부터 충청북도과 강원도 경찰부장, 평양경찰서장, 제주도사, 원산부윤 등을 역임함으로써 지방 경험이 매우 풍부한 편이었다. 그리하여 이마무라는 「20년 이전의 조선」이라는 글에서 조선인들의 생활상과 장점과 폐단, 조선 사정, 경찰로서의 경험과 조선의 의병,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경성과 지방 그리고 재조일본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직접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는 다양한 배경의 재조일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구술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재조일본인사 연구에 활용 가능한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과 조선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활동이 미친 영향이 조선 사회와 조선인에게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김혜숙)

## 오십년 여기저기(五十年ところどころ)

- 저 작 자 :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 발행사항 : 대일본웅변회강담소(大日本雄辯會講談所)(東京), 1934년
- 형태사항 : 468쪽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1873~1956년)는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09년 문관고등시험 행정과에 합격, 일본 각 현 및 경시청에서 경찰관료로 역임하였다. 1919년 8월, 사이토 총독의 착임과 더불어 조선총독부 고급관료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총독부 무임소(無任所) 사무관으로 부임하여 고등경찰 업무에 종사, 1922년 6월부터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한다. 1924년 9월 의원면직 후 일본으로 돌아가 경시총감 등을 역임한 후 귀족원

의원으로서 칙선되어, 1943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사무총장, 1944년 미야기현(宮城縣) 지사 등을 역임한 거물급 관료 정치가이다.

이 책은 귀족원 의원 재직 당시 환력(還曆)을 맞아 편찬한 자서전으로서,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견문한 50여 년간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제1편부터 제15편까지는 자신이 구술하고 그것을 속기시킨 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16편 이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필기하게 하는 방식과 본인 스스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회고록 전체로서는 통일을 결여하고 있으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관련 사항은 제23편부터 제30편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각 편의 기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3편 「폭탄의 세례」에서는 ‘문화정치’에의 전환을 맞아 조선에 부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사이토 총독의 착임과 남대문정거장 폭탄투척사건(강우규의사의 의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을 출발하기 전부터 총독 착임을 맞아 ‘불온한 공기’가 있음을 감지하고, 신임 내무국장(이후 경무국장으로 전임)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와 함께 총독·총감에 한발 앞서 경성에 도착하여 착임 당일에 대비한 경비 점검에 분주했다는 이야기를 비롯 폭탄사건 당일 및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4편 「사이토 총독의 신변에 위난 있음」에서는, 1920년 봄에 이루어진 사이토 총독의 국경순시 당시, 재만무장독립운동세력이 총독 암살을 꾀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던 과정을 회상하고 있다.

제25편 「자객문답」에서는, 자신이 경무국장으로 승진한 1922년, 재만조선인 민족운동을 박멸할 목적에서 마적 장호강(張好江), 나가노 세이스케(中村清助) 등과 관계를 맺은 전말, 만주에서의 마적 활동 및 토벌을 둘러싸고 장작림(張作霖)과 일본 측이 갈등을 빚어 결국 정치·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과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6편 「칙임관 이발사」는 신변잡기적인 회상으로서, 두 아들의 이발을 하기 위해 ‘바리칸’을 구입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근처 어린이들의 머리를 깎아 주게 되고, 나아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남산공원에서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 주기에 이르러, ‘경무국장의 신분으로 빈곤한 조선인 어린이들의 머리를 잘라준다’는 미담이 퍼져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다.

제27편 「국경 감격의 여행」에서는 사이토 총독의 국경 순시에 2회에 걸쳐 수행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첫 번째 (1923년 봄)여행 당시 기록했던 『감격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여행일기를 전재(轉載)하고 있다.

제28편 「관동대진재 당시의 조선」에서는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활동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지진 발생 후, ‘조선인 폭동’의 유언비어가 퍼지자, 조선 내에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신문보도를 금지하고 관련 기사

가 실린 신문 전부를 몰수한 이야기, 당시 내무대신을 맡고 있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긴급상황을 맞아 마루야마에게 내무성 경보국장(警保局長)을 맡아 사태 진정에 노력해 주도록 요청한 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경으로 건너가 현장조사를 수행한 건,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자위단을 조직한 건, 조선인의 일본 '내지' 도항을 저지하기에 이르르게 된 경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9편 「강제적 단발식」, 제30편 「근대 표절작가 이야기」에서는 조선에서의 생활 및 경무국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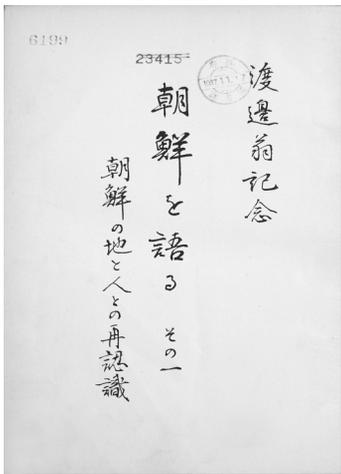
비록 사후의 회고이기는 하지만 3·1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정치' 하에서 만 5년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조선치안의 총책임자로서 겪은 각종의 사건, 특히 조선민족운동과 그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1920년대 초반의 민족운동 및 지배정책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마쓰다 토시히코(松田利彦)의 「마루야마 쓰루키치의 조선독립운동인식」·「'문화정치'기의 식민지경찰관료」 등 식민지조선의 경찰에 관한 연구를 비롯 1920년대 초반의 조선민족운동 및 치안정책 등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이 책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저자인 마루야마는 전후에 본서의 증보·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자전 『70년 여기저기(七十年ところどころ)』를 편찬한 바 있다.(이승엽)

## 조선을 말한다 (朝鮮を語る)

- 그 첫 번째, 조선의 땅과 사람의 재인식(その一, 朝鮮の土と人の再認識)

- 저 작 자 : 이진호(李軫鎬) 외 4명
- 발행사항 : 대해당인쇄주식회사(京城), 1934년
- 총 면 수 : 231쪽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이진호(李軫鎬) 외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사정천명회(朝鮮事情闡明會) 회장 와타나베 벤조(渡邊辯三)의 '조선산업개발'을 위한 노력과 조선사정천명회의 활동과 관련한 원고 및 자료들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와타나베 벤조는 일찍이 1907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북도청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농사개량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선산업개발과 내선융화사업에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그의 30년 가까운 조선에서의 활동은 조선사정천명과

내선융화사업 그 자체로, 일본 각 부현 및 동경제국대학, 기타 공공단체 등 600여 곳에 순회강연 및 전람회, 영사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사람인 이진호와는 경상북도 도장관과 권업계원(勸業系員)으로 만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 책도 와타나베의 활동과 취지에 공감한 이진호 등의 발간 권유에 '점양의 태도로' 거절하자 조선사정천명회의 조선인측이 책임지고 상재(上梓)하여, '내선인양가의 한모금의 시원한 청량제'로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의 권두에는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의 서한이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당시 총독이었던 우가키 카즈나리(宇垣一成)와 박영호 등의 제자(題字)가 실려

있다. 서문은 이진호가 작성했으며 서론은 조선사정천명회장인 와타나베 벤조가 작성하고 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나는 「조선사정천명회의 실제」이다. 여기에는 일본 및 조선의 각지역,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한 연설회, 전람회 등 조선사정천명회 활동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의 과거와 장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에 대한 재인식, 조선청년의 각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내선간을 계획한 일선의 해소(内鮮間を計劃する一線の解消)」란 제목의 발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후원회취의서가 있다. 이 〈부록〉은 책과는 별도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는 후원회 명단이 들어 있다. 이 후원회 명단에는 조선총독부의 각 국장, 조선군사령관 등 관군(官軍), 산업계의 재조일본인 명사들과 함께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이 책의 공동저자들의 명단도 보인다.

이진호는 1895년 춘생문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는 참가했다고 변심하여 이 계획을 어윤중에게 밀고함으로써 친일파로 돌아섰다. 3개월 후 아관파천으로 친러파가 득세하자 이진호는 유길준, 우범선, 이두황, 이범래, 구연수 등 을미사변과 관련이 있거나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후 귀국하여 중추원 부찬의, 평안남도 관찰에 임명되었다. 관서지방에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때 교



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10년 경상북도 장관, 1916년 전라북도 장관,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전라북도 지사에 차례로 임명되었다. 1919년 삼일운동 때는 자신이 지사로 있던 전라북도에 전북자제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의 확산을 막았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하게 되는데, 이는 조선인으로서는 엄청난업과 함께 유일한 경우이다.

신석린(申錫麟)은 한성부 출신으로 한일합방 직후 경상남도 참여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상북도 참여관으로 이동하였다. 3·1운동이 발생하자 '대구자제단'을 발기하여 3·1운동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1921년 강원도 지사로 승진한 뒤, 1923년 중추원 참의가 되었다. 1935년 총독부가 시정 25주년을 기념해 표창한 명단에 들어 있다.

장헌식(張憲植)은 대한제국 시기의 친일관료이다. 한일합방 이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지사 등을 역임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참의를 7회에 걸쳐 중임하였다. 1941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도 가담하여 일본군의 전쟁물자 보급 등 친일활동을 하였다.

한상용(韓相龍)은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장을 지내고, 비행기 헌납기금 조성사업과 지원병제도 창설, 근로자 징용 등 친일행위를 하였다.

박영철(朴榮喆)은 일본 육사 제15기로 졸업하였으며, 러일전쟁에도 종군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익산군수로 관직을 시작하였으며, 함경북도 참여관, 전라북도 참여관, 강원도 지사, 함경북도 지사 등을 역임하였다. 1929년 관직생활을 그만 두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감사를 비롯하여 친일단체인 동민회의 부회장을 지냈다. 193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이 책이 씌어지던 1930년대 중반은 192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일본이 큰 어려움에 빠진 시기이다. 일본은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대동아공영의 실현이라는 미명아래 침략전쟁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제는 만주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쟁을 확대해 나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면서 전쟁을 지원하

는 병참기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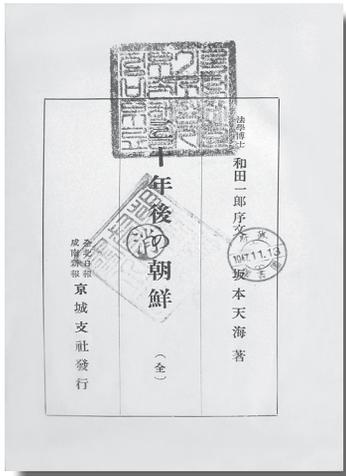
더불어 황국신민화정책의 추진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정신의 말살과 관련이 있다. 내선융화를 강조하고, 황국신민서사라는 충성맹세문의 암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제가 실시된 것이 이 시기이며, 창씨개명의 강요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당시 한국의 경제도 파괴화되었다. 그러나 1931년에 발발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농업중심의 한국경제를 농공병진으로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만주분이 형성되어 1932년의 경기는 매우 희망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조선상공회의소는 경제적 진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만주국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실업구락부에서는 만몽경제좌담회(滿蒙經濟座談會)와 조만무역좌담회(朝滿貿易座談會)를 개최하여 만주의 상품시장화와 선만의 무역증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와타나베 벤조의 조선사정천명회가 수행한 '내선일체'를 위한 적극적 활동과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 총독부 고위 관료 및 산업계 인사, 군 관계 인사들의 동감을 표시한 글들이 함께 실려 있다. 또한 일제 강점하에서 도장관 및 조선총독부 국장을 역임한 조선인 관료들의 글도 함께 실려 있어서 이들의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친일협력 사향을 확인할 수 있다.

## 30년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

- 저 작 자 : 사카모토 아마우미(坂本春吉)
- 발행사항 : 전북일보 경성지사(全北日報 京城支社)(京城), 1927년
- 총 면 수 : 316쪽



이 책과 동일한 내용의 이본(異本)으로서, 모리카와 아오히토(森川清人)·야마다 유메이(山田有明)의 『소화 30년의 조선(昭和三十年の朝鮮)』(京城實業協會, 1927년 3월)이 있다. 발행시기로 보아 『소화 30년의 조선』이 먼저 발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표제와 저자명, 발행처를 제외한 내용은 두 책이 완전히 동일하다. 본서의 저자인 사카모토 아마우미나, 이본(異本)의 공저자인 모리카와 아오히토·야마다 유메이는 각종 인명록 등을 검토해 보아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 양쪽의 저자명 모두 필명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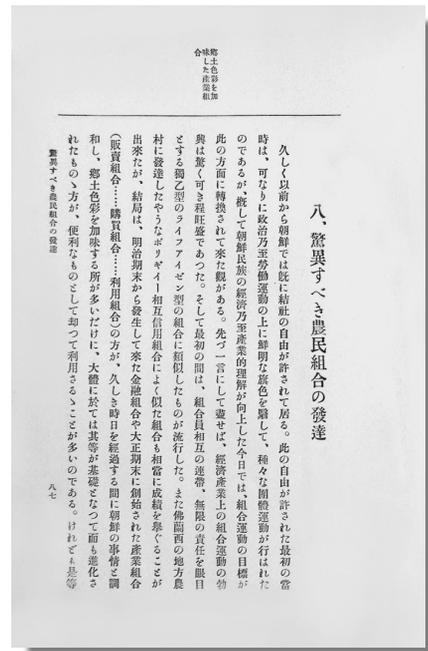
저자는 '소화 30년'(1955년)의 미래를 서술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서는 결코 예언적인 언사를 농하여, 헛되이 세상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조선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연구나 비판은 비교적 많지만, 장래에 대한 타당한 이상관(理想觀)에 넘치는 연구나 비판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상상력을 고조시켜, 시대의 관찰을 시도하기 위해 '소화 30년'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서의 내용은 주로 “정치경제의 방면에서 어떤 종류의 이상을 제시하고 조선의 장래가 당연히 거기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논술·해설”하고 있지만, ‘조선의 정치문제’를 논하는 것은 본서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므로 가급적 최소한에 그치고 후일 별도의 형식으로 정치문제를 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실제로 이듬해 출간된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를 출간하여, 조선의 정치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1955년 가을에 도쿄를 출발하여 조선 전역의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시찰한다는 ‘가공의 여행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도쿄를 출발하여 경성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오후 10시 북경연락기차(北京連絡列車)로 도쿄를 출발, 14시간을 주행하여, 다음날 정오에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 하차하여 곧바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1만톤급의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에 환승, 오후 12시 40분에 출항, 5시간의 항해를 거쳐 오후 6시 30분에 부산에 도착, 북경 직통 특급열차에 환승하여 오후 7시 출발, 경성까지는 5시간, 신의주까지는 11시간이 소요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조선의 수부(首部) 경성을 묘사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정치’의 결과, 조선민족의 전통을 보존하고 교육을 진흥하게 되어, 경성은 동양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과, 농림과, 수산과, 공과, 법문과 등으로 구성된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인 경성대학이 ‘학도(學都)’ 경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경성은 일본 내지의 동경, 대관과 함께 ‘특별시’로 지정되어, 시장공선제를 도입,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 기타 각 장별로 다양다기한 방면(농업, 임업, 수산업, 교통, 통신, 광업, 공업 등)에 걸쳐, 조선 산업개발의 미래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세부목차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부록〉은, 조선통치의 각 분야, 특히 산업·경제 분야의 현장에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급의 현직관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은 식민지 조선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희소한 저작에 속한다. 식민지 조선의 미래상에 관한 저술로서는, ‘한국병합’ 직전인 1910년 4월에 언론인·문필가인 이토 긴게쓰(伊藤銀月)가 쓴 『일한병합 미래의 꿈(日韓併合未來之夢)』이 있다. 한국병합 후 70년이 경과된 1980년의 조선을 방문한다는, 마치 공상과학소설과 흡사한 미래상을 묘사한 책이다. 이 외에는 잡지에 게재된 짧은 에세이 형식의 미래기 등 소수의 예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이 책이 지니는 가치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미래기’ 일반이 그러하듯, 미래상에 대한 묘사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미래’의 외피를 빌려 서술되기에 현실문제를 다룬 논설 등에 비해 훨씬 ‘순진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화정치’의 성공, 조선의 전통과 교육의 진흥, 산미증식, 철도부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본서에서 성공적인 미래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1920년대 당시에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에 식민지의 지배자들이 꿈꾸었던 청사진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미증식의 문제를 보면, 당시의 전망대로 순조로운 경지 확장과 함께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편, 일본제국 전체의 인구증가로 인해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조선산 미곡이 일본 전체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되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불과 수년 후에 일본 내지의 미곡수요 하락과 조선산 미곡의 수입제한, 조선산 미곡 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정치문제

로 비화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산업의 발달상에 대한 묘사 역시도 주로 농업, 수산업, 광업 등의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1920년대의 조선산업의 현상 및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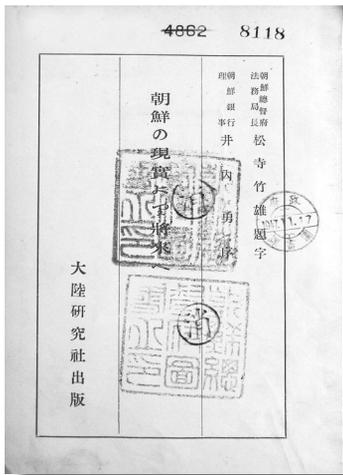
세 번째는 근대적 발전사관에 근거한 미래에의 낙관이 드러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다.

네 번째는,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산업 경제의 측면에서 대단히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치제의 발달’ 및 ‘문화정치의 성공’을 그리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미래상이 곧바로 조선총독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인식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으며, 당시의 지배블럭 일반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단언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서가 취하고 있는 관점은 철저하게 지배블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곧, ‘식민지 개발’의 측면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고 있을 뿐 ‘조선인’의 존재는 철저히 객체로서 위치 지어져 있으며,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이승엽)

## Ⅰ 조선의 현실에서 장래로 (朝鮮の現實より將來へ)

- 저 작 자 : 사카모토 하루키치(坂本春吉)
- 발행사항 : 대륙연구사(大陸研究社)(京城), 1927년
- 총 면 수 : 332쪽



이 책은 저자가 전년도에 발행한 『30년 후의 조선(三十年後の朝鮮)』(전북일보·함남신보 경성지사, 1927년 12월)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30년 후의 조선』이 미래(1955년)의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래상을 서술한다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집필 당시의 시점에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 등의 현상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미래에의 발전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30년 후의 조선』이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의

식민지 조선의 미래상을 서술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조선의 정치문제 특히 조선민족운동에 관한 견해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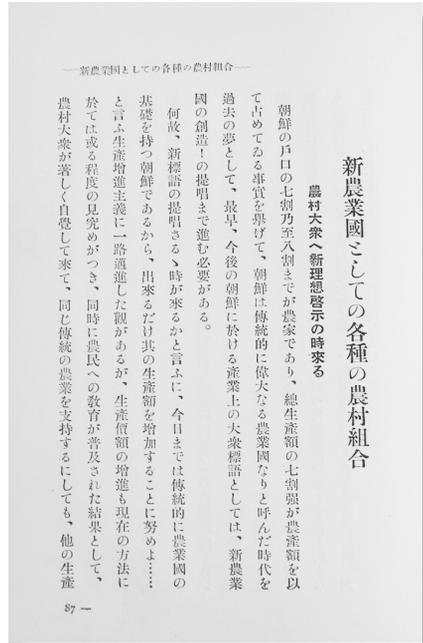
이 책에 대해, 저자는 “‘꿈같은 이야기’로서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15, 6년 후의 조선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기술한 것”이라 하며, 본서의 서술 태도는 현상해설과 자신의 이상, 추리와 예단(豫斷)이 섞여 있는 것이라 밝혔다.

저자의 현실인식, 특히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통치기조에 대한 의견이 피력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장인 「조선통치의 장래는 어떠한가」이다. 그는 조선통치의 기조에 대해, 깊은 성찰 없이 ‘내지연장주의’라는 원칙만이 되풀이되고 있

는 현상을 언급하며, 마치 “답은 나와 있지만 해법을 모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즉 내지연장주의를 철저히 실행한다는 것은, 식민지를 본국과 동일한 법역(法域), 동일한 정치권에 위치시킨다는 것으로서, 앞선 자가 뒤쳐진 자를 위해 다대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며, 뒤쳐진 자는 앞서가는 자와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하여, ‘내지연장주의’원칙의 무책임한 만연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난관(조선인의 독립사상 및 민족심리, 조선민중 일반의 무지와 빈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의 산업 경제 각 방면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도하게 구체적이어서 현실성을 결여한 듯이 보이는 것도 많다)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초래될 이상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전년도에 발행된 『30년 후의 조선』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미래상을 전망한 저작으로서 주목된다. 또한 이 책은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식민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산업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상적인 식민지의 미래상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이승엽)





##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주요도서 해제 2

---

발간 총괄	김 창 수 (기록정보서비스부장)
편집 및 교정	한 승 십 (기록편찬문화과장) 이 경 용 (학예연구관) 길 기 태 (학예연구사)
발행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발행일	2009년 11월
연락처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504호 TEL : 042)481-6550 FAX : 042)481-6371 홈페이지 : <a href="http://www.archives.go.kr">www.archives.go.kr</a>
인 쇄	협성문화사 042)627-8893

---

※ 이 책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내용 및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 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